2010. 12
정책연구 2010-04(기본)

소도서국가(SIDS)와의 해양협력 방안 연구

2010. 12

장학봉 · 백인기 · 박영길 · 최수정 · 이혜은 · 장진희 · 김자영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장 학 봉 : 제1장, 제3장 1절, 제5장(일부), 제6장
- 연구진
  - 백 인 기 : 제3장 4절
  - 최 수 정 : 제4장(일부), 제5장(일부)
  - 박 영 길 : 제3장 2절, 6절, 제4장(일부)
  - 이 혜 은 : 제3장 3절
  - 장 진 희 : 제2장 2절
  - 김 자 영 : 제2장 1절, 제3장 5절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이 계 우(KDI 국제정책대학원 개발학 교수)
- 윤 성 일(KOICA 기후변화환경팀 박사)
- 강 용 구(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 2등 서기관)

* 연구자문위원은 산·학·연·정 순임

◆ **연구감리자**

- 이 원 갑(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머 리 말

한국은 2009년 11월 25일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공적개발원조(ODA) 공여 그룹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였다.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이 공여국으로 전환하여 DAC 회원국이 된 것은 역사상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점차 해외원조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온 결과라 할 수 있다. DAC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국내 총소득 대비 0.1%인 현재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015년까지 0.25%로 높여갈 계획에 있다. 한국의 이러한 공적개발원조 규모의 급격한 확대는 수원국과 원조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한 연구가 시급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엔 회원국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소도서국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으며, 이들의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 반면, 태평양, 인도양, 카리브해 등에 산재해 있는 소도서국들은 국가들의 원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는 이들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고립성, 소규모 인구, 낙후된 기반시설 등 소도서국이 처한 특수한 환경들로 인해 선진국들의 원조가 쉽지 않으며 이들의 관심 또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한국은 수산과 해양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보다 더 소도서국들에 대한 성공적인 원조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 소도서국들에 대한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는 육지 면적보다 수천 배 넓은 그들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한국의 자원개발 확보를 유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중국과 일본 등은 소도서국들의 해양자원 개발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소도서국들에 대한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를 위해 개별 국가들의 구체적인 해양 분야 수요를 파악하고 한국의 소도서국 해양협력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담당기관의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 정책수립뿐만 아니라 이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해양·독도연구실의 장학봉 연구위원이 책임을 맡고 실의 여러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본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문을 위해 애써주신 한국국제협력단 조광걸 팀장을 비롯해 한국국제협력단 관계자분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2010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김 학 소**

차 례

Executive Summary ——— i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5
   3) 선행연구 검토 ····· 6

제2장 한국의 소도서국 개발협력 현황 ——— 9

1.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현황 ····· 9
   1) 공적개발원조의 개관 ····· 9
   2) OECD 원조공여국 그룹 가입 ····· 16
   3)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과제 ····· 16
2. 우리나라의 소도서국 개발협력 현황 ····· 30
   1) 대외무상원조 ····· 30
   2) 대외경제협력기금 ····· 36
   3)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사업 ····· 36
   4) 태평양도서국포럼과의 협력 ····· 38
3. 한국의 소도서국 해양협력 현황 ····· 39

제3장 주요국의 소도서국 개발협력 현황 ——— 41

1. 유엔의 소도서국(SIDS) 협력 현황 ····· 41

1) 바베이도스 행동 프로그램(Barbados Programme of Action : BPoA) · 42
2)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 MDGs) ····· 45
3) 소도서국연합(Alliance of Small Islands States : AOSIS) ····· 51
2. 미국의 소도서국 해양협력 현황 ····· 54
1) 미국의 공적개발원조 현황 ····· 54
2) 미국의 소도서국 해양협력 ····· 61
3. 일본의 소도서국 해양협력 현황 ····· 68
1)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현황 ····· 68
2) 일본의 소도서국 협력 현황 ····· 73
4. 중국의 소도서국 해양협력 현황 ····· 89
1) 중국의 대외협력 개요 및 현황 ····· 89
2) 중국의 소도서국 협력 현황 ····· 92
5. EU의 소도서국 해양협력 현황 ····· 114
1) EU의 개발도상국 협력 체제 ····· 114
2) EU의 소도서국 협력 현황 ····· 119
6. 호주의 소도서국 협력 현황 ····· 126
1) 호주의 공적개발원조 현황 ····· 126
2) 태평양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 ····· 133
7. 시사점 ····· 140

제4장 소도서국의 해양협력 수요 ——— 142

1. 태평양 소도서국 ····· 143
1) 지역 개발협력 개관 ····· 143
2) 국가별 해양협력 수요 ····· 150
2. 카리브해 소도서국 ····· 172
1) 지역 개발협력 개관 ····· 172
2) 국가별 해양협력 수요 ····· 176
3. AIMS 소도서국 ····· 188

1) 지역 개발협력 개관 ····· 188
2) 국가별 해양협력 수요 ····· 191
4. 해양협력 수요 평가 ····· 204

제5장 소도서국(SIDS)과의 해양협력 방안 ——— 207

1. 기본 목표 및 추진 목표 설정 ····· 207
1) ODA의 일반적 목적 ····· 208
2) 해양 분야 ODA의 목적 ····· 214
2. 해양협력 가능 분야 ····· 216
1) 해양협력 가능 분야의 선정 ····· 216
2) 해양협력 가능 분야 선정 결과 ····· 225
3. 추진 방향 ····· 231
1) OECD-DAC 가이드라인 준수 ····· 231
2) 정치·외교적 동기 반영 ····· 233
3) 원조정책의 일관성 ····· 234
4) 개발과 환경의 조화 ····· 234
4. 추진 전략 ····· 237
1) 범정부적 접근 ····· 237
2) 프로그램 방식의 도입 ····· 237
3) 원조분업방식 도입 ····· 238
4) 무상원조중심의 비구속성(untied) ODA 확대 ····· 239
5) 지역기구와의 협력 강화 ····· 240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41

1. 요약 및 결론 ····· 241
2. 정책 제언 ····· 245
1) 원조체계의 유기적 협력 강화 ····· 245
2) 협력대상국 선정 시 전략적 접근 필요 ····· 247

3)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 249
4) 소도서국의 중점 협력국 포함 ····· 250
5) 해양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의 획기적 확대 ····· 251

참 고 문 헌 ——— 253

부 록 ——— 260

부 록 1. 우리나라의 대외 협력사업 추진 현황 ····· 260
부 록 2.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환경(SWOT) ····· 261
부 록 3. 소도서국 일반 현황 ····· 262
부 록 4. SIDS에 유입된 ODA 총액(2000) ····· 264
부 록 5. OECD 국가들의 2008년도 ODA 금액 ····· 266
부 록 6. PROGRESS TOWARD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SIDS) ····· 268
부 록 7. AOSIS 관련 유엔 기구 ····· 270
부 록 8. OECD DAC 회원국의 ODA ····· 271
부 록 9. 주요 수산국의 ODA 목적 및 중점 지원국 ····· 272
부 록 10. 주요 DAC 회원국 및 한국, 중국, 대만의 대외원조유형화 ····· 273
부 록 11. OECD/DAC 주요 가이드라인 ····· 274
부 록 12. 미국의 ODA 현황 ····· 275
부 록 13. 일본의 ODA 현황 ····· 276
부 록 14. EU의 ODA 현황 ····· 277
부 록 15. ODA to Oceania ····· 278
부 록 16. DAC의 지원분야별 분류 목록 ····· 281
부 록 17. ODA 적격기구, 국제 NGO, PPP, Networks 목록 ····· 288
부 록 18. 중국 상무성 대외기업기구 투자 현황 ····· 297
부 록 19. 설문지(A Survey on Marine Cooperation with Small Island States) ····· 310

표 차 례

표 1-1. ODA 관련 선행연구 내용 ····· 6
표 2-1. OECD/DAC 기준에 의한 주요 수원국의 분류 ····· 11
표 2-2. ODA 지원형태 ····· 12
표 2-3. ODA 담당기관 및 관련법 현황 ····· 12
표 2-4. 주요 국가들의 ODA 추진 부서 ····· 15
표 2-5. ODA 지원액 추이 ····· 17
표 2-6. 우리나라의 양자간 원조 지역별 지원 현황 ····· 19
표 2-7. 우리나라의 다자간 ODA 현황 ····· 20
표 2-8. 우리나라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 추이 ····· 20
표 2-9. KOICA 항만 교육 연수 현황 ····· 22
표 2-10. 수산 연수생 초청사업 실적 ····· 23
표 2-11. 수산인프라 건축사업 추진 현황 ····· 23
표 2-12. 해양교통 연수 교육 ····· 24
표 2-13. 해양환경 연수 교육 ····· 25
표 2-14. OECD DAC 특별권고사항 ····· 26
표 2-15. 기관별 ODA 사업 수 및 예산 ····· 29
표 2-16. 2008년 소도서국 대외무상원조 실적 비교표 ····· 33
표 2-17. 소도서개발도상국별 2000~2008년 연도별 지원 실적 누계표 ····· 33
표 2-18. KOICA 협력대상국 중 소도서개발도상국 목록 ····· 35
표 2-19.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대상 국가 ····· 37
표 3-1. 천년개발목표(MDGs) 8대 목표와 18개 세부 목표 ····· 45
표 3-2. 국가그룹별 MDGs의 성과(2009년 9월 기준) ····· 48
표 3-3. 2002년도 SIDS 국가들에 대한 MDGs 성과 ····· 49
표 3-4. 미국의 연간 공적개발원조 지원액 ····· 55

표 3-5. 최근 8년간 미국의 ODA 지원 내용 ····· 55
표 3-6. 미국의 의무지원 프로그램 기금 상위 수혜국 ····· 57
표 3-7. 미국의 대외지원 프로그램 분야 및 금액 ····· 58
표 3-8. 기후변화 대응 지원 규모 ····· 59
표 3-9. 2011년 기후변화 대응 지원 세부항목 ····· 60
표 3-10. 2007년 소도서국의 산호초 보존 지원 내용 ····· 62
표 3-11. 마이크로네시아 지원 내용 ····· 64
표 3-12. 동티모르 지원 내용 ····· 65
표 3-13. 도미니카공화국 지원 내용 ····· 66
표 3-14. 아이티 지원 내용 ····· 67
표 3-15. 아프리카 중동 지역 국가별 지원 내용 ····· 67
표 3-16. 국제기관에 대한 정부개발원조 실적의 추이 ····· 69
표 3-17. JICA의 주요 임무 ····· 71
표 3-18. 2008년 일본의 정부개발원조 실적 ····· 72
표 3-19. 양국간 증여(2009년 기준) ····· 73
표 3-20. 일본의 ODA의 양자간/다자간 원조 현황 ····· 74
표 3-21. 양국간 정부개발원조의 지역별 실적(2008) ····· 75
표 3-22. 일본의 소도서국에 대한 원조 실적 ····· 76
표 3-23. 일본의 소도서국 개발원조 현황-아프리카 ····· 80
표 3-24. 일본의 소도서국 개발원조 현황 ····· 84
표 3-25. 일본의 소도서국 개발원조 현황-중남미 ····· 85
표 3-26. 소도서국의 해양협력 현황 ····· 88
표 3-27. 중국의 대외협력 규모, 2003-2007 ····· 90
표 3-28. 중국 원조의 유형 및 지역, 2002-2007 ····· 91
표 3-29. EU 대외원조 예산상 분류 ····· 116
표 3-30. 국제원조 실행 수단 ····· 117
표 3-31. 로메협정 기간 동안 ACP 국가들에 대한 지원 현황 ····· 118
표 3-32. 호주의 GNI 대비 ODA 비율 ····· 127

표 3-33. 호주의 ODA 예산 구성 ····· 128
표 3-34. 호주의 지역별 ODA 예산 구성 ····· 129
표 3-35. 상위 7개국 지원 규모 ····· 129
표 3-36. 태평양 소도서국 지원 규모 ····· 134
표 3-37. 파푸아뉴기니 항만시설 개선 지원 ····· 136
표 4-1. 주요 태평양도서국들의 국가지표 ····· 145
표 4-2. 태평양 소도서국들의 주요 개발정책 ····· 146
표 4-3. 2007년 태평양 소도서국들의 개발협력 의존도 ····· 147
표 4-4. CROP에 해당하는 11개 지역기구 ····· 149
표 4-5. 카리브해 소도서국들의 국가개발계획 ····· 175
표 4-6. 카리브해 소도서국들의 환경문제 우선순위 ····· 187
표 4-7. AIMS 자원 및 국민소득 ····· 189
표 4-8. AIMS 국가개발전략 수립 현황 ····· 190
표 4-9. 소도서국들의 주요항목 해외 개발협력 수요 평가 ····· 205
표 4-10. 소도서국의 개발협력 수요도가 높은 항목의 대표적 내용 ····· 206
표 5-1. 주요국의 대외원조개발 목적 및 중점 지원국 ····· 213
표 5-2. KOICA의 ODA 협력 대상국 ····· 215
표 5-3. 소도서국들의 해양협력 수요 ····· 219
표 5-4. 우리나라 해양력 평가 ····· 223
표 5-5. 우리나라와 각국의 해양과학기술, 해양자원, 해양 안보력 비교 ····· 225
표 5-6. 한국의 해양협력 가능 분야 ····· 230
표 5-7. 파리선언의 5대 핵심원칙 ····· 232
표 5-8. OECD/DAC 주요 가이드라인 ····· 233
표 5-9. 프로젝트 방식과 프로그램 방식의 차이 ····· 238
표 6-1. 대외원조의 공여국별 지리적 특성 ····· 248
표 6-2. 소도서국 지역별 전략적 요소 ····· 248
표 6-3. 중점협력국 현황과 전망 ····· 251
표 6-4. ODA 예산 전망 ····· 251

그림차례

그림 2-1. ODA 실시체계 ····· 13
그림 2-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하에서의 ODA 추진 체계 ····· 14
그림 2-3. ODA 지원규모 ····· 17
그림 2-4. 2009년 DAC 회원국의 ODA 규모 순위 ····· 27
그림 2-5. 2009년 DAC 회원국의 ODA/GNI 비율 순위 ····· 27
그림 3-1. AOSIS 구성 국가 ····· 52
그림 3-2. 일본 ODA 형태 및 실시체계 ····· 70
그림 3-3. 일본 정부개발원조 실적의 GNI 대비 추이 ····· 77
그림 3-4. 유엔-일본재단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 수원국 ····· 78
그림 3-5. 일본의 남태평양 지원 현황(2009년) ····· 83
그림 3-6. OECD DAC회원국 ODA/GNI 비율 ····· 118
그림 4-1. 태평양 소도서국 분포 ····· 144
그림 4-2. 키리바시 ····· 151
그림 4-3. 투발루 ····· 153
그림 4-4. 솔로몬군도 ····· 156
그림 4-5. 마이크로네시아 ····· 158
그림 4-6. 피지 ····· 162
그림 4-7. 마샬군도 ····· 163
그림 4-8. 나우루 ····· 164
그림 4-9. 팔라우 ····· 166
그림 4-10. 사모아 ····· 168
그림 4-11. 바누아투 ····· 170
그림 4-12. 카리브해 소도서국 분포 ····· 173
그림 4-13. 바베이도스 ····· 177

그림 4-14. 그레나다 ····· 180
그림 4-15. 세인트 루시아 ····· 182
그림 4-16. 트리니다드토바고 ····· 184
그림 4-17. 몰디브 위성사진 ····· 192
그림 4-18. 모리셔스 ····· 195
그림 4-19. 해안선 정비 전후의 모습 ····· 196
그림 4-20. 상투메프린시페 ····· 198
그림 4-21. 세이셸 ····· 201
그림 5-1. KOICA 사업발굴 및 추진절차 ····· 217
그림 5-2. 우리나라 해양력의 국제경쟁력 평가 ····· 224
그림 5-3. 우리나라의 개도국 항만개발협력사업 추진도 ····· 229
그림 6-1.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체계 및 해양 분야 Task Force ····· 247

약 어 표

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Group of States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국가들)
ACS	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카리브국가연합)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
AIMS	Atlantic, Indian Ocean, Mediterranean, South China Seas (대서양, 인도양, 지중해, 남중국해)
AOSIS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군소도서국가연합)
AusAID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호주국제개발청)
BPoA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바베이도스 행동프로그램)
CARICO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카리브해 국가연합체)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
CCCCC	Caribbean Community Climate Change Centre (카리브지역기후변화센터)
CCRIF	Caribbean Catatrophe Risk Insurance Facility (카리브재난위험보험기관)
CDEMA	Caribbean Disaster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카리브재해비상관리청)
CFA	Compact of Free Association (자유연합협정)
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캐나다국제개발청)
CRFM	Caribbean Regional Fisheries Mechanism (카리브지역어업체제)
CROP	Council Organization of the Pacific (태평양지역기구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DAG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개발원조그룹)
DCs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
DESA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경제사회국)
DOALOS	The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유엔 해양 및 해양법 사무국)
ECHO	European Community Humanitarian Office (유럽공동체인권보호청)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대외경제협력기금)
EDF	European Development Fund (유럽개발기금)

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경제수역)
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
EIB	European Investment Bank (유럽투자은행)
EMS	Environmental Management Strategy (환경관리계획)
EUEI	Energy Initiative for Poverty Eradic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EU 에너지 구상)
FAA	Foreign Assistance Act(대외원조법)
FAD	Fishing Aggregate Devices(어업총량장치)
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식량농업기구)
FFA	Forum Fisheries Agency (수산포럼)
FSchM	Fiji School of Medicine (피지의대)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ies (지구환경기금)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지리정보시스템)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Scheme (일반특혜관세제도)
GTZ	Deuts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German Society for Technical Cooperation (독일기술협력공사)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R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인간자원개발)
IBD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미주개발은행)
ICZM	Inter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통합연안관리)
IOC	Indian Ocean Commission (인도양위원회)
IOTC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인도양참치위원회)
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국제해양법재판소)
IUCN	International Union of Conservation for Nature (세계자연보전연맹)
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일본국제협력은행)
JEMIS	Japan Emigration Service (일본이주사업단)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기구)
JOCV	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 (일본해외청년협력대)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한국국제협력단)
KORDI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한국해양연구원)
KST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박안전기술공단)
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최빈개도국)
LLDC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내륙국)

LPC	Lomé Partnership Convention (로메협정)
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천년개발목표)
MOWCA	Maritime Organization of West and Central Africa (중앙·서부아프리카 해양기구)
MSI	The Mauritius Strategy for Further Implementation (모리셔스전략)
MTDS	Medium Term Development Strategy (중기개발전략)
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아프리카개발을 위한 뉴파트너십)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MFS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국가해양어업국)
NNSP	Niue National Strategic Plan (니우에국가전략계획)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미국해양대기청)
NSAP	National Strategic Action Plan (국가전략실천계획)
NSDP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
NSDS	National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Statistics (지속가능한 국가개발전략)
NZAID	New Zealand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뉴질랜드국제개발청)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F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해외경제협력기금)
OTCA	Overseas Technical Cooperation Agency (해외기술협력사업단)
PALM	Pacific Asia Leaders Meeting (태평양 아시아 지도자회담)
PEMSEA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동아시아 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
PFD	Post Forum Dialogue (대화상대국회의)
PIF	Pacific Islands Forum (태평양도서국포럼)
PIFS	Pacific Islands Forum Secretariat (남태평양포럼 사무국)
PIDP	Pacific Islands Development Program (태평양도서개발프로그램)
PNG	Papua New Guinea (파푸아뉴기니)
PPA	Pacific Power Association (태평양전력협회)
PRIP	Pacific Regional Indicative Program (태평양지역 지표 프로그램)
REPAs	Region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지역적 경제협력 협정)
RECOMAP	The Regional Programme of the Indian Ocean Commission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Coastal Zones of the Indian Ocean Countries (인도양 국가 연안의 지속가능한 관리 프로그램)
SDP	Strategic Development Plan (전략개발계획)

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전략 환경평가)
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스웨덴국제개발청)
SIDS	Small Islands Developing States (소도서국)
SOPAC	Pacific Islands Applied Geoscience Commission (태평양도서응용지구과학위원회)
SPBEA	South Pacific Board For Educational Assessment (남태평양교육평가위원회)
SPC	South Pacific Commission(남태평양공동체)
SPREP	South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 (남태평양지역환경프로그램)
SSA	Sub-Saharan Africa(사하라이남 아프리카)
SWIOP	South West Indian Ocean Fisheries Project (남서인도양 수산 프로젝트)
UNDAF	United Nations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유엔개발지원프로그램)
UN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유엔경제이사국)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프로그램)
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유엔아동기금)
UNPF	UN Population Fund(유엔인구통계기금)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국제개발청)
USP	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남태평양대학)
WFP	World Food Programme (세계식량프로그램)
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보호기금)

Executive Summary

A Basic Study to Enhance Korea's Maritime Cooperation with SIDS

- Transport/logistics demand forecast and facilities expansion plan -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ways for Korea to strengthen its maritime cooperation with SIDS. As Korea pursues cooperation with SIDS through ODA for humanitarian purposes, it will bring positive byproducts such as securing their diplomatic supports and immense maritime resources.

○ As a first step, the study presents an overview of the Korea's ODA development process: current status and problems.

- Korea used to receive ai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became the 24th member of OECD/DAC in 2010, joining the group of donor countries.
- Yet, Korea's ODA features the high percentage of tied aid, low ratio of ODA/GNI, weak coordination in the ODA system, etc.
- To comply with OECD/DAC recommendations, Korea is planning to significantly increase among others the ODA/GNI ratio from 0.1% to 0.25% and the percentage of untied aid.

○ The study also analyzed the status of ODA in select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EU, Australia and China.

○ Korea needs to develop new ODA strategies.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SIDS through ODA, which makes up 20% of the UN member countries, would contribute to Korea's becoming a maritime power. It would help to secure their diplomatic support and maritime resources while fulfilling Korea's responsibility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The study analyzed the needs of SIDS in the maritime sector. Then, it matched their needs with the areas of maritime sector where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

○ Commonly, most SIDS are low income states and suffer from natural disasters such as tsunami and earthquake, coastal erosion caused by sea level rise, poor maritime infrastructure and lack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manage maritime resources. They are in urgent need of help from the outside to survive.

○ As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fields of fisheries, shipbuilding and management of coastal areas and ports, it could utilize the accumulated knowledge and experience when conducting ODA to SIDS.

■ Finally,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derived future directions for Korea to consider to advance its ODA to SIDS in the maritime sector.

○ To enhance maritime cooperation with SIDS in a more systematic and organized way, the following should be considered.

- First, as KOICA lacks maritime professionals, a cooperation channel to share a specialized human resources pool should be established among all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Korea Maritime Institute,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etc.

- Second, when pursuing ODA, it should focus more on long-term programs rather than short-term projects.
- Third, division of labor should be introduced among donor countries. That is, a donor country should channel its ODA resources into areas with comparative advantages.
- Fourth, since most of SIDS are low-income countries incapable of paying back loans, ODA to these countries should be done in the form of grants.
- Lastly, cooperation with regional organizations and programs such as PIF, PIDP, SOPAC, FFA, etc., could provide Korea a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way to promote maritime cooperation with SIDS since those organizations and programs are specialized in maritime affair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한국은 2009년 11월 25일 주요 선진국들의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그룹인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이 되었다.[1]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이 공여국으로 전환하여 DAC 회원이 된 것은 역사상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이 1980년대 이후 점차 해외 개발원조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여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은 DAC 가입을 계기로 향후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크게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 2009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액은 국내 총소득(GNI) 대비 0.1%인 약 8억 1,600만 달러인데 이를 2015년까지 GNI 대비 0.25%까지 늘릴 계획이다.[2] 이는 5년 후의 경제규모가 지금과 같다고 상정하더라도 2.5배 증가한 규모이다.[3]

따라서 향후 한국은 대폭 증가하는 공적개발원조 예산 규모에 상응하는 다양한 해외원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유엔 회원국의 약 20%를 차지하는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KOICA의 소도서국들(SIDS)에 대한 해양협력 상황은 극히 미미한 수준

---

1) 2010년 12월 현재 한국이 회원 자격을 취득하면서 DAC 회원국은 총 24개국이다 (http://www.oecd.org 참조).

2) 한편 현재 OECD-DAC 회원국들의 GNI 대비 평균은 0.48%이며, 유엔은 GNI 대비 0.7%를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다.

3) 2010년 1월 한국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제2장을 참조).

이다. 향후 이 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항만, 해운, 수산, 해양관할권 등 해양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선도적 해양정책 연구기관이다. 따라서 KMI가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정부와 KOICA의 정책 형성과 실행에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 방안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소도서국들은 외국과의 해양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도서국들은 대부분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과 해안지역의 침수・침식, 태풍과 지진・해일 등의 자연재해로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매우 적은 인구와 좁은 국토, 지리적 고립성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과의 해양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종합적인 개발원조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은 해양협력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뛰어난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수산, 항만, 조선, 연안관리 등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보다도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을 잘할 수 있다. 예컨대 그동안 KMI가 해양 분야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들을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에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은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소도서국과의 개발협력을 독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여국들은 소도서국이 가진 개발협력을 어렵게 하는 환경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의 성공적인 해양협력은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은 한국의 해양강국 실현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도서국들은 자국의 육지면적보다 수백 배 내지 수천

배 이상 넓은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에는 풍부한 어장과 지하자원들이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소도서국들은 이를 독자적으로 이용・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반면, 현재 한국은 부족한 자원 확보를 위해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과 통가의 EEZ에서 해저열수광상 개발에 참여하고 있지만, 더 많은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도서국과의 성공적인 개발협력을 통해서 해당국가의 어장확보와 광물자원개발 참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는 곧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해양시대와 대륙시대를 동시에 열어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급성을 가진다. 하나는 위와 같은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실행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기초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로서의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해양자원 확보 등 한국의 국익창출을 위해서 소도서국과의 개발협력은 가급적 빨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의 지지와 자원개발 확보를 위해서 특히 태평양 소도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자원확보 경쟁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과 이를 위한 기초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앞으로 확대해 갈 국제협력 중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도서국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해양협력 분야의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들과의 해양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

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해양협력 사례가 극히 미미했던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정부와 KOICA의 정책형성과 실행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양강국 실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은 한국의 소도서국의 EEZ와 대륙붕 내 해양자원의 개발 참여와 국제사회에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소도서국의 한국 입장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먼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현황을 검토한 후(제2장),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 현황을 살펴본다(제3장).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도서국들의 특히 해양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수요를 국가별로 파악하며(제4장), 이러한 수요 파악과 함께 한국의 해양 분야에서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국과 소도서국들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제5장). 마지막 제6장에서는 연구의 결과 요약과 함께 정책적 제언을 한다.

본 연구는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 방안에 대해 유엔, 미국, 일본, 중국, 호주, EU 등 주요 외국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적개발원조의 현황이나 문제점과 같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관적으로만 다루었다. 또한 본 연구가 해양협력에 관한 것이므로 빈곤이나 질병퇴치, 교육과 같이 공적개발원조의 일반적 분야는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 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 점은 본 연구 주제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쉽지 않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어려움의 상당부분은 무엇보다 연구 대상이 40여 개국에 달하는 반면 연구 자료는 부족하다는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취하였다.

첫째, 개별 국가들과 국제기구에서 발간한 보고서와 같은 1차 자료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각종 지표들에 대한 정보와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핵심연구내용인 소도서국들의 해양협력 수요를 파악함에 있어서 당초는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계획하였으나, 이 경우 실제 원조를 위한 수요조사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KOICA의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설문조사로 인한 위험성을 피하고 객관적인 수요파악을 위해서 해당 소도서국들과 유엔,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국가별 평가보고서 등 방대한 기초자료들을 중점 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 국가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심도 있는 분석을 도모하였다. 소도서국과 협력하는 국가들 중 본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거나 한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 즉 유엔, 미국, 일본, 중국, EU, 호주 등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의 현실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국내외 국제협력 담당기관의 관계자 면담, 전화 혹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해당 기관이 처한 현실과 현장 경험들을 연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가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한국은 2010년 1월「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앞으로 세부적인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정부가 기존에 수립한 정책을 이행하거나 또는 새로운 정책 수립 시, 특히 해당 실무기관이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현실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한국에서 수행된 ODA 관련 연구는 ODA의 성질・목적 등과 같은 이론적 연구, 유엔과 OECD 등에 대한 국제동향 파악 연구, 아프리카나 아프가니스탄 등과 같은 수원국에 대한 연구, 미국・일본과 같은 공여국에 대한 연구, 한국 ODA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특정 협력 분야에 관한 연구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 Ⅱ 1-1 | ODA 관련 선행연구 내용

연구 분야	연구물 예시
이론 연구	•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성 인지적 분석(김영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 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손기태・김민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한국 ODA의 프로그램형 접근법(PBA) 도입방안: KOICA의 전략과 과제(이현주, 한국국제협력단, 2010)
국제동향 파악	• 국제 ODA 동향(정기간행물, 한국수출입은행, 2008~)
수원국 연구	•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박영호 외 4인, KIEP, 2008) •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ODA 정책 방향(이영조, 외교통상부, 2005)

| 표 1-1 | ODA 관련 선행연구 내용(계속)

연구 분야	연구물 예시
공여국 연구	• 일본 ODA와 국제정치(박홍영, 한울, 2006) • 주요 국가의 ODA 법제 연구: 미국(박병도, 한국법제연구원, 2010) • 주요 국가의 ODA 법제 연구: 일본(이정, 한국법제연구원, 2010)
한국 ODA 정책방향 연구	•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제도적 개선(강선주, 한국정책지식센터, 2008) • 정부의 국제지원사업의 운영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이승종・허만형, 한국행정연구원, 2003)
특정 협력 분야 연구	• SOC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평가체계 연구(이훈기 등, 한국교통연구원, 2007) • 수산 분야 양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농림수산식품부, 2010)

자료 : 자체 작성

그러나 선행연구 중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을 다룬 연구는 없다. 다만 「수산 분야 양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농림수산식품부, 2010),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한국의 기후변화 원조 전략」 (남지민, 2009), 「해양자원 이용과 국제협력」(채진규, 2003) 등 부분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있었다. 단, 소도서국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해양협력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 찾기 어려우며, 특히 이 둘을 합친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을 위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선행연구의 제약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을 위한 정부 정책수립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원조를 통할하는 OECD 산하기구이다. 1960년 설립되었으며, 목적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를 추진하기 위한 정보와 의견 교환, 개발 조정하는 것이다. 주요활동은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것이며, 가입국은 20개국과 EC 위원회이고, 본부는 파리에 소재한다.
- 1960년에 DAG(Development Assistance Group, 개발원조그룹)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으나, 1961년 9월 OECD 조약 발효와 함께 명칭을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로 변경하여 OECD의 산하 위원회가 되었다. 현재는 EPC(경제정책위원회) 및 TC(무역위원회)와 더불어 OECD의 3대 위원회이다.
- 목적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주는 개발원조를 유효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의견 교환, 개발의 조정을 하는 기구이다. 원래 회원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의 17개국과 EC(유럽공동체) 위원회였는데, 1991년 스페인, 1992년 룩셈부르크, 1999년 그리스가 가입하였다.
- 회원국의 평균 대 개발도상국 공적 원조 규모는 GNP 대비 0.24%이다.
- 우리나라는 11월 25일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DAC 가입심사 특별회의에서 DAC회원국 전원 합의 아래 24번째 DAC 회원국으로 결정되었다. DAC는 국제사회 원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주요 공여국 모임이자 OECD 3대 위원회 중의 하나로, OECD 국가라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아시아 두 번째로 DAC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수산 분야 양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2010, p. 136.

제 2 장 한국의 소도서국 개발협력 현황

1.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현황

본 장에서는 한국의 소도서국 개발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소도서국 개발협력이 공적개발원조의 일환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범위를 좁혀서 우리나라의 소도서국에 대한 개발협력 내용을 살펴본다.

1) 공적개발원조의 개관

(1) 공적개발원조의 정의

OECD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는 공적개발원조(ODA)를 '(공여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DAC 수원국 명단(<표 2-1> 참조)에 속한 국가 및 지역, 그리고 다자개발기구로 제공되는 재원의 흐름'이라고 정의하면서, ⅰ)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할 것과, ⅱ) 증여율이 최소 25%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4] 이때 증여율(Grant Element)이란 이자율, 만기일, 상환유예기간과 같이 공여재원의 무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차관액과 차관원리금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된다.[5]

국제개발협력기본법도 제2조 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4) OECD 홈페이지 참조(http://www.oecd.org/document/4/0,3746,en_2649_33721_46181892_1_1_1_1,00.html#Definition).

5) 국회예산정책처, 「ODA 사업평가」, 2010, p. 5.

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공적개발원조[6]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적개발원조의 추진체계[7]

공적개발원조는 대상에 따라 크게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나누어지며, 공적개발원조 자금 사용 시 경쟁 입찰 허용 등 제한적인 조건부과에 따라 구속성 및 비구속성 원조로 구분된다.

수원국에 원조자금 및 물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양자간 원조는 상환의무 유무에 따라 다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원화된다. 이 중 무상원조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통상부의 감독 하에 한국국제협력단이 집행한다. 무상자금협력은 KOICA에서 전담하지만 기술협력은 정부의 다른 부처와 기관에서도 일부 분담하고 있다. 반면,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의 감독 하에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8]에서 전담하고 있다.

그리고 다자간 원조는 국제기구 및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나 분담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자는 외교통상부가, 후자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특히 추진주체에 있어서 크게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원조 집행체계를 갖고 있다.

---

6) 본 연구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국제개발협력사업, 대외원조(무상 및 유상 포함)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됨. 특히 중국의 경우 DAC회원국이 아니므로 '대외협력'으로 사용함.
7) 국회예산정책처, 전게서, p. 6.
8)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이다.

| Ⅲ 2-1 | OECD/DAC 기준에 의한 주요 수원국의 분류

구분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최빈국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부룬디, 캄보디아, 라오스, 몰디브, 미얀마, 네팔, 티모르, 예멘	앙골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적도 기니, 에티오피아, 기니,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탄자니아, 티모르, 토고, 우간다, 잠비아	아이티	-
저소득국	북한,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코트디부아르, 가나, 케냐,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	-
하위중간 소득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몽고, 팔레스타인, 필리핀, 스리랑카, 시리아, 태국, 통가, 투루크메니스탄	알제리, 카메룬, 콩고공화국, 이집트, 모로코,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튀니지	볼리비아,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기아나,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라과이, 페루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조지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상위중간 소득국	쿡아일랜드, 피지, 카자흐스탄, 레바논, 말레이시아, 나우루, 오만, 팔라우, 터키	가봉, 리비아, 모리셔츠, 남아공	아르헨티나, 빌리제,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그라나다,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보스와나,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0, p. 147

| Ⅱ 2-2 | ODA 지원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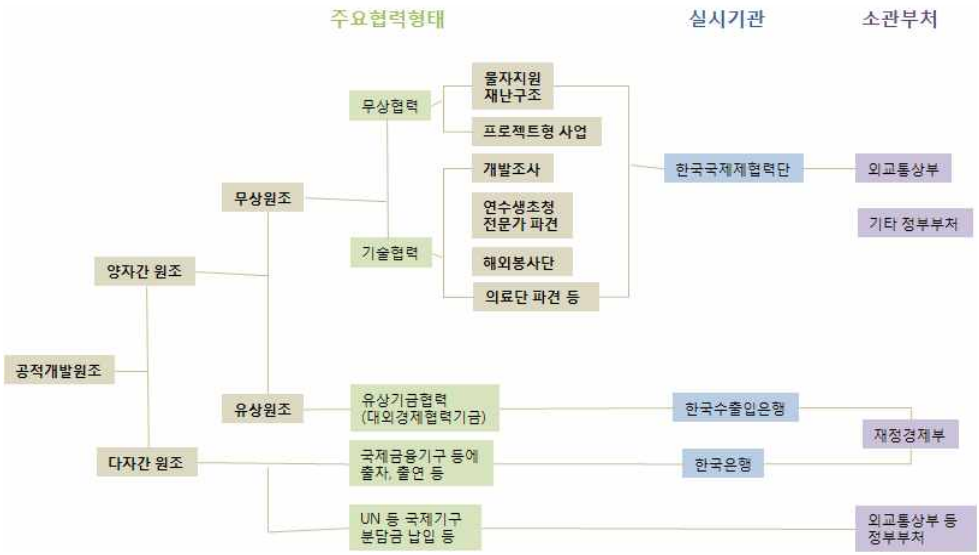
주체	상환의무 유무	원조상태
양자간	무상원조 (증여, Grant): 상환의무 없음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 기술협력 예산지원 개발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채무탕감 NGO에 대한 지원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기부금 개발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한 기금 행정비용
	유상원조 (비증여, Non-grant): 상환의무 있음	차관 주식취득
다자간	국제기구 출연(분담금) 및 출자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전게서, 2010, p. 6

| Ⅱ 2-3 | ODA 담당기관 및 관련법 현황

ODA 형태		담당기관	비고
양자원조	유상원조	기획재정부(EDCF)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무상원조	외교부(KOICA), 30개 기관	한국국제협력단법
다자원조	국제금융기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가입조치법
	기타 국제기구	외교부 및 개별기관	-

자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010, p. 9



자료 : 재정경제부 · 한국수출입은행, 「EDCF 20년사」, 2007, p. 47

| 그림 2-1 | ODA 실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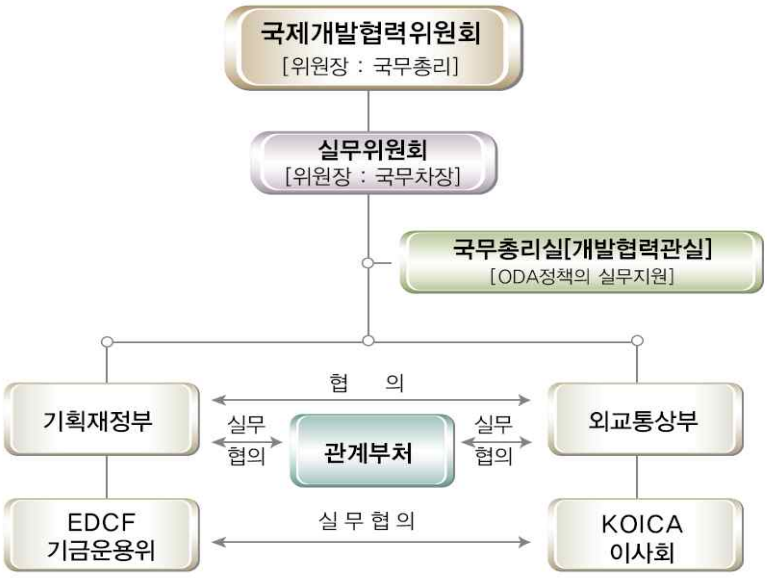
(3) 공적개발원조 법체제의 정비

한국은 2006년 이원화된 원조체계를 보완하고 부처 간 협의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200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그 밖에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적개발원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제도개선, 연간 및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과 이행 체제구축을 목적으로 한다.[9)]

그러나 2006년 설립된 동 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미약하였다. 이에 정부는 DAC 가입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기본법')을 2010년 1월 25일 제정하였으며,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10)] 동 기본법은

9)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참조(http://www.mofat.go.kr).
10) 미국의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오스트리아의 연방개발협력법(Federal Act on Development Cooperation), 벨기에의 국제협력법(Law on Belg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11]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3조에서는 기본정신 및 목표를, 제4조에서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무총리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12]



자료 : 재정경제부 · 한국수출입은행, 전게서, 2007, p. 10

| 그림 2-2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하에서의 ODA 추진 체계

과 같이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기본법을 갖추고 있는 것에서 보듯 동 기본법의 제정은 뒤늦은 감이 있었다. 반면, 일본은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기본법이 없는데, 정부의 관련 부처 간 협조를 통해 공적개발원조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11) 기본법 제1조.

12) 기본법 제7조 3항.

그러나 동 위원회의 주된 기능과 권한은 해당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능이나 권한이 없다. 더욱이 동 기본법 체제 하에서도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각각 주관[13]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이원화된 집행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요 DAC 회원국들이 일원화된 집행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과도 비교된다.[14]

| Ⅱ 2-4 | 주요 국가들의 ODA 추진 부서

국가	주무부처	원조전담기관
호주	외교부	호주 국제개발청(AUSAID)
오스트리아	외교부	오스트리아 개발협력청(ADA)
캐나다	국제협력부	캐나다 국제개발청(CIDA)
프랑스	외교부, 경제부	프랑스 개발청(AFD)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독일 기술협력공사(GTZ) 독일 부흥금융은행(KFW)
일본	외무성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룩셈부르크	외교부	룩셈부르크 국제협력개발청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뉴질랜드 국제개발청(NZAID)
노르웨이	외교부	노르웨이 개발협력청(NORAD)
포르투갈	외교부	포르투갈 개발지원연구소(IPAD)
스페인	외교부	스페인 국제협력단(AECI)
스웨덴	외교부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
스위스	외교부	스위스 개발협력청(SDC)
영국	국제개발부	영국 국제개발부(DFID)
미국	국무부	미국 국제개발청(USAID)
한국	외교부(무상) 기획재정부(유상)	KOICA(무상) 수출입은행 등(유상)

자료 : OECD 홈페이지 및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자료를 근거로 작성

13) 기본법 제9조.
14) 예컨대, 미국은 외교부 전담, USAID 시행, 호주도 외교부 전담, AUSAID 시행, 영국은 국제개발부 전담 및 시행, 일본은 외무성 전담, JICA 시행 등과 같다.

2) OECD 원조공여국 그룹 가입

한국은 선진원조공여국 그룹인 OECD의 DAC 가입을 위해 2009년 6월 원조체계 전반에 대해 DAC 특별검토실사단의 실사를 받았다. 실사단의 긍정적 평가 결과 한국은 같은 해 11월 25일 선진원조공여국 그룹의 회원이 되었다. 그리고 국제협력개발 관련 최대 규모 회의로서 3년마다 개최되는 제4차 원조효과고위급회의(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가 2011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15] 광복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선진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던 원조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한국의 위상 변화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꾸준히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해 오고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DAC 가입으로 OECD 회원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은 제고된 반면 공적개발원조를 실시함에 있어 DAC의 다양한 지침과 권고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DAC의 권고사항 및 이에 부합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 등은 후술하기로 한다.

3)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과제

(1) 공적개발원조 현황

한국은 지속적으로 공적개발원조의 규모와 내용을 확대해 온 결과 2008년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는 8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국내총소득(GNI) 대비 0.09%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7년과 비교해서 14%, GNI 대비 0.02% 상승한 것이며, 이미 집행한 2009년도는 GNI 대비 0.1%에 이르렀을 것으로 전망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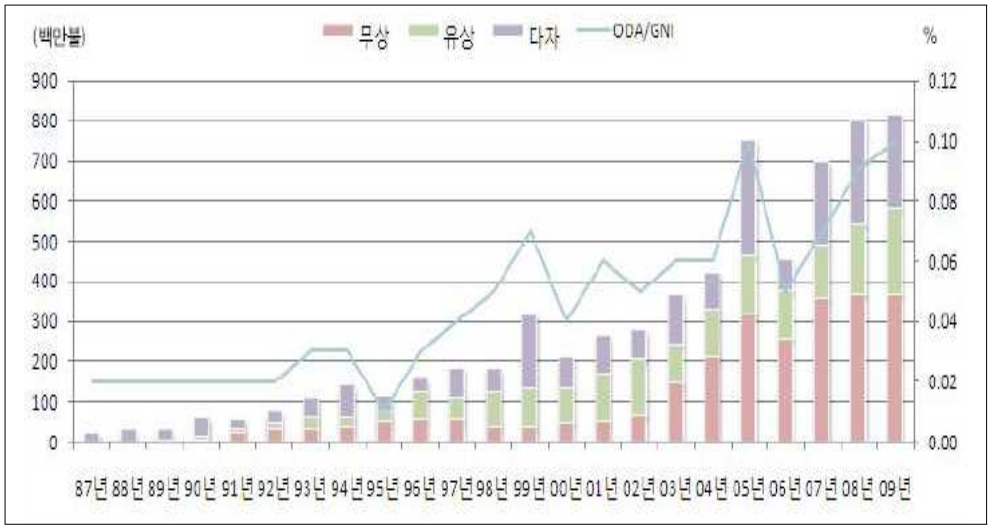
15) 유엔 홈페이지 참조(http://www.un.org/en/ecosoc/newfunct/pdf/accelerating_progress.pdf).

| 표 2-5 | ODA 지원액 추이

순지출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잠정)
ODA총액	212.1	264.7	278.8	365.9	423.3	752.3	455.3	699.1	802.3	815.8
무상원조	47.8	53.0	66.7	145.5	212.1	318.0	259.0	361.3	368.7	366.1
유상원조	83.4	118.6	140.1	99.7	118.7	145.3	117.1	132.2	170.6	214.1
ODA/GNI	0.05	0.06	0.06	0.06	0.06	0.10	0.05	0.07	0.09	0.10

자료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주 : 1) 2009년은 OECD/DAC에서 발표한 잠정 규모임(순지출 기준)
2) 양자간 원조는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직접적인 원조이며 다자간 원조는 국제기구를 통해 수원국을 지원하는 간접 원조방식임. 2005년의 일시적인 ODA 급증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전후복구지원 증가 등에 기인함

자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전게서, 2010, p. 50

| 그림 2-3 | ODA 지원규모

① 양자 및 다자간 원조

가. 양자간 원조

2008년 우리나라의 양자간 원조(순지출 기준)는 전년 대비 9.9% 증가한 5억 3,9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중 무상원조는 3억 6,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9% 증가한 반면 유상원조는 1억 7,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29% 증가하였다. 양자간 원조 중 무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73.1%에서 2008년 68.4%로 감소했는데 이는 23개 DAC 회원국들 평균 무상원조 비율이 101.6%[16]인 것과 비교해 볼 때 포르투갈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17]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8년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의 54.2%(총 지출액 기준)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2005년 이후 아시아에 대한 원조는 감소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전 세계 49개 최빈국 중 33개국이 집중되어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는 18.5%에 불과해 DAC 회원국 평균 30.2%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18] 더욱이 대다수 소도서국이 위치한 오세아니아에 대한 지원은 0.5%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어서 동 지역에 매장된 막대한 해양 광물자원을 선점하고 해상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해 경제·군사·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일본 등의 행보와는 비교된다.[19]

---

16) 순지출 기준에서는 일부 유상원조 상환액이 있을 경우 무상원조액이 순지출액보다 커져 100% 이상의 비율이 나타날 수 있다.

17) 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 ODA 통계자료집」, 2009, p. 97.

18) 국회예산정책처, 전게서, p. 40.

19) 중국은 2006년 파푸아뉴기니와 10억 달러 투자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팔라우에 원조 3억 달러 제공, 바누아투에 정부종합청사 건설 등 남태평양 소도서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역시 이 지역 국가들이 포함된 소도서 국가연합(Alliance of Small Islands States, 피지·투발루 등 43개 소도서 국가로 구성)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2007년 3월 발표한 해양기본계획에서 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김경신, "중국·일본, 남태평양에서 해양 패권 경쟁", 「독도연구저널-이슈브리핑」, 제19호, 2008. 5).

| 표 2-6 | 우리나라의 양자간 원조 지역별 지원 현황

총 지출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아프리카 (비중)	29.85 (8.6)	42.41 (8.8)	51.33 (12.8)	73.80 (14.0)	107.12 (18.5)
아시아 (비중)	272.39 (78.3)	388.89 (80.6)	247.20 (61.6)	329.09 (62.6)	313.66 (54.2)
아메리카 (비중)	15.54 (4.5)	20.53 (4.3)	26.66 (6.6)	55.49 (10.6)	70.48 (12.20
유럽 (비중)	7.70 (2.2)	4.04 (0.8)	31.92 (8.0)	17.74 (3.4)	14.69 (2.5)
오세아니아 (비중)	0.90 (0.3)	1.07 (0.2)	1.76 (0.4)	4.30 (0.8)	2.73 (0.5)
지역 미배분 (비중)	21.55 (6.2)	25.64 (5.3)	42.50 (10.6)	45.05 (8.6)	69.98 (12.1)
합계	347.93	482.57	401.37	525.48	578.67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전게서, 2010, p. 41

나. 다자간 원조

2008년 우리나라의 다자간 원조 순 지출액은 2억 6,312만 달러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다. 이 중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지원은 77.8%로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은 17.7% 감소하였다.[20)]

20) 한국수출입은행, 전게서, p. 103.

| 표 2-7 | 우리나라의 다자간 ODA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7			2008		
	출자	출연	합계	출자	출연	합계
UN	-	47.68	47.68	-	46.68	46.68
UNPKO(7%)	-	14.19	14.19	-	7.43	7.43
세계은행그룹	82.00	4.87	86.86	69.68	9.00	78.68
IDA	82.00	0.33	82.33	69.68	-	69.68
Other World Bank	-	4.54	4.54	-	9.00	9.00
지역개발은행	14.96	41.68	56.64	14.57	111.37	125.94
ADB/ADF	-	41.68	41.68	-	37.87	37.87
AfDB/AfDF	14.96	-	14.96	14.57	3.50	18.07
IDB/IDF	-	-	-	-	70.00	70.00
기타국제기구	-	14.40	14.40	-	11.81	11.81
합계	96.96	108.63	205.59	84.25	178.87	273.1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전게서, 2009, p. 103

② 구속성 · 비구속성 원조

우리나라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2007년 24.7%에서 2008년 35.8%로 증가하였으나 DAC 회원국 평균인 86.5%에 비해 현저히 낮아 2009년 OECD DAC 사무국의 가입실사를 위한 방한 시 실사단은 우리나라의 DAC 가입 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원조의 비구속화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21)]

| 표 2-8 | 우리나라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비구속성 원조비율	1.5	1.6	2.5	4.2	2.6	1.9	24.7	35.8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ODA 사업평가”, 2010, p. 36

2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전게서, 2010, p. 10.

③ 해양 분야 공적개발원조

가. 항만 분야

우리나라의 해외 항만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2007년부터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여 개도국의 항만개발을 지원하는 해외항만 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의 투르크멤바쉬항, 아프리카 콩고의 바나나항, 카메룬의 림베항 등 자원연계형 해외 항만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콩고 바나나항의 경우 양국 간 최종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콩고 측의 광물자원제공 관련 최종 협상 조건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자원연계형 해외항만개발사업은 포화상태인 국내 항만개발시장의 유휴장비와 노동력, 건설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항만관련업계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고 항만개발의 대가를 매년 자원으로 받기 때문에 해외자원의 안정적・지속적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22)]

한편, KOICA는 1998년부터 개도국의 해운・항만개발 정책 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해운환경, 항만시설, 정보화, 항만운영의 민영화, 규제완화 등을 전파・공유한다는 취지로 항만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23)]

---

22)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KMI 긴급제언: 자원연계형 해외항만개발사업, 항만사업의 뉴프론티어가 될 수 있다”, 2010. 8. 26.

2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게서, 2009, p. 246.

| 표 2-9 | KOICA 항만 교육 연수 현황

구분	과정	인원	일수	연수기관
1998	해운항만관리	11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9	한・싱 항만관리	16	12	싱가포르항만관리청
	해운항만관리	16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0	한・싱 항만관리	19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해운항만정책	19	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해운항만정책	16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해운항만정책	11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해운항만정책	15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해운항만정책	11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한・싱 공동연수: 항만관리	11	2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한・싱 공동연수: 항만관리	12	2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CS 항만관리	11	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투르크메니스탄 물류항만	10	30	한국해양대학교

자료 : KOICA; 한국해양수산개발원,「국제해양문제 주도권 확대방안 연구(I)」, 2009, p. 247

나. 수산 분야[24)]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연안수산양식과정'을 통해 우리의 축적된 기술 및 해양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술을 개도국에게 전수하여 왔으며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인력개발원은 2005년부터 KOICA의 위탁을 받아 수산가공식품 생산과정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HACCP) 등을 주제로 국내 수산업 현장과 위생관리 시스템을 교육하고 있다. 2008년 수산 분야 연수 과정인 '수산물 가공 및 수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에 15명[25)], '연안 수산 양식' 과정에 17명[26)] 등이 초청되었다.

2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게서, pp. 249~250.
25) 연수 참가국은 모로코, 베트남, 세네갈, 수단, 스리랑카, 이집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케냐, 콩고, 필리핀 등이다.

| 표 2-10 | 수산 연수생 초청사업 실적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기간	21	28	30	22.6	28	26	24.8	-	-
인원수	8	19	19	51	45	48	46	34	31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기간	61	64	60	29.2	31	31	32	30	28
인원수	16	20	12	24	29	29	29	23	18

자료 : KOICA;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게서, 2009, p. 250

한편, 일부 추진된 수산 분야의 해외 인프라 구축사업의 규모 및 성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나 수산자원에 대한 인식 전환과 관심 증대로 향후 이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표 2-11 | 수산인프라 건축사업 추진 현황

사업연도	대상국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내역
1991년	쿡아일랜드 (오세아니아)	쿡아일랜드 수산양식	46,278,000원 (60,828달러)	기자재 공여: 어군탐지기 외 16종
1993~1997년	자메이카 (중남미)	자메이카 새우양식 지원사업	225,863,088원 (278,269달러)	전문가 파견 및 기자재 공여
1997~1998년	우루과이 (중남미)	우루과이 수산청기능 현대화지원	273,811,705원 (198,888달러)	기자재 공여 및 연수생 초청
1996~2004년	스리랑카 (아시아)	스리랑카 원양어선항법 장치지원	1,659,827,925원 (1,588,842달러)	전문가 파견, 기자재 공여, 연수생 초청, 사업현장관리자 파견
2001~2005년	스리랑카 (아시아)	스리랑카 원양어선항법 장치2차	1,147,831,411원 (900,876달러)	전문가 파견, 기자재 공여, 연수생 초청 등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게서, 2009, p. 251

26) 연수 참가국은 가봉, 도미니카 공화국,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베트남, 세네갈, 스리랑카,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케냐, 콜롬비아, 튀니지,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등이다.

다. 해상교통 분야[27)]

해양경찰청은 정부의 개도국 무상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양교통 분야의 KOICA 초청연수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과 집행을 주도하고 있는데 최근 동아프리카 인근의 빈번한 해적행위 등 국제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MOWCA[28)] 항구 및 연안경비시설'과정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동 기구 내 국제해양질서 및 안전 확보로 아프리카 지역 해상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해사기구와 같은 해양 관련 국제기구와의 주요 협력을 통한 범국가적 해양 선반 네트워크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표 2-12 | 해양교통 연수 교육

연수과정	기간	국가	인원	교육기관
해상교통관계	2001~2002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중국, 태국, 필리핀, 팔레스타인, 피지, 파푸아뉴기니	2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	1999~2004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이집트, 중국, 칠레,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에콰도르, 튀니지, 나미비아, 루마니아, 모로코, 오만, 우즈베키스탄, 케냐, 태국, 피지, 캄보디아, 알제리, 알바니아	101	해양경찰청
MOWCA 항구 및 연안정비시설	2005~2008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나이지리아, 모리타니, 베냉, 세네갈, 상투메프린시페, 앙골라,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 토고, 라이베리아, 말리, 모로코, 세네갈, 시에라리온	64	해양경찰청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게서, 2009, p. 257

2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게서, pp. 255~256.

28) MOWCA(Maritime Organization of West and Central Africa)는 아프리카 중서부 지역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프리카 유일의 해양 관련 지역기구로 역내 모든 해양 관련 문제를 조정하는 핵심기구이다.

라. 해양환경 분야[29)]

한국해양연구원(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 KORDI)은 1994년부터 KOICA의 위탁을 받아 해양조사기술, 해양환경보전 등의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는데 특히 APEC 해양환경 보전교육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 KST)과 같은 해양전문기관과의 협력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 Ⅲ 2-13 | 해양환경 연수 교육

연수과정	기간	국가	인원	관련기관
한·중 서해환경조사	1998~1999	중국	17	-
해양조사	1994~1995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 중국,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21	UNDP
해양조사기술	2006~2008	가봉, 기니, 도미니카, 미얀마, 방글라데시, 알제리, 에콰도르, 이집트,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파키스탄, 필리핀	37	-
해양환경보전	1996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중국,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14	-
해양환경보전	1997~1999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중국, 태국, 피지, 필리핀, 홍콩, 러시아, 몰디브, 서사모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필리핀, 통가	48	UNESCO
해양환경보전	2000~2008	러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칠레, 태국, 스리랑카, 페루, 필리핀, 미얀마, 우루과이, 몰디브, 피지,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방글라데시	113	APEC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게서, 2009, p. 257

2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게서, p. 257.

(2) 공적개발원조 과제

2008년 OECD DAC의 한국 특별검토보고서는 아래 표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체계 관련 개선사항을 권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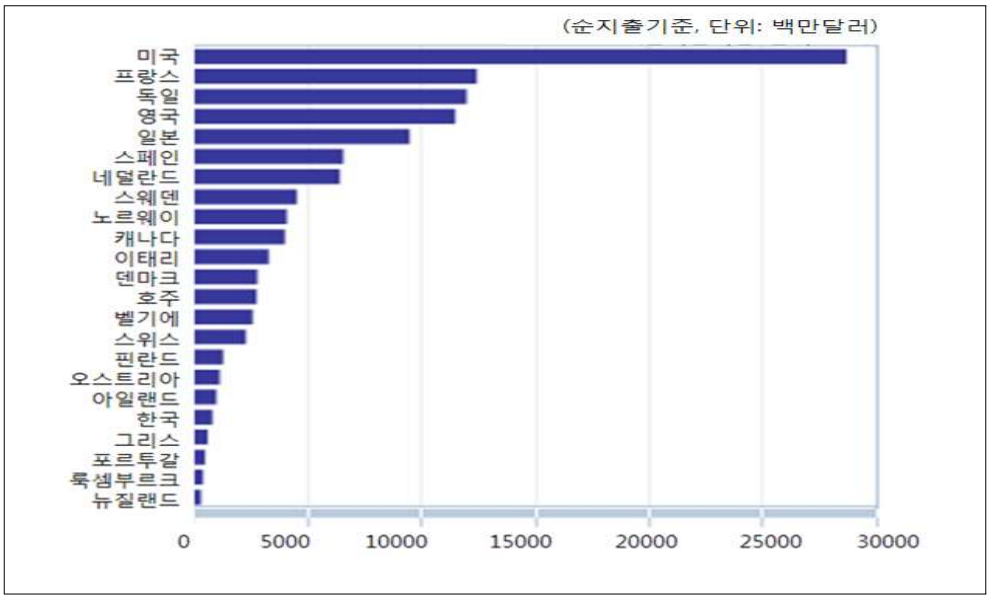
| 표 2-14 | OECD DAC 특별권고사항

분야	세부 항목
추진체계	법적 기반 확립, 단일 원조기관 구성, 포괄적인 중기전략 수립 및 통합추진체계 구축, 대국민 인식 제고 전략 시행
규모 및 배분방안	원조확대 공약 이행, 유무상 통합추진 전략 시행, 통합 중점대상국 선정 및 다자원조전략 수립을 통한 선택과 집중
시행조직	원조체계 분절화 완화, 통합 CAS 활용, ODA 인력전문성 강화, 독립적 평가문화 확립
원조효과성	수원국 체계 활용, 공여국 간 원조조화 강화, 비구속성 비율 확대
인도적 지원	인도성·중립성·독립성 강화, 수원국 수요에 기반한 인도적 활동 강화, 다자원조채널 적극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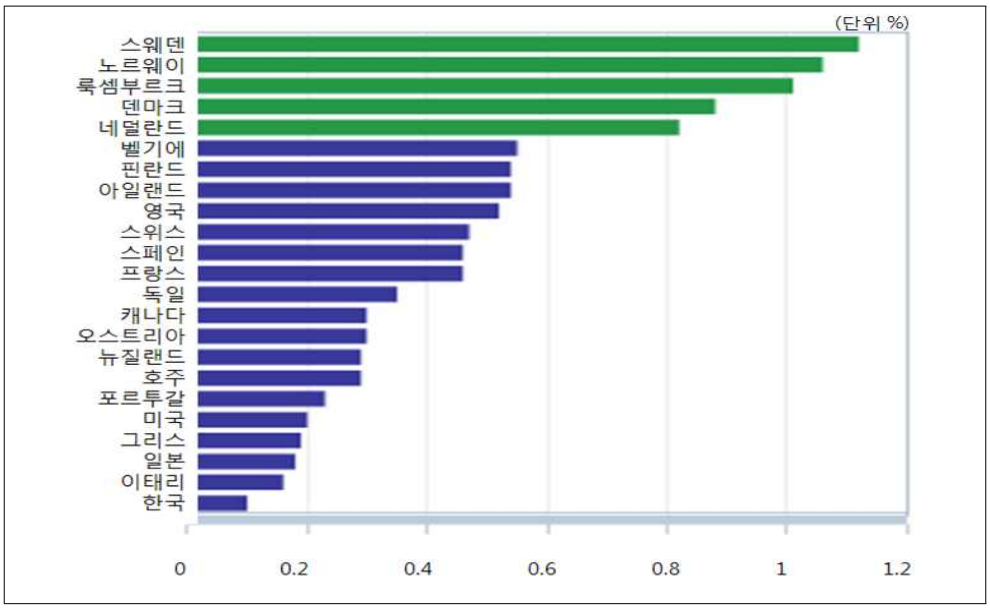
자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전게서, 2010, p. 14

이 같은 권고사항에 따르면 한국이 OECD의 DAC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첫째,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 과거 대표적인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에서 공적개발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하고, 특히 2009년 말 OECD의 DAC 회원국이 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성과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규모에 비추어 DAC 회원국들의 공여액을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9년 한국의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이 0.1%로 올라섰지만, 이 같은 수치는 2008년 DAC 회원국의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 평균이 0.48%이고, 유엔의 목표치가 0.7%인 점을 감안할 때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30] 이를 순위로 보면 더욱 극명하게



|그림 2-4| 2009년 DAC 회원국의 ODA 규모 순위



자료 : OECD 홈페이지 참조(http://webnet.oecd.org/oda2009/)

|그림 2-5| 2009년 DAC 회원국의 ODA/GNI 비율 순위

30)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참조(http://www.mofat.go.kr).

나타나는데 원조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는 (2009년 순지출 기준) 23개 DAC 회원국 중 19위이며 GNI 대비 비율(0.1%)은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둘째,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에게 부담을 주는 구속성 원조 비율을 줄여야 한다. 구속성 원조는 수원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공여국 기업의 이익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적개발원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비구속성 원조를 권장하고 있다. 한국은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중 구속성 원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유상원조의 비율이 높아 DAC 회원국 평균(2008년 총지출 기준)인 12.6%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높은 36.3%에 이르고 있으며 유·무상 원조 담당기관이 분리되어 사업 분절화 및 중복이 발생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31] 2010년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한 각 기관별 공적개발원조사업 현황 결과를 보면 현재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를 제외한 총 32개 기관에서 184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32]

이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공여금을 한국의 경제규모에 맞는 수준으로 늘리고 개발협력체제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3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전게서, p. 10.
32) 국회예산정책처, 전게서, p. 22.

| 표 2-15 | 기관별 ODA 사업 수 및 예산

단위 : 백만 원

	ODA 사업 소관부처 및 기관	사업 수	2010년도 예산
기타 부처 및 광역자치 단체	강원도	2	116
	경기도	10	377
	경상북도	4	1,059
	광주광역시	2	100
	교육과학기술부	41	49,189
	국방부	1	1,739
	국토해양부	4	670
	권익위원회	4	30
	고용노동부	6	1,464
	농림수산식품부	11	11,514
	농촌진흥청	11	640
	문화재청	5	294
	문화체육관광부	4	1,730
	방송통신위원회	3	4,051
	법무부	2	31
	보건복지부	10	6,768
	부산광역시	6	191
	산림청	6	2,268
	서울특별시	11	8,326
	여성가족부	4	1,429
	인천광역시	2	89
	전라남도	2	15
	지식경제부	4	304
	충청북도	1	24
	통계청	1	60
	특허청	2	910
	행정안전부	14	11,119
	기획재정부(KSP 사업)	11	3,432
	소계	184	109,949
EDCF KOICA	기획재정부, EDCF	116	630,598
	외교통상부, KOICA	773	333,505
	소계	889	964,103
총계		1,073	1,074,052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전게서, 2010, p. 23

2. 우리나라의 소도서국 개발협력 현황

1) 대외무상원조

KOICA는 소도서국들에 대해 양자적 무상원조를 제공하고 있는데, 소도서국들에게 지원되는 분야는 주로 보건의료, 교육,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어촌개발, 산업에너지, 환경 및 기타분야 등이다. KOICA에 의해 무상원조를 받는 소도서국은 주로 동티모르, 파푸아뉴기니, 피지, 몰디브, 도미니카공화국, 자메이카로 한정되어 있는 편이다.

2008년 소도서국에 대한 KOICA 무상원조실적을 국가별로 살펴보면,[33] 동티모르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딜리 등 6개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과 국립병원 의료서비스 현대화 및 관리능력 배양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으며, 인구와 생식보건으로 1명의 연수생 초청과 NGO에 의해 주민위생교육 및 수질개선사업이 수행되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아교육 1명과 축구 1명이 봉사단으로 파견되었으며 NGO에 의해 테라산타 청소년 커뮤니티센터 지원 사업이 수행되었다. 행정제도 분야에서는 동티모르 우편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으며, 외교관 연수 2명, 경제개발전략 1명, 사법 공정성 제고 및 효율적 사법행정 1명, 공공감사 1명이 연수생으로 초청되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정보통신 활용기술 능력향상 2명과 COMS 기상위성자료 활용능력 향상 1명이 연수생으로 초청되었고, 컴퓨터 1명이 봉사단으로 파견되었다. 농어촌개발 분야에서는 농촌협동조합 역량강화 1명과 연안수산양식기술 1명이 연수생으로 초청되었고, 지역개발 3명이 봉사단으로 파견되었으며, NGO에 의해 로스팔로스 지역개발사업과 커피 공정무역 캠페인 지원 사업이 수행되었다.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천연가스산업 개

33) 한국국제협력단, 「2005, 2006, 2007, 2008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 참조.

발 및 기술 2명과 석유산업개발 파트너십 2명이 연수생으로 초청되었다. 환경 및 기타 분야에서는 여성인권과 여성발전 2명이 연수생으로 초청되었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구와 생식보건으로 1명의 연수생 초청이 수행되었으며, 파푸아뉴기니 지방국립병원 앰뷸런스 지원 사업을 통해 물자지원이 이루어졌다. 행정제도 분야에서는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2명, 공무원 행정발전 2명, 무역진흥 2명,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4명이 연수생으로 초청되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정보통신 활용기술 능력배양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전문가 양성 1명이 연수생으로 초청되었다.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한싱공동연수(2007~2009) 4－항만관리(교차)로 2명이 연수생으로 초청되었다. 환경 및 기타 분야에서는 여성인권과 여성발전 2명, APEC 해양환경보전 1명, 해양조사기술 1명이 연수생으로 초청되었다.

피지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피지 북섬 응급의료 및 지역사회보건 개선사업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 1명이 전문 인력으로 파견되었고, 물리치료 1명과 간호 3명이 봉사단으로 파견되었다. 행정제도 분야에서는 공무원 행정발전 1명,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3명, CP 국제무역, WTO 및 FTA 1명이 연수생으로 초청되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CT를 이용한 기상업무 향상 1명, 정보통신 활용기술 능력배양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전문가 양성 1명, COMS 기상위성자료 활용능력 향상 1명, e-Learning 1명이 연수생으로 초청되었으며, 컴퓨터 9명과 컴퓨터그래픽 1명이 봉사단으로 파견되었다. 농어촌개발 분야에서는 원예재배기술 1명이 연수생으로 초청되었으며, 원예 2명과 농기계 1명이 봉사단으로 파견되었다.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자동차 1명과 건축공학 2명이 봉사단으로 파견되었다. 환경 및 기타 분야에서는 여성인권과 여성발전 1명과 해양조사기술 1명이 연수생으로 초청되었으며, 태권도 3단 2명과 교육문화 1명이 봉사단으로 파견되었다. 또한 피지 사이클론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구호 원조가 이루어졌다.

몰디브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몰디브 Raa Ungoofaaur 지역병원 의

료기자재 등 지원 사업을 통해 물자지원이 이루어졌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도미니카 미성년 임신방지 및 보건관리강화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으며, 연구개발 1명과 간호 7명이 봉사단으로 파견되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한국어 초급 연수생이 2명 초청되었으며, 유아교육 1명, 음악 2명, 시청각 미디어 1명, 경영 1명, 과학교육 3명이 봉사단으로 파견되었다. 행정제도 분야에서는 국제협력사업운영(스페인어) 1명과 사이버범죄 수사 1명이 연수생으로 초청되었으며, 소방 1명, 신문 1명, 일반행정 1명, 기상 2명이 봉사단으로 파견되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e-Business화(SICA 회원국대상) 1명이 연수생으로 초청되었으며, 컴퓨터 7명과 통신 1명이 봉사단으로 파견되었다. 농어촌개발 분야에서는 연안수산양식기술 1명이 연수생으로 초청되었으며 임업 1명이 봉사단으로 파견되었다.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 송배전망 관리 10명과 ACS 항만관리 2명이 연수생으로 초청되었으며, 토목 2명, 전기공학 1명, 건축공학 1명, 기계 1명, 교육일반 1명, 세라믹 1명이 봉사단으로 파견되었다. 환경 및 기타 분야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 미성년 임신방지 및 여성보건환경 개선 2차 사업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으며, 재해 예·경보 시스템 2명과 해양조사기술 1명이 연수생으로 초청되었고, 교육문화 4명과 사회복지 7명이 봉사단으로 파견되었다.

자메이카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킹스턴시 중앙의료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행정제도 분야에서는 자메이카 청소년정보센터 신축 및 사회참여 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으며, 과학수사기법 2명이 연수생으로 초청되었다.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자메이카 에너지 다변화 정책을 위한 LNG전환 10명과 ACS 항만관리 2명이 연수생으로 초청되었다. 환경 및 기타 분야에서는 재해 예·경보 시스템 2명, 여성인권과 여성발전 1명, 환경영향평가 1명, 여성정책개발 1명이 연수생으로 초청되었다.

| 표 2-16 | 2008년 소도서국 대외무상원조 실적 비교표

2008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천 달러

	총계 (₩/$)	보건 의료	교육	행정 제도	정보 통신	농어촌 개발	산업 에너지	환경 기타	긴급 구호·미분류
동티모르	1,956 (1,763)	870 (784)	88 (80)	738 (665)	51 (46)	172 (155)	26 (23)	11 (10)	0 (0)
파푸아 뉴기니	319 (288)	211 (190)	0 (0)	60 (54)	11 (10)	0 (0)	6 (6)	31 (28)	0 (0)
피지	1,554 (1,400)	981 (884)	0 (0)	89 (80)	233 (210)	91 (82)	86 (77)	74 (67)	56 (51)
몰디브	201 (181)	201 (18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도미니카 공화국	1,754 (1,581)	224 (202)	198 (178)	211 (190)	147 (133)	33 (30)	236 (212)	705 (636)	0 (0)
자메이카	1,524 (1,374)	856 (771)	0 (0)	541 (488)	0 (0)	0 (0)	91 (82)	36 (33)	0 (0)
소도서국 총계	7,364 (6,638)	3,343 (3,012)	286 (250)	1,639 (1,477)	442 (399)	296 (267)	445 (400)	857 (774)	56 (51)
실적 총계	305,541 (275,238)	60,536 (54,532)	43,189 (38,905)	43,612 (39,286)	37,939 (34,177)	26,924 (24,254)	31,550 (28,420)	22,256 (20,048)	39,535 (35,615)
비율	2.4	5.5	0.7	3.8	1.2	1	1.4	3.9	0.1

자료 : 「2008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를 기초로 하여 재정리

| 표 2-17 | 소도서개발도상국별 2000~2008년 연도별 지원 실적 누계표

2008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나우루	0	40	142	0	0	0	0	152	0	409
동티모르	0	385	1,688	291	41	99	371	860	1,956	5,691
마샬군도	0	18	0	0	0	43	0	7	0	288
마이크로 네시아	0	0	12	0	2	0	38	0	0	244
몰디브	3	51	37	28	45	3,160	3	74	661	4,507
사모아	79	78	112	104	120	103	98	176	225	1,970
솔로몬군도	0	39	0	14	2	42	48	176	20	723
쿡아일랜드	0	0	0	0	0	0	0	0	0	104
키리바시	0	41	39	0	22	30	36	12	0	428

| 표 2-17 | 소도서개발도상국별 2000~2008년 연도별 지원 실적 누계표(계속)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파푸아뉴기니	98	200	136	180	120	126	77	173	319	4,293
팔라우	87	98	126	108	60	24	34	23	27	895
피지	259	225	313	405	478	309	1,076	738	1,635	8,813
기니비사우	0	55	36	0	37	71	0	91	200	853
모리셔스	3	0	6	0	62	0	0	23	14	543
상투메 프린시페	0	8	6	0	70	42	0	0	129	411
세이셸	33	21	99	84	0	31	0	70	0	394
카보베르데	25	0	45	0	0	0	0	8	0	318
코모로	0	0	0	67	0	0	0	0	10	366
가이아나	6	33	119	66	8	60	61	623	0	1,613
그레나다	27	0	150	23	36	127	64	200	0	856
도미니카 공화국	40	123	98	142	140	160	1,022	1,146	1,754	6,774
도미니카 연방	0	51	348	55	50	107	20	145	15	942
바베이도스	4	7	108	9	0	49	41	65	5	543
바하마	10	2	135	0	4	0	4	3	0	251
벨리즈	64	66	448	80	45	16	424	329	105	1,883
세인트 루시아	5	0	242	6	53	101	4	164	0	778
세인트 빈센트	3	0	189	61	12	57	59	139	6	701
세인트킷츠 네비스	51	9	211	0	58	109	0	99	0	773
수리남	57	2	4	13	30	57	73	203	10	983
아이티	2	50	281	90	108	137	29	178	918	2,348
자메이카	88	44	80	59	33	18	136	256	1,525	3,227
트리니다드 토바고	8	20	201	47	12	60	57	122	12	1,280

주 : * 총계는 1991년부터 2008년까지의 지원 실적 총액임
자료 : 2008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

KOICA의 지원 실적을 볼 때 지원한 소도서국들의 수는 많으나, 협력 형태나 지원액을 고려했을 때는 동티모르, 몰디브, 파푸아뉴기니, 피지, 자메이카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의 소도서국들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미미하다. 또한 KOICA가 선정한 중점 협력대상국 중 소도서국은 아시아 지역에 동티모르, 피지, 파푸아뉴기니 3개국과, 중남미 지역에 도미니카 공화국, 자메이카 2개국뿐이다.

| 표 2-18 | KOICA 협력대상국 중 소도서개발도상국 목록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동구및CIS
56국	16국	18국	11국	5국	6국
중점 협력국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나이지리아, 세네갈, 이집트,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과테말라, 파라과이, 페루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19국	8국	5국	3국	1국	2국
일반 협력국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중국, 파키스탄, **피지, 파푸아뉴기니**	가나,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수단, 알제리,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튀니지, 코트디부아르, 콩고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콜롬비아	예멘, 요르단, 이란, 팔레스타인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37국	8국	13국	8국	4국	4국

주 : 밑줄은 소도서국을 의미함
자료 : 2008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

2) 대외경제협력기금[34)]

우리나라는 1986년 제정된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법에 의해 기획재정부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 기금은 1987년부터 2009년 말까지 총 2조 4,699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이 기금의 지원을 받는 개발도상국들의 사업들은 주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주요 수원국은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등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다.

현재까지 기금으로부터 지원된 많은 사업들 중 소도서국에 대한 지원은 2006년 8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도미니카공화국의 관세시스템전산화 사업 단 1건뿐이다.

3)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사업[35)]

2008년 7월 G8 확대정상회의 때 이명박 대통령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해 5년간 2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EACP)을 제안하였다.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사업은 동아시아 지역 기후변화대응 역량의 배양을 통해 지역 개발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국가로는 기후변화대응의 시급성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고려하여, 서아시아를 제외한 아시아 및 태평양 도서국으로 선정되었다.

---

34)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통계, “대외경제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2009” 참고 (http://www.mosf.go.kr/_lib/lib03/lib03d.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83&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

35) 한국국제협력단 기후변화대응반, 「2009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사업설명회」, 2009.

| Ⅲ 2-19 |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대상 국가

구 분	대상 국가	비 고
동북아시아	몽골	1개국
동남아시아 (ASEAN)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6개국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5개국
남아시아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5개국
남서태평양 도서국	피지,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투발루, 나우루, PNG, 바누아투, 솔로몬군도, 사모아, 통가, 니우에, 쿡아일랜드, 팔라우	14개국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기후변화대응반, 전게서, 2009

2010년 3월 9개국으로부터 15건의 사업이 선정되었고, 몽골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업이 3건씩,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피지,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에서 각각 1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몽골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바룬우트시 난방 및 온수 공급시스템 구축 사업(500만 달러)과 울란바토르시 도시폐기물 재활용 시설 건립(350만 달러), 바얀누르 지역 호수 및 수자원 복원(150만 달러) 등이며, 베트남에서는 부온호 지역 식수공급시스템 확장 및 개선 사업(450만 달러)과 유해폐기물 통합관리 전자인계 시스템 구축(250만 달러), 호치민시 간선급행버스 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250만 달러) 등이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연료전지 활용 발전소 건립 시범사업(300만 달러), 팜오일폐잔재 활용 바이오에너지 사업(250만 달러), 산림 바이오매스 개발 모델 협력사업(250만 달러)이 선정되었다.

나머지 6개 사업은 방글라데시의 태양광 관개 펌프 및 홈시스템 지원 사업(250만 달러), 필리핀 보홀지역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연구센터 건립사업(290만 달러), 스리랑카 500kw급 계통 연계형 태양광 발전사업(300만 달러), 피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업(200만 달러), 캄보디아 태양열 열병합

발전소 건립사업(220만 달러), 타지키스탄 흐름식 수력발전소 타당성조사 및 설치사업(280만 달러) 등이다.

4) 태평양도서국포럼과의 협력[36]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 PIF)[37]의 대화상대국의 자격으로 대화상대국회의(Post Forum Dialogue : PFD)에 참여해 왔다.[38] 우리나라는 대화상대국회의에서 미국, 일본, 중국, EU 등의 대화상대국들과 함께 태평양도서국들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배양 및 식량안보・에너지안보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해 왔다.

우리나라는 2008~2010년까지 '한-PIF 협력기금'으로 매년 30만 달러를 공여하여, 호주・뉴질랜드를 포함한 PIF국가들과의 실질적 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 기금을 통해 우리나라 관련 세미나와 포럼 등을 지원하고, 대화상대국회의에의 참여를 확대하며, 교역・투자・관광 분야 등에서 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기금을 활용하여 2008~2010년간 '대PIF 전자정부 초청 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자정부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전자 정부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지식 공유와 향후 참가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한국해양연구원은 남태평양응용지구과학위원회(SOPAC)와의 협동연구를 통해 통가해역 내 해저열수광상 탐사권을 확보한 바 있다.

---

36)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제08-417호, "제20차 태평양도서국포럼 대화상대국회의(RFD) 참석" 정리.

37) '태평양도서국포럼'은 남태평양 14개 국가 및 2개 자치지역이 참여하는 연례 정부수반 회의로, 1971년 창설되어 경제발전 등 역내 공동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38) '대화상대국회의'는 미국, 일본, 중국 등 14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은 1989년, 중국은 1990년, 우리나라는 1995년 가입승인을 받아, 제7차 회의부터 참석해 왔다.

3. 한국의 소도서국 해양협력 현황

수산(어업) 분야에서 대외협력사업이 시작한 것은 1968년 한국어업기술훈련소가 정부의 대외기술공여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한 연수생초청 교육이 최초였다.

수산(어업) 분야 대외협력은 연수생 초청사업, 전문가 파견사업, 물자공여사업(컴퓨터 등 물자 공여) 등으로 구성되며, 물자공여사업은 2006년도부터 유엔의 천년개발목표(MDGs)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추진되었다.

현재까지 어업협력사업은 태평양의 도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원국의 요청을 받아 협력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다 엄격해지고 있는 입어제도, 국내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해양협력에 있어서 수산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금까지 많은 역할을 해 온 부문이며, 또한 많은 소도서국들이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산협력에 대한 기대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산 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금의 확대가 요구된다. 2007년도의 경우, KOICA 사업으로 수산 분야에 10억 원 정도만 투입되었다. 2008년도에는 필리핀 다구판시 수산물 가공공장 건립, 세네갈 해수양식장 개발 타당성 조사사업이 실시되었다.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연수생 초청사업 이외에는 아직 그럴듯한 대외협력사업이 시행된 바 없다. 다만 2008년도에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 등 12개국 43명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양성 과정을 실시하였다.

해운항만 분야의 대외협력사업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으나, 우리나라가 상당히 비교우위에 있으므로 앞으로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해양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연수생을 초청하여 교육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된 바 있다. 연수과정은 해양환경, 해양조사기술, 해양환경보전 등

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해양오염방제 과정이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에 실시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해안관리사업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각각 30억 원과 10억 원의 협력사업이 2010년도에 착수되었다. 소도서국들이 기후변화, 재해방지 등 광범위한 해양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향후 해양협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3 장 주요국의 소도서국 개발협력 현황

제3장에서는 유엔과 미국, 일본, 중국, EU,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의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각 국가별로 일반적인 ODA 현황, 소도서국과의 협력 내용을 살펴보며, 특히 해양 분야 협력 내용을 조명하여 본다. 유엔 및 주요 외국의 해양협력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해양협력 방향 설정과 추진 전략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유엔의 소도서국(SIDS) 협력 현황

유엔에서 소도서국(Small Islands Developing States)에 대한 업무와 지원은 유엔 본부의 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DESA)에서 담당한다. DESA는 소도서국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1994년의 바베이도스 행동 프로그램(Barbados Programme of Action : BPoA)과 2005년의 모리셔스 전략(Mauritius Strategy)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0년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 MDGs)의 진도상황을 평가, 감독하고 있으며 소도서국 연합체인 AOSIS(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와의 협력을 통하여 소도서국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과 사업들은 개별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및 소도서국들의 경제 개발과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써, 본 연구의 주제인 해양협력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도서국과 해양협력 실태에 관한 자료는 이들 내용 가운데서 발췌하거나 추정해서 살펴보았다.

1) 바베이도스 행동 프로그램(Barbados Programme of Action : BPoA)

BPoA는 1994년 Barbados에서 개최된 최초의 'SIDS의 지속가능개발 세계회의'에서 채택되었다. BPoA는 SIDS의 지속가능개발 지원을 위해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15가지의 실천사항(actions)과 평가(measures) 사항을 수립하였다.

BPoA의 15개 우선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Climate change and sea-level rise)
② 자연 및 환경재해 (Natural and environmental disasters)
③ 폐기물 관리 (Management of wastes)
④ 연안 및 해양자원 (Coastal and marine resources)
⑤ 담수자원 (Freshwater resources)
⑥ 토지자원 (Land resources)
⑦ 에너지자원 (Energy resources)
⑧ 관광자원 (Tourism resources)
⑨ 생물다양성 자원 (Biodiversity resources)
⑩ 국가 기관 및 행정 능력 (National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ve capacity)
⑪ 지역 기관 및 기술협력 (Regional institutions and technical cooperation)
⑫ 운송 및 통신 (Transport and communication)
⑬ 과학과 기술 (Science and technology)
⑭ 인적자원개발 (Human Resource development)
⑮ 이행, 감시 및 평가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review)

유엔은 1999년 제22차 유엔총회 특별회기(Special Session)에서 BPoA의 진도평가 보고서를 채택하고 향후 5년간 긴급하고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6가지 우선과제를 확인하였다.

① 기후변화 문제 : 일부 도서 국가들을 수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적응하여야 한다.
② 자연 및 환경 재해 및 기후 변동 :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와 복구를 개선하여야 한다.
③ 담수자원 : 담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담수자원의 감소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연안 및 해양자원 : 연안생태계와 산호초가 오염 및 남획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⑤ 에너지자원 : 고가의 수입자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태양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⑥ 관광 : 환경보호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광성장추세를 관리하여야 한다.

유엔은 또한 2005년 1월 아프리카의 모리셔스(Mauritius)에서 개최된 BPoA의 진행상황을 평가하는 국제회의에서 BPoA를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을 채택함과 동시에 (BPoA + 10 = Mauritius Strategy of Implementation) 정치적 선언에 해당하는 모리셔스 선언(Mauritius Declaration)을 채택, 선포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검토는 2010년 9월 제출된 모리셔스 전략 이행(Mauritius Strategy of Implementation)에 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크게 거시경제적 발전, MDGs에 대한 진도 평가, SIDS의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3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거시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SIDS는 1970년대에는 매년 평균 3.7%씩 경제가 후퇴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매년 2.3% 퇴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각국의 노력과 유엔, NGO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 1인당 GDP 및 인적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소득분포의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보고되

었다. 태평양 SIDS는 2008년 평균 5%대로 성장하였으나 2009년에는 3%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은 비교적 자원수출국의 고성장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전반적인 성장으로 오해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심지어 2007년 경제 위기 이전의 호황기에도 0~3%의 경제 성장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동 보고서는 SIDS가 받을 수 있는 외부의 충격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IDS는 지속성장의 관점에서 세계의 'hot spot'에 포함되는데 최근 여러 가지 외부 충격에 의하여 SIDS의 취약성(vulnerability)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07~2010년의 재정 위기, 2007~2008년의 식량 및 연료 위기 그리고 2009~2010년에 발생한 자연재해에 의하여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거의 대부분 식량수입국에 해당하는 SIDS가 식량 위기에 크게 노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취약성은 SIDS가 인구나 경제규모가 작고, 지리적으로 주요 시장과의 거리가 멀다는 점, 무역의존도가 높고 자연재해 및 외부충격에 민감하다는 점, 에너지, 수자원, 광물자원, 식량자원 등 자원이 빈약하다는 점, 그리고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환경변화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엔에서는 앞으로 모리셔스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ⅰ) SIDS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을 확대하고, ⅱ)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 이전, ⅲ) 역량 확충, ⅳ) 국내 및 국제적 거버넌스 확립, ⅴ) 감시와 평가, ⅵ) 유엔의 역할 확대, ⅶ) SIDS와 관련된 지역기구들의 역할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MDGs에 대한 진도 평가는 MDGs에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 MDGs)

(1) MDGs 현황

MDGs는 2000년 9월 유엔 주도 하에 유엔 총회에서 21세기를 맞이하여 빈곤 타파 및 새로운 국제협력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선포된 선언으로 8개의 목표와 18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MDGs는 1996년 OECD/DAC의 21세기 개발협력 전략인 'Shaping the 21st Century'에 기반을 두고 작성되었으며 지구상에서의 빈곤 퇴치를 범세계적 목표로 하여 2015년을 달성연도로 삼고 있다.

8개의 목표는 ⅰ)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ⅱ)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ⅲ) 남녀평등 및 여성 권익 향상, ⅳ) 아동사망률 감소, ⅴ) 모성 보건 향상, ⅵ) HIV/AIO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ⅶ)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ⅷ)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이다. 이 중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서 해양환경보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와 관련성을 가지며 '목표 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에도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표 3-1 | 천년개발목표(MDGs) 8대 목표와 18개 세부 목표

목표 1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세부목표 1	1900~2015년간 1일 소득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줄일 것
세부목표 2	1900~2015년간 기아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줄일 것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세부목표 3	2015년까지 전 세계 아동이 초등교육의 전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함
목표 3	남녀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세부목표 4	교육에서의 성별 간 차이를 초등 및 중등교육의 경우 2005년까지, 모든 교육과정에서는 2015년까지 근절

| 표 3-1 | 천년개발목표(MDGs) 8대 목표와 18개 세부 목표(계속)

목표 4	아동 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5	1990~2015년간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4분의 3으로 줄일 것
목표 5	모성 보건 향상
세부목표 6	1900~2015년간 출산 시 산모사망률을 4분의 3으로 줄일 것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세부목표 7	2015년까지 HIV/AIDS 확산 방지 및 확산 감소로의 전환
세부목표 8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 억제 및 발생 감소로의 전환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세부목표 9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을 각 개별국가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기본으로 삼고 환경자원 손실을 보전
세부목표 10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 환경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줄일 것
세부목표 11	2020년까지 최소 1억 명의 슬럼거주자의 생활여건 향상 및 개선
목표 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세부목표 12	보다 개방적이며, 원칙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시스템 발전, 선정, 개발 및 빈곤 감소에 대한 국가적·국제적 공약 포함
세부목표 13	최빈개도국들의 특별한 수요 수용.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및 수량제한조치 면제, 채무빈곤국에 대한 부채경감 및 양자간 국가채무면제, 그리고 빈곤 감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보다 관대한 공적개발원조 지원 등 포함
세부목표14	내륙국과 군소도서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수요 수용, '군소도서개발도상국군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과 제22차 유엔특별 총회의 결의사항을 통해 추진
세부목표15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외채수준 유지를 위한 개발도상국 외채의 포괄적 해결
세부목표16	개발도상국들과 협력하여 청년층을 위한 적정하고도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의 개발 및 시행
세부목표17	제약회사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적절한 가격에 필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세부목표18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신기술의 혜택, 특히 정보통신 관련 신기술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MDGs는 유엔 체제 및 유엔의 모든 회원국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한 목표이며 성취 가능한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모든 국가가 GNP 대비 ODA 규모를 0.7%로 합의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MDGs는 모든 정부들의 공적개발원조와 연관성을 가지며 실천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MDGs 선언은 국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 중요한 계기로 21세기의 국제협력과 원조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2000년의 선언 이후 국제무역관련 도하라운드(2001년), 2002년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개발재원회의(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2002년)'를 통하여 MDGs의 목표 및 정신이 계승되었으며, 원조효과 평가 및 제고를 위한 로마선언(2003년) 및 파리선언(2005년) 등이 채택되어 수원국 중심의 원조 전략 수립과 관리체계가 마련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2) MDGs 평가

2000년 MDGs가 선포된 이래 MDGs의 진도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만들기 위해, 18개 목표(target)에 대한 48개 지표(indicators)가 설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2005년 정상회담(2005 World Summit)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4개 목표가 추가되었다.

2009년 MDGs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까지 상당한 진척이 있었지만 만족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경고하면서 새로운 노력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의 표는 MDGs 이행 성과에 있어서 SIDS 및 기타 국가들을 비교한 것이다. SIDS는 남녀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건강, 교육 및 환경 목표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성장, 빈곤 퇴치, 부채율 감소 등에 있어서는 SIDS 이외의 그룹과 비교하여 비교적 성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퇴보하는 경향도 나타

| Ⅱ 3-2 | 국가그룹별 MDGs의 성과(2009년 9월 기준)

Goal	Targets	SIDS	DCs	LDCs	LLDCs	SSA
1	$1.25/day poverty (가난 퇴치)	▽	△	□	□	□
	Hunger (굶주림)	▽	▽	▽	▽	▽
2	Primary enrolment (입학)	▽	△	□	□	□
	Reaching last grade of primary (초등교육 마지막 학년)	▽	□	□	□	□
	primary completion (초등교육 이수)	□	□	□	□	□
3	Eliminate gender disparity in primary education (초등교육에서의 성차별 철폐)	○	○	△	△	△
	Eliminate gender disparity in secondary education (중등교육에서의 성차별 철폐)	○	△	▽	▽	▽
	Eliminate gender disparity in tertiary education (고등교육에서의 성차별 철폐)	○	○	□	□	□
4	Under-5 mortality (5세 이하 사망률)	□	□			□
	Infant mortality (유아 사망)	□	□			□
5	Antenatal care, at least once (임산부 검진(최소 1회))		□			□
	Births assisted by skilled professionals (출산 시 전문가 도움)	△	□			▽
6	HIV prevalence (에이즈 확산)		○			○
	Tuberculosis incidence (폐결핵 발생)	○	○			▽
	Tuberculosis prevalence (폐결핵 유행)	○				▽
7	Forest cover (삼림)	△	□	□	△	□
	Protected area (보호구역)	△	□	□	▽	□
	Carbon dioxide emissions (이산화탄소 방출)	▽	▽	▽	▽	▽
	Ozone-depleting-potential substance consumption (오존층파괴물질 소비)	○	○	○	○	○
8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eceived (ODA 수령액)	□	△	△	□	△
	Debt sustainability (부채)	▽	△	△	○	△

주 : DCs = 개도국((developing countries), LDCs = 최저개발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LDCs = 내륙국(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SSA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 = 조기달성국(Early achiever), △ = 진행 중(On track), □ = 지체(Slow), ▽ = 퇴보(Regressing or no progress)

자료 : Mille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 표 3-3 | 2002년도 SIDS 국가들에 대한 MDGs 성과

	Countries	GOAL 1 Eradicate extreme poverty & hunger	GOAL 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GOAL 3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GOAL 4 Promote gender equality & empower woman	GOAL 5 Promote gender equality & empower woman	GOAL 6 Reduce Child Mortality	GOAL 7 Ensure environment Sustainability
		Target Halve the Proportion of people suffering from hunger Undernourished	Target Ensure that all children can complete primary education	Target Ensure that all children can complete primary education	Target Eliminate gender disparity in all levels of education	Target Eliminate gender disparity in all levels of education	Target Reduce under-five and infant mortality rates by two thirds	Target halve the proportion of people without access to impr. water sources
		people (as%of total population)	Net primary Enrolment ratio(%)	Net primary Enrolment ratio(%)	Female gross Primary enrolment ratio as % of Male ratio	Female gross Primary enrolment Ratio as % of Male ratio	Under-five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births)	Popl. using impr. water sources(%)
1	안티구아 바부다	-	-	-	-	-	○	○
2	바하마	-	-	-	-	-	○	○
3	바레인	-	○	○	☒	☒	○	-
4	바베이도스	-	-	-	-	-	○	○
5	벨리즈	-	-	-	-	-	▽	-
6	카보베르데	-	-	-	○	☒	○	-
7	코모로	-	-	-	-	○	○	☒
8	쿠바	▼	○	-	○	☒	○	○
9	사이프러스	-	▼	☒	☒	☒	○	○
10	도미니카 연방	-	-	-	-	-	○	○
11	도미니카 공화국	▽	-	-	☒	☒	○	▽
12	마이크로네시아	-	-	-	-	-	○	-
13	피지	-	-	-	-	-	○	-
14	그레나다	-	-	-	-	-	○	○

| Ⅱ 3-3 | 2002년도 SIDS 국가들에 대한 MDGs 성과(계속)

15	기니비사우	-	-	-	-	-	▽	-
16	가이아나	○	▼	○	○	☒	▽	○
17	아이티	●	○	-	-	-	▽	▽
18	자메이카	○	-	-	○	-	▽	-
19	키리바시	-	-	○	-	-	●	-
20	몰디브	-	-	-	○	☒	○	○
21	몰타	-	☒	☒	○	○	○	○
22	마샬군도	-	-	-	-	-	○	-
23	모리셔스	○	○	○	☒	☒	○	○
24	나우루	-	-	-	-	-	-	-
25	팔라우	-	-	-	-	-	▽	-
26	파푸아뉴기니	▽	-	-	▽	▽	▽	▽
27	사모아	-	○	-	○	☒	○	○
28	상투메프린시페	-	-	-	-	-	▽	-
29	세인트킷츠네비스	-	-	-	-	-	○	○
30	세인트루시아	-	-	-	-	-	○	○
31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	-	-	-	▽	○
32	세이셀	-	-	○	-	-	○	-
33	싱가포르	-	○	-	○	-	○	○
34	솔로몬군도	-	-	-	-	-	○	-
35	수리남	○	-	-	-	-	○	○
36	통가	-	-	-	-	-	○	○
37	트리니다드토바고(T&T)	▽	▽	○	○	☒	○	-
38	투발루	-	-	-	-	-	▽	○
39	바누아투	-	-	-	-	-	○	-

주 : ☒ = 목표달성(Achieved), ○ = 진행 중(On track), ▽ = 부진(Far behind), ● = 지연(Lagging), ▼ = 후퇴(Slipping back)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2*

나고 있다. 특히 내륙(Landlocked) 개도국, 최저개발(Least developed) 국가들 및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주요 요인으로는 지금까지 SIDS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작게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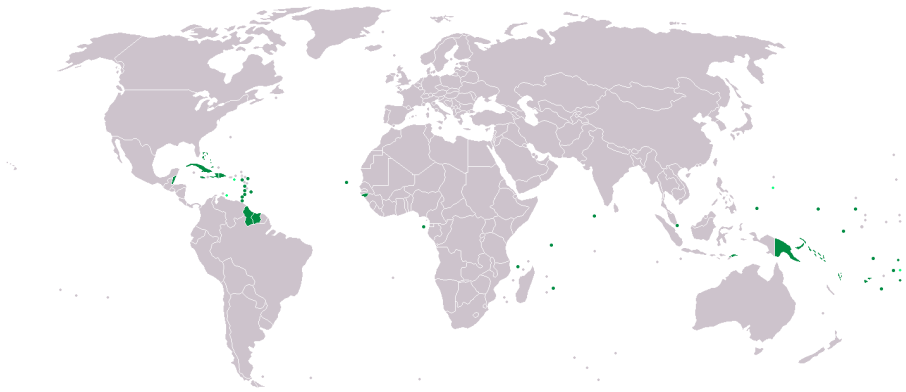
한편, <표 3-2>는 2002년도 UNDP에서 작성한 보고서로서 SIDS에 속하는 모든 개별 국가들에 대한 MDGs 성과를 평가한 것이다. 아직 이에 상응하는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최근의 평가 결과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3) 소도서국연합(Alliance of Small Islands States : AOSIS)

AOSIS는 국토가 저지 해안이거나 작은 도서국들의 연합체이다. 이 기구는 1990년에 개발도상 소도서국(SIDS)들이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설립되었다. AOSIS는 교토의정서 초안을 작성하는 데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AOSIS는 전 세계에 42개 회원국과 참관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37개국은 유엔 회원국이다. 동 연합은 개발도상국의 28%, 국제연합 총 회원국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큰 규모의 연합체이다.

최근 태평양의 아름다운 섬나라인 투발루는 섬 8개 중 2개가 물에 잠기면서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다. 투발루 국민들은 인근 호주와 뉴질랜드에 집단 이민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투발루는 최초의 '기후 난민' 국가로 기록될 것이다.

2009년 9월 21일 뉴욕에서 AOSIS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가지고 'AOSIS 기후변화선언(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Declaration on Climate Change) 2009'을 채택하였다.



| 그림 3-1 | AOSIS 구성 국가

Members

- Antigua & Barb. (안티구아 바부다)
- Bahamas (바하마)
- Barbados (바베이도스)
- Belize (벨리즈)
- Cape(Cabo) Verde (카보베르데)
- Commonwealth of Dominica(도미니카연방)
- Comoros (코모로)
- Cook Islands (쿡아일랜드)
- Cuba (쿠바)
- Dominican Republic (도미니카공화국)
-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마이크로네시아)
- Fiji (피지)
- Grenadna (그레나다)
- Guinea-Bissau (기니비사우)
- Guyana (가이아나)
- Haiti (아이티)
- Jamaica (자메이카)
- Kiribati (키리바시)
- Maldives (몰디브)
- Marshall Islands (마샬군도)
- Mauritius (모리셔스)
- Nauru (나우루)
- Niue (니우에)
- Palau (팔라우)
- Papua New Guinea (파푸아뉴기니)
- Samoa (사모아)
- Singapore (싱가포르)
- Seychelles (세이셀)
- Sao Tome and Principe (상투메프린시페)
- Solomon Islands (솔로몬군도)
- St. Kitts & Nevis (세인트킷츠 네비스)
- St. Lucia (세인트 루시아)
- St. Vincent& Grenadine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 Suriname (수리남)
- Timor-Leste (동티모르)
- Tonga (통가)
- Trinidad&Tobago(트리니다드 토바고)
- Tuvalu (투발루)
- Vanuatu (바누아투)

Observers

- American Samoa(아메리칸 사모아)
- Netherlands Antilles(네덜란드령 앤틸리스제도)
- Guam(괌)
- US Virgin Islands(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SIDS를 비롯하여 여타의 기후변화 취약국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과 교토의정서 당사국들의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실가스의 방출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영향이 가속화되고 있는 사실에 심히 혼란스러우며

ⅱ) SIDS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미흡함에 심히 실망하며

ⅲ) AOSIS는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하여 시급하고 야심적이며 단호한 행동을 취하여 줄 것과 SIDS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ⅳ)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유엔 기후변화회의에 앞서 뉴욕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AOSIS 의장이며 그레나다 대표인 Dessima Williams 대사는 AOSIS의 지침으로 '1.5℃ 유지'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ⅴ) AOSIS 42개 회원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을 1.5℃로 제한하는 안을 환영한다.

ⅵ) IPCC 의장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Rajendra Pachauri 박사는 AOSIS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는 세계가 CO_2 농도를 350ppm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미국의 소도서국 해양협력 현황

1) 미국의 공적개발원조 현황

(1) 지원 규모

미국은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22개 회원국[39] 중 압도적으로 많은 금액의 공적개발원조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OECD가 평가한 바와 같이, 미국은 거의 모든 원조협정과 표준약관 등을 일반에 공개하고 특히 대부분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ODA에 있어 아주 강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40] 미국이 ODA를 위해 2009년 지출한 예산은 무려 286억 6,600만 달러(약 35조 8,300억 원)에 달하였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미국의 원조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OECD의 DAC 회원국 전체 지원액 1,214억 8,300만 달러의 22%를 차지한다.

미국이 이러한 막대한 지원 규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내총생산(GNI)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0.2%로 1%에 근접하는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미국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ODA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보다 더 적극적인 OD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초 미국 국내총생산 중 ODA 비중이 0.17%에 불과하였고, 2006년에는 0.16%였지만, 2008년에는 0.19%였으며, 2009년에는 0.2%에 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여전히 유엔이 목표로 하는 0.7%는 물론 2008년 기준 0.48%인 DAC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

39) DAC는 22개 회원국과 함께 European Commission이 포함되어 있다.
40)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0,* p. 130.

| Ⅲ 3-4 | 미국의 연간 공적개발원조 지원액[41]

단위 : 백만 달러

	1992-93 평균	1997-98 평균	2004	2005	2006	2007	2008
미국	10,916	7,832	19,705	27,935	23,532	21,787	26,842

자료 : OECD, *Op. cit.*, pp. 180~181, Table 4

| Ⅲ 3-5 | 최근 8년간 미국의 ODA 지원 내용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ODA 합계	양자간 ODA	다자간 ODA	국내총생산 (GNI)	ODA/ GNI
2002	13,290.07	10,570.1	2,719.97	10,490,200	0.13
2003	16,319.52	14,658.58	1,660.94	10,980,860	0.15
2004	19,704.91	16,249.5	3,455.41	11,656,110	0.17
2005	27,934.74	25,582.04	2,352.7	12,358,700	0.23
2006	23,532.14	21,162.12	2,370.02	13,259,900	0.18
2007	21,786.9	18,901.15	2,885.75	13,925,500	0.16
2008	26,841.93	23,859.47	2,982.47	14,410,300	0.19
2009	28,665.33	25,111.78	3,553.55	14,361,200	0.2

자료 : OECD 통계자료[42]

(2) 원조 분야

미국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ODA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크게 ODA 수혜국과 직접 양자간 협정을 통해 지원하는 양자간 ODA와 유엔의 각종 기관들, 국제전문기구들 등을 통한 다자간 ODA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양자간 ODA는 식량원조, AIDS 퇴치, 테러와 마약 등 안전과 국제범죄 문제, 난민구호, 부채탕감, 기술협력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수혜국과의 협정 그리고 특별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지원하는

41)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0,* pp. 180~181, Table 4.; 또는 U.S. Official Development Database 자료 참조(http://usoda.eads.usaidallnet.gov/data/standard.html).

42) OECD 통계자료를 근거로 작성(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ODA_DONOR).

다자간 ODA 중 대표적 기구들로는 EC, IDA, IBRD, IFC 등이 있으며 여러 지역개발은행들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 위 <표 3-5>에서 보듯이 2009년 기준 전체 ODA 지원액 중 양자간 ODA가 약 88%를 차지하며, 다자간 ODA가 12%를 차지할 만큼 미국은 외국에 직접적 원조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ODA 중 상당액이 미국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에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07~2008년 미국의 연평균 ODA 중 지원 규모면에서 1위인 이라크에 32억 4,600만 달러, 2위인 아프가니스탄에 18억 1,600만 달러, 합 50억 6,200만 달러가 지원된 반면, 나머지 3위에서 10위 국가에 지원한 총 금액이 40억 3,400만 달러이다.[43] 이를 볼 때 미국의 ODA 지원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두 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미국의 국가별 지원은 미국의 정책과 해당 국가의 상황변화에 따라 매년 바뀌고 있으며, 2009년과 2010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본 과제와 관련이 있는 소도서국에 대해 특별한 인식을 하면서 개발 원조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에 검토하는 바와 같이 마약 문제 등으로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카리브해 도서국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도 큰 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양협력 분야에서 특별히 소도서국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

43) OECD, *Op. cit.,* p. 130.

| 표 3-6 | 미국의 의무지원 프로그램 기금 상위 수혜국[44]

단위 : 달러

	국가	2009 회계연도	2010 회계연도
1	아프가니스탄	1,459,560,810	199,428,308
2	파키스탄	1,084,746,818	31,013,207
3	웨스트뱅크/가자	798,497,531	76,407,855
4	이집트	551,255,600	20,700,790
5	아이티	224,209,944	334,250,663
6	케냐	515,238,368	11,852,784
7	요르단	515,749,676	336,398
8	수단	467,960,516	11,150,663
9	조지아	331,343,446	132,246,394
10	이라크	443,519,655	11,254,375
11	에티오피아	427,743,004	22,569,903
12	남아공	324,356,642	69,150
13	나이지리아	290,736,554	924,000
14	우간다	273,186,427	15,348,454
15	탄자니아	204,370,738	43,714,951
16	콜롬비아	225,890,663	8,964,989
17	인도네시아	177,123,304	24,333,882
18	잠비아	182,166,338	8,668,685
19	모잠비크	178,096,420	1,994,016
20	라이베리아	138,861,346	26,565,363

44) 의무지원프로그램기금(Obligated Program Funds. http://www.usaid.gov/policy/budget/money/).

| 표 3-7 | 미국의 대외지원 프로그램 분야 및 금액[45]

단위 : 달러

	프로그램	2009 회계연도	2010 회계연도
1	건강	5,725,787,968	185,878,710
2	보호, 원조 및 분쟁해결	2,412,860,192	1,064,231,434
3	좋은 거버넌스	936,663,619	55,394,539
4	사회 및 경제 서비스, 취약 주민 보호	767,371,364	191,925,242
5	교육	891,611,156	61,454,368
6	사회구조	718,816,106	185,113,194
7	농업	761,852,847	11,615,503
8	금융	598,613,357	31,215,423
9	성장을 위한 거시적 경제 구조	602,816,318	12,085,903
10	행정과 감독	347,922,411	108,366,510
11	갈등완화와 화해	333,827,426	80,030,461
12	정치적 경쟁과 합의 구축	349,194,983	23,968,460
13	사적 영역 경쟁	337,237,799	17,408,494
14	시민사회	277,982,662	18,152,854
15	마약 대응	260,779,754	6,369,000
16	환경	209,999,939	10,024,258
17	법의 지배와 인권	202,082,194	8,147,333
18	경제적 기회	174,702,576	9,079,147
19	재앙 대비	143,452,401	11,152,112
20	무역과 투자	128,801,678	5,456,651
21	프로그램 계획과 학습	87,649,049	18,820,307
22	안정적 운영과 안보분야 개혁	55,501,057	14,646,147
23	프로그램 지원	51,389,453	33,316
24	이주 관리	30,000,000	-
25	테러 대응	25,280,522	3,000,000

45) http://www.usaid.gov/policy/budget/money/

(3) 기후변화 대응 집중 원조

2011 회계연도에서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 지원을 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정유 산업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 많은 미국은 자국 산업발전을 위해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이긴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확실히 과거 정부와는 달리 기후변화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오바마 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증가 수치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표 3-8 | 기후변화 대응 지원 규모[46]

단위 : 천 달러

기후변화 관련 항목	2009(추정)	2010(추정)	2011(추정)
취약국가 기후변화 적응 지원	24,459	189,250	243,947
청정에너지 지원	142,500	204,500	202,524
지속가능 환경 지원(식목, 토질개선 등)	102,500	192,599	200,000
총액	269,549	586,349	646,471

자료 : U.S. Department of State,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Volume 2 Foreign Operations,* Fiscal Year 2011, p. 5

위 표에서 보듯이 2009년에 비해 2011년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는 않음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는 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위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특히 이에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는 늘리고 있다. 그러면 위 예산을 2011년 기준으로 사용처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46)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0,* pp. 180~181, Table 4.; 또는 U.S. Official Development Database 자료 참조(http://usoda.eads.usaidallnet.gov/data/standard.html).

| Ⅱ 3-9 | 2011년 기후변화 대응 지원 세부항목[47]

단위 : 천 달러

	취약국가 기후변화적응 지원	청정에너지 지원	지속가능환경 지원
개발원조	181,447	94,982	170,000
경제지원기금	56,000	52,903	20,00
유럽, 유라시아, 중앙아시아 지원	-	26,139	-
국제기구/프로그램	6,500	28,500	10,000

자료 : U.S. Department of State,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Volume 2 Foreign Operations,* Fiscal Year 2011, pp. 5~6

위 예산항목에서 보듯이 기후변화 관련 예산 중 개발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항목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자국 내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원보다는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기후변화 취약국들에 대한 지원이 주가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실제 기후변화 관련 예산의 40% 이상이 양자간 개발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기후변화 취약국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할 수 있고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지출된다. 이러한 개발협력을 미국의 외무부 산하 공적개발 주무기관인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이 담당하고 있으며, USAID는 이를 위해 2010년 5억 달러의 예산을, 그리고 2011년에는 7억 5,00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였다.[48]

4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0,* pp. 180~181, Table 4.; 또는 U.S. Official Development Database 자료 참조(http://usoda.eads.usaidallnet.gov/data/standard.html).

48) U.S.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Finance, April 2010(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140689.pdf).

(4) 미국 정부 내 주요 지원기관

미국의 정부기관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양자간 혹은 다자간 ODA에 참여하고 있다. 예컨대 국방부의 경우 군사장비, 시설, 기술적 지원과 같은 군사적 지원을 통해서, 상무부 소속 해양대기청(NOAA)의 경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협력 등을 통해서 ODA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ODA의 주요 대외창구는 국무부라 할 수 있으며, 주도적으로 ODA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부서는 미국 USAID이라 할 수 있다. USAID는 1961년 케네디 대통령 당시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을 근거로 설립되었다. USAID는 각국의 경제성장, 농업, 무역, 건강, 민주주의, 분쟁방지, 인도적 지원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외 정책의 결정 시 국무부의 지원을 받는다.

2) 미국의 소도서국 해양협력

(1) 상무부 내 NOAA의 해양협력

미국의 대표적 해양관련 업무의 주관기관인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 NOAA)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소도서국들과 협력하고 있다.

NOAA 산하에 있는 국가해양어업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은 태평양 소도서국인 파푸아뉴기니, 마이크로네시아, 마샬군도 등에 어업 장비들과 어업 정보를 지원하였으며, 팔라우, 마샬군도 등과 협력하여 바다거북 보호를 위한 연구를 후원하였다.[49]

NOAA의 산호초보존프로그램(Coral Reef Conservation Program)은 국가어업야생생물재단과 함께 미국 연안뿐만 아니라 태평양과 대서양 지역의

49) USA, *2006 Annual Report to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para. 3.

산호초 보호를 위해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0년 산호초 보존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특히 태평양과 카리브 소도서국들의 산호초 보호프로그램을 재정지원하고 있다.

| Ⅱ 3-10 | 2007년 소도서국의 산호초 보존 지원 내용[50]

단위 : 달러

국가	내용	금액
마이크로네시아	두 지역(Yap와 Chuuk)에서 산호초 보존 캠페인	100,000
바누아투	바누아투의 산호초 보존 관리 강화	25,568
팔라우	산호초 보호를 위한 바이오연료 촉진	10,000
마이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태평양 도서국의 산호초 보존	140,000
바하마	바하마 연구 재단	40,000
벨리즈	벨리즈 언론인을 위한 해양보호교육	30,750
카리브 지역 소도서국	산호초 해역의 선박 오수배출 감소	24,435
카리브 및 태평양 해양보호지역	경제적 장려금	140,000

자료 : NOAA, NOAA and National Fish and Wildlife Foundation Awards $3.5 million for Coral Reef Conservation, NOAA 2007-R440

이러한 지원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2009년에도 마이크로네시아의 산호초 보호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51]과 벨리즈의 산호초 보호를 위한 유역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52]

50) NOAA and National Fish and Wildlife Foundation Awards $3.5 million for Coral Reef Conservation, NOAA News Release 2007, NOAA 2007-R440.

51) The Community Conservation Network의 Community-Based Enforcement of Reefs in Micronesia($104,620); University of Exeter의 Research on Herbivorous Fish Catches in Micronesia($85,407) ; The Conservation Society of Pohnpei의 Community Marine Resource Mannagement in Pohnpei($61,640).

52) (http://www.noaanews.noaa.gov/stories2009/20090107_nfwfcoral.html).

(2) 국무부 및 USAID의 소도서국 해양협력

① 아시아 태평양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

미국은 마이크로네시아[53]와 역사적인 이유로 지금까지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이크로네시아는 1986년 11월 3일 미국이 시정한 유엔의 신탁통치로부터 독립하였다. 이러한 역사성으로 인해 마이크로네시아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미국 달러를 통용 화폐로 사용할 만큼 여전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1985년 마이크로네시아와 자유연합협정(Compact of Free Association)을 체결하여 1986년부터 2001년까지 총 13억 달러의 경제 원조를 하였다. 미국은 동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1985년 자유연합협정법을 제정하였다.[54] 그리고, 2003년 5월 14일 동 동 협정을 수정하여 향후 20년간 총 18억 달러를 자족적 경제건설을 위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USAID는 마이크로네시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갈수록 취약해짐에 따라 2010년 이후에는 재해구조와 재건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55]

미국은 마샬군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마샬군도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미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가 1979년 독립하였지만 마이크로네시아나 팔라우와 같이 1986년 미국과 자유연합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의해 미국은 섬의 일부를 미사일 발사시험 장소로 이용하고 마샬군도는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게 되었다. 마샬군도의 경제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데, 자유연합협정의 수정을 통해 미국은 매년 5,800만

53) 마이크로네시아는 Chuuk, Kosrae, Pohnpei, Yap의 4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총인구가 약 11만 1천 명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도서국이다.

54) Compact of Free Association Act of 1985.

55) U.S. Department of State,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Foreign Operations - Annex: Regional Perspectives*, Fiscal Year 2011(이하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Foreign Operations 2011*로 표시), p. 287.

달러를 2013년까지 지원하고, 6,300만 달러를 2023년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취약한 마샬군도를 위해 해양안전을 지원하고 있다.[56]

| 표 3-11 | 마이크로네시아 지원 내용[57]

단위 : 달러

분야	2009 회계연도 (실예산)	2010 회계연도 (추정예산)	2011 회계연도 (요구예산)
개발 원조 (인도적 지원)	0	500,000	500,000

자료 : NOAA and National Fish and Wildlife Foundation Awards $3.5 million for Coral Reef Conservation, NOAA 2007-R440

팔라우는 미국이 시정한 유엔의 신탁통치로부터 독립하였지만, 인구가 2만 명에 불과한 도서국에 불과하여 자립적 생활이 어렵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마이크로네시아와 같이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미국의 화폐를 사용한다. 미국과 팔라우는 1986년 자유연합협정을 체결하여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팔라우는 독자적 군대가 없어 미군에 국방을 의존하는데 동 협정 이후 50년간 미군이 섬에 주둔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군의 주둔 규모는 미미하며 오히려 미국의 해안경비대가 많이 상주한다.[58]

미국의 USAID는 파푸아뉴기니의 무분별한 벌목과 목재 수출로 인한 산림황폐화와 자연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USAID는 파푸아뉴기니를 비롯해 주변 6개국에 걸쳐 있는 코랄 트라이앵글(Coral Triangle)

56)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Foreign Operations 2011*, p. 285.
57) NOAA and National Fish and Wildlife Foundation Awards $3.5 million for Coral Reef Conservation, NOAA News Release 2007, NOAA 2007-R440.
58) http://en.wikipedia.org/wiki/Palau.

해역의 산호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59]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동티모르는 연안에 풍부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지만, 태평양 도서국 중 가장 빈곤하고 사회가 불안한 국가 중 하나이다. USAID는 동티모르가 장기적 관점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USAID는 2002년 이후 동티모르의 무역 능력 개선을 위해서 매년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2008년에는 지원액이 약 250만 달러에 달하였다.[60] 또한 미국은 동티모르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1년 회계연도 동안 100만 달러의 개발 원조를 시행하고 있다.[61]

| Ⅲ 3-12 | 동티모르 지원 내용[62]

단위 : 천 달러

분야	2009 회계연도 (실예산)	2010 회계연도 (추정예산)	2011 회계연도 (요구예산)
개발원조	20,200	20,200	12,635
경제지원기금	2,800	3,000	0

자료 :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Foreign Operations 2011*, p. 312

사모아는 농업과 관광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2009년 사모아 경제는 세계경제 침체와 쓰나미(tsunami)로 인해 관광수입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태평양 도서국가들 중 건전한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에 미국은 사모아의 해양 안전과 자연재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63] 하지만, 여타 태평양 도서국들과 비교해서

59) http://www.usaid.gov/locations/asia/countries/png/index.html.
60) http://tcb.eads.usaidallnet.gov/query/do.
61)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Volume 2 Foreign Operations, Fiscal Year 2011*, p. 10.
62) U.S. Department of State,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Foreign Operations - Annex: Regional Perspectives, Fiscal Year 2011*, p. 312.
63)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Foreign Operations* 2011, p. 303.

지원규모는 미미한 편이다.

② 중남미 카리브해 소도서국과의 협력

USAID는 도미니카공화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USAID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구조개선과 법의 지배 체제 구축, 공공시설 정비, 운송체제 정비, 공중 보건 개선, 교육 개선, 환경 보호, 빈부격차 해소, 사업환경 및 투자환경 개선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다.[64] USAID는 이를 위해 연간 4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 표 3-13 | 도미니카공화국 지원 내용[65]

단위 : 천 달러

분야	2009 회계연도 (실예산)	2010 회계연도 (추정예산)	2011 회계연도 (요구예산)
개발원조	24,600	24,600	42,450
경제지원기금	1,100	0	0

자료 :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Foreign Operations 2011*, p. 681

미국은 아이티와의 해양관련 협력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의 복구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66] 미국은 경제, 위생 및 보건, 안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매년 2억 달러 이상씩을 지원하고 있다.[67] 특히 2010년 1월 대지진을 겪으면서 아이티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미국은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대지진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

64) http://www.usaid.gov/locations/latin_america_caribbean/country/dominican_republic/index.html.

65) U.S. Department of State,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Foreign Operations - Annex: Regional Perspectives*, Fiscal Year 2001, p. 681.

66) 2007년 유엔 보고서(UNDP HDR 2007)에 의하면 아이티 국민의 54%가 하루 미화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실업률이 70-80%에 이르며, 국민의 46%가 식용가능한 물을 얻을 수 없고, 문맹률이 44%에 이르는 중남미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이다.

67) http://www.usaid.gov/locations/latin_america_caribbean/country/haiti/index.html

| 표 3-14 | 아이티 지원 내용[68]

단위 : 천 달러

분야	2009 회계연도 (실예산)	2010 회계연도 (추정예산)	2011 회계연도 (요구예산)
경제지원기금	134,250	160,750	146,281
식량지원	63,767	35,500	35,500

자료 :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Foreign Operations 2011*, p. 707

③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소도서국과의 협력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소도서국으로 바레인, 카보베르데, 몰디브, 모리셔스, 코모로, 세이셀이 있다. 이들 국가들은 지역적으로 매우 넓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미국도 태평양 소도서국과 카리브해 소도서국에서와 같은 전략적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다.

| 표 3-15 | 아프리카 중동 지역 국가별 지원 내용[69]

단위 : 천 달러

분야	2009 회계연도 (실예산)	2010 회계연도 (추정예산)	2011 회계연도 (요구예산)
카보베르데	674	723	1,135
코모로	184	125	125
모리셔스	178	300	150
세이셀	86	100	100
바레인	9,161	20,800	21,700
몰디브	145	1,195	500

특히 미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국가 존립위기에 처해 있는 몰디브가 기후변화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0만 달러를 2011년 회계연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

68) U.S. Department of State,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Foreign Operations - Annex: Regional Perspectives*, Fiscal Year 2001, p. 707.

69)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Foreign Operations - Annex: Regional Perspectives, Fiscal Year 2001*의 자료를 근거로 국가별 내역을 취합하였음.

3. 일본의 소도서국 해양협력 현황

1)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현황

(1) 일본 ODA 개념 및 체계

일본 외무성의 정의에 따르면 '정부개발원조'[70]는 정부나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도국의 경제개발, 복지의 촉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완화된 조건으로 공급하는 원조로, 양국 간 증여 및 기술협력을 포함한 정부의 대부(貸付), 국제기관에 대한 출자 및 거출 등의 방법이 있다.[71] 현재 일본이 공식적으로 정의하는 ODA는 '정부 또는 정부의 실시 기관에 의해서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관에 공여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의 발전 및 복지의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 실시하는 자금・기술 제공에 의한 협력'이다.[72]

일본은 1954년부터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경제적・기술적 협력을 추진하여 왔다.[73] 일본은 현재 동아시아 11개국, 서남아시아 7개국, 중앙아시아 8개국, 중동지역 17개국, 아프리카 48개국,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32개국, 오세아니아 지역 14개국, 유럽 18개국, 총 155개국을 대상으로 개발원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74]

일본은 ODA를 크게 양국간 원조와 다국간 원조로 구분하고, 양국간 ODA는 다시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 차관으로 나눈다. ODA의 주요 시행기관으로서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75]

---

70) 일본은 ODA를 정부개발원조로 부르고 있다.
71) 日本外務省(http://www.mofa.go.jp)홈페이지 ODA부문 자료 참조.
72) 日本外務省 ODA 관련 홈페이지 참조, http://www.apic.or.jp/plaza/tebiki/contents/index.html
73) 정진규,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9, p. 64.
74) 日本外務省 홈페이지 참조(http://www.mofa.go.jp/policy/oda/data/index.html/).
75) JICA의 주요업무는 1.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업무 수행(연수원 초청, 전문가 파견, 기재공여, 개발조사 등), 2. 청년해외협력대 파견사업, 3. 해외이주자 및 일본계 지원, 4. 국민참여 촉진활동, 5. 기술협력을 위한 인재양성지원, 6. 무상자금협력의 촉진에 관한 업무수행,

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을,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JBIC)은 차관을 실시하며, 이외에 17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다.[76] 그러나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 간의 분절적 원조 활동이 원조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2008년 10월 재무성 산하 유상원조 집행기관인 JBIC가 외무성 산하의 무상원조 집행기관인 JICA와 통합되면서 유·무상 원조 집행을 통합하는 혁신적인 체제 개혁을 이루었다.[77]

| Ⅲ 3-16 | 국제기관에 대한 정부개발원조 실적의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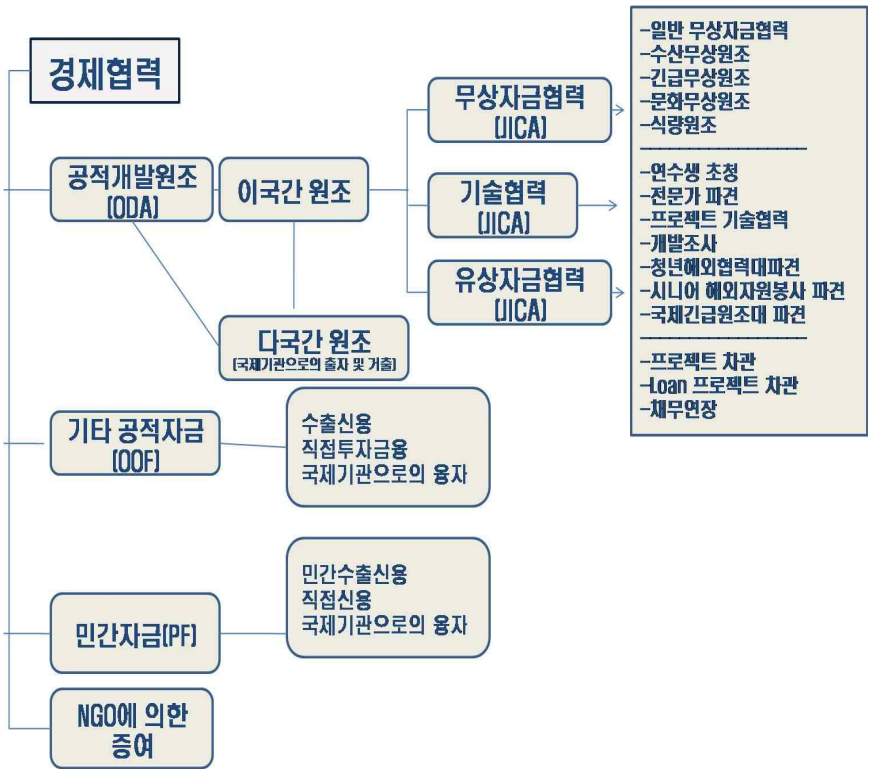
구분 \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 국제기관증여	1,598.4	1,025.2	1,047.8	1.152.2	1,523.9	1,378.4	807.1	1,221.7	897.7
(1) 국제기관	1,304.3	844.1	832.1	865.7	1,242.8	1,070.8	587.7	566.7	581.0
(2) 기타 기관	294.1	181.1	215.7	286.5	281.1	307.6	219.4	655.0	316.8
2. 국제기관 출자 등	2,180.2	1,422.8	1,585.5	1,472.3	1,541.2	1,420.5	3,070.8	685.7	1,862.0
(1) 세계은행 그룹	1,152.9	871.0	1,123.5	916.5	1.034.9	896.9	2,575.6	172.7	1,253.3
(2) 기타	1,027.3	551.8	462.0	555.8	506.3	523.6	495.2	513.0	608.7
합계	3,778.7	2,448.1	2,633.3	2,624.5	3,065.1	2,798.9	3,877.9	1,907.4	2,759.7
정부개발원조 전체에서 해당하는 비율	27.7	24.3	27.9	28.7	33.7	20.8	34.8	24.8	29.3

자료 : 日本外務省, 「ODA白書」, 2009, p. 147

7. 국제긴급 원조대 파견 및 긴급원조를 위한 기재, 물자 공여 등.

76) 이종숙, 「일본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2.

77) 김은미·김지현, 「한국 원조체계의 분절(fragmentation)이 원조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향」, 한국국제협력단, 2009, p. 51.



자료 : http://www.apic.or.jp/plaza/tebiki/contents/index.html 참조하여 재구성

| 그림 3-2 | 일본 ODA 형태 및 실시체계

일본의 ODA 체제는 1961년 3월 정부차원의 개발자금 대부기관인 해외경제협력기금(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 OECF)[78]의 설립과 기술협력 실시기관인 해외기술협력사업단(Overseas Technical Cooperation Agency : OTCA, 1962), 이주사업단(Japan Emigration Service : JEMIS, 1963)의 설립과 함께 그 시행체제가 정비되었다.[79] 1974년 OTCA와 JEMIS가 합병되어 JICA로 개편되었고, 2003년 행정개편에 의해 독립행정기구로 발족하였다.

78) OECF는 일본정부금융기관으로 개도국 정부 등에 대하여 장기, 저리 자금을 공여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i) 개도국의 정부, 정부관계기관에 대한 이국간 대부(직접 차관) 제공, ii) 해외에서 개발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본기업에 대한 융자 또는 출자이다.

79) 이종숙, 전게서, p. 23.

JICA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약 100개가 넘는 해외사무소를 통해 세계 15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 원조사업을 펼치고 있다. JICA 국제협력사업의 주요 과제는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문제 대응, 공정한 성장과 빈곤 해소, 거버넌스 개선, 인간의 안전보장 실현의 4가지이다.

| Ⅲ 3-17 | JICA의 주요 임무

양자간 원조 (JICA)	기 술 협 력: 개발도상국의 인재육성, 제도 구축을 위한 전문가파견, 필요자재공급, 개발도상국 인재의 일본 국내 교육 등
	유상자금협력: 일정 이상 소득수준을 달성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저금리, 장기 개발자금지원
	무상자금협력: 소득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반환의무가 없는 개발자금을 제공하며, 학교, 병원, 우물, 도로 등의 기반인프라 정비, 의약품, 자재 등의 조달에 사용
	국제긴급원조: 해외에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국 정부와 국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일본 정부의 허가 하에 국제긴급지원단 파견과 물자지원
	시민참가원칙: 시민참여사업, JICA기금의 기부금 운영, 개발도상국이 당면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개발교육지원. 또한 NGO, 자치단체, 대학 등 국제협력활동 지원과 연대

자료 : http://www.jica.go.jp 참조

| Ⅲ 3-18 | 2008년 일본의 정부개발원조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지원형태	실적	전년실적	전년비 신장률(%)
무상자금협력	4,780.69	3,416.10	39.9
무상자금협력 (동유럽 및 졸업국 실적 제외)	4,776.56	3,413.91	39.9
기술협력	3,057.82	2,630.01	16.3
기술협력 (동유럽 및 졸업국 실적 제외)	2,987.07	2,568.91	16.3
증여 합계	7,838.51	6,046.10	29.6
증여 합계 (동유럽 및 졸업국 실적 제외)	7,763.62	5,982.82	29.8
양국간 정부개발 원조 합계	6,938.85	5,840.04	18.8
양국간 정부개발 원조 합계 (동유럽 및 졸업국 실적 제외)	6,823.25	5,778.15	18.1
국제기관 거출·출자	2,759.75	1,907.35	44.7
국제기관 거출·출자 (EBRD 거출금 제외)	2,755.86	1,900.80	45.0
GNI 대비(%)	0.19	0.17	
GNI 대비(%) (동유럽, 졸업국 및 EBRD 실적 제외)	0.19	0.17	

자료 : 日本外務省, 「ODA白書」, 2009, p. 25 일부 발췌 재구성

| 표 3-19 | 양국간 증여(2009년 기준)

단위 : 백만 엔

원조 종류	성청	사업명	예산
경제개발원조	외무성	무상자금협력	160,840
기술협력	경찰청	아시아・태평양 약물 단속	30
	금융청	-	49
	총무성	-	615
	법무성	-	244
	외무성	JICA를 통한 기술협력 예산	155,850
		NGO 사업 보조금	33
		(독립행정법인)국제교류 기금 운영비 교부금	6,321
		기타	59,143
	총액(외무성)		221,347

자료 : 日本外務省, 「ODA白書」, 2009, pp. 120~121, 일부 발췌 재구성

2) 일본의 소도서국 협력 현황

(1) 일본의 개발도상국 협력 현황

① 양자간 원조

일본은 동아시아 11개국, 서남아시아 7개국,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8개국, 중동지역 17개국, 아프리카 48개국, 남미와 카리브해 32개국, 오세아니아 14개국, 유럽 18개국, 총 155개국에게 양자적 원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수원국 중 32개국이 소도서국연합(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 AOSIS)에 속한다. 일본은 다자간 원조에 비해 양자간 원조 규모가 평균 2~3배 정도 많으며, 특히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태평양 연안국들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 표 3-20 | 일본의 ODA의 양자간/다자간 원조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ODA 규모 (백만 달러)		13,507.96	9,846.82	9,282.96	8,879.66	8,922.46	13,146.58	11,187.07	7,690.69
ODA/GNI 비율(%)		0.28	0.23	0.23	0.2	0.19	0.28	0.25	0.17
양자간 원조	규모 (백만 달러)	9,768.14	7,457.83	6,692.29	6,334.23	5,917.19	10,406.21	7,313.09	5,832.49
	비율(%)	72	76	72	71	66	79	65	76
다자간 원조	규모 (백만 달러)	3,739.81	2,388.99	2,590.67	2,545.43	3,005.27	2,740.37	3,873.98	1,858.2
	비율(%)	28	24	28	29	34	21	35	24

주 : 순지출 기준
자료 : 외교통상부, 일본 ODA관련 통계. http://www.odakorea.go.kr

② 바베이도스 행동 프로그램과 모리셔스 전략 이행

일본은 1994년 '소도서국을 위한 바베이도스 행동 프로그램'(Barbados Program of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과 2005년 '모리셔스 전략'(Mauritius Strategy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엔 및 그 전문 기구들이 수행하는 활동들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특히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따라 일본은 2012년까지 기후변화에 취약한 많은 개도국들의 이주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약 15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80] 또한 국제생물다양성의 해를 맞아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0차 당사국회의에서 소도서국들

80)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ENV/DEV/1130), 18th ses., 2010. 5. 10.

이 생물다양성 관련 지식과 모범사례의 교환을 위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81]

또한 '아프리카 적응 프로그램'(Africa Adoption Programme)에 따라 일본은 모리셔스가 국가 개발정책, 전략, 계획에 기후변화 적응 고려사항을 통합시키고 편입시키는 것을 지원하고자 2010년에 약 3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82]

| Ⅲ 3-21 | 양국간 정부개발원조의 지역별 실적(2008)

단위 : 백만 달러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대양주
전년비 신장률(%)	-34.3	-17.9	19.4	3.8
구성비(%)	15.5	20.1	3.9	1.1
합계	1.073.68	1.395.70	269.45	72.93
정부 대부	-1,135.21	240.70	-99.13	-15.44
계	2,208.89	1,155.00	368.58	88.38
기술협력	866.44	260.70	182.69	45.65
국제기관을 통한 증여	79.71	474.11	8.91	0.82
무상자금협력	1,342.45	894.30	185.89	47.72

자료 : 日本外務省, 「ODA白書」, 2009, p. 68 일부 발췌 재구성

81)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18th ses. "Five-Year Review of the Mauritius Strategy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MSI+5)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CSD18/2010/BP9, 2010. 5. 3~14, p. 6.

82) *Mauritius Strategy for Implementation National Assessment Report*, 2010, p. 21.

| Ⅲ 3-22 | 일본의 소도서국에 대한 원조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국가명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	계	대부실행액	회수액	계	합계
동티모르	21.20	5.24	26.45	-	-	-	26.45
몰디브	6.60	1.26	7.86	1.46	-	1.46	9.32
카보베르데	3.66	1.64	5.29	-	-	-	5.29
코모로	-	0.03	0.03	-	-	-	0.03
기니비사우	5.07	0.76	5.83	-	-	-	5.83
모리셔스	0.08	0.17	0.25	3.13	3.02	0.11	0.36
상투메프린시페	7.15	0.07	7.22	-	-	-	7.22
세이셸	0.36	1.26	1.62	-	-	-	1.62
아이티	11.36	0.35	11.72	-	-	-	11.72
가이아나	7.33	0.42	7.75	-	-	-	7.75
수리남	3.86	0.06	3.93	-	-	-	3.93
세인트 루시아	0.10	1.38	1.47	-	-	-	1.47
벨리즈	0.10	1.37	1.47	-	-	-	1.47
도미니카공화국	2.54	11.07	13.62	-	12.02	-12.02	1,59
도미니카연방	0.38	0.82	1.20	-	-	-	1.20
쿠바	2.25	1.76	4.01	-	-	-	4.01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8.77	0.70	9.47	-	-	-	9.47
안티구아바부다	-	0.63	0.63	-	-	-	0.63
바베이도스	-	0.09	0.09	-	-	-	0.09
트리니타드토바고	-	0.02	0.02	-	-	-	0.02
자메이카	0.45	2.67	3.12	16.87	23.73	-6.86	-3.74
세인트킷츠네비스연방	-	0.02	0.02	-	-	-	0.02

주 : 순지출 기준

자료 : 日本外務省, 「ODA白書」, 2009, pp. 71~87 일부 발췌 재구성



자료 : 日本外務省, 「ODA白書」, 2009, p. 29

| 그림 3-3 | 일본 정부개발원조 실적의 GNI 대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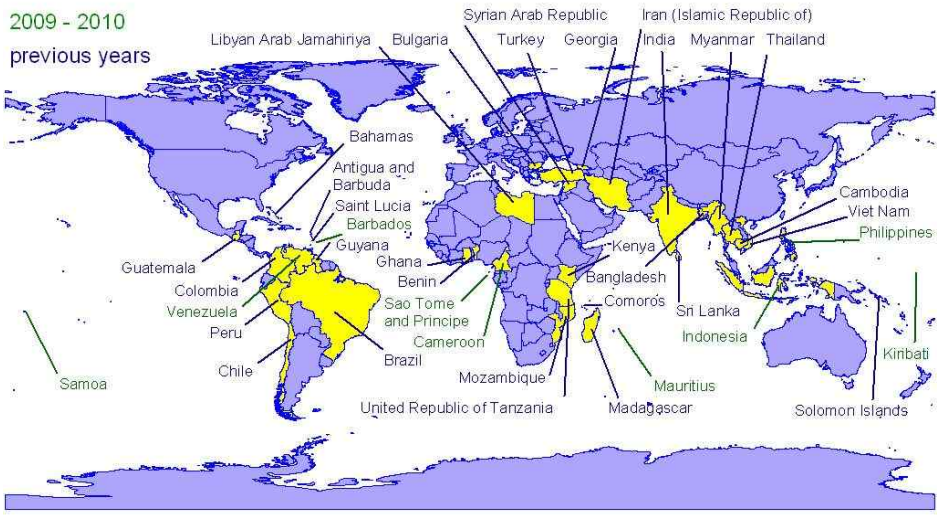
③ 일본재단 지원 프로그램

가. 유엔-일본재단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

일본재단(Nippon Foundation)은 2004년부터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협약 이행을 위한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유엔-일본재단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United Nations-Nippon Foundation Fellowship Programme)을 시행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정부 관료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연구기관에서의 교육과 3개월간의 유엔 해양 및 해양법 사무국(DOALOS)에서의 근무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 및 관련 문건들의 이행 및 집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83] 일본재

83) 일본재단 홈페이지 "Maritime Scholarship & Fellowship/The Nippon Foundation" 참조 (http://www.nippon-foundation.or.jp/eng/maritime/app/index.html/).

단은 이 프로그램에 매년 총 63만 5,579달러를 지원하며, 2004년 말 이래로 총 43개 개도국의 60명이 수혜를 받았다.



자료 : DOALOS 홈페이지(http://www.un.org/Depts/los/nippon/unnff_programme_home/fellows_pages/imagemap.html)

| 그림 3-4 | 유엔-일본재단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 수원국

나. 일본재단-국제해양법재판소 인턴십 프로그램

일본재단은 2007년 7월부터 개발도상국의 젊은 정부 관료들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ITLOS)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1년에 총 5명에게 지원되며, 9개월 동안 ITLOS에서 근무하면서 국제해양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사례연구와 협상 훈련 등을 하게 된다.[84] 참가자들은 일본재단으로부터 항공료, 숙박비, 기타 수당 등을 모두 지원받는다. 일본재단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총 20만 유로의 기금을 마련해 두고 있다.[85]

84) 일본재단 홈페이지 참고(http://www.nippon-foundation.or.jp/eng/current/20080526ITLOS.html).
85) 일본재단 홈페이지 "Maritime Scholarship & Fellowship/The Nippon Foundation" 참조 (http://www.nippon-foundation.or.jp/eng/current/20080526ITLOS.html).

④ 기후변화기금

일본은 2007년 'Cool Earth Partnership'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100억 달러 상당의 기금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중 20억 달러는 무상원조 및 기술지원의 형태로 지원되며, 나머지 80억 달러는 차관의 형태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프로젝트, 민간부문의 참여,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등에 지원된다.

(2) 일본의 소도서국 해양협력 현황

① 일본의 소도서국 협력 일반 현황

일본은 유엔 및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외에도 AOSIS 48개국 중 32개국에게 개발 원조를 해왔다. 일본은 아래 <표 3-23>에서 볼 수 있듯이 AOSIS 국가들에게 양자적 차원에서의 식량원조, 인간 안보(human security), 지하수 개발 및 물 공급, 소규모 어업 관리 및 훈련시설 개선, 어업센터 건설, 악기 공급과 체육시설 공급, 인력양성센터 설립, 기본관리서비스 개선, 면역강화, 수자원위원회 역량강화, 전통적 어업개발, 수산물시장 리모델링, 기초의료시설 건설, 지속가능한 어족자원의 이용 증진, 제약서비스센터 건설, 대학 정보통신센터 건설, 기상훈련, 태평양도서 응용지구과학위원회(Pacific Islands Applied Geoscience Commission : SOPAC) 지역에서의 심해자원 협동연구, 전기공급 개선, 항구 재건, 섬 연안어업 개발, 어업관련 도로 개선, 중학교 설립, 병원 개선, 국제공항 개선, 산호초 센터 강화, 고체폐기물 개선, 국내 다랑어어업 부흥, 교량재건 등 다양한 원조를 진행해 왔다.[86)]

2008년을 기준으로 아프리카 지역을 살펴보면, 카보베르데에 식량지원(3억 7,000만 엔)과 산티아고섬에 안전한 물 공급을 목적으로 한 「산티아고

86) 日本外務省 홈페이지 자료 참고(http://www.mofa.go.jp/policy/oda/data/index.html/).

섬 급수계획」(8억 2,900만 엔)을 실시하였다. 2007년에는 신데로 어항시설 확장계획에 3억 600만 엔의 지원을 하였다.[87] 코모로에는 식량원조를 비롯한 경제구조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통신・방송 분야에서 12명의 연수를 실시하였다. 2008년도의 무상자금협력은 총 8억 2백만 엔이다.[88] 모리셔스에는 인간 안전보장을 위한 무상자금협력을 진행 중이며, 2008년도 기준 200만 엔이다.[89] 상투메프린시페 역시 식량원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무상자금협력금액은 4억 7,000만 엔이다. 또한, 학교의 보수 및 유치원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90] 세이셸은 마에섬의 영세어업 시설정비를 위한 무상자금협력을 실시하였으며, 금액은 10억 8,900만 엔이다.[91]

| Ⅲ 3-23 | 일본의 소도서국 개발원조 현황-아프리카

2007년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분류		국가명	총지원액	협력형태
아프리카	1	카보베르데	110.25	식량원조, 인간안보 프로젝트, 지하수 개발 및 농촌 물공급 프로젝트
	2	코모로	45.81	-
	3	기니비사우	75.07	식량원조, 인간안보 프로젝트
	4	모리셔스	109.31	소규모 어업을 위한 관리 및 훈련시설 개선 및 수리, 인간안보 프로젝트
	5	상투메프린시페	38.74	식량원조, 인간안보 프로젝트
	6	세이셸	38.17	-

자료 : 日本外務省 자료 정리(http://www.mofa.go.jp/policy/oda/data/index.html/), 2010. 6. 16. 방문

87) 日本外務省, 「ODA白書」, 2009, pp. 440~442.
88) 日本外務省, *Op. cit.*, pp. 488~489.
89) 日本外務省, *Op. cit.*, pp. 677~679.
90) 日本外務省, *Op. cit.*, pp. 506~507.
91) 日本外務省, *Op. cit.*, pp. 552~553.

남아시아의 몰디브를 살펴보면, 2008년도 기준 무상자금협력은 대부분이 식량지원을 위한 것으로 3억 8,000만 엔이며, 기술협력은 1억 4,600만 엔이다.[92] 2007년도에는 '하수처리 및 지하수관리 능력향상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그 연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JOCV[93]파견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쓰나미 피해에 대한 무상지원을 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역시 지방 도서의 쓰나미 피해에 대한 긴급 복구와 부흥에 자금을 협력하였다.[94]

동아시아의 동티모르에는 항만 개·보수 작업 등의 인프라 정비를 실시하는 무상자금협력을 하고 있으며, 인간 안전보장 무상자금협력으로 정수공급시스템 건설계획과 임산부 지원 등에 일본 NGO와 연대하여 무상으로 교육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동티모르 발전에 있어서 인재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중점사업으로 원조조정계획 조사원 파견, 항만시설 유지관리, 환경영향평가 등과 농업 분야(농업정책, 관개) 등에 고문을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다.[95]

대양주의 키리바시의 해양관련 협력부분을 살펴보면, 2004년 베시오항 개·보수 작업[96]에 3억 1,300만 엔, 크리스마스섬 연안어업진흥계획에 7억 3,900만 엔을 지원하였다. 2006년에는 남타라와 수산업 관련도로 정비계획에는 12억 8,500만 엔을 지원하였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남태평양 연안국해역 해양자원 조사에 기술협력을 지원하였다. 또한, 북타라와섬 수산센터정비계획을 지원하였다.[97] 쿡아일랜드는 소득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연수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감염증 등에 대한 특별기자재 공여 및 교육 등의 분야에 연수를 실시하였다.[98] 사모아에는 '도서 간 페리

92) JICA경비실적 기준.
93) 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
94) 日本外務省, *Op. cit.*, pp. 190~192.
95) 日本外務省, *Op. cit.*, pp. 60~63.
96) 2차년도 작업으로 2005년에는 5억 2,100만 엔을 지원하였다.
97) 日本外務省, *Op. cit.*, pp. 961~963.
98) 日本外務省, *Op. cit.*, pp. 966~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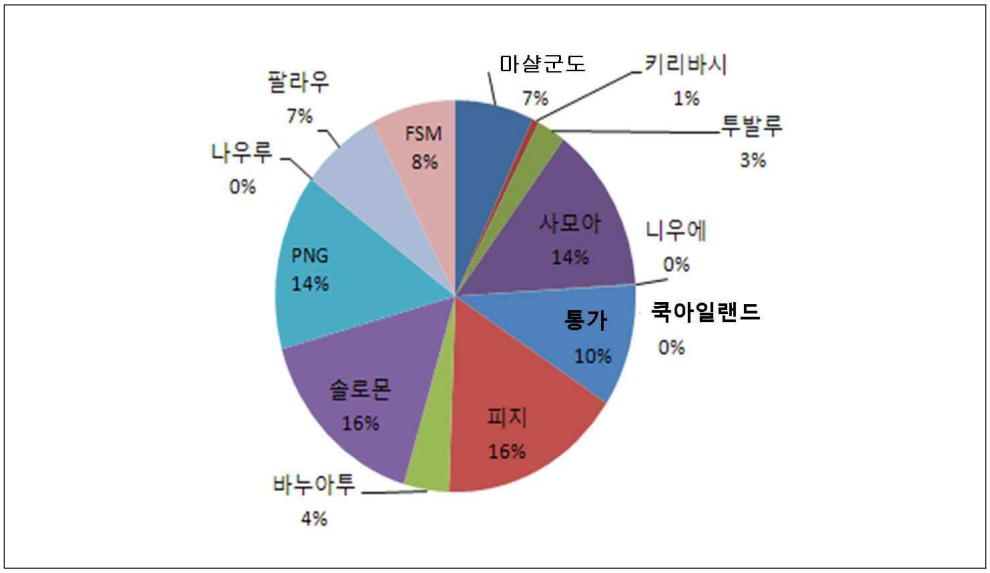
건조 계획' 및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5건의 인간안보 무상자금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에는 아피아 어항 개선계획에 7억 700만 엔을 지원하였으며, 태평양 폐기물 관리 프로젝트와 국립공원 자연보호구의 관리능력 향상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99][100] 투발루에는 '해면상승에 대한 투발루의 생체공학적 유지'라는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한편, 교육, 보건의료 등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제4회 PALM에서 정상선언으로 채택된 '더욱 크게 번영할 태평양지역을 위한, 호주, 일본 및 뉴질랜드에 의한 개발원조국 간 협력 촉진 관련 공동성명'에 따라 개별 경제협력안건에 대한 협의 및 조정도 이루어졌다. 투발루, 바누아투, PNG, 마이크로네시아 등에는 항만, 부두, 해안 간선도로 등의 개・보수 작업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통가, 팔라우에는 도서 간 연락선의 개・보수 작업에 대한 자금협력이 행하여졌다. 피지에는 정보, 통신, 미디어 등에 대한 기자재와 기술센터 정비 작업 등이 이루어졌으며, 양식정책 입안 지원 프로젝트, 기상예보 능력강화 네트워크 구축, 지진 관측망 운용 프로젝트, 폐기물 저감 및 자원화 촉진 프로젝트 등의 기술 협력이 이루어졌다.[101]

또한 일본은 1997년부터 태평양도서국과 정상회담을 3년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2009년 5월 제5차 회의 때는 '태평양 환경공동체' 창설에 합의하고, 태평양 도서국에 태양광 발전 및 해수 담수화시설 설치비용, 경제개발 비용을 포함해 3년 동안 총 500억 엔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102]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는 대부분이 인간안보에 대한 무상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간혹 문화시설 개축에 대한 기자재 지원이나 방송・통신시설 개축에 대한 기술지원을 협력하고 있다. 가이아나에는 급수시설

99) 태평양폐기물관리 프로젝트 2006.6-2010.5; 국립공원 자연보호구의 관리능력 향상 지원 프로젝트 2007.3-2010.3.
100) 日本外務省, *Op. cit.*, pp. 972~974.
101) 日本外務省, *Op. cit.*, pp .985~1043.
102) 日本外務省 홈페이지 자료 참고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palm/palm5/index.html/

지원과 재해관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아이티에는 식량지원과 예방접종에 대한 무상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건 중에는 의료시설 확충계획과 수해 완화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과 수리남에는 관개농업기술 개선계획 등 농업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자료 : 2009년 JICA 내부자료

| 그림 3-5 | 일본의 남태평양 지원 현황(2009년)

| 표 3-24 | 일본의 소도서국 개발원조 현황

2007년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분류		국가명	총지원액	협력형태
아시아/태평양	1	쿡아일랜드	8.63	-
	2	피지	328.11	제약서비스센터 건설 프로젝트, 인간안보 프로젝트, 남태평양대학 정보통신센터 건설 프로젝트, 기상훈련, SOPAC 지역에서의 심해자원 협동연구
	3	키리바시	169.66	인간안보 프로젝트, 전기공급 개선 프로젝트, 베티오 항구 재건 프로젝트, 크리티마티 섬 연안어업 개발 프로젝트, 어업 관련 도로 개선, SOPAC 지역에서의 심해자원 협동연구
	4	몰디브	246.08	인간안보 프로젝트, 식량원조, 여자 중학교 건설 프로젝트, 쓰나미 재난 원조
	5	마샬군도	104.03	병원 개선 프로젝트, 인간안보 프로젝트
	6	마이크로네시아	181.31	인간안보 프로젝트, 도로개선 프로젝트, 항구 프로젝트, 국제공항 프로젝트, 어업훈련 프로젝트, SOPAC 지역에서의 심해자원 협동연구
	7	나우루	12.62	인간안보 프로젝트
	8	니우에	1.18	-
	9	팔라우	165.95	인간안보 프로젝트, 섬간 접근로 개선 프로젝트, 부두개선 프로젝트, 산호초 센터강화 프로젝트, 고체 폐기물개선 프로젝트
	10	파푸아뉴기니	687.85	국가방송사 설비 개선 프로젝트, 교육개선 프로젝트, 인간안보 프로젝트
	11	사모아	266.40	아피아 항구 2차 개발 프로젝트, 인간안보 프로젝트, 과학기술학교 개선 및 확장 프로젝트, 아피아 어업 부두 및 관련 시설 수리 및 확장 프로젝트, SOPAC 지역에서의 심해자원 협동연구
	12	솔로몬군도	219.16	인간안보 프로젝트, 국제공항 복구 프로젝트, 국내 다랑어어업 부흥 프로젝트, 교량재건 프로젝트, 정박지 통제 강화 프로젝트

자료 : 日本外務省 자료 정리(http://www.mofa.go.jp/policy/oda/data/index.html/)

| Ⅲ 3-25 | 일본의 소도서국 개발원조 현황-중남미

2007년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분류		국가명	총지원액	협력형태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1	안티구아 바부다	36.54	어업센터 건설 프로젝트
	2	바베이도스	6.43	-
	3	벨리즈	11.42	인간안보 프로젝트
	4	쿠바	46.03	인간안보 프로젝트, 쿠바 국립 오케스트라 악기 공급, 문화 프로젝트 등
	5	도미니카연방	64.57	어업양륙시설 프로젝트, 인간안보 프로젝트
	6	도미니카공화국	502.50	지하수 개발, 체육시설공급, 인간안보 프로젝트, 재난긴급원조, 텔레비전・라디오 개선 프로젝트, 통상 및 투자를 위한 인력양성센터 건설
	7	가이아나	87.20	병원재건축, 인간안보 프로젝트, 물공급 프로젝트, 혜택을 못 받는 농업자 지원, 식량원조
	8	아이티	179.91	기본관리 서비스개선 프로젝트, 인간안보 프로젝트, 면역강화 프로젝트
	9	자메이카	141.31	인간안보 프로젝트, 수자원위원회 역량강화 프로젝트
	10	세인트 킷츠 네비스	16.43	인간안보 프로젝트, 전통적 어업개발 프로젝트
	11	세인트 루시아	64.94	인간안보 프로젝트
	12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48.69	킹스톤 수산물시장 리모델링, 인간안보 프로젝트, 오이와 어업센터 건설 프로젝트
	13	수리남	39.86	기초의료시설 프로젝트, 인간안보 프로젝트, 소규모 어업센터 건설
	14	트리니다드토바고	30.77	인간안보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어업자원 이용 증진 프로젝트

자료 : 日本外務省 자료 정리(http://www.mofa.go.jp/policy/oda/data/index.html/)

② 일본의 소도서국 해양협력 현황

일본외무성이 정리한 국가별 협력 실태에서 AOSIS 국가들에서의 일본의 해양협력 현황을 정리해 보면, 아프리카 1개국, 남미・카리브해 7개국, 아시아・태평양 7개국으로 총 15개국 정도이다. 앞서 살펴본 소도서국 일반 협력 현황의 수치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높은 수치이다. 또한 일본의 해외원조는 다른 국가에 비해 일본 경제발전에 필요한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태평양 소도서국들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일본의 소도서국 해양 협력은 대부분이 어업과 관련한 기반시설 확충 및 훈련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는 모리셔스에서의 2003년 소규모 어업을 위한 관리 및 훈련 시설 개선 및 수리 프로젝트, 안티구아바부다에서의 2003~2004년 수산센터 건설 프로젝트에 7억 5,300만 엔, 도미니카공화국에서의 2003년 마리곳 어업양륙시설 프로젝트, 세인트킷츠네비스에서의 2005년 전통적 어업개발 프로젝트로 영세어업 진흥을 위한 자금 6억 1,700만 엔을 지원하였고,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에서의 2006~2007년 2년에 걸쳐 오이와 어업 센터 건설 프로젝트에 총 14억 3,000만 엔의 무상자금을 지원하였고,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의 2001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지속가능한 해양어업자원 이용 증진을 위한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쿠바에 해수어 양식과 기후변화대책을 위한 지하수 개발・관리능력 향상 프로젝트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2008년 도미니카연방에 포츠머스 수산센터정비계획에 7억 5,300만 엔의 무상자금지원을 한 바 있다. 2008년 세인트루시아에 안스라레이 수산시설정비를 위한 5억 3,600만 엔의 무상자금지원, 2006년 수리남에 파라마리보 소규모 어업센터정비를 위한 자금 8억 1,700만 엔을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심해저 자원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기술협력 및 훈련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 예는 다음과 같다. 2004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피지,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사모아에서의 SOPAC 연안지역 심해자원에 관한 협력연구 프로젝트, 팔라우에서의 2002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국제산호초센터 강화 프로젝트, 솔로몬군도에서의 2004년 국내 다랑어어업 부흥 프로젝트 등이다.

또한, 팔라우의 산호초 모니터링 능력 향상 프로젝트를 2009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3년간 시행하기 위하여 사전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본 사전 평가에서는 협력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자연환경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개발과의 조화를 최중점 과제로 하고 있다. 최근 소도서국 프로젝트 중 수산 부분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술협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남태평양 소도서국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원조를 통하여 일본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고 알림으로써 국제기구 등에서 지지표를 얻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 표 3-26 | 소도서국의 해양협력 현황

분류	국가명	협력 내용	기 간
1	모리셔스	소규모 어업을 위한 관리 및 훈련시설 개선 및 수리	2003
2	안티구아바부다	어업센터 건설 프로젝트	2003~2004
3	도미니카연방	어업양륙시설 프로젝트	2003
4	세인트킷츠네비스	전통적 어업개발 프로젝트	2005
5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오이와 어업센터 건설 프로젝트	2006~2007
6	트리니다드토바고	지속가능한 어업자원 이용 증진 프로젝트	2001~2006
7	피지	SOPAC 지역 심해자원 협동연구	2004. 4~2006. 3
8	키리바시	베티오 항구 재건 프로젝트, 크리티마티 섬 연안어업 개발 프로젝트, 어업관련 도로 개선, SOPAC 지역 심해자원 협동연구	2004. 4~2006. 3
9	마이크로네시아	항구 프로젝트, 국제공항 프로젝트, 어업훈련 프로젝트, SOPAC 지역 심해자원 협동연구	2004. 4~2006. 3
10	팔라우	섬간 접근로 개선 프로젝트, 부두개선 프로젝트, 산호초 센터강화 프로젝트	2002. 10~2006. 9
11	사모아	아피아 어업 부두 및 관련 시설 수리 및 확장 프로젝트, SOPAC 심해자원 협동연구	2004. 4~2006. 3
12	솔로몬군도	국내 다랑어어업 부흥 프로젝트	2004
13	동티모르	라우템현 북부 해안어업활동 부흥 지원	2007. 8~2010. 8
14	세인트루시아	안스라레이 양륙시설 개발	2006. 9~2007. 3
15	쿠바	해수어류 양식	2008. 5~2013. 5

4. 중국의 소도서국 해양협력 현황

1) 중국의 대외협력[103] 개요 및 현황

(1) 개요

중국의 경제는 개혁개방과 함께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G2로 논의되고 있고, 향후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결코 실현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부터 중국의 대외협력은 시작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대외협력은 남남협력의 차원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원조(aid)'보다는 '협력(cooperation)'에 가까우며, 중국 또한 '협력'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104]

1979년 중국의 대외개방 이후에 실시된 대외협력은 과거 남남협력을 통해 고수되어 온 내정불간섭의 원칙, 대외협력을 통해 자국의 경제발전 및 수원국 개발의 동시 추구 등의 특징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대외협력을 통한 자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목표 추구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즉, 대외협력은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다.[105]

---

103) 중국은 아직 OECD-DAC 회원국이 아니므로 ODA보다는 대외협력 또는 대외원조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함.
104) 국회도서관, 「중국의 소프트파워 한눈에 보기」, 2010, pp. 42~54.
105) 상게서.

(2) 현황

① 대외협력 규모

중국의 대외협력 규모에 대한 통계는 명확하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 중국은 개별 국가에 대한 정확한 원조규모를 밝히게 되면, 중국의 차별적인 지원에 따라 수원국들과 중국 정부 간에 불편한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국내적인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외협력은 국내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나아가 중국의 대외협력은 상무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 및 기관 그리고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106)]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160여 개국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조금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0.1%, 대략 재정지출의 0.22% 수준으로, 2006년 275억 달러, 2007년 251억 달러에 달했다.

| 표 3-27 | 중국의 대외협력 규모, 2003-2007

단위 : 백만 달러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합계
2003	838	1	644	1,483
2004	2,292	7,000	1,193	10,485
2005	2,953	2,931	4,221	10,105
2006	9,088	16,425	2,004	27,517
2007	17,962	401	6,735	25,098
합계	33,133	26,758	14,797	74,688

자료 : 국회도서관, 전게서, p. 46 재인용

106) Carol Lancaster, *The Chinese Aid System,*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2007, pp. 1~3.

| 표 3-28 | 중국 원조의 유형 및 지역, 2002-2007

단위 : 백만 달러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합계
천연자원 생산	9,432	18,585	4,788	32,805
인프라 및 공공사업	17,865	7,535	6,438	31,838
불특정 사업	5,024	608	2,276	7,908
인도주의	802	32	159	993
합계	33,123	26,760	13,661	73,544

자료 : 미국의회조사처(CRC), 「중국의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에서의 대외협력 활동」, 2009

② 대외협력 체계

중국의 대외협력은 정해진 예산에 따라 집행되는 방식이 아니라 상무부나 관련 부처 그리고 국영기업의 요구에 따라 책정되고 집행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외협력은 상무부가 정책 전반에 대한 법률 입안, 실시, 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 정부는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는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원조기구의 창설을 포함하여, 원조기구를 개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7]

중국의 원조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자료는 없지만 중국 대외협력체계의 특징은 국유기업 중심으로 수행되며, 양국간 지원의 규모가 다국간 지원보다 크고, 무상원조보다 유상원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관측이다.[108]

107) *Ibid.,* p. 53.
108) *Ibid.,* pp. 51~52.

2) 중국의 소도서국 협력 현황

(1) 개요

중국의 소도서국 협력은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에 따라 중국과 대만 사이 국교수교 경쟁과정에서 소도서국과 협력을 추구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내부에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과 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시각 때문에 대외협력 규모를 축소하면서 지원국가의 수는 유지하는 수단으로 태평양지역 소도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확대하였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있어서도 에너지자원의 확보와 관련하여 대외협력이 증가하고 있다. 카리브해 지역에 있어서는 공산국가인 쿠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뚜렷한 협력관계가 없었다. 공산화 이전의 쿠바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 카리브해 소도서국들은 대만과 국교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이 지역 국가들의 대중국 외교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대중국 무역의 증가로 점차 중국과 국교를 맺는 것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과도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지역 국가들의 욕구와 맞물리면서 향후 중국의 카리브해 소도서국과의 협력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과 맞물려서 아프리카 소도서국가의 관계도 역시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중국은 현재 모리셔스를 중심으로 4개 아프리카 소도서국에 중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중국의 무역, 자원외교 강화, 해양력 확대와 맞물려서 이들과의 관계도 확대되고 있다.

2010년 말에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기업의 현지진출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였다.[109] 투자액수 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

109) 중국 상무부 境外投资企业(机构)名录. (http://wszw.hzs.mofcom.gov.cn/fecp/fem/corp/fem_cert_stat_view_list.jsp).

지에 진출한 중국 기업의 목적을 통해 진출분야 및 그 이면에서 진행된 중국의 대외원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2) 지역별 소도서국 협력 현황[110]

소도서국들과 중국의 협력관계는 대만과의 외교경쟁 및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자원 및 시장 확보 정책에 맞추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중국의 대외협력 강화에 맞추어서 소도서국 협력도 급속하게 강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① 태평양지역

태평양지역 소도서국들은 대부분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 PIF)에 속한다. PIF에 소속된 국가들은 호주, 뉴질랜드, 나우루, 니우에,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군도, 쿡아일랜드,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111] 등 16개 회원국,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2개 준회원국, 토켈라우, 동티모르, 왈리스앤푸투나 등 3개국 및 유엔, 영연방, 아시아개발은행(ADB),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등 4개 기구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대화상대국에는 캐나다, 중국, EU, 프랑스, 인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영국,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다.[112]

태평양지역에서 중국과 대만은 외교경쟁을 벌여 왔다. 2009년 현재 8개국은 중국을, 6개국은 대만을 인정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중국과 대만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개발 원조를 제공받았다.

---

110) 중국 외교부 국가정보(http://www.fmprc.gov.cn/eng/gjhdq/); 외교통상부 국가별 정보(http://countryinfo.mofat.go.kr/index.html); 미국 국무성 국가별 background notes (http://www.state.gov/r/pa/ei/bgn/index.htm).

111) 현재 피지는 2006년 군사쿠데타 이후로 회원자격이 정지된 상태이다.

112) (http://www.forumsec.org.fj).

2003년 중국은 PIF와의 외교관계 강화를 발표했으며, PIF에 제공하는 경제원조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원자바오 총리는 태평양 도서국가와 경제협력 강화, 저개발 태평양국가 수출품에 대한 관세 철폐, 이들 국가의 부채 탕감, 말라리아 약품 공급, 2,000명의 공무원 및 기술직에 대한 교육 제공 등을 발표하였다. 2006년 통가와 솔로몬군도에서 반중국 폭동이 있었고, 이는 피지나 바누아투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중국계 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수도 있다.

대만은 2007년 100만 달러를 태평양 도서국가에 제공했고, 2008년에는 대만이 파푸아뉴기니의 지지를 받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것이 폭로되기도 했다. 2009년에는 피지, 파푸아뉴기니 등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포함해서 태평양 도서국가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5만 달러 이상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30만 달러 이상을 제공했다. 대만은 PIF에 대화상대국으로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태평양지역에서 중국과 대만과의 치열한 외교전쟁으로 나우루, 키리바시, 바누아투 등 대만 지지에서 중국 지지로, 또는 중국 지지에서 대만 지지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소도서국들은 외교적 승인의 선택을 통해서 중국 및 대만으로부터 대외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소도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나우루

나우루는 금품외교(dollar diplomacy)의 전형을 보여 준다. 2002년에 1980년 수교한 대만과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을 승인하였다. 이에 대만은 1,250만 달러의 차관을 상환받기 위해 국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중국은 2003년 10월 나우루에 350만 달러의 무이자 차관을 제공하는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05년 5월 루드빅 스코티(Ludwig Scotty) 대

통령은 대만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다. 2005년 6월, 대만은 투발루 및 키리바시 근로자에 대한 나우루의 체불임금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해 주었고,[113] 2006년 8월에는 나우루의 국제항공운송 재개에 필요한 1,000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제공하였다.

2010년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중국 기업 및 기구의 대외투자 현황에서도 나우루에 대한 현지투자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마샬군도

마샬군도는 1990년 중국과 수교하였으나, 1998년 1월 대만과 수교하면서 중국과 국교를 단절하였다. 2008년 리토카 토메잉(Litokwa Tomeing)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중국과의 재수교설이 나오자, 대만 부총통이 즉각 마샬군도를 방문하였고, 대만과의 국교를 유지하고 있다.[114] 토메잉 대통령이 2009년 4월 의회에서 불신임을 받아 퇴임하고, 추장의 한 사람이자 의회 대변인이었던 줄레랑 제드카이아(Julelang Zedkaia)가 2009년 11월 2일 대통령직을 승계하였다.[115]

중국과 외교관계가 없지만 중국은 마샬군도에 2008년 수산물 어획 및 가공 수출입 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하였고, 2009년에는 해양어획 및 관련 제품의 수출입무역 회사를, 그리고 2010년에는 광물자원 투자개발 회사와 무역・외식업・숙박업을 담당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다(<부록 표 18-1> 참조).[116]

다. 마이크로네시아

1986년 독립한 마이크로네시아는 중국과 1989년 9월 11일 수교하였다.

---

113) “ROC restores ties with Nauru after 3 years”, *The China Post*, 2005. 5. 15(http://www.chinapost.com.tw/archive/detail.asp?cat=1&id=62437).

114) 마샬군도 대통령사무실(http://www.rmigovernment.org/news_detail.jsp?docid=225).

115) “Marshall Islands: Year In Review 2009”, *Britannica Book of the Year, 2010. Encyclopædia Britannica Online*. Encyclopædia Britannica, 2011(http://www.britannica.com/EBchecked/topic/1588159/Marshall-Islands-Year-In-Review-2009).

116) 중국 상무부, *Op. cit.*

중국은 1990년에 대사관을 설치하였고, 마이크로네시아는 2007년 베이징에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2009년 중국과의 무역 총액은 859만 8,000달러로 전년대비 102.2% 증가하였고, 특히 중국으로의 수입액은 1만 달러 내외에서 396만 4,000달러로 급증하였다.[117]

마이크로네시아는 705㎢의 국토면적에 주요 다랑어 어장을 포함한 298㎢의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지고 있는 수산자원 대국이다.

중국과 마이크로네시아 간 경제기술협력협정은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즉 중국이 마이크로네시아에 양자협력 사업마다 별도의 협정을 통해 지원했는데, 2009년 12월 협정은 축(Chuuk) 주의 고장 난 선박 수리비 1,450만 위안(210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2010년 6월 17일 경제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은 2,000만 위안을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중국은 7월에 100만 달러를 마이크로네시아 신탁기금에 전달하였다.[118]

중국은 2008년부터 현지에 어업회사를 설립하여 수산 분야에서 15년간 다랑어 어업권을 획득하였으며, 수산물 어획 및 수산물 가공 외에도 기계설비, 부품, 원자재의 수출입을 담당하고 있다(부록 <표 18-2> 참조).[119]

라. 바누아투

중국과 바누아투는 1982년 3월 26일 수교하였다. 중국은 1989년 대사관을 설치하고, 1991년부터 대사가 상주하고 있다. 2009년 양국 총 무역액은 4,881만 달러(39% 증가)로 수출 4,744만 달러(36.9% 증가), 수입 137만 달러(216% 증가)이다. 주요 수입품은 상어지느러미, 해삼, 목재 등이다.[120]

바누아투는 중국을 인정하지만 2004년 11월에 잠시 총리 Serge Vohor가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었다가 다음 달에 불신임을 받아 쫓겨남으로써 중국

117) 중국 외교부, 국가자료, 密克罗尼西亚(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dyz/1206_12/sbgx/).
118) http://www.fsmgov.org/press/pr07161a.htm.
119) 중국 상무부, *Op. cit.*
120) 중국 외교부 瓦努阿图国家概况(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dyz/1206_25/).

과 국교를 재개하였다. 2006년 바누아투는 중국과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121] 2009년 11월부터 다랑어 어획과 관련된 1개의 수산관련 중국투자 현지기업이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다(부록 <표 18-3> 참조).[122]

마. 사모아

중국은 사모아와 1975년 11월 6일 수교하여, 1976년 사모아에 대사관을 설치하였으며, 사모아는 2009년 6월 중국에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2009년 1월에는 중국 상무부 차관 푸지잉(傅自应)이 사모아를 방문하였다. 2009년 중국과 사모아의 총 무역액은 4,486만 달러(61% 증가), 수출 3,724만 달러(47.4% 증가), 수입 763만 달러(192.1% 증가)이다.[123]

사모아는 1976년 수교 이래 변함없이 중국을 인정하고 있다. 2007년 중국은 X-ray기계와 함께 의사를 파견하였으며, 2008년에는 사모아 교육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2008년 사모아는 티베트 사태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였다.[124]

중국은 사모아에 16개 기업이 진출해 있다. 2004년 10월 국제무역, 첨단산업 프로젝트 육성 및 관련 업무에 첫 기업 진출 이후로 공업원료, 국제운송, 수출입무역, 전기제품 생산판매 등으로 기업투자가 확대되었고, 2010년 하반기에는 상업관광 및 호텔업에까지 진출하고 있다(부록 <표 18-4> 참조).[125]

바. 솔로몬군도

솔로몬군도는 1983년에 대만과 수교하였고, 타이베이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 2006년 선거와 관련하여 차이나타운에 약탈과 방화가 자행되기도 하

121) 위키피디아 중국-바누아투 관계(http://en.wikipedia.org/wiki/People%27s_Republic_of_China_%E2%80%93_Vanuatu_relations).
122) 중국 상무부, *Op. cit.*
123) 중국 외교부 국가지역정보(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dyz/1206_18/sbgx/.)
124) 위키피디아(People's Republic of China – Samoa relations. http://en.wikipedia.org/wiki/People%27s_Republic_of_China_%E2%80%93_Samoa_relations).
125) 중국 상무부, *Op. cit.*

였다. 양국의 정권이 바뀌고 양국 관계에 대한 억측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는 변함이 없다.[126] 2008년 솔로몬군도의 초중등 무상교육을 위해 2009-2010년에 1,000만 솔로몬달러 등을 제공하였다. 2010년 마잉주 대만총통은 솔로몬에서 대만의 원조금 유용이 문제가 터지자 중국과의 외교경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127]

대선과정에서 힐리 전 총리의 중국 지지 공표는 솔로몬군도에도 중국의 영향력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솔로몬 내 화교 경제인들의 향방에 따라 중국의 솔로몬 진출도 가속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사. 키리바시

1979년 7월 12일 독립한 키리바시는 1980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2003년 집권한 아노테 통(Anote Tong) 대통령 정부는 대만을 지지하고 있다.[128] 테부로로 티토(Teburoro Tito) 전 대통령은 중국의 자금 지원 문제 등과 관련하여 2003년 의회에서 불신임을 받아 물러났다. 대통령에 당선된 아노테 통은 2003년부터 중국 대신에 대만을 승인하였다. 이의 대가로 대만은 2008년 퍼시픽 항공(Air Pacific)의 밀린 청구대금 300만 달러를 지불해 줌으로써 수도 타라와(Tarawa)에서 키리시마시(Kiritimati, 크리스마스) 섬까지 항공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129]

---

126) 위키피디아 Sino-Pacific Relations(http://en.wikipedia.org/wiki/Sino-Pacific_relations).; Phil Mercer, “Chinese rivals grapple for Pacific”, *BBC News*, 2007. 4. 4(http://news.bbc.co.uk/2/hi/asia-pacific/6525747.stm).; “PM hails ties with Taiwan”, *Solomon Star*, 2010. 2. 10(http://www.solomonstarnews.com/news/national/2743-pm-hails-ties-with-taiwan).

127) UNPO(Unrepresented Nations and Peoples Organization) News: Nations and People, “Taiwan: Beijing Relations Improve But Recognition in Limbo”, 2010년 3월 30일자. http://www.unpo.org/article/10927.

128) 중국은 1980년 6월 25일 수교하였지만, 아노테 통 정부의 대만지지에 따라 2003년 11월 29일 모든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3-11/29/content_1205144.htm).

129) 위키피디아 Sino-Pacific Relations(http://en.wikipedia.org/wiki/Sino-Pacific_relations).; Freedom in the world, *Freedom in the World - Kiribati (2004) http://www.unhcr.org/refworld/country,,FREEHOU,,KIR,45b632e02,473c549d23,0.html.*

아. 통가

중국은 통가와 1998년 11월 2일 수교하였다. 1998년 통가에 중국대사관을 설치하였고, 통가는 2005년 중국에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2009년 중국과 통가의 교역량은 805만 4,000달러, 중국 수출 799만 5,000달러, 중국 수입 5만 9,000달러이다.[130]

2001년 통가 정부는 600명의 중국계 이민자들을 추방하기도 하였지만, 같은 해 중국과 통가는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2008년 통가의 투푸(Tupou) 5세가 중국을 방문하자 중국은 50만 달러 상당의 군수품을 통가에 제공하였다. 2010년에는 통가 수도의 중심업무지구의 재건 사업, 비아니(Viani)의 농업프로젝트, 병원 건립 등 사회경제개발 분야에 소프트 론[131]과 무이자 차관을 포함하여 3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132]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까지 통가에 직접적인 기업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133]

자. 투발루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유명한 투발루는 대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만은 수도 푸나푸티(Funafuti)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대만은 중국의 관계 개선을 방지하기 위해 막대한 원조를 하고 있다.[134]

차.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는 Kutube, Gobe, Maran, Hides 등의 지역에서 90년대부터

130) 중국 외교부 국가지역정보(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dyz/1206_21/sbgx/)
131) soft loan(연화차관)은 달러 등 국제통화로 빌려주고 현지 통화로 상환받는 차관이다.
132) 위키피디아 Sino-Pacific Relations(http://en.wikipedia.org/wiki/Sino-Pacific_relations).; John Braddock, “Tonga announces the expulsion of hundreds of Chinese immigrants”, *WSWS*, 2001년 12월 18일자(http://www.wsws.org/articles/2001/dec2001/tong-d18.shtml).
133) 중국 상무부, *Op. cit.*
134) 위키피디아 Sino-Pacific Relations(http://en.wikipedia.org/wiki/Sino-Pacific_relations).

원유를 생산하고 있고, 최근 이 지역에서 LNG(약 3억 톤 추정)가 발견되어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135]

중국은 파푸아뉴기니와 1976년 10월 12일 수교하고, 1980년 대사관을 설치하였고, 파푸아뉴기니는 1988년 베이징에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2009년 중국과 파푸아뉴기니의 교역량은 89억 달러, 중국수출 5억 3,000만 달러(53.3% 증가), 중국 수입 3억 6,000만 달러(30.6% 감소)이다.[136]

1999년 빌 스케이트(Bill Skate) 총리가 대만을 인정하였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 실각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가 복원되었다.[137] 2008년 중국은 파푸아뉴기니 군대에 전통적으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제공해 오던 군사훈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138]

중국은 파푸아뉴기니에 14개 기업이 진출해 있다. 2001년 건축자재 무역 부분 진출을 시작으로 주택, 토목 등 건설 분야의 진출을 중심으로, 수출입 및 화물운송 분야, 합판 및 종이류 등 목재가공 및 개발 분야에 진출하였다. 2010년 7월에는 유한공사(塔诺投资有限公司)를 설립하여 광물자원 개발 및 물리탐사에 나서고 있다(부록 <표 18-5> 참조).[139]

카. 팔라우

팔라우는 1994년 미국과 자유연합협정(compact of free association)을 맺었으며, 대만을 인정하고 있다. 대만은 팔라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6-2007년 팔라우 국립학교에 100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2008년 팔라우 학교에 100대의 컴퓨터를 제공하였다. 팔라우는 태평양 소도서국

135) 외교통상부 국가지역정보 파푸아뉴기니(http://www.mofat.go.kr/world/as/intro/20070822/1_12293.jsp).
136) 중국 외교부 국가지역정보 巴布亚新几内亚(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dyz/1206_47/).
137) Bruce Jacobs, “Spending money where it matters”, Taipei Times, 2008. 5. 14 (http://www.taipeitimes.com/News/editorials/archives/2008/05/14/2003411930).
138) 위키피디아 Sino-Pacific Relations(http://en.wikipedia.org/wiki/Sino-Pacific_relations).
139) 중국 상무부, *Op. cit.*

중 가장 부유한 국가에 속하는데, 국가 소득의 상당 부분은 일본과 대만 및 기타 국가들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140]

2010년까지 중국과 외교관계가 없으며, 또한 현지에 진출한 중국 기업도 없다.

타. 피지

중국은 피지와 1975년 11월 5일 수교, 1976년 피지에 대사관을 설치했으며, 피지는 2001년 베이징에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1976년 중국과 피지의 교역량은 23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0년 총 교역액은 9,713만 2,000달러, 중국 수출 9,655만 4,000달러, 중국 수입 57만 9,000달러로 급증하였다. 피지의 대중국 수출품은 냉동생선과 목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141]

2006년 군사 쿠데타로 퀘레스(Qarese) 정부가 전복되자 서방국가들은 피지 군사정부를 비난했는데, 중국은 피지를 종전과 동일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쿠데타 이전에 100만 달러 수준의 지원금을 1억 6,700만 달러로 증액[142]하였다. 2009년 중국 시진핑 부총리가 피지를 방문하여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143]

중국은 피지에 11개의 현지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 케이블TV 전송사업을 시작으로 중국어선 어업지원사업, 고급 리조트 개발 및 관광개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관리, 광물탐사 및 목재개발, 피지 철도운영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144]

---

140) 위키피디아 Sino-Pacific Relations(http://en.wikipedia.org/wiki/Sino-Pacific_relations).; Andre Vltchek, “Wooing the islands”, 2008. 1. 15(FPIF(Foreign Policy In Focus), Asia & Pacific 지역 기사), http://www.fpif.org/articles/wooing_the_islands.

141) 중국 외교부 국가지역정보 斐济(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dyz/1206_3/sbgx/).

142) Furgus Hanson, “Don’t ignore the big new player in Fiji”, *Sydney Morning Herald*, 2008. 5. 9 (http://www.smh.com.au/news/opinion/dont-ignore-the-big-new-player-in-fiji/2008/05/08/1210131163040.html).

143) 위키피디아 Sino-Pacific Relations(http://en.wikipedia.org/wiki/Sino-Pacific_relations).

144) 중국 상무부, *Op. cit.*

③ 카리브해 지역

1990년대 이후 중국과 카리브해 지역의 협력은 대부분 무역, 차관, 투자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다수의 카리브해 국가들은 미국과의 오래된 종속 관계를 축소시키는 수단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한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대만과 외교 경쟁을 하고 있으나 급격히 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만의 금품 외교에 맞대응하면서 외교적 우위를 점해 가고 있다. 중국은 최근 소프트파워의 확산 차원에서 서인도대학에 공자학원(孔子學院, Confucius Institute)을 설립하여 중국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고 있다. 이 지역의 중국계 거주자들은 중국과 이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145]

카리브해 국가들은 카리브국가연합(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 ACS)을 구성하고 있다. 25개 회원국 중 16개국이 소도서국이다. ACS는 ⅰ) 역내 경제권 창설을 위한 지역 협력 및 통합 과정 촉진, ⅱ) 역내 공동유산인 카리브해의 환경 유지 및 보전, ⅲ) 카리브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ACS는 '대(大)카리브협력지대(Greater Caribbean Zone of Cooperation)'를 설립하고, 무역, 지속가능한 관광, 운송, 자연재해 등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역내 무역 및 투자증진을 위해 매년 비즈니스 포럼 개최하고 있다.[146]

가. 안티구아바부다

안티구아바부다는 1983년부터 중국과 수교하여 오랫동안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은 농업, 실험실, 교육시설,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해 왔다.[147]

---

145) 위키피디아, "Caribbean–People's Republic of China relations"(http://en.wikipedia.org/wiki/Sino-Caribbean_relations).
146) 외교통상부 국가지역정보(http://www.mofat.go.kr/world/cam/index.jsp).
147) 중국 외교부 국가정보(http://www.fmprc.gov.cn/eng/gjhdq/).

2009년 양국 총 교역액은 4억 9,300만 달러, 수출 4억 9,300만 달러, 수입 9만 6,000달러로 중국이 수입하는 것은 거의 없다.[148] 2010년 현재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국 기업은 없다.[149]

나. 바하마

중국은 바하마와 1997년 5월 23일 수교하고, 6월에 대사관을 설치했으며, 바하마는 2006년 중국에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바하마는 중국의 카리브해 지역 내 주요 교역 국가이며, 양국간 교역은 중국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9년 양국 총 교역액은 4억 2,200만 7,000 달러, 수출 4억 2,200만 5,000 달러, 수입 14만 8,000 달러였다.[150] 2010년 현재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국 기업은 없지만 2009년 9월 중국-바하마 "투자 촉진 및 보호 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조만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151]

다. 바베이도스

중국은 바베이도스와 1977년 5월 30일 수교하였으며, 양국간 교역은 중국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9년 양국 총 교역액은 9,378만 7,000 달러, 수출 9,155만 4,000 달러, 수입 223만 3,000 달러였다.[152] 2010년 현재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국 기업은 없지만 2010년 2월 양국간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 협정을 맺음으로써 현지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153]

148) 중국 외교부 安提瓜和巴布达国家概况(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bmz/1206_1/).
149) 중국 상무부, *Op. cit.*
150) 중국 외교부 巴哈马国家概况(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bmz/1206_3/).
151) 중국 상무부, *Op. cit.*
152) 중국 외교부 巴巴多斯国家概况(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bmz/1206_2/).
153) 중국 상무부 경외투자기업기구목록(http://wszw.hzs.mofcom.gov.cn/fecp/fem/corp/fem_cert_stat_view_list.jsp).

라. 벨리즈

중국은 벨리즈와 1987년 2월 6일 수교하였으나, 1989년 10월 11일 벨리즈가 대만과 수교하여, 10월 23일 중국은 단교하였다. 1997년 6월 홍콩주재 벨리즈명예총영사관을 벨리즈무역사무소를 바꾸기로 협정을 맺음으로써 경제관계를 재개하였다. 2009년 양국 총 교역액은 3,303만 8,000달러, 수출 3,302만 6,000달러, 수입 1만 3,000달러였다.[154]

2008년 중국수전벨리즈대표처(中国水电伯利兹代表处)가 진출해서 수력발전 관련 대외연락, 정보수집, 사업 조율 및 관리를 하고 있다(부록 <표 18-7> 참조).[155]

마. 쿠바

쿠바는 1960년 9월 2일 대만과 단교하교 9월 28일 중국과 수교하였다. 같은 해 11월 체 게바라가 대표로 중국을 방문하였다.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양국 간에 실질적인 교류는 많지 않았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정상외교가 활발해져 장쩌민(江泽民) 주석(1993년, 2001년), 피델 카스트로 의장(1995년, 2003년), 라울 카스트로 의장(1997년, 2005년), 후진타오(胡锦涛) 주석(2004년, 2008년) 상호 방문하였다. 2009년 양국 총 교역액은 15억 4,700만 달러, 수출 9억 7,200만 달러(공산품 등), 수입 5억 7,400만 달러(니켈, 설탕 등)였다.[156]

1999년 플라스틱 생산 공장의 현지투자를 시작으로 중국 기업은 2010년 현재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국 기업은 쿠바를 중남미 무역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21개의 현지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부록 <표 18-8> 참조).[157]

---

154) 중국 외교부 伯利兹国家概况(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bmz/1206_7).
155) 중국 상무부, *Op. cit.*
156) 중국 외교부 古巴国家概况(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bmz/1206_13/).
157) 중국 상무부, *Op. cit.*

바. 도미니카공화국

중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은 외교관계는 없지만 상호 무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인사들이 상호방문하고 있다. 2009년에는 중국 신화통신의 도미니카지국을 설치하고 특파원을 파견하였다. 중국은 미국, 네덜란드 다음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의 3대 수출대상국이 되었다. 2009년 양국 총 교역액은 6억 9,000만 달러(39% 감소), 수출 5억 9,200만 달러(65% 감소), 수입 98만 달러(23%) 감소로 중국의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다.[158]

도미니카공화국에는 중국 금성무역의 현지지사가 설치되어 무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부록 <표 18-9> 참조).[159]

사. 도미니카연방

중국은 도미니카연방과 2004년 3월 23일 수교하고 5월에 대사관을 설치하였으며, 도미니카연방은 2005년 중국에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2009년 양국 총 교역액은 2,348만 달러, 수출 2,232만 달러(기계, 전자제품, 섬유, 의류, 신발 등), 수입 1,160만 달러(알루미늄, 의료기구 및 장비 등)였다.[160] 2010년 현재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국 기업은 없다.[161]

아. 그레나다

중국은 그레나다와 1985년 10월 1일 수교하였으나, 1989년 6월 그레나다가 대만과 수교를 발표하자 단교하였다. 2005년 1월 20일 외교관계를 회복하고 같은 해 양국에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2009년 양국 총 교역액은 398만 3,000달러, 수출 395만 2,000달러(기계, 전자제품, 섬유, 의류, 신발 등), 수입 3만 1,000달러였다.[162] 중국은 2008년 호텔경영 및 관리를 중심으

158) 중국 외교부 多米尼加国家概况(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bmz/1206_8/).
159) 중국 상무부, *Op. cit.*
160) 중국 외교부 多米尼克国家概况(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bmz/1206_9/).
161) 중국 상무부 경외투자기업기구목록(http://wszw.hzs.mofcom.gov.cn/fecp/fem/corp/fem_cert_stat_view_list.jsp).

로 수출입업무까지 담당하는 현지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부록 <표 18-10> 참조).[163]

자. 가이아나

중국은 가이아나와 1972년 6월 27일 수교하고 같은 날 가이아나에 대사관을 설치하였으며, 가이아나는 1973년에 재중국대사관을 설치하였다. 2009년 양국 총 교역액은 6,938만 달러, 수출 5,908만 달러(철강, 알루미늄, 기계장비, 오토바이, 섬유 등), 수입 1,075만 달러(원목 등)였다.[164] 2009년부터 중국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전력개발, 보크사이트 광산개발, 목재개발 등 3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부록 <표 18-11> 참조).[165]

차. 자메이카

중국은 자메이카와 1972년 11월 21일 수교하고 73년 자메이카에 대사관을 설치하였으며, 자메이카는 2005년 중국에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2009년 양국 총 교역액은 2억 1,800만 6,000달러, 수출 1억 9,700만 달러(섬유,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수입 2,100만 6,000달러(알루미나 등)였다.[166] 2005년부터 중국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자메이카 투자정보 획득, 재생자원 PET 회수, 건축시공 및 건축자재 도소매, 항만개발 등의 분야에 4개 기업이 진출해 있다(부록 <표 18-12> 참조).[167]

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중국은 트리니다드토바고와 1974년 6월 20일 수교하고, 75년 중국만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양국은 1957년부터 교역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 중

162) 중국 외교부 格林纳达国家概况(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bmz/1206_11/).
163) 중국 상무부, *Op. cit.*
164) 중국 외교부 圭亚那国家概况(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nmz/1206_6/).
165) 중국 상무부, *Op. cit.*
166) 중국 외교부 牙买加国家概况(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bmz/1206_35/).
167) 중국 상무부, *Op. cit.*

국은 의류, 가전제품, 화학제품, 철제품을 수출하고, 철, 구리, 알루미늄 등의 광산물을 수입하고 있다.[168] 2009년부터 중국이 지원하는 주택,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하여 3개 기업이 진출해 있다(부록 <표 18-13> 참조).[169]

③ 아프리카 및 인도양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그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도서지역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아프리카와 인도양의 소도서국 8개국가 중 몰디브, 코모로, 기니비사우를 제외하고 싱가포르를 포함한 5개국 현지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가. 카보베르데

중국은 카보베르데와 1976년 4월 25일 수교하였다. 2009년 양국 총 교역액은 3,541만 달러로 전년비 137% 증가하였다.[170] 2006년부터 중국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국제건설공사 수주 및 수출입업무를 개시하였으며, 2009년에는 2건의 디지털TV 방송 및 기술개발업무를 하고 있다(부록 <표 18-14> 참조).[171]

나. 모리셔스

중국은 모리셔스와 1972년 4월 15일 수교하였다. 그 이후 중국은 모리셔스와 정상급 방문과 경제무역관계를 급속하게 발전시켜 왔다. 2009년 2월에는 후진타오 총리가 국빈 방문하였다. 2009년 양국 총 교역액은 2억 9,800만 달러, 수출 2억 9,200만 달러, 수입 600만 달러였다. 2010년 6월 현재 모리셔스에는 7,000명의 중국 근로자가 있다.[172] 2004년부터 중국 기업

168) 중국 외교부 特立尼达和多巴哥国家概况(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bmz/1206_37/).
169) 중국 상무부, *Op. cit.*
170) 중국 외교부 佛得角国家概况(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fz/1206_11/sbgx/).
171) 중국 상무부, *Op. cit.*

이 현지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제지산업, 면사생산, 정보통신 부품, 첨단산업, 의류생산, 파견인력 관리, 전자제품, 소프트웨어 산업중심 첨단산업투자, 부동산・호텔 개발, 건설공사, 경제특구 기획, 공사, 관리, 포도주 생산 및 관광농업, 국제중계무역 등 37건에 걸쳐서 매우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부록 <표 18-15> 참조).[173]

다. 상투메프린시페

중국은 상투메프린시페와 1975년 7월 12일 수교하였으나, 상투메프린시페가 1997년 5월 6일 대만과 수교하자 단교하였다. 2009년 양국 총 교역액은 220만 달러였다.[174] 상투메프린시페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에 현지기업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부록 <표 18-16> 참조).[175]

라. 세이셸

중국은 세이셸과 1976년 6월 30일 수교하였다. 2009년 양국 총 교역액은 1,500만 달러였다.[176] 중국은 2006년 섬유제품의 판매 및 관리를 위해 현지에 기업을 설립하였고, 그 외에도 수출입업무, 공사수주 및 관리, 외해 및 심해어획 및 어류제품 가공을 위해 8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부록 <표 18-17> 참조).[177]

---

172) 중국 외교부 毛里求斯国家概况(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fz/1206_37/).
173) 중국 상무부, *Op. cit.*
174) 중국 외교부 圣多美和普林西比国家概况(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fz/1206_45/).
175) 중국 상무부, *Op. cit.*
176) 중국 외교부 塞舌尔和普林西比国家概况(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fz/1206_44/).
177) 중국 상무부, *Op. cit.*

(3) 중국 소도서국 협력의 특징

① 태평양 지역

중국의 대 태평양 도서국가에 대한 외교정책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른 대만과의 외교경쟁, 시장 및 자원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 확대, 세계의 패자를 꿈꾸는 중국의 전 세계적 영향력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만과의 외교경쟁은 태평양 도서국가에 대한 경제・사회・문화 분야 교류와 관련된 자금 지원 경쟁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국가의 내정간섭 및 부패조장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였다.

중국은 니우에, 마이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키리바시, 통가, 파푸아뉴기니, 피지 등 8개국과 수교하고 있고, 대만은 나우루, 마샬군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투발루, 팔라우 등 6개국과 수교하고 있다.

나우루의 경우 중국과 대만 사이에 수교와 단교를 통해서 양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끌어내기도 하였다. 또 파푸아뉴기니는 1999년 일주일간 대만과 수교하기도 하였고, 단교와 관련하여 재수교를 바라는 대만 자금 300만 달러를 투입한 시도가 무산되기도 하였다. 금품외교(checkbook diplomacy)의 영향은 태평양 도서국가 내부의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태평양 지역에서 대외협력 경쟁, 소위 금품외교는 극도로 위험한 것이 되고 있다. 금품외교는 종속행태를 심화시키며, 도서국가의 사회발전을 어렵게 하는 저주와도 같다. 이런 형태의 영향력 확대 경쟁은 부패를 조장하고 부족 갈등을 부추긴다. 또한 금품외교는 아직도 이 지역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강압적인 봉건시스템과 종교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체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178]

둘째, 중국은 단계적이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시장 및 자원 확

178) Andre Vltchek, "Wooing the islands", 2008. 1. 15.(FPIF(Foreign Policy In Focus), Asia & Pacific 지역 기사), (http://www.fpif.org/articles/wooing_the_islands).

보를 위한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중국과의 교류는 경제발전 초기인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 사이에는 문화교류, 특히 중국 서커스단의 파견, 의사의 파견, 중국어 교사의 파견 등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90년대 이후에는 중국 경제의 성장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 특히 중국의 태평양 도서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하는 반면에 태평양 도서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은 수산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0년 이후에는 중국 기업의 현지투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특히 최근에 들어서 급증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중국 기업의 현지투자 형태는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기의 현지투자는 수산물의 어획 및 가공과 관련된 투자를 중심으로 수출입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진출이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중국의 태평양도서국 인프라지원이 증가하면서 건설 분야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전자제품 및 공산품 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광물자원 및 지질탐사 등 자원 개발과 관련된 투자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호텔업 등을 포함한 관광산업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새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중국의 문화홍보, 중국의 성장모델 전파, 대중국 유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중국어 교사 및 전문가 파견 등 소프트파워 확대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의 성장과정은 태평양 도서국가들에게 이 지역의 발전모델로서 상당히 설득력을 가질 여지가 있다. 이 지역의 중국 장학생들이 확대되고, 중국과의 교류가 지속된다면 중국식 성장모델이 서구 중심의 개발모델에 적응하지 못한 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에서 파견되어 온 교사나 경제원조 사업을 위해 파견된 근

로자들의 현지 정착 등에 따라 중국의 경제적 지원 확대를 기반으로 한 친(親)중국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통적으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영향력이 강한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기존 강대국과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자원 확보를 위해 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경쟁자가 더 늘어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② 카리브해 지역

카리브해 도서국들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영향이 강한 지역이다. 과도한 미국의 영향력과 그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들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미국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중국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지역에서도 대만과 중국의 외교경쟁이 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2000년 이후 들어서는 중국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중국은 이제 금품외교에 대한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과 카리브해와의 무역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미의 내륙국 또는 연안국 가운데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는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중국과 교류의 가장 큰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경쟁은 대만 내부의 대외협력 자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요구와 중남미 대만 지원 국가 정치지도자들에게 전달된 뇌물성 자금들이 폭로되면서 대만의 금품외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중국은 내부 문제없이 얼마든지 금품외교를 펼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향후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강점이 될 수 있다.

최근 경제외교에서 문화외교, 즉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소프트파워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주요한 외교수단으로 삼고 있는 점도 중국이 이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미국은 그간 방치되다시피 했던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다. 오바마 정부가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개발문제를 영국과 재협상하도록 추진한 것은 기존의 미국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이 지역의 자원에 눈을 돌리고 전통적인 외교관계와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를 통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자원 확보 경쟁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③ 아프리카 인도양 지역

중국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아프리카지역에서 대외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중국의 막대한 교류협력 사업의 진행은 기존 서방선진국 중심의 대외 협력과는 달리 양자간 원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양자간 원조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원조를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추세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와 관련해서 아프리카의 기존 원조체제를 이끌어 온 서방선진국들은 당황하게 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의 사회적·환경적 기준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 중국의 원조방식과 그간 서방의 아프리카 원조가 아프리카의 진정한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및 대외협력 확대와 관련해서 서방국가들은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왔다. 그 주된 비판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은 풍부한 자원과 나쁜 정부를 목표로 삼고 원조를 제공한다. 둘째, 중국은 원조 프로젝트에 현지인을 고용하지 않는다. 셋째, 중국은 사회적·환경적 기준을 무시함으로써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

다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179] 첫째, 중국은 대부분의 원조를 사하라 이남국가에 집중했는데 이는 '하나의 중국정책'과 무관하지 않으며, 특별히 자원이 풍부한 국가나 나쁜 정부를 대상으로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들도 자원에 관심이 많으며, 중국의 원조도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복합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현지인의 고용은 기업이 얼마나 그 지역에서 활동했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관리는 궁극적으로 아프리카 국가정부의 관할 사항이다. 또한 아프리카 사업현장의 중국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서구의 프로젝트 관리자들이 프로젝트의 비용으로 비싼 호텔이나 주택에 거주하는 것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은 사회적·환경적 기준에 대해 학습하는 과정에 있다.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사회적·환경적 책임에 대해 점점 민감해지고 있다. 즉 중국은 국내적으로도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79) Deborah Brautigam's *The Dragon's Gift: The Real Story of China in Africa(2010)*에 대한 평가. Laure Frashi, "China in Africa myths and realities", 2010. 2. 9(http://aidwatchers.com/2010/02/china-in-africa-myths-and-realities).

5. EU의 소도서국 해양협력 현황

1) EU의 개발도상국 협력 체제

1993년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 EC)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개발협력 정책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면서, EU는 세계 최대의 공여국으로 성장해왔다. 현재까지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EC)의 국제원조 규모는 전 세계 국제원조의 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기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공여국들이나 미국, 일본과 같은 주요 공여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원조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180]

2005년 '개발에 관한 유럽 컨센서스'(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는 유럽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들이 개발정책에 있어서 실행해야 할 가치, 목표, 원칙들을 확인하고 있다. 공동 비전으로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에 초점을 맞춘 빈곤의 감소, 둘째는 인권, 민주주의, 기본권, 법치주의, 양성평등, 연대, 사회적 정의, 특히 유엔을 통한 효과적인 다자적 조치 등을 반영한 유럽의 민주주의 가치에 기초한 개발, 셋째는 국가전략들에 기초하여 EU가 국가 정책과 절차들을 조정해 줄 때 자국의 개발에 책임을 지는 개도국 등을 규정하고 있다.[181]

(1) EU의 개발 원조의 역사

EU의 개발원조정책이 법적 기반을 갖게 된 것은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이다. 그러나 1957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및 베네룩스 3국은 로마에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 EEC)

180) OECD 홈페이지 참조(http://www.oecd.org).
181) EU 홈페이지 'The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참조(http://ec.europa.eu/development/policies/consensus_en.cfm/).

를 설립하기 위해 체결한 로마조약을 통해 개발원조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바 있다. 이후 1663년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ACP) 국가들을 결합하는 제1차 '야운데 협정'(Younde Convention)이 체결되었고, 1975년 EC 9개국과 ACP 국가들은 '로메협정'(Lomé Partnership Convention)을 체결하여 개도국과의 관계를 규율하였다.[182]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EU의 개발협력에 관한 조항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협력정책의 목표는 ⅰ)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개발 촉진, ⅱ) 세계경제에 개도국을 점진적이고 조화롭게 통합, ⅲ)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 등을 언급하고 있다.[183]

이후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Amsterdam Treaty)과 2003년 니스조약(Nice Treaty)에서도 개발원조에 관한 조항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또한 EU의 개발협력정책은 공동체와 회원국이 서로 협조하도록 규정하여 회원국의 정책을 보완하는 '보조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y)에 근거하고 있다.[184]

그러나 2009년 말, 리스본 조약(Lisbon Treaty)의 발효에 따라 EU의 개발원조 정책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법적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2010년 '유럽연합 조약과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185]은 빈곤의 감소 및 퇴치는 EU 개발협력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상정하고 있으며,[186] 긴급한 재정원조에 경우,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유럽집행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 가중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게 규정하여 신속한 재정원조를 가능케 하였다.[187] 또한 동 조약은 EU의 개발협력정책이 회원국의 정책에 보충적인 수

182) 김채형, "유럽연합의 개발협력 정책", 「한국EU학회」, 5권 2호, 2000, p. 8.
183) 마스트리히트 조약 TITLE XVII, 제130U조 1항.
184) 박정례, 「EU 빈곤국 개발원조 정책의 평가와 전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 26.
185) '유럽연합조약과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Consolidated versions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2010/C 83/01)은 2007년 12월 13일 서명되고, 2009년 12월 1일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의해 개정된 결과가 반영된 조약을 지칭한다.
186) 조약 제208조.

단이 아닌 자율적 정책으로서 수행될 수 있게 하였다.[188]

| 표 3-29 | EU 대외원조 예산상 분류

예산구분	지원목적	세부사항
EU집행위 일반예산 중 대외 원조 부분	개발원조	지중해, 발칸반도, 아시아, 아프리카 등
	인도주의적 원조	재해, 재난 등
	가입 예정국 지원	EU 가입예정국가들에 대한 지원
	기타 대외협력	공동안보정책(CFSP) 및 긴급대응자금 등
유럽개발기금(EDF)	유럽의 구 식민지 등 역사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는 ACP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조 기금	
유럽투자은행(EIB)	- 주로 EU지역 내 낙후지역에 대한 대출이 주 업무, 총 대출금 중 약 15%를 역외 개발도상국에 대출 - 시장에서의 자금동원능력이 없는 국가의 프로젝트 지원 - 대출조건은 시장금리 적용	

자료 : EU 홈페이지(www.ec.europa.eu)

(2) EU의 개발원조 주요 실행수단

2001년 원조담당기구로 유럽원조협력청을 설립하였다. 유럽원조협력청은 EU가 효율적 원조 추진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EU의 개발원조의 약 80%를 관리하며, 프로젝트의 발굴 및 확인, 시행, 평가 등 국제원조사업 운영을 위한 총괄책임을 담당한다. 이러한 단일 원조 체계로써 유럽원조협력청의 설립과 함께 EU는 보다 효과적인 원조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EU는 더 일관성 있는 전략과 개발도상국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원조수행 현황을 나타내는 '국가별 전략보고서'(Country Strategy Paper : CSP)를 도입하였다.[189] EU의 국제원조는 협정 체결에 의하거나 금융기구를 통해 실행된다.

187) 조약 제213조.
188) EU 홈페이지 리스본 조약 'Questions and answers' 참조(http://europa.eu/lisbon_treaty/faq/index_en.htm/).
189) EU 홈페이지 참조(http://ec.europa.eu/development/geographical/methodologies/strategypapers10_en.cfm/).

|표 3-30| 국제원조 실행 수단

유 형	수 단	내용
제도적 실행 수단	협정	로메협정, 코토누협정
금융 실행 수단	EU 일반예산	지역별/분야별 지원
	유럽개발기금(EDF)	ACP 국가지원
	유럽투자은행(EDI)	후진국 대출

자료 : EU 홈페이지(http://www.ec.europa.eu)

협정 체결로 국제원조가 실행된 예로는 195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원조규모와 협력 분야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로메협정이 있다. 1970년대에 들어 영국과 아일랜드, 덴마크가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9개 회원국과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에 있던 과거 식민지 46개국이 1975년 제1차 로메협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4차에 걸친 연장 후에 로메협정은 2000년 20년의 기간을 설정한 코토누협정(Cotonou Convention)으로 대체되었다. 코토누협정은 2003년 비준 과정을 거친 후 시행되었다. 코토누협정은 빈곤퇴치, 무역에 대한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분쟁예방, 인권존중, 민주화 및 대규모 이주 등을 포함하는 정치적 대화를 제시하였다. 동 협정은 일방적인 경제원조보다는 시장접근의 확대 등을 통한 폭넓은 경제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정부 간 협력차원을 아우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력과정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동 협정의 전신인 로메협정과는 질적으로 상이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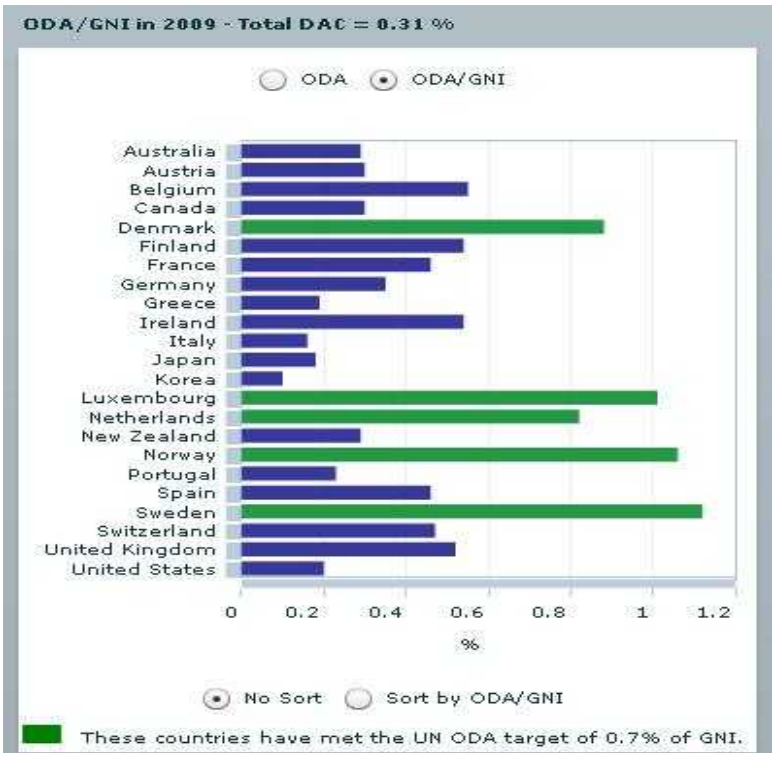
또한 동 협정에서 주목할 사항은 수혜대상 개도국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가 채택되었는데, 침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개발원조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전한 통치체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심각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새로운 절차도 마련하였다.[190] 또한, 코토누협정 참가국은 27개 회원국과 78개 ACP 국가로 증가하였다.

| 표 3-31 | 로메협정 기간 동안 ACP 국가들에 대한 지원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1차	2차	3차	4차
보조금	2,150	2,999	4,750	14,667
위험자본	99	284	635	825
연화차관	46	525	635	370
수출입안정 보상제도	377	634	925	3,300
광물소득안정제도	-	282	415	1,035
유럽개발기금	3,072	4,724	7,400	23,767
유럽투자은행	390	685	1,100	2,858

자료 : 정홍렬, "유럽연합의 ACP 국가 개발지원정책에 대한 소고",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1호, 2006, p. 330



자료 : http://www.oecd.org/document/11/0,3343,en_2649_34487_44981579_1_1_1_1,00.html 2010년 1월 7일 최종방문

| 그림 3-6 | OECD DAC회원국 ODA/GNI 비율

190) 예희진, 「EU의 대외원조 정책-외교 정책적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p. 60.

2) EU의 소도서국 협력 현황

EU의 소도서국에 대한 대부분의 개발원조는 ACP 국가와의 지역 협력 협정인 로메협정과 코토누협정으로 실행되며, 이러한 ACP 국가들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 EU의 대표적인 개발원조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EU는 개발도상국들과의 재정적, 기술적 협력을 계획할 때 개발도상국들의 특별히 취약한 상황들에 대해 맞게 각각의 다른 필요를 고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유럽개발은행(European Development Fund : EDF)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는 국가・지역 지표 프로그램(National and Regional Indicative Programs)을 통해 소도서국의 1인당 수여되는 원조액은 더 큰 경제를 가진 국가들이 제공받는 원조액보다 더 높다.

(1) EU의 소도서국 협력 현황[191]

EU는 주요 원조 공여국으로 소도서국들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들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취약성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해 왔다.

① 제1~4차 로메협정과 코토누 ACP-EC 협력 협정[192]

EC는 역사적인 이유로 '로메협정'에 적용을 받는 ACP 국가들과 해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자치령 및 아시아, 남미, 지중해의 기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행위들을 구별하는 포괄적인 개발 정책을 두고 있다.

---

191) *Small States: Meeting Challenges in the Global Economy*, Report of the Commonwealth Secretariat/World Bank Joint Task Force on Small States, Washington DC and London, April 2000을 기초로 작성・보완.

192)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members of the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Group of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2000.6.23 체결, 2003.4 발효), 2005. 6 1차 개정, 2010. 3. 19 2차 개정 협상 종료, 동 협정은 2020년까지 20년간 유효함.

또한, 모든 경우 각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은 그 국가의 상황 및 취약성에 맞춰 융통성 있게 이루어진다. EC는 1975년 제1차 로메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1979년 제2차 로메협정, 1984년 제3차 로메협정, 1990년 제4차 로메협정을 체결하였다. 제1~3차 로메협정은 5년간의 유효기간을 둔 데 반해 제4차 협정은 10년의 유효기간을 두어 2000년 코토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ACP 국가들과의 원조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EC는 '로메협정'에 따른 ACP 국가들과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Scheme)에 따른 기타 개도국들에 대한 특별대우를 포함하여 개도국이 원산지인 상품들의 시장 접근을 허용했다. 또한 취약한 도서국들이나 내륙국들은 최대 수준의 관세특혜와 무역촉진 지원들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EC는 더 나아가 EC와 ACP 국가들의 경제 발전의 첫 걸음으로 민간부문의 중요성과 소도서국들이 직면한 어려움들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로메협정 후의 협상과정 동안 EC와 ACP 그룹은 세계경제에서의 개발도상국들의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무역 및 서비스 개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결국 내륙과 소도서 ACP 국가들의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해 특별대우를 유지하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2000년 6월 23일 베넹의 수도 코토누에서 '로메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ACP-EC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다. 동 협정은 ACP 국가들의 사부문과 기업부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 기구를 창설하였다. 이 투자기구는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 EIB)에 의해 운영된다. 또한 이 투자기구가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부담하는 위험은 단순히 상업적 위험뿐 아니라 이들 국가들이 취약성을 가지는 날씨나 환경적 위험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EC는 WTO 다자 협상에 있어 소규모의 불리한 경제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네바에 ACP 사무소를 설치해 자금을 지원하였다.

② 유럽개발기금[193]

태평양지역 지표 프로그램(Pacific Regional Indicative Program : PRIP)은 유럽개발기금(European Development Fund : EDF)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는 모든 태평양지역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EU는 태평양지역 ACP 국가들에게는 주요 공여국이며, EU와 태평양지역 간의 협력은 1975년 로메협정 체결부터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EU는 총 1억 9,400만 유로를 이 지역 프로젝트에 제공해 왔고, 이와 더불어 20억 유로를 양자적으로 태평양지역 ACP 국가들에게 제공해 왔다.

현재 태평양지역 ACP 그룹은 총 15회원국이 있으며, 피지, 통가, 사모아, 투발루, 키리바시,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솔로몬군도 8개국은 1975년 로메협정 서명국이며, 쿡아일랜드, 마이크로네시아, 마샬군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6개국은 2000년 코토누협정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는 동티모르가 1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③ 지역적 경제협력 협정[194]

유럽집행위원회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역량 강화, 즉 정보 수집 및 보급, 훈련, 환경, 운송, 연구, 기술, 관광, 역내 무역의 증진과 같은 분야 등에서 지역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카리브해, 인도양, 태평양의 특별한 요청들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역적 행동들은 ACP 국가들과 EU의 향후 관계로 예측되고 있는 '지역적 경제협력 협정'(Region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 REPAs)에 의해 강화될 것이다.

---

193)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국 홈페이지 참조(http://www.forumsec.org.fj/pages.cfm/strategic-partnerships-coordination/european-development-fund/).

194) *Small States: Meeting Challenges in the Global Economy*, Report of the Commonwealth Secretariat/World Bank Joint Task Force on Small States, Washington DC and London, April 2000, pp. 2~3.

④ 바베이도스 행동 프로그램

EC와 그 회원국들은 소도서국들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적응을 돕기 위해 '소도서국을 위한 바베이도스 행동 프로그램'과 유엔 및 그 전문 기구들이 수행하는 활동들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1999년 유럽집행위원회는 '바베이도스 행동 프로그램 체제에서의 EU와 소도서국과의 협력'(The EU's co-operation with SIDS in the Framework of the Barbados Program of Action)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유엔환경프로그램(UNEP), 대학, NGO, 기타 지역기구들이 소도서국들의 취약성에 영향을 주는 주제들을 연구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왔다.

EU는 '소도서국을 위한 바베이도스 행동 프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환경 및 천연자원의 관리 분야에서, 'UNEP 글로벌 환경 전망'(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Global Environment Outlook)에서의 카리브해, 인도양, 태평양 지역에 대한 3개 보고서 준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195] 이 보고서들은 3개 지역에 있는 지역기구들이 준비하였으며, 제22차 유엔총회에서 바베이도스 프로그램의 재검토 및 평가를 위해 공식적으로 착수되었다. 이 보고서들은 소도서국들을 위해 환경적 경향, 정책적 대응, 최근 이슈들을 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정부가 취할 조치들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 1월에 '소도서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바베이도스 행동계획' 10년 재검토 회의가 모리셔스에서 개최되었고, 유엔주재조정관(UN Resident Coordinator)과 UNDP 사무소가 유엔기관들의 참석을 촉진하기 위해 이 회의를 준비하는 데 지원했다. 특히 UNDP 모리셔스는 EU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소도서국연합(AOSIS)의 두 대표자들의 회의 참가를 지원할 수 있었다.

---

195) *Ibid.*, p. 3.

⑤ 재해 예방, 완화, 준비 프로그램[196]

ECHO(European Community Humanitarian Office)는 자연재해 예방 분야에서, 자연 재난에 취약한 카리브 해 국가들을 위해 재해 예방, 완화, 준비 프로그램(Disaster Prevention, Mitigation and Preparedness Program)을 수립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위험을 확인하고 취약성과 재해에 대응하는 기본의 역량을 평가하는 원인 분석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위험도표가 그려지고, 향후 허리케인, 화산, 지진, 홍수의 영향을 감소시킬 사전 행동적 전략들이 개발되었다. 인도양에서는 지역적 기상학 협력에 대한 지원이 진행 중이다.

⑥ 글로벌 기후변화 얼라이언스[197]

EU는 최빈국과 소도서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효과적인 정책대화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얼라이언스'(Global Climate Change Alliance)를 추진하고 있다. EU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000만 유로의 기금을 책정하였으며, 5대 우선분야로 기후변화 적응, 삼림파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청정개발제도 참여 확대, 자연재해 위험방지, 기후변화와 개발전략 통합을 설정하고 있다.

⑦ 기후변화 관련 재생에너지 원조[198]

EU는 개발도상국의 많은 빈곤층들이 기본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EU 에너지 구상'(EU Energy Initiative for Poverty Eradic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UEI)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구상은 2002년 요하네스

196) *Ibid.*
19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후변화 관련 개도국 지원기금 현황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p. 4.
198) 임소영・박희수, "기후변화 관련 최근 원조 현황과 논의 방향(3)", 「국제개발협력」, 2009년 2호, 3호, pp. 143~144.

버그 지구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EU는 이 구상의 실행으로 공적개발원조는 기본적인 자금의 틀에서 제공하고 민관협력 방식을 통해 깨끗한 에너지, 즉 재생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EU의 소도서국 해양협력 현황

EU의 소도서국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양에 국한된 협력은 실태는 그리 많지 않다. EU의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의 대표적인 예는 인도양 국가 연안의 지속가능한 관리 프로그램과 태평양 도서국 포럼과의 추진되고 있는 심해광물 협력이다.

① 인도양 국가 연안의 지속가능한 관리 프로그램

EU는 '인도양 국가 연안의 지속가능한 관리 프로그램'(The regional programme of the Indian Ocean Commission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Coastal Zones of the Indian Ocean Countries : RECOMAP)에 총 1,800만 유로를 지원하였다.[199] 이 프로그램은 2006년 8월 시작된 5개년 프로그램으로, 모리셔스를 포함하여 남서인도양지역의 7개국의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천연 해양자원의 관리를 개선시키고자 기획되었다.

② SOPAC과의 심해광물자원 협력

2010년 태평양도서응용지구과학위원회(SOPAC)는 EU와 태평양 도서국들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지역적, 국내적 정책 개발과 심해광물 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4개년 프로젝트 관련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0] 100만 ㎢를 넘는 태평양 도서국들의 배타적경제수역은 현

199) *Mauritius Strategy for Implementation National Assessment Report*, 2010, p. 42.
200) UNGA A/65/69,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29 March 2010, p. 49.

재 차지(借地) 보유(tenement holding) 중이거나 탐험 신청 중이다. EU가 수행하는 자금조달 프로그램은 지역의 심해광물자원 정책을 개발하고 태평양 도서국들이 국가·지역적 입법, 재정 및 환경 정책,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 구축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통합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201] 이 프로그램은 SOPAC의 데이터 보호와 심해광물자원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해양경계(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관련 활동들과 연계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이 지역의 개선된 의사결정 및 심해해양자원의 관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 *Ibid.*

6. 호주의 소도서국 협력 현황

1) 호주의 공적개발원조 현황

(1) ODA 규모

호주의 ODA는 외교통상부 산하 독립기관인 호주국제개발청(AusAID)에서 담당한다. 호주의 총 ODA 금액은 2009~2010년 회계연도에 38억 2,000만 달러였으며, 2010~2011년 회계연도에는 약 43억 5,000만 달러에 이른다.[202] 이 중 37억 6,200만 달러가 AusAID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새로운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9.1%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예산 변동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2008년 기준 호주의 ODA 지원액은 OECD의 22개 DAC 국가 중 12번째로서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하지만 호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규모는 DAC 국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여 DAC로부터 꾸준한 지적을 받아왔다. 호주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여 2014~2015년 회계연도까지 GNI 대비 0.5%로 끌어올릴 계획에 있으며, 지난해 대비 이번 회계연도에 9.1% 증액한 것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호주는 2014~2015년까지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11~2012년 GNI 대비 0.35%, 2012~2013년 0.38%, 2013~2014년 0.42%에 해당하는 ODA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2010~2011년 회계연도에 9.1%를 증액했지만 GNI 대비 0.33%에 머물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계획은 10% 이상의 대폭적인 예산 증가 없이는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02) Australia's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BUDGET, 11 May 2010 (http://www.ausaid.gov.au에서 접근 가능).

| 표 3-32 | 호주의 GNI 대비 ODA 비율

단위 : 백만 달러

회계연도	총 ODA	ODA/GNI
1971-1972	200.5	0.45
1975-1976	356.0	0.42
1980-1981	568.0	0.37
1985-1986	1,031	0.40
1990-1991	1,261	0.31
1995-1996	1,556.5	0.30
2000-2001	1,623.1	0.24
2005-2006	2,697.7	0.28
2006-2007	3,017.9	0.29
2007-2008	3,173.7	0.28
2008-2009	3,799.5	0.32
2009-2010	3,820.9	0.31
2010-2011(추정)	4,349.3	0.33

자료 : 2010-2011년 호주정부예산안[203)]

(2) ODA 구성 내용

① ODA 예산 구성

호주의 ODA 예산은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간 협력 프로그램, 국제기구 등에 대해 지원하는 글로벌 프로그램, 기타 정부기관을 통한 협력 등으로 구성된다. 아래 표는 최근 3년 동안의 ODA 예산 구성을 보여준다.

203) BUDGET: Australia's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11 May 2010(이하 'BUDGET 2010'으로 표기), p. 68(http://www.budget.gov.au/2010-11/content/ministerial_statements/ausaid/html/index_ausaid.htm).

|표 3-33| 호주의 ODA 예산 구성

단위 : 백만 달러

내용	2008-2009	2009-2010	2010-2011(추정)
AusAID 국가별 프로그램	2,125.1	2,379.0	2,654.9
AusAID 글로벌 프로그램	903.2	847.6	966.7
AusAID 부처	132.0	141.2	211.8
호주국제농업연구센터	52.4	63.6	68.3
기타 정부 부처	665.7	372.0	336.2
조정	-78.9	-14.9	-71.7
기금	0	32.2	183.1
ODA 총액	**3,799.5**	**3,820.9**	**4,349.3**
증액 비율		0.6%	9.1%
ODA/GNI	0.32%	0.34%	0.33%

자료 : 2010-2011년 호주정부예산안[204)]

예산 구성에서 국가별 프로그램이 전체 예산의 61%를 차지할 정도로 호주는 양자간 협력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선진 공여국들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호주만의 특성은 아니다.

② 지역별 사업

호주의 지역별 ODA 사업은 아래 표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동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집중현상은 호주와의 지리적 인접성, 같은 도서국가로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가 같다는 점, 호주의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유지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가별로 보면 인도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에 대한 원조가 월등히 많으며, 국가 규모를 고려할 때 솔로몬군도에 대한 원조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국가별 지원 규모 표에서 보듯이 태평양 도서국들이 지원액 상위를 차지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호주의 소도서국 협력 상황과 관련해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204) BUDGET 2010, p. 4.

| 표 3-34 | 호주의 지역별 ODA 예산 구성

단위 : 백만 달러

지역(내용)	2008-2009	2009-2010	2010-2011(추정)
파푸아뉴기니와 태평양 도서국	922.7	1,024.9	1,085.4
인도네시아와 동아시아	1,016.0	1,055.4	1,092.3
아프리카, 중앙/남아시아, 중동	912.9	644.3	685.8
다자간 기구 및 불특정 지역	1,026.8	1,097.1	1,374.4
조정	-78.9	-14.9	-71.7
기금	0	32.2	183.1
ODA 총액	**3,799.5**	**3,820.9**	**4,349.3**

자료 : 2010-2011년 호주정부예산안[205)]

| 표 3-35 | 상위 7개국 지원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2010-2011(추정)	2009-2010	2008-2009
인도네시아	458.7	454.6	438.1
파푸아뉴기니	457.2	445.9	394.6
솔로몬군도	225.7	212.5	216.0
아프가니스탄	123.1	130.1	155.9
베트남	119.8	113.3	93.6
필리핀	118.1	127.3	122.7
동티모르	102.7	94.7	93.9

자료 : 2010-2011년 호주정부예산안[206)]

호주는 최근까지 중남미와 캐리비안 국가들에 대한 원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지만, 2009-2010년 예산에 3,600만 8,000달러, 그리고 2010-2011년 예산에 3,900만 8,000달러가 책정되었다. 또한 이라크에 대한 원조의 경우, 2008-2009년에는 세 번째로 많은 3억 6,600만 9,000달러였지만 2009-2010년과 2010-2011년에는 각각 4,500만 8,000달러와 4,600만 5,000달러로 급격히 줄었다. 이는 이라크의 정치적 상황이 변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205) BUDGET 2010, p. 5.
206) BUDGET 2010, p. 5.

(3) 호주 ODA의 특징

① 천년개발목표(MDGs)

MDGs는 2000년 9월 189개국이 선언한 것으로 총 8개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ⅰ) 가난과 배고픔 근절
ⅱ) 보편적인 초등교육 실현
ⅲ) 성평등 개선과 여성 지위 강화
ⅳ) 아동 사망률 감소
ⅴ) 모성 건강 개선
ⅵ) HIV, AIDS, 말라리아 기타 질병 퇴치
ⅶ)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ⅷ)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개발

AusAID의 원조프로그램은 MDGs 달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207]

MDGs 1과 관련해서, 호주는 4개년 계획으로 아시아와 태평양, 아프리카의 특정 국가들에게 식량 생산과 영양 개선을 위해 4억 6,4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 등의 연구기관은 이들 국가들의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한 연구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09~2010년에는 세계식량프로그램(WFP)과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여 1억 8,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교육 향상을 도모하는 MDGs 2는 호주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호주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교육 향상과 시설 개선을 위해 2007-2011년 사이 5억 4,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도 파키스탄에서 4만

207)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nual Report 09/10*, p. 23 (http://www.ausaid.gov.au에서 접근 가능).

6,000명의 여학생이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돕고, 파푸아뉴기니에 104개의 학교를 건설하는 등 교육 관련 원조를 해오고 있다.[208]

MDGs 3과 관련해서, 호주의 원조프로그램을 통해 2009년 동안 330명의 파푸아뉴기니 여성이 초등학교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을 받았으며, 370명의 여학생의 중학교 학비를 지원해 주었다. 호주는 그 밖에도 성폭력 예방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209]

MDGs 4, 5, 6과 관련해서, 호주는 2009~2010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보건과 질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해 4억 7,5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호주는 그 밖에도 캄보디아 등 여러 국가들의 보건활동을 지원하고, AIDS 퇴치를 위한 국제기금을 포함해서 여러 국제기금과 국제기구를 지원하고 있다.[210] 호주의 건강 관련 지원 구성을 보면, 기초 건강관리가 43%, HIV/AIDS 퇴치를 위한 것이 26%, 다양한 분야에서의 건강과 건강 관련 행정활동 지원이 21%를 차지한다.

MDGs 7과 관련해서, 호주는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국가존립 위기를 맞고 있는 태평양 소도서국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호주는 산림 황폐화를 막기 위해 2억 7,3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인도네시아와도 파트너십을 맺어 인도네시아의 산림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태평양 소도서국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을 개선하는 등 강물의 수질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211]

마지막으로 MDGs 8과 관련해서, 호주는 2009-2010년 태평양 도서 포럼(Pacific Islands Forum)의 의장국으로서 지역의 개발협력을 주도하였다. 특히 호주는 2009년 태평양 도서국들과 개발조정 강화를 위한 케언스협정(Cairns

208) *Ibid.*, p. 21.
209) *Ibid.*, pp. 23~24.
210) *Ibid.*, pp. 25~26.
211) *Ibid.*, p. 27.

Compact on Strengthening Development Coordination in the Pacific)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호주는 ODA의 사업방향을 MDGs 달성에 두고 있으며, 이행사업들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업 효율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태평양 도서 포럼
>
> 태평양 도서 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은 16개의 독립국과 자치정부로 구성된 정부간 기구이다. PIF는 1971년 태평양 지역의 집단적인 정치·경제 기구로서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이름은 남태평양포럼(South Pacific Forum)이었다. 호주는 PIF의 창립 멤버이며 그 밖의 참여국 대부분은 태평양 지역 소도서개발국(SIDS)이다. PIF의 구성을 볼 때 호주가 동 포럼을 주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PIF 구성국들의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은 적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하기 때문에, PIF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강하면서도 단결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② ODA 효율성 평가

호주의 ODA를 주관하는 AusAID는 산하에 아시아국, 아프리카·서아시아·중동 및 인도주의국, 지속가능개발 파트너십국 등 6개국을 두고 있다. 하지만 AusAID의 조직상 특징은 개발효율성실(Office of Development Effectiveness)을 독립 부서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실은 2005년 원조효율성에 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이 배경이 되었으며, 호주 ODA가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음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2006년 설립되었다. AusAID의 부청장이 책임을 맡고 있는 개발효율성실은 수상과 외교통상부 차관, 재무부 차관, 재정·규제개혁부 차관이 포함된 개발효율성조정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개발효율성실은 매년 AusAID의 원조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1점에서 6점까지로 나누고, 4~6점을 만족으로, 3점 이하를 불만족으로 구분한다. 2010년 발표한 호주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개별 원조활동 수준

에서 75% 이상이 4점 이상의 만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12]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관련 항목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호주의 ODA는 아시아, 특히 호주 인근의 도서국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도서국들 중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제외하면 모두가 본 연구과제의 연구대상들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호주의 태평양 소도서국과의 협력실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태평양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

(1) 개관

앞서 지적했듯이 호주의 ODA는 지리적 근접성과 지역 내 영향력 강화 등의 목적을 위해 태평양 소도서국들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다. 태평양 소도서국 중에서는 파푸아뉴기니와 솔로몬군도, 그리고 동티모르에 대한 협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래 표는 최근 3년간 태평양 소도서국과의 협력규모를 나타낸다.

212) *Ibid*., p. 31.

| 표 3-36 | 태평양 소도서국 지원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2008-2009	2009-2010	2010-2011(추정)
파푸아뉴기니	394.6	445.9	457.2
솔로몬군도	216.0	212.5	225.7
동티모르	93.9	94.7	102.7
바누아투	54.1	60.3	66.4
피지	36.6	35.9	37.2
사모아	32.0	40.6	39.8
통가	21.6	25.6	27.8
나우루	26.7	24.6	26.6
키리바시	16.0	21.8	23.9
마이크로네시아	7.7	8.4	10.4
투발루	7.1	8.1	8.9
쿡아일랜드	4.6	4.7	5.0
니우에 및 토케라우	3.2	3.7	4.4
합계	**914.1**	**986.8**	**1,036.0**

자료 : 2010-2011년 호주정부예산안[213)]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호주는 태평양 소도서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 9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 왔으며 2010-2011년 회계 연도에는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추진하고 있는 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14)] 하지만 호주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의 태평양 소도서국들에 대한 지원은 많지만, 이러한 지원이 특별히 해양협력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요컨대, 호주는 특별히 이들 국가들과 해양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혹은 해양 분야에 특화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며, 교육・보건・공공서비스 개선 등

213) BUDGET 2010, p. 5.
214) BUDGET 2010, p. 34.

전반적인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해양 분야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중심으로 언급하면서 호주의 개별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2) 파푸아뉴기니

호주는 파푸아뉴기니에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많은 원조를 하고 있으며, 파푸아뉴기니 수도인 포트 모르즈비에 상주 사무소도 두고 있다. 양국은 2008년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파푸아뉴기니에서의 M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의 파푸아뉴기니에 대한 원조는 교육, 건강, HIV/AIDS 퇴치, 법과 정의 실현, 공공서비스, 도로와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기간시설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는 파푸아뉴기니에 대해 태평양 소도서국 중 가장 많은 4억 5,700만 2,000달러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중 해양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것은 교통과 같은 국가 기간시설 지원 사업에서인데, 이 또한 실제로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고 있다. 즉, 호주는 교육, 병원, 상업 및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파푸아뉴기니의 도로건설 사업에 많은 원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와는 달리 공항과 항만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양국이 체결한 파트너십은 차관 도입이나 민자 유치 등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215] 그래서 항만시설에 대한 원조는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영 파푸아뉴기니 항만회사가 16개의 항만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중 수익이 나는 곳은 래(Lae) 항구와 포트 모르즈비 항구뿐이다. 다른 항구들은 규모가 작아서 독자적 운영이 어려우며 두 항구의 운영수익으로 유지되

215) Schedule to the Papua New Guinea - Australia Partnership for Development. Priority Outcome 1: Transport Infrastructure, 10 June 2009, p. 3(http://www.ausaid.gov.au/country/pdf/outcome_transport_schedule.pdf).

고 있다. 그런데 호주는 이들 대표적인 두 항구의 상업적 기능을 강화하고 선박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파푸아뉴기니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2015년까지 노력해 가기로 했다.

| 표 3-37 | 파푸아뉴기니 항만시설 개선 지원

단위 : 백만 파푸아뉴기니 키나(Kina)[21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안전 및 안보 확보	6.2	12.3	1.6	0.6	0.6	0.5	21.7
포트 모르즈비 재배치 연구	5.0	0.0	0.0	0.0	0.0	0.0	5.0
호주의 지원액	6.2	12.3	1.6	0.6	0.6	0.5	26.7

자료 : 호주-파푸아뉴기니 파트너십 스케줄[217]

(3) 솔로몬군도

호주는 태평양 소도서국 중 솔로몬군도에 대해 파푸아뉴기니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2010~2011년도에는 2억 2,500만 7,000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구가 5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이 나라는 1990년대 후반 들어 극심한 사회 불안과 법질서 파괴를 경험하였다. 그래서 2003년에는 태평양 국가들에게 원조를 요청하였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이에 동참하였다. 현재 솔로몬군도에 원조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호주인데, 호주는 2009년 솔로몬군도와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새롭게 체결함으로써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현재 솔로몬군도에 대한 호주의 원조는 건강, 교육, 수질 개선과 위생, 도로와 교량 건설,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교육, 기술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양 분야에 대한 협력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

216) 1 호주 달러 = 2 파푸아뉴기니 키나.

217) Schedule to the Papua New Guinea - Australia Partnership for Development. Priority Outcome 1: Transport Infrastructure, 10 June 2009, p. 7(http://www.ausaid.gov.au/country/pdf/outcome_transport_schedule.pdf) .

(4) 기타 국가에 대한 해양협력

① 긴급재난 원조

지난 2009년 9월 30일 사모아와 통가에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자 호주는 신속히 지원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지원에는 호주 방위군의 비행기와 선박, 의료팀, 인명 수색·구조팀, 29톤 이상의 의약품과 생필품의 파견과 공급이 포함되었다. 금액으로는 사모아에 약 1,300만 달러, 통가에 10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특히 사모아에서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유실된 30㎞의 도로와 6㎞의 방파제의 복구를 위한 지원이 있었다.[218]

② 어업 원조

어업은 태평양 소도서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생선은 주민들의 중요한 식품 중 하나이다. 따라서 어업의 발달은 태평양 도서국의 식량안보와 경제발전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호주는 2009-2010년 어업, 특히 참치어업에 대한 태평양 도서국의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00만 9,500달러의 기금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이전 연도에 비해 15만 달러 증액된 것이다. 이 기금은 불법 어업을 막고, 어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찰을 개선시키고, 지역의 장기 어업발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며, 개별 국가들의 어업담당 기관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219]

③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원조

호주는 기후변화에 민감한 소도서국들의 환경자원보호를 위해 호주 내 여러 부처들이 협력을 통해 원조를 하고 있다. AusAID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너지효율성부, 환경부 등이 원조에 참여한다. 호주는 특히 기후변화에

218)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nual Report 09/10*, p. 58.
219) *Ibid*., p. 62.

따른 해수면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는 소도서국들과 협력하여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소도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9~2010년 동안 기후변화 관련 호주의 주요 원조활동은 다음과 같다.[220]

ⅰ) 해수면과 기후변화감시 프로젝트(Sea Level and Climate Monitoring Project) 실시 : 2005년부터 5년 동안 9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태평양 도서국이 해수면과 기후의 장기간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ⅱ) 태평양도서국 잔류성유기오염물질제거 프로젝트((Persistent Organic Pollutant in Pacific Islands Countries Project) 완료 : 12개 도서국으로부터 약 120톤의 유해화학물질을 수거했으며, 이를 위해 2001-2010년 동안 700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수거된 화학물질들은 호주로 옮겨져 관련 시설에서 폐기처분 됨

ⅲ) 태평양도서국 기후예측 프로젝트 지원 : 이 프로젝트는 국가들의 기상청이 관광산업과 농업 등 기상에 민감한 산업을 위해 계절적 기상예측을 제공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2006-2010년 동안 300만 8,000달러의 기금이 지원됨

ⅳ) 지역 기구 지원 : 호주는 태평양지역 환경프로그램(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 사무국과 태평양공동체(Pacific Community) 사무국과 같은 지역 기구를 지원하고 있음. 목적은 이들 기구가 태평양 도서국이 식량안보를 위해 어업을 잘 관리하고 농작물을 다양하게 하는 등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데 있음

ⅴ) 소규모 지역 공동체의 해안보호 활동 : AusAID는 특히 맹그로브 나무 이식과 용수 관리・저장능력 개선 등 소도서국의 해안지역 보호 활동을 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은 피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태풍과 해일

220) *Ibid.,* pp. 62~63.

등의 피해로부터 해안과 지역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음

호주는 ODA의 효율성 평가에 관한 2009년 보고서에서 호주의 원조프로그램은 파트너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 보고서는 온실가스를 유발시키는 산업 지원과 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내지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산업에는 원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221] 구체적으로 개발협력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호주의 원조프로그램은 개별적인 기후변화프로그램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투자가 잠재적으로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221) AusAID, *Annual Review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2009*, p. 11(http://www.ode.ausaid.gov.au/publications/pdf/arde2009.pdf).

7. 시사점

소도서국들은 작은 인구와 경제규모, 지리적 원거리성, 높은 무역의존도, 자연재해, 적은 양의 자원, 기후변화 등의 취약성 때문에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소도서국과 협력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들은 1990년대 초부터 유엔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1994년 바베이도스 행동 프로그램(BPoA), 2000년 천년개발목표(MDGs), 2005년 모리셔스 전략 등이 그 결과물이다.

소도서국들도 자체적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1990년 '소도서국연합(AOSIS)'을 설립하여 교토의정서 초안 작성 과정을 포함하여 기후온난화와 해수면 상승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EU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소도서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해양대기청(NOAA)의 해양협력 프로그램들과 국제개발청(USAID)의 원조 활동들을 통해 소도서국들과 협력해 나가고 있다. NOAA 산하의 국가해양어업국은 태평양 소도서국들에게 어업 장비와 어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바다거북 보호를 위한 연구를 후원하며, 태평양과 대서양에 산호초 보존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USAID는 태평양 소도서국들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 해양안전, 산호 삼각지(Coral Triangle) 해역의 산호 보호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중남미 카리브해 소도서국들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미국이 큰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포괄적인 협력에도 불구하고 해양 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며, 아프리카 소도서국은 미국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태평양 소도서국과 카리브해 소도서국에 비해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해양협력은 물론 일반협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일본은 유엔을 통한 소도서국 협력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태평양 도서국과의 정기적 정상회담을 통해 소도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일본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태평양 소도서국들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은 소도서국연합 48개국 중 31개국에 다양한 원조를 시행해 왔으나, 해양문제와 관련된 원조는 31개국 중 15개국에만 시행되었으며, 그 대부분은 어업 관련 기반시설 확충 및 어업기술 훈련프로그램이었고, 2000년대 중반부터 심해저 자원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기술 협력 및 훈련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에 따라 중국과 대만 사이 국교 수교 경쟁과정에서 소도서국과 협력을 추구하게 되었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대외원조 정책 전반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소도서국 대외원조의 형태는 정치적 군사적 차원의 원조형태에서 자원과 시장 확보를 위한 경제적 원조형태로 변해 왔다. 중국의 군사력, 성장하는 경제력, 풍부한 인력이 기존 강대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도서국들의 정치적 의지 등과 맞물려 향후 소도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의 확대가 예상된다.

EU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회원국들의 원조를 보완하는 형태로 소도서국들과 협력을 지속해 왔다. EU의 소도서국들에 대한 협력 형태는 주로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해양문제에만 관련된 협력이나 원조의 예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EU는 유엔 체제 하에서의 BPoA 활동에 적극적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 등을 마련하는 등 소도서국들과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EU가 추진하고 있는 소도서국 해양협력의 대부분은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와 해양환경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예로는 '인도양 국가 연안의 지속가능한 관리 프로그램'과 SOPAC의 심해광물자원 협력 등이 있다.

제 4 장 소도서국의 해양협력 수요

앞서 제3장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소도서국에 대한 해양협력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장에서는 소도서국의 입장에서 어떠한 해양협력 수요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이러한 해양협력 수요 검토는 다음 장에서 다룰 한국의 소도서국에 대한 해양협력 방안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등에 산재해 있는 소도서국들은 대부분 매우 작은 국토면적과 적은 인구, 취약한 사회기반시설, 낙후된 경제, 낮은 교육열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222]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같이 글로벌한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223]

이러한 소도서국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유엔은 1994년 바베이도스 회의 이후 여러 국제기구들과 국가들이 참여하는 소도서국들에 대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다. 소도서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바베이도스 행동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소도서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소도서국들은 바베이도스 행동프로그램의 추가 이행을 위한 모리셔스전략(MSI) 5개년 계획(MSI+5)의 성과검토를 위해 자국의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2010년까지 제출하기로 예정되었으며, 2010년 12월 현재 20여 개국이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본 장에서는 소도서국들의 일반적인 현황과 개발협력을 개관하고, 구

---

222) 40여 소도서국 중 선진국 수준에 달한 국가는 싱가포르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중·저개발국 혹은 최빈국으로 분류된다.

223) 물론 소도서국들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태평양지역포럼(Pacific Regional Forum), 카리브해지역회의(Caribbean Regional Meeting), AIMS지역회의(Atlantic, Indian Ocean, Mediterranean, South China Seas)와 같이 여러 지역적 모임을 결성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임들이 가시적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체적으로 개별 국가들의 해양협력 수요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분석과 이해의 편의를 위해 소도서국들을 크게 태평양, 카리브해 및 AIMS(대서양, 인도양, 지중해, 남중국해)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개별 국가들의 해양협력 수요는 앞서 언급한 국가평가보고서를 중심으로 파악하며, 보고서 내용 중 해양과 관련이 있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해양자원 관리, 생물다양성 보호, 교통(항만과 여객 운항 등의 해상교통)에 관한 부분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224]

1. 태평양 소도서국

1) 지역 개발협력 개관

전체 51개 소도서국 중 아시아 및 태평양도서국은 총 20개국이며 이 중에는 미국령 괌과 같은 해외영토(overseas territories)도 포함된다. 태평양 소도서국 중 키리바시, 솔로몬군도, 동티모르, 투발루, 바누아투, 니우에 같은 국가들은 소득수준이 매우 낮고 경제구조가 취약해 저개발국(Least Developed Countries : LDCs)으로 분류되고 있다.

224) 모리셔스 전략의 이행에 관한 국가별 평가보고서에는 총 10개의 항목에 대해 자세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마다 편차가 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기술하고 있다. 기술이 요구되는 10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2.자연 및 환경 재해, 3. 쓰레기 관리, 4. 연안 및 해양 자원, 5. 수(민물) 자원, 6. 육지 자원, 7. 에너지 자원, 8. 관광 자원, 9. 생물다양성 자원, 10. 교통 및 통신.



자료 : 유엔지도제작부

| 그림 4-1 | 태평양 소도서국 분포

태평양 소도서국 중 파푸아뉴기니는 국가 규모가 가장 큰데,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인구가 몇 만 명에서 몇 십만 명에 불과한 데 비해 660만 명에 달하며, 육지 면적도 약 43만 ㎢로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면에서는 쿡 아일랜드와 팔라우 등이 1만 달러 수준인 데 비해 1,200달러 정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태평양 소도서국에 대한 개발정책 수행 시 각 국가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이해 부족[225]을 들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관리체계(good governance)'[226]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있다.

225) UNESCAP,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Pacific: Progress and Challenges*, 2010, p. 13.
226) UNESCAP, *Op. cit.,* p. 24.

| 표 4-1 | 주요 태평양도서국들의 국가지표

국가	GDP (백만 달러)	1인당 GDP (2008년, 달러)	인구	육지면적 (㎢)	EEZ면적 (천㎢)
쿡아일랜드	183	10,907	15,636	237	1,800
피지	3,500	4,264	843,888	18,272	1,260
키리바시	114	804	98,989	811	3,600
마샬군도	161	2,737	54,065	181	2,131
마이크로네시아	238	2,154	110,899	701	2,978
나우루	22	2,396	9,771	21	320
니우에	7.6	-	1,514	259	-
팔라우	164	8,812	20,397	444	629
파푸아뉴기니	8,200	1,218	6,609,745	432,840	3,120
사모아	523	2,988	182,578	2,935	120
솔로몬군도	668	1,284	535,007	28,370	1,340
통가	259	2,891	103,023	650	700
투발루	15	3,213	11,093	26	1,300
바누아투	554	2,388	238,903	12,190	710

자료 : IMF, 세계경제전망 *2009;* 태평양공동체사무국((SPC), 2009년 인구통계지표; UNESCAP, *Op. cit.,* 2010, pp. 7~8 내용 재구성

태평양 소도서국들은 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2008년까지 수립하여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플랜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별 프로그램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수립된 것이지만 지역적 또는 국제적 협력관계를 통하여 그 이행에 필요한 경제적, 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227]

227) UNESCAP, *Op. cit.,* p. 13.

| Ⅲ 4-2 | 태평양 소도서국들의 주요 개발정책

국가	개발정책	수행기간
쿡아일랜드	국가지속가능개발계획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NSDP)	2006-2010
피지	전략개발계획 (Strategic Development Plan, SDP)	2006-2008
키리바시	키리바시개발계획 (Kiribati Development Plan)	2008-2011
마이크로네시아	전략개발계획 (Strategic Development Plan, SDP)	2000-2015
나우루	국가지속가능개발전략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NSDS)→개정2009NSDP(Revised 2009 NSDS)	2006-2008 2009-
니우에	니우에국가전략계획 (Niue National Strategic Plan, NNSP)	2009-2013
팔라우	팔라우2020국가주도개발계획 (Palau 2020 National Master Development Plan)	2020
파푸아뉴기니	중기개발전략 (Medium Term Development Strategy, MTDS)	2005-2010
사모아	사모아개발전략 (Samoa Development Strategy)	2008-2012
솔로몬군도	중기개발전략 (Medium Term Development Strategy, MTDS)	2008-2010
통가	국가전략개발계획 8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8)	2006/7-2008/9
투발루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6-2015
바누아투	우선과제 및 이행아젠다 (Priorities and Action Agenda)	2006-2015

자료 : UNESCAP, *Op. cit.,* p. 12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국가들은 자국의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계획의 가장 큰 약점은 기존의 개발계획을 일부 개선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면서 시의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태평양 소도서국들이 겪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나 2008년 이후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등이 미흡하기 때문에 2010년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사업

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228]

또한 태평양 소도서국들은 육지영토가 매우 협소하고 인구와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대한 역량이 매우 낮은 편이어서 외부 기관 또는 국가로부터 많은 개발지원금을 받고 있다. 2007년 자료를 보면 14개 도서국이 총 11억 6,600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이것은 GDP의 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우루, 니우에, 솔로몬군도 등은 GDP의 50% 이상의 재정을 외부 개발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229] 특히 나우루는 국가재정을 전적으로 ODA에 의존하고 있다.

| Ⅲ 4-3 | 2007년 태평양 소도서국들의 개발협력 의존도

국가	전체 ODA 규모	1인당 ODA(달러)	ODA 비중(%GDP)
쿡아일랜드	9.3	461	4
피지	57.5	69	2
키리바시	27.1	285	35
마샬군도	52.1	864	35
마이크로네시아	114.9	1035	49
나우루	25.6	2912	113
니우에	14.8	5514	88
팔라우	22.3	1108	14
파푸아뉴기니	320.9	51	5
사모아	37.5	207	7
솔로몬군도	246.1	497	63
통가	30.9	302	12
투발루	11.7	1197	44
바누아투	56.7	251	13
총 액	1165.9	136	9

자료 : UNESCAP, *Op. cit.,* p. 21

228) UNESCAP, *Op. cit.*
229) UNESCAP, *Op. cit.,* p. 21.

또한 이러한 ODA 자금지원도 지역적 편중을 보이고 있다. 남태평양 국가들은 대부분 호주, 뉴질랜드,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 대만, 일본에 의한 지원금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이 이 지역에 경쟁적으로 ODA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양국의 외교적 경쟁관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일본은 JICA 현장조사에 따른 경우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후 보상 책임 차원에서 국가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30]

다만 태평양 소도서국들에 대한 지원이 공여국과 수원국사이의 양자적 관계에 의존하여 추진되는 것만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이들 국가들에 대한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적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지역적/국제적 기구 및 비정부간 기구의 참여가 상당히 활발하다. 태평양 소도서국들은 이러한 지원을 '지속가능한 개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변국 간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체적으로 '태평양도서포럼 사무국(Pacific Islands Forum Secretariat : PIFS)'을 결성해 운영하고 있다. PIFS는 2005년 이후 늘어난 ODA를 효과적으로 회원국들에게 배분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국가들이 세운 지역개발프로그램(NSDS)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231] 남태평양에는 이러한 지역기구가 다양하게 결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합하여 '태평양지역기구위원회(Council Organization of the Pacific : CROP)'라고 한다. 여기에 소속된 지역기구는 11개가 있으며 이들 지역기구는 특화된 업무 분야를 통해 개발협력사업을 전문화하고 외부 ODA 기금 활용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30) *Ibid.,* p. 22.
231) *Ibid.,* p. 13.

| 표 4-4 | CROP에 해당하는 11개 지역기구

CROP 회원	활동 내용
피지의대(FSchM)	공공보건 및 약학, 태평양 의료 교육 및 훈련, 연구 제공, 총체적인 의료교육 제공 및 협력
수산포럼(FFA)	지속가능한 수산업 달성 및 보다 넓은 의미의 환경과 사회경제적 효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
태평양공동체(SPC)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 활동 지원. 각 회원국(22개)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농업, 양식업, 어업, 산림, 문화, 인구통계학, 교육, 성, 건강, 인권, 미디어, 유소년, 운송, 에너지, 정보통신, 지역경제사회환경 복지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에 관한 전반적 경제개발 지원
태평양응용지구과학위원회(SOPAC)	천연자원(비생물자원 중심) 개발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 퇴치를 위해, 특히 태평양 이슈에 대한 응용환경지구과학 및 적절한 기술, 지식관리에 대한 취약성 연구 등 지원
태평양도서개발프로그램(PIDP)	태평양 국가 및 환태평양 국가들 간의 연구, 교육, 대화 및 고차원적 협력 및 이해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방법 마련에 기여
태평양도서포럼사무국(PIFS)	태평양 소도서국 중 독립국 및 자치령의 정부수반 정기 회의로서 경제 및 무역 관련 지역협력 및 통합 촉진에 노력
태평양전력협회(PPA)	전력설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문제해결에 적극적인 국가 간 협력 강화
태평양지역환경프로그램(SPREP)	현재 및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환경보호 및 보존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 강화
남태평양교육평가위원회(SPBEA)	회원국 간 교육 평가 실시 및 교육자치 실시 강화, 교육의 평균적 수준 유지를 위한 협력
남태평양관광위원회(south-pacific.travel)	남태평양 관광업의 개발 및 마케팅 협력 제공 및 강화
남태평양대학(USP)	다양향 도서국들의 문화 환경을 보전하고, 고등교육 및 훈련을 통해 비용효율적이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남태평양 도서국들의 요구에 부응함

자료 : UNESCAP, *Op. cit.,* p. 21.

유엔사무국은 피지와 사모아, 파푸아뉴기니에 3개의 지역사무국을 설치하고 있다. 피지는 남태평양 도서국 중 10개의 도서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사모아는 4개, 파푸아뉴기니는 자체 사업만을 관리하고 있다.[232]

이외에도 유엔개발지원프로그램(United Nations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 UNDAF)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추진되고 있는 유엔개혁프로세스에 대한 지역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UNDAF는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유도를 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으로 평등한 경제성장 및 빈곤퇴치, 건전한 행정기반과 인권보장 추진, 평등한 사회보호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제공 등을 추구하고 있다. 그 외에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은 팔라우, 솔로몬군도, 투발루 및 나우루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으며, 유니세프(UNICEF)는 키리바시 및 바누아투에, 그리고 유엔인구통계기금(UN Population Fund)은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과 마샬군도에 각각 사무소를 두고 있다.[233]

지금까지 국가들의 개발협력 일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하에서는 국가들이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의 해양협력 수요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2) 국가별 해양협력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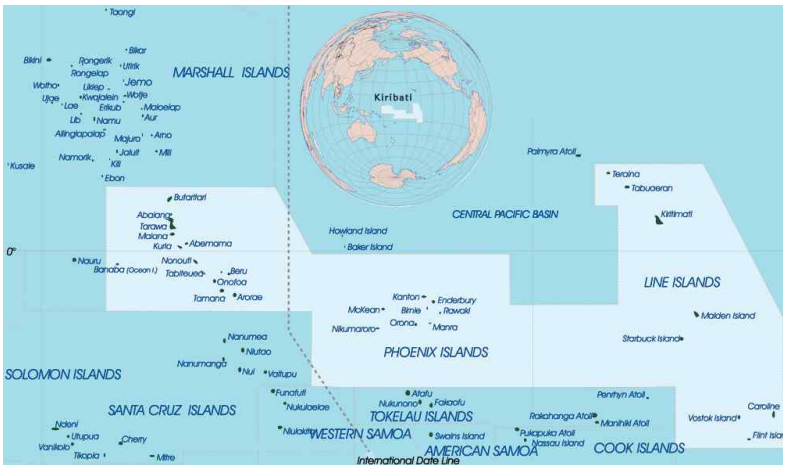
(1) 키리바시

1979년 독립한 키리바시는 360만㎢의 광활한 EEZ를 보유하고 있으나 2005년 기준 인구가 9만 2,533명에 불과할 정도로 국가 규모가 작아서 자생적인 경제 및 사회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국가 수입의 상당부분을 외국 어선들의 입어료, 정부와 교회, 비정부 기구들로부터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234]

---

232) UNESCAP, *Op. cit.,* p. 16.

233) 남태평양에 진출해 있는 유엔기구는 FAO, ILO, UNAIDS, UNDP, UNDSS, UNEP, UNESCAP, UNICEF, UNIFEM, UNISDR, UNOCHA, UNOHCHR, UNOPS, WHO 및 WMO로 총 15개인 것으로 파악됨(UNESCAP, *Op. cit.*).



자료 : http://www.maps-oceania.com/kiribati.htm

|그림 4-2| 키리바시

①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대응

키리바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환경법을 통과시키고 국가적응행동프로그램(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of Action)을 이행하는 등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였다.[235]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기후변화의 심각한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 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향상 등 보다 기초적인 프로그램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

---

234)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of Kiribati, *Kiribati National Assessment Report for the 5-year Review of the Mauritius Strategy for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s Developing States*, 2010.(보고서에 페이지 표시가 없음. 이하 동일) 특히 우리나라 다랑어 어선의 경우 2010년 6월 현재 선망어선 28척, 연승어선 100척 이상이 입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연승어선의 경우 100척 이상 입어하는 외국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이다. 어선입어와 관련한 항만 기반시설의 경우에도 배후지가 매우 취약하고 교통시설이 낙후되어 수산가공시설 지원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계는 선원학교 지원을 통한 선원 및 옵서버 공급 외 지원 가능한 해양협력 분야는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국원양산업협회 담당자 면담조사, 2010. 6. 24.).

235) UNESCAP, *Op. cit.*

② 해양자원 관리

키리바시는 자국의 EEZ에서 외국 원양어선들의 어업, 특히 참치 어업의 허용을 통해 상당한 입어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존과 자원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행 중에 있으며,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대다수 키리바시 인구가 해안에 모여 살고 있는 까닭에 연안으로 쓰레기가 유출되어 연안지역을 오염시키고, 이는 결국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도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쓰레기 배출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36] 따라서 육지기인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원조가 필요하다.

③ 해상교통

키리바시의 여객 운항은 국영인 키리바시 여객회사와 민간 사업자가 담당하고 있다. 크고 작은 섬들이 산재해 있는 키리바시에서 선박은 핵심적인 교통수단이다. 섬 주민들은 식량 공급, 교육, 의료, 사업 등을 위해 중심지로 오갈 때 선박을 이용해야만 한다. 이렇게 섬 주민들의 생활과 복지를 위해서는 여객선의 운항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은 많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노후해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적은 인구로 인해 이용객이 적고 섬들은 많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이 없어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섬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해서는 여객선의 보충과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2) 투발루

투발루는 인구가 2009년 기준 약 1만 2,370명에 불과하고, 총 국토면적도 26.5㎢밖에 되지 않는 세계에서 3번째로 작은 국가이다.[237] 또한 경제적

236) UNESCAP, *Op. cit.*
237) Te Maile Consultancy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수준도 최빈국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투발루가 기후변화 등에 자발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국제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자료 : Wikimedia Commons

| 그림 4-3 | 투발루

①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대응

투발루는 넓게 펼쳐져 있는 9개의 섬으로 구성되는데, 모든 섬들은 해발 4m를 넘지 않는 낮은 섬들이다. 이들 섬들은 해수면 상승과 태풍 등으로 인해 심각한 해안 침식을 겪고 있다.[238] 요컨대 투발루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해 전혀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럴 만한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투발루는 유엔에 제출한 평가보고서에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 캠페인 필요성,

---

Report on the Assess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for Small Islands Developing States, and the Mauritius Strategy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BPOA, 2010, pp. 6~7.

238) *Ibid*., p. 6.

기후변화 담당자들에 대한 적합한 교육과 훈련 필요성, 전반적인 국가기후변화정책 수립 필요성, 국제기후변화기금의 이용 절차의 간소화 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투발루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제기후변화기금 이용에 대한 자문 등이 필요하다.

② 해양자원 관리

투발루는 국토면적의 약 36만 배인 95만㎢의 EEZ를 가지고 있으며,[239] 이 수역에는 어족자원이 매우 풍부하여 한국 등 외국의 원양어선에 입어료를 받고 어업을 허용하고 있다. 투발루는 200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한 것을 비롯해 생물다양성협약 등 중요한 국제협약들에 가입하였다. 투발루는 이러한 협약들을 이행하고 해양자원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해양자원을 관리함에 있어 특히 투발루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은 다음과 같다.[240]

첫째, 주변 국가들과의 EEZ 경계획정이 곧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기선설정과 기점의 좌표설정 등에 대한 전문기술이 없어 자국에 유리한 경계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 등 여러 협약들에 가입했지만, 이를 국내법화 또는 국내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연안에 자원보호지역을 설정했지만 이에 관한 입법에 결함이 많으며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해양자원의 보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형성과 입법이 필요하다.

넷째, 효과적인 해양자원의 모니터링, 보고, 집행하고 불법어업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배양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239) *Ibid*., p. 8.
240) *Ibid*., pp. 31~33.

다섯째, 주민들이 해양자원의 보존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필요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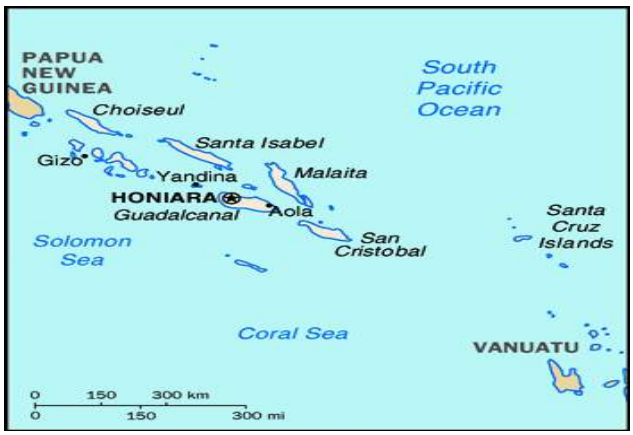
사실 이미 일본과 EU, 대만 등은 투발루의 해양자원 보존과 관리를 위해 투발루와 협력을 해오고 있다. 즉, 일본, EU, 대만 등은 풍부한 어족자원을 가진 투발루의 수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투발루 정부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자원보존 및 관리정책을 강화할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방향에서 일본은 투발루 해안주변의 맹그로브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EU는 태평양수산기구들(FFA 및 SPC)과 함께 어족자원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작업 결과 제시된 정책제언 중에는 어업권의 일관된 통합관리 및 어선관리인의 체계적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만은 2009년 합작회사를 통해 연승어선을 투발루로 이전시키고 어선원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투발루는 대만과의 합작사업을 통해 수산업이 보다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며, 국가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41] 따라서 한국도 해양자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상기 기술한 투발루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과적인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3) 솔로몬군도

파푸아뉴기니의 동쪽에 위치하는 솔로몬군도는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섬들의 전체 면적이 2만 8,000㎢이고 2009년 기준 인구가 52만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소도서국 중에서는 그렇게 작지 않은 편에 속한다.[242] 하

241) *Ibid.*, pp. 31~32.
242) http://en.wikipedia.org/wiki/Solomon_Islands.

지만 솔로몬군도는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2,800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국민들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 솔로몬군도는 특히 자연재해에 취약한데, 군도의 서부 지방에서 2007년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3만 6,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5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2010년 1월 다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해서 1,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243]



자료 : http://www.janeresture.com/solomons/solomon_islands.htm.

| 그림 4-4 | 솔로몬군도

①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대응

솔로몬군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군도의 북쪽에 위치한 온통 자바(Ontong Java) 섬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바닷물이 농경지로 유입되면서 더 이상 작물이 자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말라이타(Malaita) 지방의 인공섬에도 범람이 이루어지고 있다.[244]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솔로몬군도는

243) Solomon Islands, *Solomon Islands Country Report for the 5-Year Review of the Mauritius Strategy for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SIDS*, 2010, p. 6.

244) *Ibid*., p. 17.

2008년 환경부 산하에 기후변화국(Climate Change Division)을 신설하고 국가적응행동프로그램(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of Action)을 개발하였다. 솔로몬군도의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분야로 농업, 에너지, 수자원, 어업, 보건, 관광, 무역, 산림, 쓰레기 관리 등 거의 전 분야를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국가의 전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② 해양자원 관리

솔로몬군도는 풍부했던 다랑어 자원이 줄어들자 상품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다랑어통조림 공장 건설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 또한 다랑어통조림 공장 투자를 결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파푸아뉴기니를 제외한 태평양도서국들은 항만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사정은 솔로몬군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의 통조림공장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선접안시설까지 제공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조사되고 있다. 수산업 분야에 있어 솔로몬군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EU이다. 아직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통조림공장 지원이 이미 결정된 상태이고, 진주양식 및 해조류양식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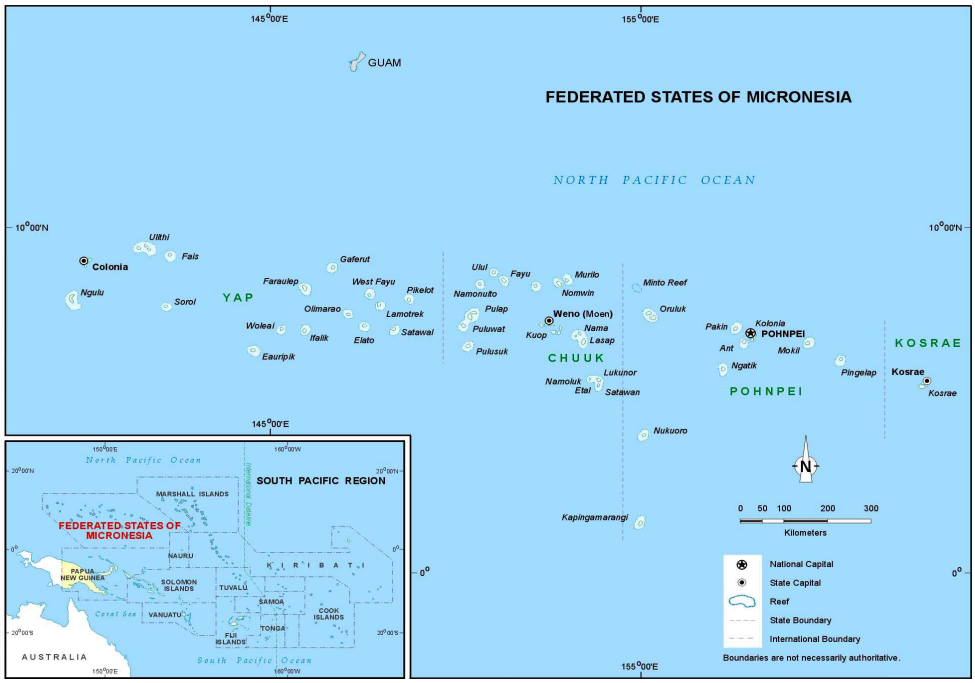
③ 해상 운송

솔로몬군도는 국가운송기금을 통해 해상 운송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의 상당부분은 EU와 일본 등의 개발협력에 의존하고 있다. EU는 해양기반시설프로그램에 따라 14개의 부두를 건설 또는 개선시키는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을 하였다. 또한 일본은 아우키(Auki)의 방파제와 주변 시장을 복구시키는 데 상당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246] 하지만 이러한 지원

245) *Ibid.*, pp. 31~32.

은 규모면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솔로몬군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항만시설 개선과 방파제 건설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외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4) 마이크로네시아



자료 : http://www.adb.org/Micronesia/country-info.asp

| 그림 4-5 | 마이크로네시아

①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대응

파푸아뉴기니 위쪽에 넓게 퍼져 있는 607개의 작은 섬들로 구성된 마이크로네시아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소도서국 중에서도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마이크로네시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Climate Proofing)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 대

246) *Ibid.,* p. 41.

표적인 예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코스래 도로(Kosrae Road) 개선사업과 태평양 참치어종의 이동 경로 등 참치산업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결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도로개선 사업을 위해 얍(Yap) 주정부가 300만 달러를 지출하였는데, 해수면이 1m 상승하면 그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300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247] 특히 현재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네시아가 가진 어려움들은 다음을 포함한다.[248]

- 통합적이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제도적 미비
-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부족
- 4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과 수백 개의 섬들로 구성된 지리적 불리함
- 전문가의 부족과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재정의 부족

마이크로네시아는 국가평가보고서에서 현재 국제기구와 일부 국가들의 개발원조를 받고 있지만, 특히 제도적 및 인적 자원의 부족을 지적하였다.[249]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자문과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통한 원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② 해양자원 관리

마이크로네시아의 해양자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주정부는 12해리까지의 연안 자원에 대한 관리권을 가진다. 마이크로네시아는 망그로브 게, 랍스터, 진주, 조개, 거북 등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생물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현재 마이크로네시아가 가지

247)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ive Year Review of the Mauritius Strategy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 The Case of the FSM*, 2010, p. 14, 16.
248) *Ibid*., p. 13.
249) *Ibid*., p. 15.

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풍부한 생물자원들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느냐에 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네시아는 최근 해양보호지역(Marine Protected Areas)을 설정하고 폰페이(Pohnpei)에 어업총량장치(Fishing Aggregate Devices : FAD)를 설치하였다. 어업의 다양화를 위한 FAD 설치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와 태평양공동체사무국(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의 원조를 받았다.[250] 또한 마이크로네시아는 광활한 EEZ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국민 어업능력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 대만, 일본, 한국, 중국 등에게 입어료를 받고 어업을 허용하고 있다.[251]

따라서 현재 초보단계에 있는 마이크로네시아의 지속가능한 해양생물자원 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자국민의 어업 능력 향상을 위한 원조가 필요하다.

③ 생물다양성 보존

마이크로네시아는 '마이크로네시아의 도전'(Micronesian Challenge)이라는 정책을 통해 적어도 30%의 해안 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네시아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재정의 부족인데,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1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52] 따라서 마이크로네시아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 원조가 필요하다.

④ 항만 · 해상교통 시설

마이크로네시아의 항만시설과 선박들은 매우 초라한 실정이다. 마이크로네시아 정부는 기간시설개발계획 2003-2017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특히 항만 시설과 선박의 개선과 확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폰페이 공항의 경

250) *Ibid*., p. 19.
251) *Ibid*., p. 20.
252) *Ibid*., pp. 24~25.

우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총 1억 달러의 지원을 받아 개선을 추진하여 2011년 초 완성할 계획에 있다. 하지만, 정부소유 선박의 경우 30년 전에 구입한 4개는 노후해서 사용이 어려우며, 2004-2007년 사이 중국이 기증한 2개의 선박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253] 따라서 마이크로네시아의 항만과 해상교통 시설 관련 원조를 위해서는 항만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태풍 등에 견딜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선 등의 지원이 필요한데, 후자를 위해서는 한국의 중고 선박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피지

①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대응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피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에 있었던 홍수는 피지 역사상 최악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11명의 인명피해와 공공부문 피해만도 7,600만 피지달러에 달했다. 또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안이 침식되어 해안선을 따라 있는 마을들이 만조 시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254] 이러한 기후변화 피해에 대응하는 피지 정부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들을 안고 있다.[255]

- 정책 실현을 위한 환경부의 부족한 재정
- 관련 법령들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 공무원들의 능력 부족
- 정부 부처 간 조정과 협력의 부족과 환경부의 높은 타 부처 의존율
-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 부족과 국민의 인식 부족
- 가난과 경기 침체

253) *Ibid*., p. 25.
254) Fiji, *Fiji National Assessment Report*, 2010, pp. 17~18.
255) *Ibid*., p. 19.



자료 : Encyclopedia Britannica Inc.

|그림 4-6| 피지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피지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국제적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256] 따라서 기후변화 관련 협력을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 원조프로그램과 재정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피지가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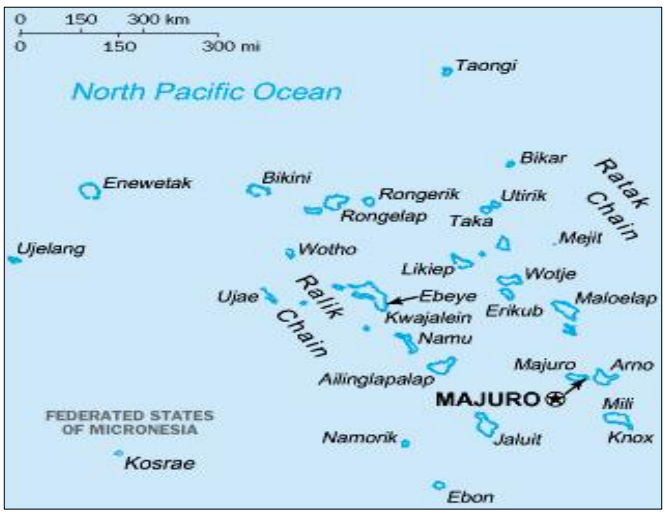
② 해양자원 관리

피지는 통합된 연안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피지 소재의 남태평양대학 응용과학연구소, 로드아일랜드 연안자원센터, 미국 그리고 피지 정부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피지는 연안자원 중에서도 어족자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피지에서 어업이 국내 총생산의 2.7%, 수출액의 9.7%를 차지하며, 어종 중에는 참치가 전체의 67%를 차지하는 데에서 기인한다.[257] 피지의 해양자원 관리와

256) *Ibid.*, p. 17.
257) *Ibid.*, p. 26.

관련해서도 주로 어업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재 피지는 법제도 개혁, 어족자원에 대한 관리, 과잉 어로와 불법 어업 규제, 항만시설 개선, 시장 또는 쇼핑 공간의 개선, 어업 인증제와 무역 기준 마련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258] 이를 볼 때 해양자원 협력 분야에서는 항만시설 개선과 시장의 시설 개선에 대한 원조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통합된 연안자원관리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지만, 보다 지속가능한 어업과 기타 수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진화된 프로그램 지원도 필요하다.

(6) 마샬군도



| 그림 4-7 | 마샬군도[259]

마샬군도는 1,200개가 넘는 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2006년 기준 인구는 약 5만 7,000명에 불과하다. 또한 10대 출산율이 높아서 전체 인구의 약 43%가 15세 미만이라는 비정상적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260]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마샬군도가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바베이도스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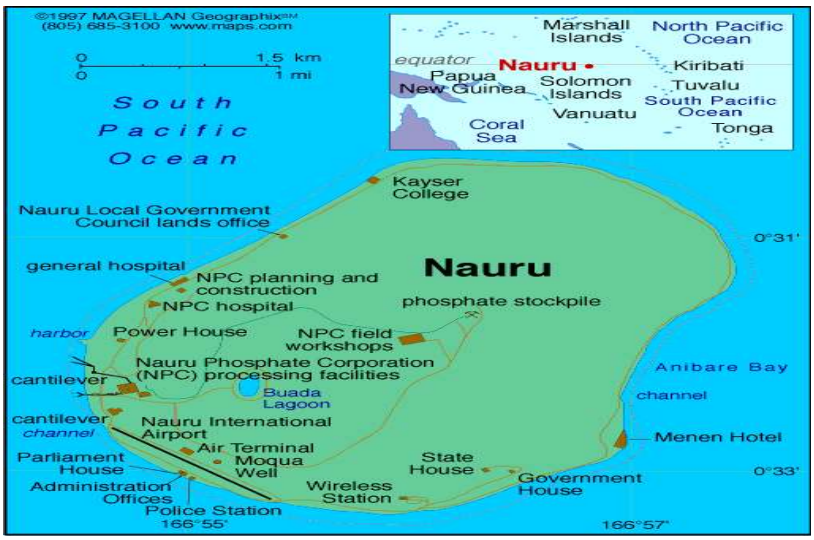
258) *Ibid.,* pp. 27~28.
259) http://marshallproject.blogspot.com/2010/05/country-republic-of-marshall-islands.html.
260)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Review of the Priorities of the Mauritius Strateg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2010.

그램을 충실히 이행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200여 개에 달하는 마샬군도의 거의 모든 섬들은 해발고도가 낮기 때문에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태풍, 지진과 해일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 매우 취약하여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마샬군도는 재앙위험관리 국가행동계획 2008-2018을 마련하였지만,[261]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마샬군도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기초적인 해양협력이 요구되지만, 이와 함께 교육 등 일반적인 협력도 필요하다.

(7) 나우루

나우루는 2009년 기준 인구가 1만 4,000명이고 국토 면적이 21㎢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이다. 타원형의 하나의 섬으로 구성된 나우루는 인산 광물(phosphate rock)의 채굴로 인해 섬의 중심부는 황폐화가 심하여 인간이 거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262]



자료 : http://www.infoplease.com/atlas/country/nauru.html

| 그림 4-8 | 나우루

261) *Ibid.*

262) http://en.wikipedia.org/wiki/Nauru

나우루도 다른 소도서국들과 같이 기후변화에 취약하지만, 그 정도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나우루는 비록 고도가 높지는 않지만 섬 자체가 석회암 고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우루는 섬 전체가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에 대비한 시설물 설치뿐만 아니라 항만 등의 기반시설 설치도 용이하지 않다. 나우루는 2009년 11월 제출한 국가평가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생물다양성 등에 대해서는 제목만 적시했을 뿐 아무런 내용도 기술하지 않았다.[263] 이는 이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이 분야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보다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자원의 관리와 관련해서 나우루는 5개년 인간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 HRD) 계획을 2005년부터 시행하여 어족자원 관리에 있어서 일정 부분 개선을 이루었다. HRD 계획은 호주 국제개발청(AusAID)의 어업관리 제도강화 프로젝트의 원조를 받았으나 나우루는 어업관리를 포함한 해양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주요 장애요인으로 이행 자금의 부족을 들고 있다.[264] 따라서 나우루는 해양자원의 관리를 위해 재정적 원조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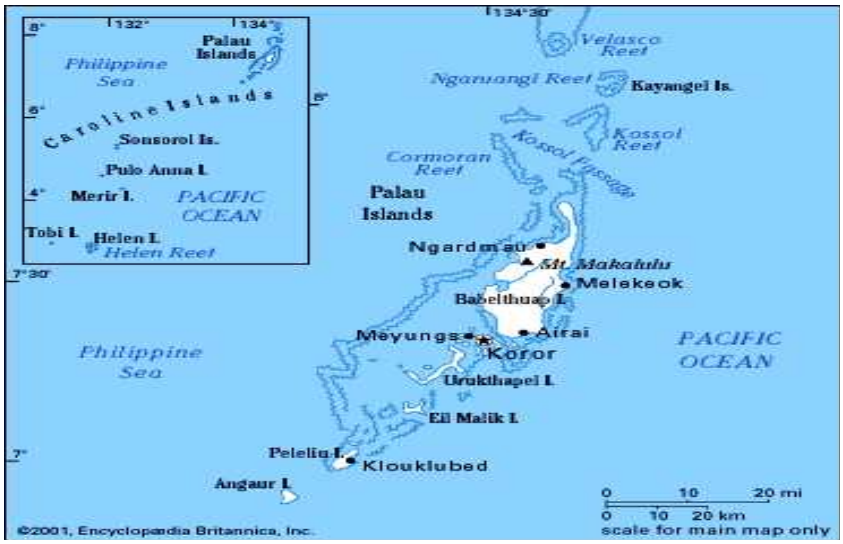
(8) 팔라우

팔라우는 전체 인구가 2만 2,000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국가를 구성하는 섬들은 500개가 넘게 분포되어 있다. 그중 인간이 상주하는 섬은 9개에 불과하며, 주요 3개 섬에 인구의 95% 이상이 밀집되어 있다.[265]

---

263) Nauru, *Nauru National Assessment Report on the Mauritius Strategy Implementation,* 2009 (보고서에 페이지 표시 없음, 이하 동일).

264) *Ibid.*



자료 : http://www.merriam-webster.com/cgi-bin/nytmaps.pl?palau

|그림 4-9| 팔라우

① 기후변화 대응

팔라우의 500개 이상의 섬들은 해발고도가 높은 것들과 낮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팔라우 정부는 다른 일부 소도서국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섬 중 25%가 해발 10m 이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는 않을 것이다.[266] 실제 팔라우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산림, 토양, 수자원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행히 현재 망그로브 숲이 우거져 있어서 해안을 보호해 주고 있지만 무분별한 토지개발로 인해 이 숲이 영향 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267] 팔라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과학자의 부족을 들고

265) Republic of Palau, *Mauritius + 5 Status Report: Republic of Palau*, 2010, p. 16.
266) *Ibid.*, p. 33.
267) *Ibid.*, p. 35.

있다.[268] 이는 전체 인구 2만여 명에 불과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어려움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전문가의 파견 또는 현지인을 초청해서 교육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팔라우는 자국의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해 국가들과 비정부기구, 그 밖의 민간영역으로부터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269] 사실상 거의 대부분 외부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생물다양성 보존

팔라우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부분 외부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 국가 또는 기관으로 미국(국립어류 및 야생보호재단, 해양대기청(NOAA), 국립암연구소, 내무부), 호주, 뉴질랜드, 독일, 터키, 일본, 대만 등과 유네스코 등의 국제기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팔라우는 생물다양성 보존과 관련해서 인적 자원의 부족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들고 있다.[270] 이 또한 기후변화 대응의 어려움과 같이 적은 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해양자원 관리

최근 몇 년 동안 팔라우 연안 어업의 어획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정확치 않으나 팔라우 정부는 서식지 파괴, 어업관리정책의 실패, 유류 가격 인상으로 인한 어업의 어려움,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로 추정하고 있다.[271] 팔라우는 어업과 어족자원을 관리함에 있어 자원보존주의자 또는 환경보호주의자와 어업과 관광을 확대하려는 측 사이의 이해 충돌, 서식지 파괴, 자료 관리의 어려움 등을 들고 있다.[272]

---

268) *Ibid*., p. 36.
269) *Ibid*., p. 37.
270) *Ibid*., p. 59.
271) *Ibid*., p. 88.
272) *Ibid*., p. 89.

팔라우에서는 어업 감소와는 달리 수산 양식업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특히 팔라우는 산호의 배양에 성공하였는데 산호는 팔라우의 국가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팔라우의 수산 양식은 기업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의 협력도 주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팔라우에 기술 원조를 제공하는 주요 기구 또는 국가로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일본, 대만 그리고 스페인을 들 수 있다. 팔라우는 감소된 어업을 수산양식을 통해 만회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현지에 맞는 수익성 있는 어종을 양식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시설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팔라우 평가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를 보다 상업화하는 데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9) 사모아



자료 : http://www.state.gov/r/pa/ei/bgn/1842.htm

|그림 4-10| 사모아

①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대응

사모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국가재난관리법을 통과시키고 기후변화정책을 채택하였으며, 태평양 도서국들 또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다.[273] 그렇지만 사모아는 국가평가보고

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함에 있어서 충분한 재정지원과 함께 개발 혹은 계획 능력의 부족, 충분치 못한 기술력, 글로벌 기후변화 기금의 복잡한 재정지원 협정들을 다루기에 충분치 못한 능력 등을 장애 요인으로 들었으며, 또한 지역 기후변화기금의 설립 필요성을 기술하였다.[274]

② 해양자원 관리

사모아는 공동체기반 해양보호지역(Community-Based Marine Protected Area) 개념을 실행하기 위해 두 지역(Aleipata, Safata)에 시범사업을 지정하여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현재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사모아는 태평양 지역 소도서국 중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EEZ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양자원의 부족과 불법 어로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사모아로서는 어족자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EEZ의 관리와 통제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275] 또한 연안생물자원의 감소와 서식지 파괴 등은 어민들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모아는 공동체기반 해양보호지역의 성공적인 실행과 연구를 위한 보다 많은 기술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276]

(10) 바누아투

바누아투는 인구가 약 25만 명이며 80개 이상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섬들의 총 면적은 약 1만 2,300㎢에 달한다. 바누아투는 산호섬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세계적인 휴양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광산업으로 인해 바누아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800달러에 이른다.[277] 그런데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바누아투는 간헐적인 화산분출과 지진,

273) Samoa, *Mauritius Strategy Implementation: National Assessment Report,* 2010, p. 16.
274) *Ibid*., p. 35.
275) *Ibid*., pp. 19~20.
276) *Ibid*., p. 36.

해일, 사이클론,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침식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료 : http://www.privateline.com/dailynotes/index11.html

| 그림 4-11 | 바누아투

①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대응

바누아투는 기후변화 국가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국가대응행동프로그램(National Adaptation Program of Action)을 개발하였으며, 몇 개의 기후변화대응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또한 바누아투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마을의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마을 하나를 높은 지대로 재배치시켰다.[278] 하지만 아직까지 바누아투는 종합적인 환경정책안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2012년에 가서야 환경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에 있다.[279] 이는 바누아투에서 아직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단편적인 대

277) http://en.wikipedia.org/wiki/Vanuatu.
278) Vanuatu, *Vanuatu National Assessment Report - 5 Year Review of the Mauritius Strategy of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 10.
279) *Ibid.*, p. 9.

응 노력들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바누아투는 기금이 마련되는 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협력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특히 해수면 상승의 피해방지를 위해 제방 구축 등의 사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해양자원 관리

바누아투는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과잉 어로행위, 해양오염, 토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해안지역 파괴 등으로부터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280] 하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못하여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개발협력과 연계하여 해양자원의 이용과 관리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③ 해상교통

수많은 섬들로 구성된 바누아투의 특성상 이동에 있어서 선박이 주요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배가 6개월에 1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해상교통 사정이 열악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뉴질랜드국제개발청(NZAID)이 섬들의 부두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본은 수도인 포트빌라(Port Vila)의 부두개선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281] 하지만 섬 주민들의 편익 향상을 위해서는 부두시설의 건설, 확충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여객선의 더 많은 운항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포트빌라 항구에 대한 항만관리 종합계획도 수립되어야 한다.[282]

---

280) *Ibid.*, p. 10.
281) *Ibid.,* p. 14.
282) *Ibid.*

2. 카리브해 소도서국

1) 지역 개발협력 개관

카리브해에는 총 23개의 소도서국이 있는데 이 중에는 미국, 영국 및 네덜란드의 자치령인 7개의 해외영토가 포함되어 있다.[283] 일반적으로 카리브해의 소도서국들은 태평양 소도서국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편에 속한다. 세계은행은 200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근거로 벨리즈와 가이아나를 중저소득국가(lower-middle income countries)로 분류하였다.[284] 반면 아이티의 경우 1,300달러, 가이아나 3,900달러 정도로 저소득국가로 분류되지만, 바하마(2만 5,800달러)와 트리니다드토바고(2만 6,000달러)의 경우 2만 달러(2009년 기준)가 넘는다.

실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카리브해 소도서국들의 경제성장은 다른 지역 소도서국들에 비해 양호하다. 동 기간 동안 평균 3.6%의 GDP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트리니다드토바고는 8.6%, 벨리즈 6.2%, 도미니카 공화국 6.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동 기간 동안 이 지역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은 5% 이하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285]

다만 이들 카리브해 소도서국들의 무역구조에 있어 특징은 EU, 미국, 캐나다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3개국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70%를 상회하면서 이들 3개국의 경제위기는 바로 카리브해 소도서국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해양관광업이 주요 산업인 이들 국가들

---

283) 16개 주권국가 중 쿠바를 제외한 15개국은 카리브공동체(CARICOM)를 구성하여 경제개발 및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7개의 해외영토는 다음과 같음: Aruba(네덜란드령), Anguilla(영국령), Montserrat(영국령), Netherlands Antilles(네덜란드령), Puerto Rico(미국령), United States Virgin Islands(미국령).

284) 이 두 국가의 소득은 미화기준 976~3,855달러 정도인 것으로 분류된다. ECLAC, “Caribbean Regional Report for the Five-year Review of the Mauritius Strategy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ment States(MSI+5)”, p. 2.

285) *Ibid.,* p. 9.

은 2009년 들어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286]

지리적으로 카리브해는 자연재해 중 허리케인에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6월부터 11월까지 지속되는 우기는 바로 허리케인이 덮치는 기간이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이 겪고 있는 자연재해의 강도가 계속 심해지고 있는 이유를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도서국이라는 지형적 약점으로 인해 협소한 경작지와 함께 자연재해가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식량공급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식량가격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 또한 경제적 난관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자연적·경제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카리브해 소도서국은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많은 선박들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해양 분야에서 수산업 부분은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으며, 강화되고 있는 수산업규정과 보호어종 증가로 해양보호구역이 카리브해 도서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 : www.caribbeandiving.com/islands

|그림 4-12| 카리브해 소도서국 분포

286) *Ibid.,* pp. 10~11.

카리브해 소도서국들은 과거 10여 년 동안 상당한 경제적 성장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성장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소도서국들은 자체적인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사회·경제구조 개선, 인적자원 개발 등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국가들의 노력은 카리브해 국가들의 연합체인 CARICOM을 통해서 보다 공고해지고 있다. CARICOM 회원국들은 국가경제사회 개발뿐 아니라 환경보호 및 보존에 관해서 매우 적극적이다. CARICOM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경제사회 발전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간사회개발국 내 지속가능개발과(Sustainable Development Division)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과에서는 소도서국에 대한 바베이도스이행계획(BPoA) 및 모리셔스전략(MSI)의 이행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하여 카리브해 소도서국들이 형성하고 있는 모임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카리브기후변화센터(Caribbean Community Climate Change Centre : CCCCC)이다. 동 센터는 2005년 설립되어 카리브해에서의 기후변화이슈에 관한 정보 총괄 및 관련 사항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UNFCCC와 UNEP, 기타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들과 연계하여 카리브해 기후변화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는 카리브재해비상관리청(CDEMA)이다. 동 관리청은 카리브해의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최소화 관련 정책관리 및 관련 기관의 협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연재해와 관련된 기후변화 및 영향, 그리고 피해 확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정책, 시스템 구축 등에 관여하고 있다. 셋째는 동부카리브해국가기구(OECS)이다. 동 기구는 카리브해 국가들의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임이다. 회원국들의 인적개발 및 경제성장을 도모하면서 환경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

여 환경관리계획(Environmental Management Strategy : EMS)을 개발하여 각 개별국가전략 및 지역정책으로 연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표 4-5 | 카리브해 소도서국들의 국가개발계획

국가	개발명	기간	내용	평가
안티구아 바부다	국가환경관리전략	2004-2009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중심으로 통합국가개발계획 수행 중	매우 양호
바베이도스	국가전략계획	2005-2025	MDGs를 고려하여 사회경제개혁을 추진 중 : 새로운 거버넌스창출, 사회자본확충, 사회기반시설조성 및 환경보전 등을 포함	매우 양호
벨리즈	호라이즌 2030	2010-2030	중장기 국가개발계획 수립 계획 중	-
도미니카	성장 및 사회보호전략	2006-2010	5개년 국가경제개발정책, 민간기업 성장환경조성 및 빈곤퇴치, 사회보호프로그램, 매년 사업이행 평가 실시	상당히 양호
그레나다	국가지속가능 에너지계획	2002	-	상당히 양호
	국가전략개발계획	2007-2011	-	
	국가개발계획	2003	공공서비스 관리개선 프로젝트	
가이아나	국가개발전략	2001-2010	사회경제개발에 관한 우선순위 설정	
	저탄소개발전략	2010	전반적인 국가개발전략 목표 설정, 가능한 최고도의 경제성장 달성, 빈곤퇴치, 경제활동의 형평한 지리적 배분, 경제의 다양화 추구	매우 양호
자메이카	자메이카 비전2030: 국가개발계획	2005-2030	4가지 국가개발계획 목표 설정: 사회성장 최대 잠재력 달성, 사회정의 달성, 자연환경 및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등	매우 양호
세인트 키츠 네비스	중장기경제전략	3개년 계획	국가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은 부재, 중장기경제전략은 매 3년마다 갱신, 거시경제 개혁 및 공공제도현대화, 공공재정관리 및 민간부문 개발 다양화, 빈곤퇴치 등 포함	최소 성공
세인트 루시아			단일개발전략 부재. 다만 2007년 개발정책일관성을 위한 준비, 중장기경재전략보고서에 포함.	매우 양호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	2010-2020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경제개발, 인력채용확대, 빈곤퇴출, 인적자원개발, 물리적 기반시설확충, 지역통합 심화 및 사회변혁, 재정통합	최소 성공
수리남	다차년도개발계획	2006-2011	매 5개년계획, 성장과 빈곤퇴치 중심	최소 성공
트리니다드 토바고	비전 2020	2005-2020	5개의 국가개발전략, 5개의 중심축으로 구성 : 개발혁신, 사회보호막 구축, 경쟁력 있는 기업양성, 건전한 기반시설 및 환경 투자, 정부의 효율성 촉진	매우 양호

자료 : ECLAC, “Caribbean Regional Report for the Five-year Review of the Mauritius Strategy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ment States(MSI+5)”, pp. 50~53.

지역적 차원에서 카리브해 소도서국들이 협력하고 있는 모임에는 카리브국가연합(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 ACS), 카리브재난위험보험기관(Caribbean Catastrophe Risk Insurance Facility : CCRIF), 카리브지역어업체제(Caribbean Regional Fisheries Mechanism : CRFM), MSI지역조정체제(Regional Coordinating Mechanism for the MSI)가 있다. ACS는 카리브해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관광업 지원, 재난기관협력,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에서 발표된 여러 선언 이행 등을 지원한다. CCRIF는 세계 최초 지역 차원의 복수국가위험관리풀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세계은행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CRFM은 2002년 수립되어 회원국의 EEZ 내에 분포하는 해양 및 기타 수생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MSI지역조정체제는 바베이도스 이행프로그램의 이행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그 외에도 카리브해 소도서국들은 자국의 국가개발 및 지역적 개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구환경기금(GEF), 독일기술협력청(German Agency for Technical Cooperation : GTZ) 등과 협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카리브해 국가들의 일반적인 개발협력 상황을 개관하였는데, 아래에서는 유엔에 제출한 국가별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국가들의 해양협력 수요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국가별 해양협력 수요

(1) 바베이도스

두 개의 조그만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베이도스는 2008년 기준 인구가 27만 5,300명 정도로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2007년 기준 바베이도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활성화된 관광산업으로 인해 약 1만 2,178달러로 소도서국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287] 또

287)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Water Resources and Drainage Government of Barbados,

한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바베이도스는 국제협력 등을 통해 해양 관련 주요 사안들에 대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료 : http://www.barbados.org/map_print.htm?Map=Barbados

| 그림 4-13 | 바베이도스

Barbados National Assessment Report of Progress Made in Addressing Vulnerabilities of SIDS through Implementation of the Mauritius Strategy for Further Implementation(MSI)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2010, p. 9.

①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대응

바베이도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거나 또는 그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부처에서 연안기반시설 정비 등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을 수행해 오고 있다.[288] 바베이도스는 캐리비안 지역의 기후변화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에는 여러 국제기구들과 미국 해양대기청(NOAA) 등이 후원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정부 내 주요 업무는 연안수역관리실(Coastal Zone Management Unit)에서 담당하고 있다. 연안수역관리실은 해안선 침식과 홍수 등으로부터 중요 공공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바베이도스는 국가평가보고서에서 스코틀랜드 지방의 해안 절벽 안전 문제와 같이 고도의 위험성 있는 정보에 대한 수집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연안의 취약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존 정보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갖춘 국가위험정보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동 보고서는 연안 수역에 대한 종합적인 취약성 및 위험성 평가를 위한 능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289]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이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반시설 사업 등은 여러 개발협력 프로그램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종합정보망 구축과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② 해양자원 관리

바베이도스는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해양경계획정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에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대륙붕한계확장을 위한 정보를 제출하였다. 바베이도스가 대륙붕한계확장을 위해 해저지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호주와 프랑스의 법적·기술적 원조가 있었

288) *Ibid*., pp. 18~21.
289) *Ibid.,* p. 106.

다. 이렇게 획정된 수역에서의 해양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직원들의 능력 향상 등의 사업을 위해 바베이도스는 식량농업기구(FAO)의 원조를 받고 있다.[290]

그런데 최근 바베이도스의 해양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안을 따라 펼쳐져 있는 산호초는 파도와 그로 인한 해안선의 침식을 막아주는 동시에 새로운 모래들을 만들어 내며, 휴양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섬 주변에 있는 이러한 산호초 또는 모래톱들의 80%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해안선 침식도 100년 동안 15m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내륙 또는 연안에서 기인할 수도 있으며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한 이슈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관광산업이 2008년 기준 바베이도스 국내총생산의 약 39%를 차지하고, 산업인구의 약 44%가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291] 따라서 바베이도스로서는 효과적인 해안선과 연안 자원관리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산호초 또는 모래톱의 훼손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보호와 관련한 개발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그레나다

그레나다는 2005년 기준 인구가 11만 명이며 2009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6,000달러 정도이다.[292] 국민들의 주 수입원은 천혜의 해변 등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에서 나온다. 따라서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와 해수면 상승 등은 관광산업을 크게 위축시켜 국민들의 삶과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290) *Ibid*., p. 36.
291) *Ibid*., p. 108.
292) http://en.wikipedia.org/wiki/Grenada#cite_note-imf2-2.



자료 : http://www.britishislesgenweb.org/grenada/.

|그림 4-14| 그레나다

①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대응

그레나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기후변화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기후정책행동계획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그레나다는 소도서국으로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적절한 정책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레나다는 다음과 같은 한계요인들을 가지고 있다.[293] 첫째, 소규모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상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니터링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변화·발전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들을 수용할 만한 자금이 부족하다. 셋째, 현재 그레나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리는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단계에 불과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거리가 멀다. 이와 같은 요

293) Grenada, *National Assessment Report: Grenada,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p. 22.

인들을 볼 때,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서 그레나다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개발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② 해양자원 관리

앞서 언급했듯이 관광산업은 그레나다 국가 경제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양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도 관광의 지속과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해양과 어업,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해양자원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들 부서 간 사업부문에 있어서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협조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육지의 농경지 등이 파괴되자 정부와 민간인은 해양관광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레나다는 해안가 관광단지 활성화와 수상택시 및 레저낚시의 증가 등이 해양자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우려하고 있다.[294]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아직까지 그레나다는 해양생물자원의 보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부족하며, 또한 해양관광레저 산업의 활성화가 연안의 환경, 나아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그레나다의 해양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제공과 환경영향평가 같은 기술적 원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3)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루시아는 2009년 기준 인구가 17만 3,765명, 1인당 국민소득이 5,670달러 정도인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섬나라이다. 관광과 바나나가 국가의 중요한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295]

---

294) *Ibid.,* p. 26.
295) http://en.wikipedia.org/wiki/Saint_Lucia.



자료 : http://www.x.com.pe/ciastats/geos/st.html

|그림 4-15| 세인트 루시아

①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대응

세인트 루시아는 국가기후변화 정책 및 적응계획을 수립하였지만,[296] 유엔 등의 원조를 통한 협력사업 외에 실질적인 정책을 펴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세인트 루시아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로 다음이 있다.[297] 무엇보다 정확치 못하고 불충분한 자료와 기술력 부족, 빈약한 인적 및 제도적 능력, 부족한 재정을 들 수 있다. 둘째, 그러한 자료는 기후변화 정책을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시행하게 하기 때문에 적절한 적응프로그램 마련과 정책형성에 장애로 작용한다. 셋째, 세인트 루시아는 아직까지 국가 전반에 걸친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홍수, 허리케인, 산사태, 해수면 상승으로

296)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Review of Progress Made in Addressing Vulnerabilities of SIDS Through Implementation of the Mauritius Strategy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MSI)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BPOA)”, 2009, p. 10.

297) *Ibid*., pp. 11~12.

인한 연안 침식 등에 특히 취약한 빈민들과 관광산업에 대한 대책이 없다.

② 해양자원 관리

세인트 루시아는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연안수역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연안수역관리 전략 및 행동계획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 분야 또한 정확한 자료 수집과 관리 능력이 부족하며, 이러한 정보의 부족은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용하다. 이와 관련해서 세인트 루시아는 자료 수집에 도움이 되는 훈련과 기술에 대한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298]

소도서국인 세인트 루시아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200해리까지 확대할 수 있는 EEZ와 200해리 이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대륙붕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세인트 루시아는 EEZ의 한계를 획정하고 해도를 작성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다. 그리고 해저지형과 지질을 탐사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대륙붕 한계확장을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따라서 세인트 루시아는 유엔해양법협약이 보장한 해양자원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적 및 재정적 원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299]

(4) 트리니다드토바고

196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트리니다드토바고는 트리니다드 섬과 토바고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섬의 총 면적이 5,128㎢에 이른다. 이 중 트리니다드 섬이 훨씬 크며 전체 인구의 95% 이상이 이곳에 있다.[300] 트리니다드토바고는 2009년 기준 인구가 130만 명, 1인당 국민소득도 약 1만 6,000달러에 달한다.[301] 따라서 카리브해 소도서국들 중에서는 인구와 경제

298) *Ibid.*, p. 23.
299) *Ibid.*
300) Republic of Trinidad and Tobago, *National Assessment Report on the Five Year Review of Progress Made in Implementation of the Mauritius Strategy for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2010, p. 4.
301) http://en.wikipedia.org/wiki/Trinidad_and_Tobago.

면에 있어서 상위에 속한다.



자료 : Wikimedia Commons

|그림 4-16| 트리니다드토바고

①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대응

트리니다드토바고도 기후변화에 대해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해수면 상승, 홍수의 증가, 언덕의 침식, 해안 서식지 파괴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 트리니다드토바고가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예컨대 소규모이면서 민감한 생태계, 선진국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다는 점, 세계적인 경제위기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 기술자원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302]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대처함에 있어 트리니다드토바고가 직면한 구체적인 제약요인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는데,[303] 이는 곧 국제적 개발협

302) *Ibid.*, p. 7.
303) *Ibid.*, p. 9.

력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이 트리니다드토바고에 미칠 영향에 대한 현재 평가의 불확실성
- 특히 역사적 자료를 포함한 기후변화 관련 불충분한 자료 혹은 자료의 부족
- 취약성 평가를 통해 인간과 자연에 기후변화가 미칠 영향을 확인함에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능력 부족
-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제도적 능력 부족
- 재해예측도(hazard map) 개발과 토지이용 정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들의 정부 정책화 작업필요
- 청정기술과 대체 연료, 물품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장려제도 도입 필요
-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 부족

② 해양자원 관리

트리니다드토바고는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해양생물자원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망그로브 숲과 연안 습지, 산호초 등은 지역적, 지구적 해양생태계 유지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트리니다드토바고의 해양 생태계는 해양오염, 해양자원의 남획과 불법 채취, 충분치 못한 육지 하수정화시설, 농장물 오염의 해양에 영향, 부적절한 연안관리, 해변의 모래 채취, 산업시설과 선박에서 기인하는 심각한 오염, 과잉 어로, 연안 수역과 어족자원의 파괴현상 등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304]

위와 같은 많은 문제들을 극복함에 있어 트리니다드토바고는 아래와

304) *Ibid.*, p. 15.

같은 한계 내지 과제를 안고 있다.[305]

- 해양 생물다양성/생태계의 가치와 그것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인식의 부족
- 장수거북과 같은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한 법령과 정책의 불충분한 집행
- 적절한 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의 부족
- 해양자원의 보존을 위한 지원금의 불충분한 이용
- 정책과 법률 이행 사이의 간극과 정부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빈약
- 자원에 대한 평가와 환경회계를 위한 적절한 방법론과 시스템의 부재
- 해양을 오염시키는 육지 기인 유해물질, 쓰레기, 하수 등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부족
- 랍스터와 같이 성장속도가 느린 동물들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잡는 것에서 비롯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로행위
- 레저 활동에서 비롯되는 모래톱의 파괴와 질병 전파
- 침략적 외래종(invasive species)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위협

(5) 카리브해 국가들의 환경문제

지금까지 유엔에 국가평가보고서가 제출된 카리브해의 주요 4개국을 중심으로 해양협력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국가별 평가보고서 외에 바베이도스 프로그램의 추가적 이행을 위한 모리셔스 전략에 관한 카리브해 지역 전체의 5개년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안고 있는 과제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카리브해 소도서국들은 저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수질오염, 산림파괴, 자료부족 등으로 인해 상당한

305) *Ibid*., p. 17.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6 | 카리브해 소도서국들의 환경문제 우선순위

국가	최우선 과제	우선 과제	2차 과제
안티구아 바부다	- 법률 및 정책 부족	- 개발관행 관리 미숙	- 실질적 개발계획 부재
아루바	-	-	-
바하마	- 환경에 대한 관광업 영향평가 - 산호초 백화현상	- 폐기물 처리	- 수질오염
쿠바	- 산림 파괴	- 생물다양성 소실	- 공기 및 수질 오염
도미니카	- 농약 및 비처리오수로 인한 오염 - 연안역 오염	- 토질저하	- 심각한 자연재해(허리케인, 폭우, 산사태, 홍수, 산사태, 지진, 화산)
도미니카공화국	- 물부족 및 수질오염	- 과도한 퇴적으로 인한 환초지대 파괴	- 산림 파괴
가이아나	- 산림 파괴	- 수질 오염	- 고형폐기물 관리
그레나다	- 부적절한 개발 관행으로 인한 환경자본 감소	- 법률/제도 내 조정능력 부족	- 다자협정의 의무조항에 대한 조정능력 부족
네덜란드 안틸루스	-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	- 석유정유 및 석유환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 관광업의 환경영향평가
세인트 키츠 네비스	- 자료 부족	- 산림 파괴 및 토양 소실	- 수질 오염
세인트 루시아	- 산림 파괴, 무계획적 개발 및 무단점거	- 고형 및 액형 폐기물 관리	- 자연재해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 기후변화	- 토질 저하	- 생물다양성 보존
수리남	- 산림 파괴	- 광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 내수의 수로오염
트리니다드 토바고	- 기후변화	- 생물다양성 관리	- 폐기물 관리
US버진아일랜드	- 자연담수자원 부족		

자료 : ECLAC, “Caribbean Regional Report for the Five-year Review of the Mauritius Strategy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ment States(MSI+5)”, p. 67.

3. AIMS 소도서국

1) 지역 개발협력 개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과(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분류에 의하면 AIMS(Africa, Indian Ocean, Mediterranean and South China Sea) 소도서국으로 8개국(카보베르데, 코모로, 기니비사우, 몰디브, 모리셔스, 상투메 프린시페, 세이셸, 싱가포르)이 있다.

AIMS 소도서국들의 국토면적은 국가 간 차이가 매우 큰 편이다. 면적이 가장 큰 기니비사우는 3만 6,000㎢로 우리나라 경기도 면적의 약 3배 정도 되는 반면, 가장 작은 몰디브는 서울의 강북(297.83㎢) 정도에 불과하다. 바레인, 세이셸,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는 경작 가능한 면적이 국토면적의 2% 정도 수준이어서 농업이 거의 불가능한 나라이다. 그러나 모리셔스의 경우 국토면적의 절반 정도가 농경지로 이용할 수 있어 농업이 매우 유망할 수 있다. 이들 AIMS 소도서국들은 모두 도서국들이기 때문에 수산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난다.[306]

AIMS 소도서국들은 바레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식량과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에너지 및 식량위기에 매우 취약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사회경제적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06) AIMS, “AIMS Regional Synthesis Report for the Five-year Review of the Mauritius Strategy for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SIDS(MSI+5)”, 2010, p. 5.

| 표 4-7 | AIMS 자원 및 국민소득

	카보 베르데	코모로	기니비 사우	몰디브	모리 셔스	상투메 프린시페	세이셸	싱가 포르
국토면적 (㎢)	4,033	2,235	36,125	298	2,040	1,001	455	704
경작면적 (㎢)	11%	35%	11%	10%	49%	2%	2%	2%
자원	소금, 석회석, 수산물	수산물	수산물, 목재, 인산염	수산물	농경지, 수산물	수산물, 수력발 전	수산물, 코프라	수산물
1인당 GDP(달러)	5,570	5,561	211	3,454	5,846	912	8,203	22,680

자료 : AIMS, “AIMS Regional Synthesis Report for the Five-year Review of the Mauritius Strategy for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SIDS(MSI+5)”, 2010, p. 5.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AIMS 소도서국들의 경제와 국가 안정에 중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307] 그래서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체약국으로 자국 내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2009년 9월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 AfDB)은 인도양위원회(Indian Ocean Commission : IOC)와 양자협의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308]

AIMS 국가들은 국가간 국토 및 경제개발 수준의 편차가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공통된 개발협력 기반을 설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모리셔스 전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도서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국가개발전략(NSDS)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NSDS 수립을 통해 지역계획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307) *Ibid.,* p. 23.
308) *Ibid.*, p. 24.

는 동의하나 아직까지 모든 국가들이 NSDS를 수립한 것은 아니다.[309)]

이러한 상황은 남태평양 도서국들과 비교할 때 지속가능한 개발을 수행하기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AIMS 국가들은 일부 분야 또는 중요성이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 NSDS를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다. 코모로의 경우 NSDS를 수립하지 않았으나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부분적으로 수립하였다. 기니비사우의 경우, 국가개발전략계획(NSAP)을 수립 중인데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2004년 국가환경관리계획(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더욱 체계적인 NSAP를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 Ⅲ 4-8 | AIMS 국가개발전략 수립 현황

국가	내용
코모로	국가 환경관리 계획 (2004)
몰디브	지속가능개발국가전략(1999)
모리셔스	국가개발전략(1997)
세이셀	환경분야지속가능개발계획
상투메프린시페	지속가능국가환경계획, 기후변화적응계획, 생물다양성보존이행계획, 관광계획

자료 : 연구진 작성

이러한 NSDS는 지역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과 협력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은 AIMS 국가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써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모두 UNFCCC를 비준하였다. 그리고 일부 국가들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다. AIMS 국가들은 모두 생물다양성협약에 비준하였으며, 해양환경보존을 위하여 관련된 지역 및 국제협약에 모두 가입하였다. 그 외에도 AIMS 국가들은 '아프리카개발

309) AIMS "Regional Synthesis Report for the Five-Year Review of the Mauritius Strategy for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SIDS(MSI+5)", 2010, p. 19.

을 위한 뉴파트너십(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 NEPAD)' 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다. NEPAD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빈곤퇴치와 함께 관광산업의 체계화, 과도한 수산업자원 고갈 방지 및 기타 생물자원 보호 및 생태계 보존 등의 분야에서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AIMS 국가들은 서부인도양, 동부대서양, 지중해, 남중국해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기구에 의해 통합 관리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다만 이들 지역 중 많은 국가들이 남서부인도양에 분포하기 때문에 AIMS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기구로는 인도양위원회가 있다. 이 기구의 회원국은 코모로,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과 프랑스의 일부 자치령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구는 해당지역의 외교, 경제, 무역, 농업, 수산업, 생태계 및 자원보존, 문화, 과학 및 교육 등 전 방위 분야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기구의 분담금은 회원국으로부터 대부분 지원되며, EU가 상당부분 기여금을 제공하고 있다.[310] 그런데 이 지역 도서국들의 다방면에 대한 개발지원을 위한 유엔기구가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도 이 지역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국제적 수준의 협력기구의 수립 및 개발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311]

아래에서는 유엔에 제출한 국가별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지역 주요 소도서국들의 해양협력 수요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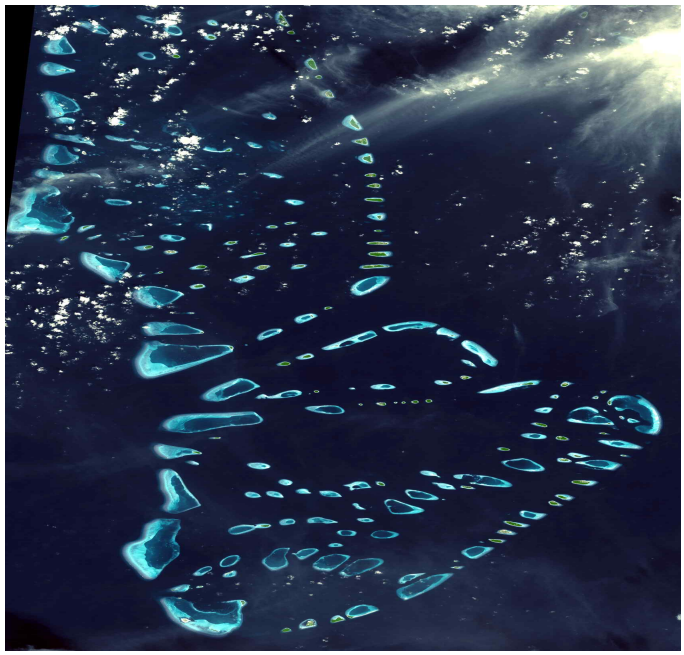
2) 국가별 해양협력 수요

(1) 몰디브

인도양에 위치한 몰디브는 1,190개의 아름다운 섬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198개 섬에서 총 31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육지의 총 면적은 300㎢

310) *Ibid.,* p. 84.
311) *Ibid.*

에 불과하지만 EEZ는 85만 9,000㎢에 이른다.[312]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몰디브는 기후변화와 해양자원 등에 대응함에 있어 심각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자료 : Wikimedia Commons

|그림 4-17| 몰디브 위성사진

①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대응

몰디브는 1,000개가 넘는 천혜의 산호섬들을 가지고서 세계인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국가 존립위기에 처해 있다. 태풍이나 해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작은 섬들은 이동하거나 파괴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 생겨나기도 한다. 무엇보다 몰디브의 섬들은 해발 3m를 넘지 않으며 그중 80% 이상은 1m도 채 되지 않는다. 따라

312) Maldives, *National Assessment Report 2010,* p. 4.

서 해수면 상승은 국가 전체를 수몰시킬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협 요인이다. 최악의 예측 시나리오에 의하면 2100년이 되면 1990년 기준으로 해수면이 88cm가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 그럴 경우 국가의 대부분은 수몰되고 만다.[313]

이미 많은 섬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바닷물의 범람과 침식으로 해안가 피해를 겪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섬들의 97%가 이미 침식되고 있으며 이 중 64%는 심각한 수준이며, 또한 87개의 관광 리조트 중 45% 이상이 심각하게 침식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314] 더욱 심각한 것은 모든 섬들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 주거지를 해안에서 내륙으로 이동시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몰디브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고립, 취약한 경제, 넓게 산재해 있는 섬들은 몰디브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315] 실제로 몰디브는 해안선관리계획(Shoreline Management Plan)과 국가전략행동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파도와 태풍 등으로 인한 해안의 침식을 막기 위해 방파제 건설과 식목 등의 사업에 대한 국제적 협력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자체에 대한 지구적 대응이 효과를 가져야 몰디브의 위기도 해결될 것이다.

② 해양자원 관리

몰디브는 전통적으로 참치어업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약 1만 5,000명의 어민이 1,200개 정도의 어선을 가지고 있다. 몰디브는 지속가능한 어업, 젊은 층의 어업 분야 종사 확대, 수출 확대, 연구와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316]

---

313) *Ibid.,* p. 7.
314) *Ibid*.
315) *Ibid*., p. 5.
316) *Ibid.*, pp. 28~29.

해양자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몰디브는 특히 다음 사항들에 대한 제약사항들을 가지고 있는데,[317] 이는 곧 국가들의 개발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첫째, 어선의 경우 냉동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이 많아서 어획한 고기들의 저장과 수송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효율적인 해양자원을 관리하기에는 현재의 법률 체제가 충분하지 못하다. 셋째, 연료와 얼음, 식수 등을 제공하는 현대적 시설을 갖춘 어항이 없다. 넷째, 몰디브가 수산양식에 적합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③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산호섬으로 구성된 몰디브에는 산호로 인한 특이하고도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적어도 1,090종의 어류와 187종의 산호초 관련 생물들이 몰디브에 의해 확인되었다.[318] 그리고 많은 섬들은 작은 습지와 해초류들을 가지고 있다. 몰디브는 33개의 보호지역을 설정하였는데 이 중 28개가 해양보호지역이며, 이 지역들은 환경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319]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와 대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항구와 같은 해안 개발로 인해 해양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 그리고 인구 증가와 경제발전으로 인해 해양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협하고 있다.[320] 따라서 몰디브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연구 프로그램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 그리고 취약한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이 필요하다.

317) *Ibid.,* p. 29.
318) *Ibid.*, p. 39.
319) *Ibid.*, p. 41.
320) *Ibid.*, p. 40.

(2) 모리셔스

인도양의 남서쪽에 위치한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옆 마다가스카르에서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국가로, 육지 면적은 약 2,000㎢, 인구는 약 130만 명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약 6,838달러 정도이다.[32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리셔스는 다른 소도서국들에 비해 해양문제에 대해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 Wikimedia Commons

|그림 4-18| 모리셔스

①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대응

모리셔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대응 프로그램들을 실행해 오고 있다. 유엔의 2005년 모리셔스 전략회의 이후, 모리셔스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2008~2009년 예산에서 정부

321) http://en.wikipedia.org/wiki/Mauritius.

는 400만 달러 기금을 편성해서 '지속가능한 모리셔스섬'(Maurice Ile Durable)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또한 모리셔스는 기상관측소 자동화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으며, 에너지절약형 전구 사용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에너지사용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고, 풍력·수력·태양열 에너지 등의 생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해안 침식에 연약한 지역은 해변 침식 방지 구조물 설치와 주차 공간 마련 등의 사업을 통해 해안을 보호하고 있으며, 산호초에 대한 정밀한 모니터링과 4km 정도의 해안선 복구 작업을 수행하였다.[322]



자료 : Republic of Mauritius, *Mauritius Strategy for Implementation: National Assessment Report 2010*, p. 18.

|그림 4-19| 해안선 정비 전후의 모습

하지만 모리셔스도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어려움들을 안고 있다. 첫째,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효율적인 조정 부족, 둘째, 재정과 훈련된 인적 자원의 부족, 셋째,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율이 높다는 점, 넷째, 이산화탄소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 다섯째, 연안수역의 발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의 부족인데 연안수역 관리와 개선을 위해서는 양질의 자료가 필요하다.[323]

322) *Ibid*., p. 18.
323) *Ibid*., pp. 19~21.

② 해양자원 관리

모리셔스는 해양자원 관리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여러 해양보호구역 지정, 시범적인 산호 양식 사업 시행, 지역적 기구들과의 협력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모리셔스는 2009년 3월 세이셀과 공동으로 대륙붕 한계확장을 위한 자료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5월에는 로드리게스 섬을 기초로 한 대륙붕한계확장을 위해 독자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였다.[324]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리셔스는 해양자원에 대한 남획과 지나친 개발로 인한 자원파괴 위협을 받고 있으며, 광활한 EEZ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밖에도 모리셔스는 불충분한 인적・재정적 자원, 어업연구에 필요한 재정 부족과 고비용, EEZ 내 어족자원에 대한 조사 능력 부족 등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③ 생물다양성 보존

모리셔스는 2010년까지 10개년 국가생물다양성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모리셔스는 도시화, 토양 오염, 자연재해, 토양 침식 등으로 인해 생물다양성 보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한적이며, 국립공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 담당자들의 전문 능력은 배양될 필요가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부족하다.[325]

(3) 상투메프린시페

상투메프린시페는 아프리카대륙 서쪽에 위치하며 두 개의 주된 섬과 조그만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섬들의 전체 면적은 1,001㎢인데 여타의 소

324) *Ibid*., pp. 41~43.
325) *Ibid*., p. 91.

도서국과 다른 점은 가장 높은 산이 해발 2,024m에 이를 정도로 울퉁불퉁한 산악지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 기준 인구는 약 13만 7,600명 정도이다.[326]



자료 : http://www.lib.utexas.edu/maps/sao_tome.html

| 그림 4-20 | 상투메프린시페

①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대응

상투메프린시페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소도서국들과는 달리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인식과 대응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예컨대 해안 지형의 침식 방지, 온실가스 감축, 해안 침식으로 인한 해안 마을과 시설물 보호, 기상청의 능력 확대, 날씨경보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단계이다.[327] 다만 지구환경기금

326) São Tomé and Principe, *National Assessment Report*(Draft Translation), 2009, p. 4.
327) *Ibid.*, p. 9.

(GEF)과 세계은행의 재정지원을 받아 기후변화에 대한 연안수역 적응 프로젝트와 UNDP의 재정지원과 일본 정부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농업, 산림, 식수에 관한 통합 프로젝트를 개발한 정도이다.[328]

이처럼 상투메프린시페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의 이행수준은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상투메프린시페 정부는 국민 생활에 있어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취약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기후경고시스템 구축, 국민들의 인식 제고, 비상전략계획 수립, 민간인 보호 담당 기관의 기술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동시에 이를 이행하는 데 자금부족이 가장 큰 제약요소로 작용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원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329]

② 해양자원 관리

관광과 어업이 양대 중요 산업인 상투메프린시페에 있어서 해양자원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상투메프린시페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지역 파괴와 침식, 남획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영해와 EEZ에서의 어업 감시와 통제 능력 부족 등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330]

다만 상투메프린시페는 국제협력을 통해 열악한 어업환경의 일부 개선을 이루었다. 예컨대 일본 정부가 제공한 현대식 소형 선박은 어부들의 어업 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며, 카누 건설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 농업개발국제기금(IFAD)와 프랑스개발청(AFD)의 재정지원을 통해 도입되었다. 그 밖에도 국제협력을 통해 EEZ에서의 불법어업 감시를 위해 레이더시스템이 설치되었다.[331]

그러나 위와 같은 국제협력은 매우 제한적이고 지엽적으로 이루어지

328) *Ibid*., p. 10.
329) *Ibid*., pp. 10~11.
330) *Ibid*., pp. 15~16.
331) *Ibid*., p. 16.

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상투메프린시페가 해양자원 관리 관련 바베이도스 프로그램에서 요하는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투메프린시페 정부가 이 분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종합적인 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부터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투메프린시페는 주민들의 주된 단백질 공급원인 생선을 저장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냉동시설이 특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시설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332]

(4) 세이셸

아프리카 대륙 동부의 인도양에 위치한 세이셸은 155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섬들의 총 면적은 455㎢에 불과하다. 또한 인구도 8만 5,000명에 불과하여 전형적인 소도서국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333] 하지만 관광과 어업을 주로 하는 세이셸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9,000달러로, 이는 가까이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이셸도 2008-2009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332) *Ibid*., p. 17.
333) UNDESA and Government of Seychelles, *National Assessment Report: Republic of Seychelles (2004-2009)*, 2010, pp. 4~5.



자료 : http://www.ocrhk.com/ensey.htm

| 그림 4-21 | 세이셸

①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대응

세이셸은 국가의 기후변화 전략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환경부 내에 기후환경국을 설치하는 등의 조직을 정비하였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충분한 대비 프로그램이 실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세이셸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334] 무엇보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데, 세이셸은 중소득(middle income) 국가로 분류되어 국제기금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최근 EU가 200만 유로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둘째,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하지만, 세이셸은 전기와 수송을 위해 대부분 화석연료를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인적 능력이 필

334) *Ibid*., p. 13.

요하다. 셋째, 세이셸은 비록 산이 있기는 하지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발전소 같은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과 마을들이 해안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안의 상당한 부분이 해발 몇 피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간의 해수면 상승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프로그램 하에 해안선 정비와 같은 많은 사업들의 이행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인적 자원과 기술력이 부족하다.

② 해양자원 관리

여느 도서국과 같이 세이셸도 해양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세이셸은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의 관리를 위해 지구환경기금(GEF)로부터 36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았으며, 람사르(RAMSAR)의 후원 하에 습지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프랑스 정부의 지원 하에 원양어업연구 프로젝트를 2000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으며, EU의 기금을 통해 참치 어족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프로젝트가 2005-2010년 동안 실시되었다. 또한 EU의 지원을 통해 대서양 연안수역에서의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이용을 위한 지역프로그램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국가들의 원조를 통해 연구와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다.[335]

그러나 위와 같은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들은 모두 국제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이셸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를 위해 세이셸이 가지고 있는 주된 제약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세이셸은 무엇보다 재정이 부족한데,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국내 자금 지원이 줄어들었다. 둘째, 세이셸은 해양과 연안관리 분야의 인프라와 우수한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셋째, 장기

335) *Ibid*., pp. 18~19.

적으로 해저 생물자원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부족하다.[336]

③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세이셸은 제2차 환경관리계획(2000-2010)을 통해 외래 침략종들을 퇴치하고 토종들을 되살리는 것을 포함해서 섬의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해양자원 관리에서와 같이 국제협력을 통해 고래상어의 모니터링·추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여러 프로젝트들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제3차 환경관리계획(2010-2020) 동안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생물 서식지 파괴, 생물다양성 위협 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 더욱 체계적인 실행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세이셸은 재정부족과 빈약한 인적자원과 사회 인프라 때문에 국제사회의 협력 없이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337]

336) *Ibid.,* p. 19.
337) *Ibid*., p. 26.

4. 해양협력 수요 평가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소도서국들의 해양협력 수요에 대해 20여 개국에 대한 국가별 검토를 하였다.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국가들 마다 처한 사정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지만 이들 국가들에 대한 개발협력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별 국가들의 구체적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본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 비록 소도서국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국민소득 기준으로는 선진국에 속하기 때문에 해외의 공적개발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몰디브의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국가 존립위기에 처해 있으며, 넓게 퍼진 수많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태평양 도서국인 마이크로네시아의 경우 섬들 간 이동 수단인 선박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파도와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해안선의 침식과 침수 문제, 해양 자원의 관리 문제 등에 대해 소도서국들은 대부분 독자적 대처역량을 가지지 못해 해외의 개발협력에 의존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는 본 장에서 검토한 개별 국가들의 이러한 개발협력 수요의 정도를 크게 4개 항목으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계량화 시도는 국가들의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다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표는 소도서국들의 해양협력 수요를 개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유의하면서 살펴보아야 한다.

| 표 4-9 | 소도서국들의 주요항목 해외 개발협력 수요 평가

지역	국가	기후변화/해수면상승	수산(해양생물자원)	항만시설/해상교통	자연재해
태평양 지역	키리바시	△	△	▲	△
	투발루	▲	▲	-	▲
	솔로몬군도	▲	△	△	▲
	마이크로네시아	▲	▲	△	▲
	피지	▲	△	-	▲
	마샬군도	▲	△	-	▲
	나우루		△	-	-
	팔라우		△	-	△
	사모아	△	△	-	-
	바누아투	△	△	▲	▲
카리브해 지역	바베이도스			-	
	그레나다	△	△	-	△
	세인트 루시아	△	△	-	△
	트리니다드토바고	△	△	-	△
AIMS 지역	몰디브	▲	▲	-	▲
	모리셔스		△	-	
	상투메프린시페		△	-	
	세이셸	△	△	-	-

주 : 수요정도 표시 ▲ = 매우 높음; △ = 높음; - = 정보 없음
자료 : 연구진 작성

위 표에서는 소도서국들의 해양협력 수요도를 표시하였다. 아래에서는 위 표 중에서 수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들의 대표적인 수요내용을 예시하였다. 실제 소도서국과의 개발협력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4-10 | 소도서국의 개발협력 수요도가 높은 항목의 대표적 내용

지역	국가	기후변화/해수면상승	수산(해양생물자원)	항만시설/해상교통	자연재해
태평양 지역	키리바시	마스터플랜	참치어업지원 해양오염방지	여객선	태풍피해
	투발루	국토수몰위기 기후변화교육	어업지원 전문기술	-	태풍피해
	솔로몬군도	해수 유입 (침수)	수산가공사업 양식업	부두건설 방파제	지진, 쓰나미
	마이크로네시아	도로개선, 전문가 자문	지속가능한 어업능력향상	항만 건설, 여객선확보	-
	피지	해수면상승과 해안침식 기후변화대응	법제도 정비, 불법어업규제	항만시설· 시장 개선	홍수
	마샬군도	해안선 정비	마스터플랜	-	태풍, 지진, 해일
	나우루	-	재정 지원	-	-
	팔라우	전문가 부족	양식업기술	-	-
	사모아	재정 지원	MPA기술 불법어업규제	-	태풍피해
	바누아투	해안침식 마을 침수	과잉어로, 해양오염	항만종합관리 여객선확보	화산폭발, 지진, 해일, 홍수
카리브해 지역	바베이도스	해안침식 기후변화대응 연안관리교육	-	-	-
	그레나다	인적·기술적 능력 부족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	허리케인
	세인트 루시아	연안역관리 교육	인적·기술적 능력 부족	-	홍수, 허리케인
	트리니다드토바고	기후변화 종합대응능력	서식지 파괴	-	홍수
AIMS 지역	몰디브	국토 수몰	어선 및 어업시설개선	-	태풍, 해일
	모리셔스	-	생물다양성 해양보호구역	-	-
	상투메프린시페	연안수역적응 재정 부족	어업지원 어업환경개선	-	-
	세이셸	해수면상승 인적기술지원	재정 부족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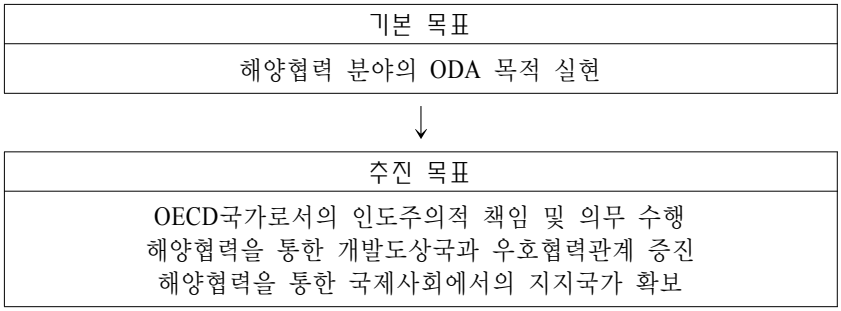
자료 : 연구진 작성

제 5 장 소도서국(SIDS)과의 해양협력 방안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대외원조를 통한 소도서국들과의 해양협력방안을 도출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소도서국들과의 해양 분야 대외원조의 필요성(1장)과 소도서국들의 협력 수요(제4장)를 바탕으로 하여 ⅰ) 기본방향, ⅱ) 추진 목표, ⅲ) 협력 분야 도출, ⅳ) 추진 방향, ⅴ) 추진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장의 내용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소도서국들과의 해양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1월 15일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국제개발협력사업(공적개발원조, ODA)의 기본정신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중기지원전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목표 설정

소도서국과의 해양 분야 국제개발협력(대외원조)의 기본 목표는 유엔이 제시한 천년개발목표 및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에 나타난 기본정신 및 목표에 부합되도록 설정하였다. 즉 해양협력 분야에서 대외원조(ODA)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추진 목표로는 1) OECD-DAC 국가로서의 인도주의적 책임 및 의무 수행, 2) 해양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과 우호협력관계 증진, 3) 국제사회에서의 지지국가 확보 등 세 가지로 하였다.

1) ODA의 일반적 목적

기본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목적(동기)에 대하여 고찰해 보면, 일반적으로 ODA의 목적과 동기는 이를 시행하는 국가의 역사, 문화, 정치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또한 시대적 배경과 여건에 의해서도 달리 나타난다. 보통 ODA는 최빈국이나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원국을 순수하게 돕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국가별로 살펴보면 공여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ODA의 목적과 동기를 일반적으로 분류하면, 정치·외교적 동기, 경제적 동기, 인도주의적 동기, 그리고 상호주의적 동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동기, 경제적 동기, 인도주의적 동기는 ODA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 많은 국가에서 보아 온 전통적인 동기에 해당되지만 상호의존적 동기는 1980년대 이후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부상된 동기이다.[338]

(1) 인도주의적 목적(동기)

인도주의적 동기에 의한 ODA는 민주주의 실현, 인권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 기본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시행하는 원조이다. 잘사는 국가들이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는 관점이다.

338) 농림수산식품부(2010), p. 140.

인도주의적 동기에 의한 원조의 사례는 대표적으로 유엔의 원조가 이에 해당된다. 유엔은 천년개발목표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해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개발도상국이나 빈국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소도서국과 관련해서는 1994년 이후 '소도서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원(BPoA)'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유엔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할 지역이 소도서국임을 지적하고 이들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지 못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다음의 5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작은 규모(small size) 때문이다. 작은 인구규모는 경제성장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공공서비스와 기반시설 비용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요인이 된다. 둘째, 원거리성(remoteness)이다. 많은 소도서국들은 지리적으로 주요 경제구역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운송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교역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거리를 수송할 때 수송비와 통신비가 높다. 셋째, 외부의 수요공급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 to external demand and supply-side shocks) 때문이다. 소도서국들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며,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체적인 상품생산보다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위기에 대해 국가 경제의 소규모적 특성과 수송의 원거리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부 요소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넷째, 빈약한 자원기반(narrow resource base)이다. 소도서국들은 천연자원 기반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에너지, 물, 광물, 농업자원 등의 이용에 있어 한계가 있다. 다섯째, 세계적 환경문제에 대한 노출(exposure to global environmental challenges)이다. 소도서국들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적 환경문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식량안보 및 생태계 적응체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호초 지역의 파괴, 관광자원 고갈, 생물다양성 고갈, 폐기물 오염, 담수 부족 및 해양의 산성화 등 다양한 환경재

앙이 오늘날 소도서국을 위협하는 총체적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339]

따라서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소도서국들의 어려움은 악순환을 반복하여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나우루는 과거 인광석(고급 비료의 원료) 판매로 1980년 2만 달러에 달하는 국민소득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광석 고갈과 함께 찾아온 지구온난화의 재앙으로 나우루는 심각한 해수면 상승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국가안전이 불안해지면서 국가행정체계도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있으며 불편한 교통으로 관광업과 어업도 용이하지 않아 국민소득 수준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투발루 또한 나우루와 비슷한 형편으로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바다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어 뉴질랜드에 공식적인 이민을 요청한 바가 있을 정도이다.

(2) 정치 · 외교적 목적(동기)

정치 · 외교적 동기는 공산화 방지, 국제질서 안정, 국제사회에서의 지지국 확보 등 정치 · 외교적 이유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치 · 외교적 동기에 의한 원조는 1950년대 냉전체제 하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되어 있던 국제사회에서 어떤 국가들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일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시행되었던 마셜플랜(Marshall Plan)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같은 이유로 6.25 이후 서방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아 왔다. 정치 · 외교적 동기는 강대국에 의한 원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태평양 도서국에 많은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는 정치 · 외교적 목적도 다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개정된 일본의 공적개발에 관한 헌장을 살펴보면, 일본은 대외원조의 목적을 국제사

339) *Ibid.,* p. 8.

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일본의 안보와 번영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340] 이러한 목표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결과 JICA의 남태평양 도서국가 지원사업의 핵심 목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과거 제2차 대전 당시 남태평양 도서국을 점령하여 전쟁을 벌이면서 자행한 전쟁책임에 대한 보편적 책임의식과 함께 이들 국가의 저개발 해결문제를 일본의 외교적 책임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남태평양 소도서국들에 대한 개발협력 목적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사업장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외교적 협력 창구로써 국제적 지지와 과거 전쟁책임에 대한 보상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경제적 목적(동기)

경제적 목적 또는 경제적 동기는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공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공여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공여하여 그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면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따라서 공여국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여 해외진출 발판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자원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원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원조를 공여하는 국가가 많다. 예를 들어 중국이 아프리카에 원조를 시행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장기적인 자원확보를 위한 경제적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속성 원조(tied aid)는 대부분이 경제적 동기에 의한 원조에 해당된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정책은 개발원조에 상응하는 이해관계를 고려한 즉, 경제적 이유에서 반대급부를 고려한 원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341]

---

340) 권율, 「OECD 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KIEP, 2009, p. 103.
341) *Ibid.,* p. 156.

(4) 상호의존적 목적(동기)

상호의존적 동기는 1970년대 이후 지구촌에서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간 의존도가 증대되고 한 국가의 상황이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나타난 목적(동기)이다. 오늘날과 같이 인구와 정보의 유동성이 높고, 국가와 지역 간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사회에서는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다른 지역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의 문제와 같이 한 국가의 문제가 지구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가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밖에 없다는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상호의존적 동기는 198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20세기 이후 크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4가지 범주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의 원조 목적(동기)을 살펴보면 국가마다 달리 나타나고 있다. 호주는 대외원조의 목적이 자국의 국익 증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342] 호주는 특히 지리적 인접성과 자국의 국익 증진을 위해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대외원조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중국 자체가 수원국에 속하고 있지만, 급속하게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외원조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원 확보를 위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대외원조에 치중하고 있다.

일본은 대표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외원조를 시행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일본은 아시아권에서 제일 먼저 대외원조를 시행한 국가로서 전반적으로 많은 국가에 원조를 공여하고 있으나 원조의 1차 목적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은 2000년대 이전까지 구속성 원조를 많이 시행하여 왔다.

342) OECD(DAC)(2000), “Managing Aid : Practices of DAC Members Countries”, Paris : DAC.

정치・외교적 목적을 위하여 대외원조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과 대만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특히 안보전략적인 차원에서 국제관계 유지 및 자국의 안보유지 목적에서 원조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시기에는 사회주의의 확산 억제를 위하여, 중동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의 안보와 아랍권과의 긴장 완화를 위하여, 그리고 9・11 사태 이후에는 테러 억제를 위한 대외원조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원조청(USAID)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을 개선시킨다는 인도주의적 목적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343)]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의 위상을 확보하고 향상하는 데 대외원조의 1차 목적이 있다. 대만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특히 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원조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표 5-1 | 주요국의 대외원조개발 목적 및 중점 지원국

국가	원조 목적	중점 지원국
한국	인도주의적 목적	동티모르, 이라크
미국	정치・외교적 목적(안보전략형)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바레인, 동티모르
일본	경제적 목적	중서부태평양 국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자원부국 중심
중국	경제적 목적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자원부국 중심.
EU	인도주의적 목적	수단 등 아프리카,
호주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호주의 국익 증진	인도네시아, 이라크, PNG, 솔로몬군도 등 주변국
대만	정치외교적 목적	인도네시아, PNG, 솔로몬군도, 아이티 등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2010) 및 박복영(2007) 참조 및 보완

343) 박복영(2007)은 원조의 목적을 인도주의형, 식민지관리형, 경제실익형, 안보전략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안보전략형은 정치외교적 목적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특히 식민지관리형 국가에 프랑스, 벨기에, 호주, 포르투갈, 영국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유엔의 경우 국제기구의 취지상 인도주의적 목적의 대외원조가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민주주의 이념을 수호하고 공산주의・테러 등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정치・외교적 목적이, 일본과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적 동기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적으로 최근까지는 경제적 동기에서의 대외원조를 시행하여 온 것으로 분석되나, 2010년 1월에 제정되고 7월부터 적용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보면 제1조에서 우리나라 ODA의 목적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원조 방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조의 목적을 명시한 것은 우리나라가 DAC 가입국가로서 이에 상응하는 명분과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2) 해양 분야 ODA의 목적

이상과 같이 국가별로 대외원조의 목적을 살펴보았지만, 유의할 점은 국가들이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대외원조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 목적을 가지고 대외원조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국가들의 대외원조 목적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도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소도서국과 관련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종전까지는 경제실익형 대외원조를 추구하여 왔기 때문에 어업부문을 제외하고는 소도서국에 대한 원조의 이유가 별로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통하여서도 확인되고 있다. KOICA의 ODA 협력대상국 56개국 중 중점협력국 19개국에 소도서국은 1개국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일반협력국으로서 아시아 지역에 동티모르, 피지, 파푸아뉴기니 등 3개 국가, 중남미에 도미니카 공화국, 자메이카 등 2개 국가가 있다. 즉 소도서국

(SIDS) 중 단지 5개국만이 우리나라의 협력대상국에 속한다(<표 5-2> 참조).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소도서국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도에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대외원조의 목적을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정책의 기조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도서국들이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갖는 의미를 반영한다면 향후 소도서국들에 대한 원조가 명분과 실익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부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실익까지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 표 5-2 | KOICA의 ODA 협력 대상국

구분	국가명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동구·CIS
중점협력국 (19개국)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이집트,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세네갈, 나이지리아	과테말라, 파라과이, 페루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일반협력국 (37개국)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중국, 파키스탄, 피지, 파푸아뉴기니	모로코, 알제리,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카메룬, 튀니지, 가나, 코트디부아르, 콩고, 케냐, 수단, 마다가스카르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콜롬비아	예멘, 요르단, 이란, 팔레스타인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키르키즈스탄

주 : 밑줄친 국가들이 소도서국들임
자료 : KOICA 내부자료

2. 해양협력 가능 분야

1) 해양협력 가능 분야의 선정

우리나라 해양 분야의 대외원조 실적은 미미하다.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전체로 보아도 우리나라는 아직 GNI 대비 0.1%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외원조 규모가 크지 않으며 이 중 소도서국에의 원조규모는 2008년 기준 7백만 달러도 되지 않는 소규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GNI 대비 0.25%로 대외원조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소도서국에 대한 원조규모도 상당히 크게 증가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외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외원조 전체뿐만 아니라 소도서국에 대한 대외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수립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해양협력 분야의 선정이 될 것이다.

소도서국에 대한 해양협력(해양 분야 대외원조)을 추진할 경우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KOICA 등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무상원조를 수행하고 있는 KOICA의 사업발굴 및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5-1>과 같다. 이러한 절차에 의하면 해양협력 분야의 선정은 수원국 정부와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도 당초 계획 당시 협력 분야의 결정을 위해서 수원대상국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방법이 유용하다고 인지하고 설문지(영문)를 작성하였으나 설문지 조사의 경우 자칫 수원대상국에 예비타당성 조사의 성격으로 오인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설문조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344]

344) 설문조사지는 향후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록에 수록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대신 소도서국이 유엔에 제출한 평가 보고서를 검토하여 분석한 해양협력수요를 활용함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공여국으로서 지니고 있는 비교우위와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협력 분야를 도출하였다.



그림 5-1 KOICA 사업발굴 및 추진절차

(1) 소도서국의 해양협력 수요

제4장에서는 소도서국들이 국가별로 유엔에 제출한 국가평가서(National Assessment) 등 문헌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양협력 수요를 분석하였으며 여기서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협력수요는 아프리카 연안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발견되며 특히 태평양과 인도양의 소도서국에게는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투발루, 솔로몬군도, 마이크로네시아, 피지, 마샬군도, 몰디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수산(어업) 부문도 거의 모든 소도서국에서 협력수요가 있으며 특히 투발루, 마이크로네시아, 마샬군도, 몰디브의 어업협력수요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항만 등 해양인프라에 관한 수요로는 키리바시, 솔로몬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바누아투, 키리바시는 수많은 도서로 구성되어 있어 도서 간의 해상교통을 위한 부두 건설 등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특히 바누아투는 포트빌라 항구에 대한 항만관리 종합계획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자연재해의 경우 태평양 지역과 카리브해 지역의 소도서국 모두가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카리브지역의 그레나다, 도미니카의 경우 허리케인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으며 카리브지역에는 카리브 재해비상관리청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 표 5-3 | 소도서국들의 해양협력 수요

지역	국가	기후변화/해수면상승	수산(해양생물자원)	항만시설/해상교통	연안관리	자연재해
태평양 지역	키리바시	△	△	○		△
	투발루	○	○			○
	솔로몬군도	○	△	△		○
	마이크로네시아	○	○	△		○
	피지	○	△			○
	마샬군도	○	○			○
	나우루		△			△
	팔라우		△			△
	사모아	△	△			△
	바누아투	△	△	○		○
카리브해 지역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	△			△
	세인트 루시아	△	△			△
	트리니다드토바고	△	△		○	△
AIMS 지역	몰디브	○	○			○
	모리셔스		△			
	상투메 프린시페		△			
	세이셸	△	△		○	△

주 : 수요정도 표시 ○ = 매우 높음; △ = 높음
자료 : 연구진 작성

(2) 주요 외국의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 전망

유엔의 소도서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은 유엔경제이사국(UNDESA)이 담당하고 있다. 유엔은 1994년부터 바베이도스 프로그램과 2005년 모리셔스 전략을 통해 소도서국에 대한 개발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소도서국은 세계 경제무대에서 소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21세기 들어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악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심화된 재정위기

와 2007~2008년 식량 및 에너지 위기, 그리고 2009~2010년 발생한 자연재해로 소도서국의 취약성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소도서국에 대한 유엔의 개발지원 정책은 일부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성평등, 건강, 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장, 빈곤퇴치 등에 있어서는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성과가 낮고 심한 경우 퇴보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도서국들의 개발협력 사업의 방향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무역, 빈곤퇴치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국들이 겪고 있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문제는 통합적인 개발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미국은 USAID의 주도 하에 상무부 소속 해양대기청(NOAA)을 통해 해양관련 공적원조를 지원하고 있다. 소도서국에 대한 해양협력 프로그램은 남태평양의 경우 어업 장비 및 어업 정보 지원과 함께 해양환경보존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자국과의 역사적 배경이 깊은 남태평양 국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네시아, 마샬군도, 팔라우, 사모아 등이 이에 속한다. 마이크로네시아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재해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2010년부터 지원되고 있다.

마샬군도 및 사모아에도 유사한 자연재해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다. 미국은 카리브해 소도서국에 대해서는 해양관련 협력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개발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AIMS 소도서국들에 대해서는 남태평양이나 카리브해 소도서국들과 달리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2008년 10월 원조체계 일원화 계획에 따라 JICA로 유·무상 원조체계를 일원화하였다. 일본의 소도서국들에 대한 해양협력 지원 실태를 살펴보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매우 많은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자료에 의하면 아프리카 인도양 주변수역 1개국, 카리브해 7개국, 태

평양 7개국에 대해 해양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소도서국 해양협력 형태는 주로 어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 사업 및 어업훈련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의 원양어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은 자국의 남태평양 소도서국 해양협력 분야 진출을 검토해 볼 때 자국기업의 참여를 통한 구속적 원조지원이 더 이상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본 기업의 참여는 다른 국가 기업의 참여에 비해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반시설 투자에 있어서 일본 기업의 참여가 수원국 입장에서 그다지 선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근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도서국 지원사업을 대부분 비구속적(untied)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대외원조의 대부분이 남태평양 소도서국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는 호주의 사회적 안정과 번영이 이들 국가들과의 안정적인 관계와 밀접한 상호의존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345] 호주는 남태평양 소도서국들의 사회적 안정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월경적 사회범죄(자금세탁, 테러리즘, 마약밀매, 인신매매 등)가 남태평양 소도서국들의 사회불안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는 향후 건전한 공공정책 및 사회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해당 국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원을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346]

EU는 대외원조에 있어 매우 선진화된 원칙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2007년 '개발정책의 상호보완 및 역할분담을 위한 EU 행동강령(EU Code of Conduct on Complementary and Division of Labour in Development Policy)'을 마련하였다. 이는 개별 수원국 입장에서 공여국별로 3개 지원분야를 지정하여, 수원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원조자금을 배분하도록 하였다. 이는 지역별

345) AusAid, "Pacific Regional Aid Strategy 2004-2009", 2010, p. 11.
346) *Ibid.*

로 적절한 원조분업을 통해 특정 일부 국가에 원조가 집중되어 소도서국 등 일부 최빈국이 원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원조분업 측면에서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EU는 모리셔스를 포함한 남서인도양지역의 7개국과 빈곤퇴치를 위한 천연해양자원 관리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0년 EU는 남태평양의 SOPAC과 해양과학탐사를 통한 심해 광물자원 정책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각 도서국들의 입법, 재정 및 환경정책에 관한 포괄적 개발협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에 있다.

(3)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

대외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요구사항이 중요하지만 공여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외원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여타 공여국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 즉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해양력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해양력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흔치 않으나 지금까지 가장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347]평가된 것으로는 2006년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미국의 Arthur D. Little 사가 수행한 「미래 국가해양전략」(2006)이 있다. 동 보고서는 해양 분야를 지리, 과학기술, 정치외교, 법, 사회, 경제, 역사문화, 군사, 환경보호관리 등 9개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야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몇 위에 해당하는가를 평가하였다. <표 5-4>는 이를 정리한 것으로 한국을 해양력 종합평가에서는 세계 12위로 평가하였으며 분야별로 보면, 해운(10위), 항만(9위), 수산(13위), 해양환경산업(30위), 해양관광(22위) 해양과학기술(15위) 등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347) 외국 유명기관이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임.

보면 우리나라의 분야별 해양력 수준에서, 항만, 해운, 수산, 해양과학기술 등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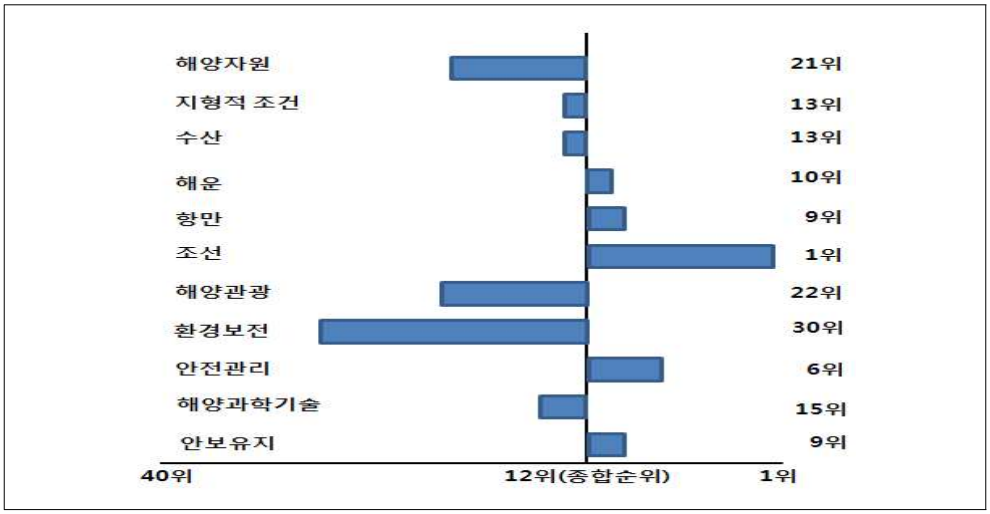
동 보고서는 또한 미국, 일본 등 주요 외국의 해양력도 평가하였다. <표 5-4>는 해양과학기술, 해양자원, 해양안보력 등 3가지 부문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외국과의 상대적 순위를 평가한 것이다. 해양과학기술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를 1~4위로 평가하였고 우리나라는 16위로 평가하였다. 해양자원 분야에서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를 1~3위로 평가하였고 우리나라는 21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해양안보 분야에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순서대로 각각 1~4위로 평가하였고 우리나라는 9위로 평가하였다.

| 표 5-4 | 우리나라 해양력 평가

분야	요 소	우리나라
지리	지형조건, 지리적 위치, 해안선, 연안, 영토, 해역, 대륙붕, EEZ, 육지와 해양의 관계	반도국가로서 열강 사이에 낌(다소 불리), ADL* 평가 해양자원 15위, 지형조건 13위 등
과학기술	해양과학, 해양기술, 해양공학, 해양연구의 이용, 해양 연구기술 인력	ADL평가 세계 15위
정치외교	정부의 성격, 정부의 의지, 해양외교, 해양관련 국제협력, 해양 행정체계, 정치권과 군의 관계	해양수산부 해체로 약해짐
법	해양영유권, 해양영토, 대륙붕, EEZ, 해양관련 조약과 협약	국제 수준을 따라가고 있음
사회	인구 수, 국민성, 해양단체	국민 해양성 약하고 해양단체 미약
경제	국내외 경제상황, 해양산업, 해양생산, 각종 선박의 보유 수, 해운업, 해양무역, 수산업, 해양시설, 해양산업 지원, 해양자원 개발	ADL평가 해운(10위), 항만(9위), 수산(13위)
역사문화	해양역사, 해양전통, 해양의식, 해양관광	의식 수준 낮고 해양관광 ADL평가 세계 22위
군사	해양안보, 해양치안, 해군력, 해양경찰력, 군수산업, 군사시설, 방위비	연안해군 9위
환경보호관리	해양안전관리, 환경보호와 보전	ADL 평가 세계 30위

자료 : 해양수산부 · Arthur D. Little, Inc.,「미래국가해양전략보고서」, 2006

이를 국가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해양과학과 해양안보에서 각각 3위,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해양안보에서 3위, 해양자원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보다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태평양 도서국가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호주의 경우, 해양과학과 해양자원에서 각각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들 국가를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이들 모두 도서국가에 대한 대외원조에 있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경쟁관계 또는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정보는 뒤에서 우리나라의 해양관련 협력 분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자료 : 해양수산부 · Arthur D. Little, Inc.,「미래국가해양전략보고서」, 2006

| 그림 5-2 | 우리나라 해양력의 국제경쟁력 평가

|표 5-5| 우리나라와 각국의 해양과학기술, 해양자원, 해양 안보력 비교

국별	해양과학기술	해양자원**	해양안보력
미국	1	1	1
캐나다	7	2	14
호주	5	5	19
일본	3	14	4
중국	16	6	3
영국	2	9	5
프랑스	4	11	7
러시아	27	3	2
한국	16	21	9

주 : **해양자원은 국가가 천혜적으로 부여받은 자원 및 외교력으로 추가 확보한 자원
자료 : 해양수산부 · Arthur D. Little, Inc., 「미래국가해양전략보고서」, 2006

2) 해양협력 가능 분야 선정 결과

앞에서 분석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우리나라가 소도서국에 제공할 수 있는 대외원조 분야는 수산(어업) 분야, 항만개발 분야, 기후변화 분야(연안관리 포함) 등으로 분석된다.

(1) 기후변화 분야(연안관리 포함)

소도서국들의 대부분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협력수요는 클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의 협력수요는 크게 침식방지, 침수방지를 위한 방파제 건설 등 실제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사업과 기후변화 예측, 시뮬레이션, 모니터링 등과 같은 기술 수요 분야로 나뉜다. 이들 분야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방파제 건설 등 고비용 사업의 경우 아직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크지 않아 개발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며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 호주, 일본, EU 등에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보다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적으로 우리나라가 실시한 해양환경 및 해양개발이 통합적으로 고려된 연안통합관리(ICZM)에 대한 역량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ICZM에 대한 개념 확립과 이론연구, 시범적 연구 등 기반 연구를 충실히 하여 왔다. 그리고 1999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연안역 관리법을 제정하여 연안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동아시아해역환경관리기구(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 PEMSEA)에 참여하여 연안통합관리정책의 실행을 통한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으며 2010년부터 KOICA의 기술협력사업으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내외 경험과 역량 확보는 연안관리 분야의 ODA 사업진출에 큰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소도서국들의 사면이 바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연안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핵심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및 자연재해로 인한 연안환경의 파괴는 대부분의 주민이 연안역에 거주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생존의 근거지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소도서국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로 지목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연안역 관리 노하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소도서국 중 연안관리 수요가 있는 국가로는 피지, 키리바시, 세인트루시아 등이 있으며 특히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연안침식 방지에 대한 수요는 태평양 및 카리브해 지역의 소도서국들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안역 관리에 대한 기술협력 수요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수산 분야

소도서국의 대부분이 수산업(어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태평양 소도서국들의 경우 수산(어업) 분야가 상당히 활발하다. 따라서 개발협력사업도 수산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간의 경합도 상당히 치열한 편이다. 왜냐하면 미국, 일본,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태평양 도서국들의 자원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수산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태평양 도서국과의 수산 분야 협력은 매우 활발하며 선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수산 분야에서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은 상당히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수산 분야의 협력을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생산적 측면에서나 기술적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있으며 특히 양식기술 등은 최고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개발협력 분야에서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태평양 도서국들이 일본, 미국, 호주 등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점과 수원국들의 요구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수산 분야에서 일본이 남태평양 도서국들과 추진해 왔던 수산협력 경험에서 볼 때 자원개발 위주의 수산업 협력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일본은 소도서국들의 풍부한 수산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지금은 수원국들이 그러한 의도를 파악하고 수탈적 개발관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수산 분야의 협력대상 국가로는 태평양의 도서국들은 물론 아프리카의 도서국들도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수산 분야의 개발협력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방식과 방법을 바꾸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프로젝트 방식보다는 프로그램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산인프라를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 지역기구를 통하여 소도서국에 접근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양국의 수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생태적 고려(eco-system based consideration)'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3) 항만 분야

우리나라의 해운항만 분야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은 사업발굴단계에서 무상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비수익성 기반시설 사업[348]을 추진할 때는 유상원조를 통한 차관사업의 형태로 지원된다. 이는 무상원조의 형태로는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항만시설의 운영에 있어 민간투자 유치[349]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소도서국에 대한 해양협력에서 해운항만시설의 확보가 선호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반시설의 비용부담은 매우 높은 반면 소도서국들의 채무상환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상원조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ODA 규모가 크지 않은 공여국의 경우 재원상의 어려움 때문에 무상원조가 쉽지 않게 된다.

348) 비수익성 기반시설 사업으로는 방파제, 항로준설, 저수익성 접안시설 등이 있음.
349) 투자비 회수는 시설운영권, 배후부지 및 배후도심지 개발권, 천연자원 등으로 가능하도록 상대 정부와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음.



자료 :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그림 5-3| 우리나라의 개도국 항만개발협력사업 추진도

해운항만 분야에 대한 소도서국의 개발협력 수요는 크지만 소도서국들의 국가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만 분야에 대한 연수프로그램 및 기술교류를 통해 자체 항만개발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우선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항만 분야 지원 대상 국가로는 마이크로네시아, 피지, 바누아투와 같은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카리브해 또는 아프리카 지역의 소도서국들이 가능할 것이다.

| 표 5-6 | 한국의 해양협력 가능 분야

분야	한국의 강점	참고사항	적용가능 국가
기후변화 대응 (연안관리포함)	• 연안관리법 제정 및 통합연안관리 시행 중 • PEMSI 등 지역연안관리 협력 경험 보유 • 최근 인도네시아, 필리핀 협력사업 시행 중 • 침식 등 재난방지기술 보유	• 향후 협력가능성이 가장 큼 • 태평양에서 일본, 호주와 경쟁 예상 • 카리브해는 미국 영향권에 있음	• 태평양 도서국 중 비교적 큰 국가 (솔로몬군도, PNG 등)
수산(어업) 분야	•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우수 • 10대 어업생산국 • 양식기술등 해외기술이전 가능 • 원양어업 해외협력 경험 • 남태평양 협력기반 확보	• 일본, 호주 등 태평양 도서국가 영향력 큼 • 일본, 중국 등과의 치열한 경합 • 프로그램 방식으로 전환 (수산인프라 구축) • 지역기구와 협력 강화	• 태평양 도서국 또는 아프리카 연안 국가 (PNG,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등)
항만개발 분야	• 5대 항만 보유, 항만 및 배후지 개발 노하우 • 물류기술 세계적 수준 • 우수기술 및 인력 보유 • 교육 및 연수 공여 경험 풍부	• 무상원조 어렵고 민간투자 유인이 관건	• 태평양 및 AIMS 지역 국가 • 카리브해 도서국 진출 모색

자료 : 연구진 작성

3. 추진 방향

1) OECD-DAC 가이드라인 준수

우리나라가 OECD-DAC에 가입함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OECD-DAC의 주요 가이드라인이다. DAC 회원국은 공적원조에 대한 양적・질적 기준을 지켜야 하며, 다양한 정책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특히 2005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고위급포럼에서 도출된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에서 제시된 5대 핵심원칙(5 overarching principles)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파리선언의 핵심원칙은 지금까지 공여국들이 사용해 온 개발원조 집행, 관리의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원국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원조정책 수립 및 관리에 있어 공여국과 수원국이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350] 과거 공여국들이 실시해 온 원조정책과 방법으로는 빈곤퇴치와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공감하고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는 것이다.

파리선언은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조의 66%를 프로젝트 형식이 아닌 프로그램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7년 실시된 OECD의 공여국별 프로그램 지원 정도에 관한 비교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1% 수준으로 나타났다.[351] 원조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프로젝트 원조 편중 현상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소규모 개별사업의 분산보다는 수원국의 포괄적인 개발목적 및 정책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공적원조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

350) 박명지, 「KOICA 사업의 녹색화 방안」, KOICA, 2009, p. 33.
351) 권율, *Op. cit*., p. 230.

| 표 5-7 | 파리선언의 5대 핵심원칙

원칙	내용
국가발전의 주인의식 (Ownership)	개도국 주도의 개발전략 수립, 개발제도의 증진 및 부패 척결이 주요 요소
발전정책의 일치 (Alignment)	공여국의 개도국 국가발전 전략, 제도, 절차에 대한 전면적 지원이 주요 요소
원조정책 간 조화 (Harmonisation)	공여국 간의 원조정책 연계 및 분업강화를 통해 개도국 내에서 공여국 간, 공여국-공여기관 간 원조중복(duplication) 및 분절화(fragmentation) 방지가 주요 요소
개발성과를 위한 관리 (Managing for Result)	개발성과는 실질적으로 개도국 국민 생활이 제고되고, 동시에 그것이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임. 궁극적으로 개발성과가 개도국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주요 요소
상호책임성 (Mutual Accountability)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간의 관계에서의 책임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공여국, 수원국 모두 자국민 및 광의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요소

자료 : 박명지, 「KOICA 사업의 녹색화 방안」, 2009, p. 35

OECD-DAC의 가이드라인은 유엔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협력 사업의 구체적인 지침일 뿐만 아니라 유엔이 추진하는 천년개발목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OECD/DAC 가이드라인은 국제사회의 ODA 동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밀레니엄 선언을 전후로 현재까지 각국 개발협력사업의 지침이 되고 있는 주요 가이드라인은 <표 5-8>과 같다. 특히 1996년 21세기 개발협력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은 현재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사업의 핵심지침인 유엔 밀레니엄 선언의 토대가 되었다.

|표 5-8| OECD/DAC 주요 가이드라인

연도	OECD-DAC 주요 가이드라인 및 내용
1996	○ 21세기 개발협력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
2001	○ 빈곤완화를 위한 지침 - UN의 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채택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지침 ○ 개도국의 세계무역체제 내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 ○ 폭력적 분쟁과 갈등의 예방
2002	○ 개발협력과 리우 환경의제 간 통합을 위한 지침
2003	○ 빈곤과 보건 간 악순환 고리의 단절 ○ 공여국 간 효과적 협력 증진 ○ 테러 예방을 위한 개발협력 과제
2004	○ 인권과 국가안보(범죄예방, 공중안전)를 위한 통치체제 개혁방안
2005	○ 안보시스템 개혁 및 통치체제 ○ 빈곤감소를 위한 환경세 개혁 ○ 원조관리: DAC 회원국의 실행
2006	○ 효율적인 원조를 위한 공여국의 실행 종합2 - 공공재정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종합적 접근방식 및 역량강화 개발 ○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촉진 - ODA의 역할 ○역량강화 개발을 위한 과제: 우수 개발사례 창출을 위한 노력

자료 : 허장 · 정기환, 「국제농업협력의 추진전략 및 실천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p. 13에서 재인용

2) 정치 · 외교적 동기 반영

소도서국 그룹을 보면 명칭 그대로 경제규모 등이 작아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효과성 측면에서 대외원조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치・외교적 관점에서 보면 소도서국들에 대한 대외원조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소도서국들은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소도서연합(AOSIS)을 구성하여 유엔에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에서 어떤 현안에 대하여 투표로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원조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외원조의 정책상 '선택

과 집중'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OECD-DAC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원조의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우리 정부 또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 대외원조 규모의 상당한 부분을 소도서국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원조정책의 일관성

공여국 내부에 일원화되지 못한 원조기관이 산재할 경우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을 가져야 한다. 정책일관성에 관한 논의는 이미 1996년부터 OECD-DAC전략보고서를 통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개발 정책일관성에 관한 장관선언(Ministerial Declaration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이 채택되면서 개발정책이 단순한 원조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책일관성은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한 요소로써 효과적인 빈곤퇴치를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352] 따라서 공여국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접근(whole of government approach)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4) 개발과 환경의 조화

소도서국에 대한 해양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공적개발원조정책의 개선과 함께 해양협력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려하여야

352) 정책일관성이 결여된 국내정책을 수행할 경우 사소한 비용 증가 외에도 개도국의 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02년 EU가 황새치 카드뮴 허용치를 kg당 0.05mg으로 제한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황새치에만 적용될 뿐 kg당 1.0mg의 카드뮴을 함유한 갑각류, 굴, 소고기 등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인도양의 세이셸제도는 황새치 수출길이 막히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세이셸제도 어부들은 황새치 대신 샤스핀 수출을 위해 상어를 남획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은 결국 정책일관성의 결여로 개도국 어민들의 소득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이다. OECD Observer, "Why Coherence Counts for Development", 2009.

한다. 해양협력 분야는 과거의 단순한 기술이전이나 인력교류 또는 단기 프로젝트식 협력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경우 OECD-DAC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분야(cross-cutting) 이슈에 대해 통합적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양협력 분야의 개발정책 수립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지속가능한 개발 차원의 '환경'적 고려이다. 이것은 개발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관련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시 해양폐기물의 발생이 추가적인 문제로 발생하게 될 것이며, 과잉생산을 위한 시설투자가 주변 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산자원개발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므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OECD는 2006년 '전략적 환경평가의 적용: 개발협력을 위한 모범사례 지침(Apply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Good Practice Guidance for Development Cooperation)'을 통해 '전략적 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 SEA)'의 개발협력사업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적 환경평가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EIA)'와 달리 개발원조사업을 프로젝트 베이스에서 중장기 프로그램 방식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정책평가방법이다. 전략적 환경평가(SEA)는 프로젝트 선정 이전단계인 정책 및 계획, 프로그램 단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폭넓은 개발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평가', '통합평가', '전략적 영향평가'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환경의 생물학적·물리학적 차원을 넘어 개도국의 경제성장 방식, 자연자원의 사회적 배분 양상, 거버넌스에 대하여 환경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353]

전략적 환경평가(SEA)는 빈곤층이 의존하는 환경자원 및 그 이용기회

353) 권율, *Op. cit.*, pp.73-74.

가 보호되도록 사회적 대안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개도국의 빈곤퇴치전략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베트남 국가지원전략 수립에 환경이슈를 통합하기 위한 전략적 환경평가(SEA)를 실시하였다. 국가지원전략 수립의 각 단계마다 환경적 측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빈곤퇴치와 성장전략과의 통합이 시도되었다. 전략수립 초기 단계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도전과제와 기회가 분석되었고 주요 개발의제와 연계된 환경분석 개요서가 만들어졌다. 다음단계에서 국제야생생물기금과 스웨덴의 베트남 자문팀에 의해 심층분석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를 근간으로 베트남 중앙 및 지방정부, NGO, 학계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의견이 최종 전략보고서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한 전략적 환경평가의 교훈은 소도서국의 해양협력사업 추진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소도서국 주민의 빈곤타파를 위한 소득 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수산자원 개발 및 관리정책을 수립할 경우 전략적 환경평가는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수산증양식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소도서국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단순한 생산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이 보장되기 어렵다. 따라서 생산단계와 함께 가공 및 유통(무역)단계까지 총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생산단계에서 소도서국의 특성상 치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때 치어남획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양식과정상 양식장 설비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문제와 운영, 그리고 수자원 및 토지 공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당연히 운영자의 기술 역량개발과 훈련이 필요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양식과정에서의 사료 및 약물 오남용이 발생하고, 해양환경 오염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가공공장의 설비과정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및 운영문제가 발생하며, 부산물 처리를 위한 쓰레기장 설비, 오염문제 관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유통단계에서 신선유통, 현지 소비 및 수출 판로 개척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4. 추진 전략

1) 범정부적 접근

효과적인 해양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 전문기관 간 협력풀 형성을 통한 범정부적 접근(whole of government approach)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중심기관은 KOICA이나 KOICA 입장에서 해양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양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인력풀을 구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도서국들과의 해양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KOICA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사업발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 내 협력채널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KOICA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 등의 정부 및 연구기관을 사업개발단계 이행 및 사후평가단계에 이르는 일체의 원조사업 내 사업추진단으로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2) 프로그램 방식의 도입

해양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성과의 지속성 확보 및 극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형태 구상이 요구된다. 특히 사업추진의 일회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방식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소도서국의 경제적 소규모성으로 인해 차관 중심의 유상원조사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도서국의 해양협력사업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사업이 가져올 주민들의 빈곤퇴치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 등

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 방식으로 구성된 사업을 통합하여 중장기적인 프로그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족자원 증대를 위한 수산자원 관리사업을 실시할 경우 세부사업으로 어종별 자원량 조사사업, 인공어초 조성사업, 산호초 복원사업 등을 구성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 표 5-9 | 프로젝트 방식과 프로그램 방식의 차이

구분	목표	사업 단위	예
프로젝트 방식	개별사업	개별사업	양식품종 개발 방파제 건설
프로그램 방식	포괄적 목표	시스템사업	자원관리프로그램 항만종합개발사업

자료 : 연구진 작성

3) 원조분업방식 도입

원조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소도서국에 대한 해양협력사업의 발굴, 수행, 평가에 이르는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서 원조분업(division of labour)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OECD가 국제원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원조분업은 우리나라가 남태평양 도서국들을 상대로 해양협력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2008년 OECD가 발간한 '원조 배분, 분절화와 예측성에 대한 DAC보고서'에서는 다수의 공여국이 적은 재원을 분산 제공할 때 수원국의 거래비용이 상승하고 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현재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국 입장에서는 주제별로 ODA 지원이 편중되고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354]

354) 권율, *Op. cit.*, p. 185.

따라서 이러한 원조 분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여국 및 공여기관 간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판별하여 참여하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업무를 위임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원조분업을 통한 원조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도 있다.

KOICA가 최근까지 운영하였던 남태평양의 파푸아뉴기니 사무소도 현재 없어진 상황이어서 남태평양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지 치안, 거버넌스 문제 등을 파악하려 할 때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남태평양 소도서국들에 대해 가장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는 호주, 일본 등과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 일본과는 공동연수프로그램을 통해 협력경험이 있으며 호주와도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 다만 공여국들이 개발협력을 추진할 때 추구하는 각국의 외교적, 경제적 목적을 잘 감안하여 국가 간 경합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원조분업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민간기업, 유엔기구, 또는 지역협력체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4) 무상원조중심의 비구속성(untied) ODA 확대

태평양 지역 소도서국들에 대한 해양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적원조의 형태는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평양 소도서국들의 1인당 GDP는 대부분 5천달러를 넘지 못한다. 인구규모 또한 파푸아뉴기니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10만 명 내외이다. 따라서 경제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유상원조형태의 차관사업을 진행할 경우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또한 소도서국들도 상환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상원조 형태를 선호하지 않는다.

무상원조로 이루어지는 공적개발원조사업은 소규모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원투입이 많아야 하는 대규모 기간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은 대부분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지속적인 개발협력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형식의 사업을 다년간의 프로그램 방식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5) 지역기구와의 협력 강화

소도서국은 작은 규모의 국가들로 태평양, 인도양, 카리브해, 지중해, 아프리카 등에 그룹 단위로 소재하면서 지역단위의 기구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태평양도서포럼(PIF), 태평양도서개발프로그램(PIDP), 태평양응용지구과학위원회(SOPAC), 수산포럼(FFA), 태평양지역환경프로그램(SPREP) 등과 같은 지역프로그램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서국가 진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소도서국가들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선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소도서국에 활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형성된 계획이나 프로그램, 또는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도서국과의 협력, 특히 해양 분야의 협력에 있어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보다는 지역기구 및 지역프로그램을 통한 협력이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의 경우 해양협력 분야에 지원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소도서국들과의 해양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본문을 크게 4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즉, 한국의 소도서국 개발협력 현황(제2장), 주요 국가들의 소도서국 개발협력 현황(제3장), 소도서국들의 해양협력 수요 파악(제4장), 한국의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 방안(제5장)으로 세분하였으며, 제2장~제4장의 연구가 제5장 작성의 밑바탕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먼저 제2장 한국의 소도서국 개발협력 현황에서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현황을 개관한 후 소도서국과의 개발협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국은 2009년 11월 주요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 공여그룹인 OECD-DAC에 가입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였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중요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실제로도 현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시스템과 내용, 규모면에서 모두 OECD-DAC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달한다. 한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률적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원조 규모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 하지만, 현재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전담기관이 다른 점, 규모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 사업수행 역량을 넘어선 예산 증가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은 현재 KOICA를 통해 소도서국에 대한 무상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등 지역적으로 남태평양에 편중되어 있으며, 의료서비스와 위생개선, 수질개선사업 등을 하고 있지만 소규모이며 장기적 전략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제3장 주요국들의 소도서국 개발협력 현황에서는 유엔, 미국, 일본, 중국, EU 및 호주 등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들의 소도서국 해양협력에 대해 검토하였다. 유엔은 바베이도스 프로그램 개발, 모리셔스 전략 수립, 천년개발목표(MDGs) 설정 등을 통해 소도서국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국제사회에 소도서국과의 개발협력을 독려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발원조를 하고 있으며 USAID뿐만 아니라 NOAA와 같은 각 부처들에서도 소도서국들과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개발원조에는 과거 미국의 식민지령이었거나 해당 국가의 미국에 대한 영향(예컨대 마약밀매, 전염병) 등도 고려된다는 점, 여전히 GNI 대비 원조비율이 낮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일본은 태평양 소도서국들에 대한 원조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원조에는 국제무대에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소도서국들이 일본 측 입장을 지지케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으며, 단기간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실질적인 도움을 못주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은 그동안 개발원조를 아프리카의 광물자원 확보수단으로 이용해왔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자원확보를 위해 소도서국들에 대한 원조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중국의 원조는 해당 수원국의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원조의 본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EU는 보다 효율적인 개발원조를 위해 '국가별 전략보고서'를 작성해 오고 있으며, 소도서국들에 대한 개발원조를 위해 유럽개발기금과 같이 다양한 기금을 마련하고 지역적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재해예방프로그램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도 개발해오고 있다. 하지만 인도양국가 연안의 지속가능프로그램 등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해양 분야에서의 협력은 저조한 실정이다. 호주는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태평양 소도서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특히 유엔이 제시한 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제 태평양 여러 소도서국들이 호주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가 이들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과 지나친 의존이 해당 소도서

국의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제4장에서는 소도서국들의 해양협력 수요를 태평양 지역, 카리브해 지역, 아프리카와 인도양 등이 있는 AIMS 지역 등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및 국가별 해양협력 수요에 대해 본문에서 상세한 검토를 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지역 수몰과 해안지역 침식 현상, 태풍과 지진, 해일 등의 자연재해, 취약한 항만 및 해상교통 시설, 해양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의 기후변화와 해양자원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공통된 특징들을 보였다.

특히 해양과 관련하여 태평양지역의 소도서국들을 포함한 카리브지역의 국가들은 거의 모두 해수면상승에 따른 문제들, 즉 해안침식과 침수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몰디브와 같은 국가들은 국가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ODA 수요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수산(어업)의 경우 이미 우리나라가 일부 태평양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분야로 앞으로도 수산 분야에 대한 협력수요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여전히 클 것이다. 이는 소도서국의 경우 국가경제에서 수산(어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며 공여국의 입장에서도 자원개발협력 차원에서 여전히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항만과 해상운송 분야의 경우 키리바시, 바누아투, 솔로몬군도, 마이크로네시아 같은 일부 국가에서 협력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들을 토대로 한국의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해양협력의 목적이 다양하지만, 한국은 인도주의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되 소도서국들과의 해양협력을 위해서는 정치·외교적 관점에서의 협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제4장에서 파악한 소도서국들의 해양협력 수요와 한국의 비교우위 자원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해양협력 가능 분

야를 선정하였다. 주요 협력가능 분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분야이며 향후 협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소도서국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지만 특히 태평양 소도서국 중 솔로몬 군도, 파푸아뉴기니 등 비교적 국토 규모가 큰 국가들과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태평양 소도서국에서는 이미 일본, 호주 등의 영향력이 크므로 이들 공여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수산(어업) 분야는 PNG, 키리바시 등 태평양도서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협력관계를 확대하되 어항개발, 항만개발과 같은 분야와 패키지로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수산(어업) 분야에서는 소도서국들의 요구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열악해지고 있는 개발협력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개발이 관건으로 여겨진다. 항만개발 분야는 앞으로 점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일반적으로 무상원조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와 함께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을 추진할 때에는 OECD-DAC 지침을 준수하고, 원조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협력 추진전략으로는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장기적 관점의 프로그램방식 도입과 원조의 기능적 분업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국제사회의 흐름인 비구속성 원조 확대와 원활한 실행을 위해 지역적 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소도서국에 대한 개발협력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공여하는 국가로 지금까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비약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한 우리 한국으로서는 인도주의적 동기(목적)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소도서국들이 유엔에서 20%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파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보면 소도서국과의 해양협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대외협력 규모가 크지 않아 집중과 선택적 ODA 전략에 따라 소도서국과의 협력이 미진하였지만 2015년까지 개발협력 규모가 크게 증가되면 협력 범위와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특히 해양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소도서국들의 협력 수요도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양 분야의 협력은 우리나라의 세계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큰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소도서국에 대한 정보와 자료, 그리고 선행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한국이 소도서국에 대한 개발협력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는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원조체계의 유기적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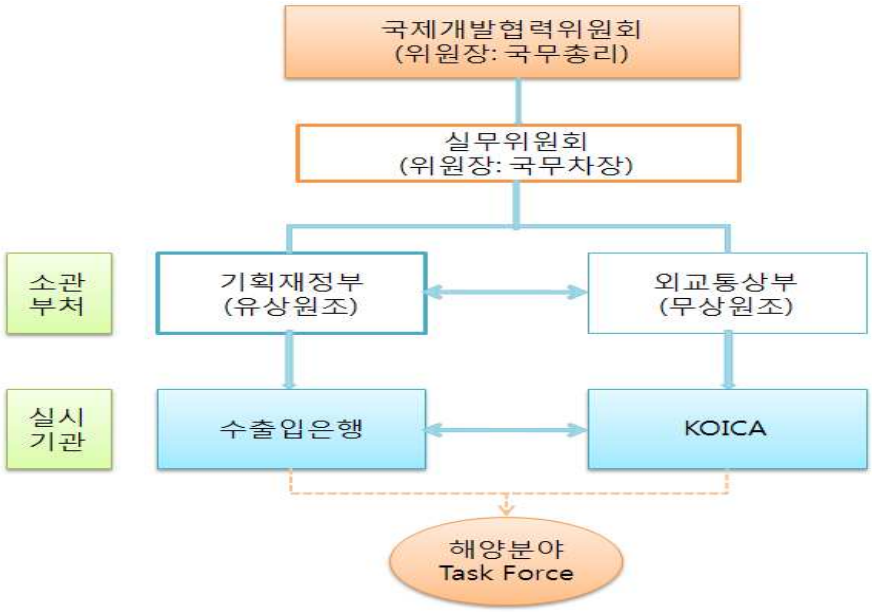
그동안 우리나라의 원조업무는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거의 모든 부처에서 분산되어 수행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때로는 중복 지원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업무의 관리 감독 등에 어려움과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또한 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입장에서도 서류작업 및 방문단 협의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10년도 1월에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된 「국제협력개발기본법」에서는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가 관장하는 것으로 이원화하여 대외원조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

서는 이원화된 원조체계에 대하여 이전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이번 법률에서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유상원조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무상원조 주관부처인 외교통상부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정부가 2015년까지 GNI의 0.25%까지 공적원조규모를 늘일 경우 원조예산 확대와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원화된 원조체계의 일원화와 함께 원조전담기구의 설치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미 많은 국가들이 독립된 원조전담기구를 두고 있다. 미국(USAID), 캐나다(CIDA), 스웨덴(SIDA), 호주(AusAid) 등은 독립적인 원조전담기관으로서 대외정책과 원조전략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일본은 2008년 원조체계 일원화정책을 통하여 JICA를 중심으로 외무성이 관장하던 무상원조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유상원조 업무를 통합하여 지금의 JICA(‘08년 이전에는 기술원조만 담당)를 설치하였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원조업무 총괄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지금의 KOICA를 확대 지정하는 것도 유력한 방안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KOICA의 경우, 1991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20년간 업무 전문성과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었으며 대외 지명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양 분야의 경우 사업의 내용이 특수하여 일반적 ODA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경우에도 업무내용이 생소하기 때문에 해양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Task Force를 구성하여 사업발굴 등을 지원한다면 향후 해양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Task Force 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수산기술진흥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해양 분야의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6-1 |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체계 및 해양 분야 Task Force

2) 협력대상국 선정 시 전략적 접근 필요

협력대상국 선정 시 지리적 접근성 및 국가 간 경제협력관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인바 태평양 소도서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태평양 소도서국들과의 외교적·경제적 협력관계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국제적 사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태평양 소도서국들과의 관계를 중시해 온 바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와 같은 사업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소도서국들의 지원은 매우 긴절하다. 뿐만 아니라 태평양 소도서국에 대한 협력은 경제적 측면에서 더더욱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수출품 중 단일 품목으로 다랑어가 최대규모의 수출품이라는 점을 앞장에서 언급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미 다랑어는 수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외

화획득 상품일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측면에서 절대적인 수출상품이다. 이러한 다랑어는 우리 원양선사가 대부분 남태평양 소도서국들과의 직접적인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얻는 산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는 남태평양 소도서국들의 투자협력요청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어장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은 것이 현실이다.

| Ⅲ 6-1 | 대외원조의 공여국별 지리적 특성

공여국가	수원국 분포
미국, 캐나다	카리브해역 16개국
EU(영국, 벨기에, 프랑스)	인도양 및 아프리카
호주	남태평양 도서국가
일본	태평양 도서국가
중국	아프리카
대만	태평양 도서국가

자료 : 연구진 작성

| Ⅲ 6-2 | 소도서국 지역별 전략적 요소

분야	
태평양 소도서국	• 수산(어업) 분야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입어료 인상 등 협력조건이 열악해 지고 있음 • 단순 어업협력에서 패키지형 협력으로 전환필요 • 지리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나 일본, 호주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카리브해 소도서국	• 기후변화 대응 등의 협력 수요가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의 영향력이 큰 지역 • 원거리여서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임 •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 항만진출 분야에서 협력 시도
AIMS 소도서국	•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개별국가별 접근 필요 • 미국, 일본 등 다른 주요 공여국의 영향력이 비교적 작음 • 기후변화, 자원협력 등의 수요가 큼 • 아프리카 국가에는 중국 진출이 활발하나 우리나라도 한·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3)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OECD-DAC 에서도 지침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모든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은 더욱 중요한 어젠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 SEA) 제도의 도입이 추천되고 있다. 즉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심사하고 평가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다.

SEA는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EIA)의 연장선상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정책 및 계획 그리고 프로그램에 확대 적용되면서 의사결정의 상위 단계에서 환경성을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SEA의 실제 적용을 보면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크게 EIA에 기반을 두고 발전한 SEA와 기타 정책목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통합형 SEA가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보면 SEA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성하는 경제성장, 사회평등, 환경보호의 세 가지 축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통합정책평가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 SEA가 실용적 측면에서 충분히 정착하지 못하였지만 SEA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2005년도부터 국토・도서개발, SOC, 교통・물류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355] 환경부에서도 SEA를 도입하고 있다. 해양관련 사업은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수산자원개발을 통한 주민들의 빈곤퇴치 전략을 수립할 경우 이 사업이 미치는 지역적 환경영향평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55) 국토해양부, “전략환경평가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177호)”, 2008.

더욱이 연안통합관리 사업을 실시할 경우 이것이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는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거나 간과할 경우 이미 우리나라가 과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환경문제를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도 SEA를 도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소도서국의 중점 협력국 포함

KOICA가 지정하고 있는 중점협력국에 소도서국은 1개국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에서는 유엔이 정한 최빈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행하여할 협력대상국을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이 시행되고 이를 통하여 협력효과가 제고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중점협력국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효과적이고 중점적인 대외협력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소도서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대외원조)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 국가가 중점협력국에 선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되어야 중기지원전략 수립도 가능하게 되며 5년마다 수립하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소도서국 중 중점협력국 대상은 태평양도서국의 일부국가와 인도양의 소도서국 한 두 개 국가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태평양도서국가들을 다수 포함하는 태평양도서포럼(PIF)을 중점협력국에 포함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협력개발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으로 '국가' 뿐만 아니라 '지역' 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표 6-3 | 중점협력국 현황과 전망

구분	전체	소도서국
협력대상국	56개국	3
일반협력국	37개국	3
중점협력국(2009년)	19개국	없음
중점협력국(2015년)	21개국	2

5) 해양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의 획기적 확대

현재 우리나라의 ODA 예산은 2009년 잠정추계치로 8억 1,500만 달러 정도이며 GNI 대비 0.1%에 불과하다. 2008년 DAC 회원국의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비율 평균이 0.48%이고 유엔의 목표치가 0.7%인 점을 감안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23개 DAC 회원국 중 ODA/GNI 비율로는 가장 낮은 수치이다.

| 표 6-4 | ODA 예산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년도	ODA/GNI	ODA 전체	ODA 무상원조	해양 분야 (무상원조)
'09년	0.1%	816	214	3 (추정)
'15년	0.25%	2,500	1,250	25 (추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선진화방안에 의하면 2015년까지 GNI 대비 0.25%까지 증액시킨다는 계획이어서 크게 기대가 되며, 이 계획이 차질 없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GNI 대비 예산이 0.25% 수준이 되더라도 증액된 예산이 소도서국에 할당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따라서 소도서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소도서국의 일부가 중점협력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KOICA가 집행한 예산 중 1.5% 정도만이 해양협력 분야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해양협력 분

야의 사업발굴과 함께 현재보다 훨씬 큰 규모의 예산 배정이 절실하다. 2009년도 기준 약 300만 달러 정도 만이 해양협력에 투입되었는데 2015년에는 적어도 2,500만 달러(약 300억 원) 정도가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해양협력이 가져오는 정치·외교적 차원의 기대효과와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경실련, “이명박 정부의 대외원조정책 진단; 국익, 자원, 실용 그리고 ODA”, 경실련, ODA Watch 제 3차 정책포럼, 2008.

국민경제자문회의,「대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전략적 추진방안」, 2007.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010.

국회도서관,「중국의 소프트파워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2010.

국회예산정책처,「ODA 사업평가」, 2010.

권율・정지선,「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과 시사점」, KIEP, 2009.

권혁기, “일본과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전략 비교: 정부개발원조(ODA) 및 해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한국아프리카학회지(제29집)」, 한국아프리카학회, 2009.

기획재정부, “Beijing Consensus의 개념과 영향분석”, 보도참고자료, 2009. 4. 13.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통계, “대외경제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2009”.

김경신, “중국・일본, 남태평양에서 해양 패권 경쟁”,「독도연구저널-이슈브리핑」제19호, 2008.

김남경,「EU’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trategy: Improving Aid Effectiveness for Poverty Reduction」,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애경, “중국의 소프트 파워 외교 전개와 그 함의”, 한반도선진화재단 내부포럼 발제문, 2009. 9.

김채형, “유럽연합의 개발협력 정책”, 「한국EU학회」, 5권 2호(2000).

남지민,「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한국의 기후변화 원조 전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노영희・홍현진,「개발원조관련 국제기구 지식정보원」, KSI, 2009.

농림수산식품부,「수산분야 양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20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후변화 관련 개도국 지원기금 현황 및 시사점”,「오늘의 세계경제」.

문국현,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현황과 발전방안”,「외교통상통일위원회자료집(제3호)」, 2009.

박복영・채욱・이제민・이근・이상철,「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對)개도국 적용 가능성」, KIEP, 2007.

박세근,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과 전략”,「해외경제투자정보」, 2008.

박소형,「프랑스 대외원조정책의 특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박영호・박복영・권율・허윤선・강선주,「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 방안」, KIEP, 2008.

박정례,「EU 빈곤국 개발원조 정책의 평가와 전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설규상, “중국의 대외개발원조와 소프트파워론 -대동남아시아 개발원조에 대한 평가와 함의를 중심으로”,「사회과학연구」, 제48집 1호,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송영선의원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대외원조 개선방안”, 국회 송영선의원실 국제개발협력학회, 2009.

예희진, “EU의 대외원조 정책-외교 정책적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외교통상부,「OECD DAC개황」, 외교통상부, 2009.

이근수,「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안보 -해양레짐 개념의 적용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이종숙,「일본 공적개발원조(ODA)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임소영・박희수, “기후변화 관련 최근 원조 현황과 논의 방향(3)”,「국제개발

협력」, 2~3호, 2009.
재정경제부・한국수출입은행, 「EDCF 20년사」, 2007.
정진규,「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9.
정홍렬, "유럽연합의 ACP 국가 개발지원정책에 대한 소고",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1호, 2006.
조은혜,「한국과 일본의 정부개발원조 비교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채진규,「해양자원이용과 국제협력」,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정책실, 2003.
한국국제협력단,「2005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
_____,「2006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
_____,「2007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
_____,「2008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
한국국제협력단 기후변화대응반, "2009 동아시아기후파트너쉽 사업설명회" 자료, 2009.
한국수출입은행,「우리나라 ODA 통계자료집」, 2009.
한국해양수산개발원,「국제해양문제 주도권 확대방안 연구(I)」, 2009.
한진섭,「정부차원의 對개발도상국 연수생초청사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유・무형의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해양수산부・Arthur D. Little Inc.,「미래국가해양전략」, 2006.

<국외 문헌>

日本外務省,「ODA白書」, 2009.

AIMS, “AIMS Regional Synthesis Report for the five-year Review of the Mauritius Strategy for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SIDS(MSI+5)”, 2010.

AusAID, “Pacific Regional Aid Strategy 2004-2009”, 2010.

CRC, “Comparing Global Influence: China's and U.S. Diplomacy”, *Foreign Aid, Trade, and Investment in the Developing World*, 2008.

ECLAC, “Caribbean Regional Report for the Five-year Review of the Mauritius Strategy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ment States(MSI+5)”, 2010.

Fiji, *Fiji National Assessment Report*, 2010.

Grenada, *National Assessment Report: Grenada,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Kiribati, “National Assessment Report for the 5-year Review of the Mauritius Strategy for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s Developing States(MSI+5)”, 2010.

Maldives, *National Assessment Report*, 2010.

Mauritius Strategy for Implementation National Assessment Report, 2010.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0*.

Republic of Palau, *Mauritius + 5 Status Report: Republic of Palau,* 2010.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Review of the Priorities of the Mauritius Strateg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2010.

Republic of Trinidad and Tobago, *National Assessment Report on the Five Year*

Review of Progress Made in Implementation of the Mauritius Strategy for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2010.

Samoa, *Mauritius Strategy Implementation: National Assessment Report*, 2010.

Sao Tome and Principe, *National Assessment Report*, 2009.

Small States: Meeting Challenges in the Global Economy, Report of the Commonwealth Secretariat/World Bank Joint Task Force on Small States, Washington DC and London, 2000.

Solomon Islands, "Solomon Islands Country Report for the 5-year Review of the Mauritius Strategy for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SIDS(MSI+5)", 2010.

Te Maile Consultancy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Report on the Assess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for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 The Case of the FSM*, 2010.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ive Year Review of the Mauritius Strategy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MSI)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2010.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Water Resources and Drainage Government of Barbados, *Barbados National Assessment Report of Progress Made in Addressing Vulnerabilities of SIDS through Implementation of the Mauritius Strategy for Further Implementation(MSI)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2010.

Tuvalu, *Report on the Assess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for Small Islands Developing States, and the Mauritius Strategy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BPOA*, 2010.

U.S. Department of State,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Foreign Operations - Annex: Regional Perspectives, Fiscal Year 2011.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Five-Year Review of the Mauritius Strategy for the Further Implementation(MSI+5)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2010.

UNEP, “5-year Review of Progress Made in Addressing Vulnerabilities of SIDS through Implementation of the Mauritius Strategy for Further Implementation (MSI) of the Barbados Programme of Action(BPOA)”, 2010.

UNGA,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2010.

USA, 2006 Annual Report to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온라인 자료>

countryinfo.mofat.go.kr

ec.europa.eu

news.bbc.co.uk

news.xinhuanet.com

www.apic.or.jp

www.caribbeandiving.com/islands

www.chinapost.com.tw

www.fmprc.gov.cn

www.forumsec.org.fj

www.fpif.org

www.jica.go.jp

www.mofa.go.jp

www.nippon-foundation.or.jp

www.nytimes.com

www.odakorea.go.kr

www.oecd.org

www.pngembassy.org

www.rmigovernment.org

www.smh.com

www.state.gov

www.taipeitimes.com

www.un.org

www.unpo.org

www.unhcr.org

www.wsws.org

부 록 1. 우리나라의 대외 협력사업 추진 현황

구분	연도	내용	주관 부처
60년대	1963	미국 AID 원조계획 및 자금에 의거 개도국 연수생 초청 훈련 최초 실시	외무부, 과기처
	1965	정부자금에 의한 연수생초청사업 시작	"
	1967	정부자금에 의한 전문가파견사업 시작 UN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으로 외국인 초청훈련 실시	"
	1968	정부자금에 의한 기술공여 시작	과기처
70년대	1975	개발도상국 기능공 초청연수 시작 - 1975~1982년은 과기처에 위탁 실시 - 1983년 이후 노동부 자체 실시	노동부
	1977	UN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으로 외국인 초청 기자재 등 물자공여 사업 시작	외무부
80년대	1981	공동 연구사업 시작	KAIST
	1982	국제개발연찬사업(IDEF) 시작	KDI
	1983	건설기술자 초청연수 시작	건설부
	1984	무상건설 기술용역사업 시작 직업훈련원 설립 지원 시작	"
	1987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시작 과학재단에 대외 기술공여사업 업무위탁	재무부, 과기처, 외무부
	1988	대 개도국 통신기술 지원 무상용역사업 시작	체신부
	1989	한국청년해외봉사단원 파견사업 시작 무상기술용역사업 시작 대외경제협력기금 최초 자금지출	UNESCO, 경제기획원, 한국수출입은행
90년대	1991	한국국제협력단 ODA 무상원조기관 설립	
	1992	프로젝트형 사업 시작	KOICA
	1995	국제협력요원 파견사업 시작	"
	1995	민간원조단체(NGO) 지원사업 시작	"
	1996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간지출액 1억불 최초 초과	
	1995	국제협력연수센터(ICTC) 개원	KOICA
00년대	2000	대외경제협력기금, IDB와의 최초 융자 승인	재경부
	2001	대외경제협력기금 누적 승인액 16억불 초과	"
	2002	아프간 지원사업 시작	KOICA
	2003	이라크 지원사업 시작	"
	2005	서남아시아 쓰나미 복구 지원사업 시작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분야 양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2010. p. 47

부 록 2.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환경(SWOT)

	Strength	Weakness
국내환경	○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발전한 성공사례 ○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인 발전경험 보유 ○ 개도국으로서의 경험을 갖고 있어 진정성 있는 접근 가능 ○ 분야별 비교우위가 있는 기술 보유 ○ NGO 등 시민사회, 민간기업들의 ODA에 대한 관심 제고	○ 짧은 원조역사와 상대적으로 적은 원조규모 ○ 분산화된 원조 추진체계 및 ODA 전문인력 부족 ○ 개도국 연구 및 한국적 개발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미흡 ○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 ○ 개발컨설턴트 등 인프라 미흡
국제환경	○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 증대 ○ 우리의 개발경험과 잠재력에 대한 개도국의 높은 관심 ○ 선진국-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통한 독자적인 역할 가능 ○ G20, HLF-4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증대	○ 국제적인 원조 규모 확대 및 원조 효과성 제고 정체 ○ 다양한 개발주체 등장에 따른 원조 분절화 심화 ○ 주요 국가의 자국 이익을 위한 ODA 활용 경향 ○ 세계경제 블록화로 인한 국제협력 경쟁환경 치열 *중국・인도 등 신흥공여국 등장
	Opportunity	Threat

자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010, p. 59

부 록 3. 소도서국 일반 현황

국가명	수도	공용어	독립일	면적 (㎢)	인구(명)	GDP	
						총 ($)	1인당 ($)
Antigua and Barbuda	Saint John's	English	1981.11	442	85,632	1.522 billion	17,892
Bahamas	Nassau	English	1973.7	13,878	330,000	9.020 billion	26,473
Barbados	Bridgetown	English	1966.11	431	284,589	5.013 billion	18,130
Belize	Belmopan	English Germany	1981.9	22,966	307,899	1.336 billion	4,045
Cape Verde	Praia	Portuguese	1975.7	4,033	516,733	1.841 billion	3,587
Comoros	Moroni	Comorian, Arabic, French	1975.7	2,235	798,000	532 million	798
Cook Islands	Avarua	English Cook Islands Māori	1965.4	240	19,569	183.2 million	9,100
Cuba	Havana	Spanish	1902.5	109,886	11,236,444	65.67 billion	5,844
Dominica	Roseau	English, French, Antillean Creole	1978.1	754	72,660	362 million	4,948
Dominican Republic	Santo Domingo	Spanish	1865.8	48,442	10,090,000	46.743 billion	5,176
Fiji	Suva	English, Bau Fijian, and Hindi	1975.10	18,274	849,000	3.060 billion	3,464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Palikir	English	1986.11	702	111,000	277 million	2,000
Grenada	St. George's	English, Patois	1974.2	344	110,000	615 million	5,969
Guinea	Conakry	French	1958.10	245,857	10,057,975	4.394 billion	414
Haiti	Port-au-Prince	Haitian Creole, French	1825.4	27,751	9,035,536	6.558 billion	733
Jamaica	Kingston	English	1962.8	11,100	2,825,928	11.903 billion	4,390
Kiribati	Tarawa	English, Gilbertese	1979.7	726	98,000	130 million	1,304
Maldives	-	-	-	-	-	-	-

국가명	수도	공용어	독립일	면적 (㎢)	인구(명)	GDP	
						총 ($)	1인당 ($)
Marshall Islands	Majuro (Delap)	Marshallese, English	1986.10	181	62,000	115 million	2,900
Mauritius	Port Louis	English	1968. 3	2,040	1,288,000	8.761 billion	6,838
Nauru	Yaren	English, Nauruan	1968.1	21	14,019	36.9 million	2,500
Niue	Alofi	Niuean, English	-	260	1,398	7.6 million	-
Palau	Ngerulmud	English, Palauan	1994.10	459	20,000	164 million	8,100
Papua New Guinea	Port Moresby	English, Tok Pisin, Hiri Motu	1975.9	462,840	6,732,000	7.907 billion	1,247
Samoa	Apia	Samoan, English	1962.1	2,831	179,000	558 million	3,077
Singapore	-	-	-	-	-	-	-
Seychelles	Victoria	Seychellois Creole, English and French	1976.6	451	84,000	767 million	8,973
Sao Tome and Principe	São Tomé	Portuguese	1975.7	1,001	163,000	191 million	1,174
Solomon Islands	Honiara	-	1978.7	28,896	523,000	657 million	1,223
Saint Kitts and Nevis	Basseterre	English	1983.9	261	42,696	557 million	10,315
Saint Lucia	Castries	English, French	1979.2	620	173,765	973 million	5,671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Kingstown	English	1979.10	389	120,000	567 million	5,291
Suriname	Paramaribo	Dutch	1975.11	163,821	481,267	2.962 billion	5,675
East Timor	Dili	Tetum and Portuguese	2002.5	14,874	1,134,000	590 million	542
Tonga	Nuku'alofa	Tongan, English	1970.6	748	104,000	313 million	3,032
Trinidad and Tobago	Port of Spain	English	1962.8	5,128	1,299,953	20.380 billion	15,580
Tuvalu	Funafuti	Tuvaluan, English	1978.10	26	12,373	14.94 million	1,600
Vanuatu	Port Vila	Bislama, English, French	1980.7	12,189 km2	243,304	635 million	2,635

자료 : 관련 자료 취합

부 록 4. SIDS에 유입된 ODA 총액(2000)

Country	Total financial flows						Of which ODA					
	1985	1990	1997	1998	1999	2000	1985	1990	1997	1998	1999	2000
Antigua and Barbuda	23	6	20	69	150	429	3	5	105	84	100	76
Aruba	12	75	26	-24	-37	-278	12	30	25	11	-7	11
Bahamas	521	251	937	2428	677	5799	1	3	3	23	12	6
Bahrain	302	119	659	952	-620	1469	72	137	92	48	4	49
Barbados	28	-6	453	1382	780	225	7	3	4	16	-2	0
Belize	29	36	54	65	59	78	22	30	14	15	46	15
Cape Verde	71	107	144	168	179	1196	70	108	111	130	137	94
Cook Islands	11	16	6	18	-42	-27	10	12	10	8	6	4
Comoros	51	45	27	100	139	-2	47	45	27	35	21	19
Cuba	72	158	17	184	180	70	20	51	65	80	59	44
Cyprus	178	386	450	719	606	644	37	39	48	34	53	54
Dominica	36	37	-53	34	15	11	17	20	158	20	10	15
Domimica Republic	342	165	132	276	942	360	207	102	71	121	195	62
Fed. States of Micronesia	-	-	-	-	-	-	-	-	-	-	-	-
Fiji	22	71	44	31	60	3	32	50	44	37	35	29
Grenada	33	21	11	9	3	29	4	14	9	6	10	17
Guinea-Bissau	63	135	134	96	53	84	58	129	124	96	52	80
Guyana	35	224	244	83	56	58	27	169	265	93	80	107
Haiti	142	154	273	348	262	176	150	168	325	407	263	208
Jamaica	219	301	444	47	340	417	169	271	72	19	-22	10
Kiribati	12	20	16	17	28	18	12	20	16	17	21	18
Maldives	11	38	42	33	32	12	9	21	26	25	31	19
Malta	21	106	661	572	734	869	18	4	22	22	25	21
Marshall Islands	-	-	69	33	119	165	-	-	63	50	63	57
Mauritius	28	160	309	145	389	410	27	89	43	42	42	20

Country	Total financial flows						Of which ODA					
	1985	1990	1997	1998	1999	2000	1985	1990	1997	1998	1999	2000
Nauru	2	1	-0.4	4	8	2	0	0	3	2	7	-
Netherlands Antilles	-1307	1202	1117	1758	1098	-1075	65	58	111	129	127	177
Niue	4	9	5	62	-1	23	4	7	5	4	4	3
Palau	-	-	116	87	35	55	-	-	38	89	29	39
Papua New Guinea	330	607	323	442	97	312	257	414	346	362	216	275
Samoa	20	54	48	35	24	29	19	48	27	37	23	27
Sao Tome and Principe	12	54	34	27	28	36	13	55	33	28	28	35
St. Kitts and Nevis	5	7	4	27	13	-57	4	8	7	7	5	4
St. Lucia	7	17	15	12	19	17	7	12	25	6	26	11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8	15	8	61	76	5	6	15	6	21	16	6
Seychelles	28	92	51	24	59	51	22	36	17	24	13	18
Singapore	-267	3372	5058	7989	18968	7190	24	-3	3	2	-1	1
Solomon Islands	22	58	133	55	40	55	21	46	42	43	40	68
Suriname	15	128	136	-68	36	23	11	62	76	59	36	34
Tokelau	2	5	2	1	5	-55	2	5	4	4	5	4
Tonga	14	30	30	25	-95	13	14	30	28	25	21	19
Trinidad and Tobago	-318	-78	-22	631	183	126	7	18	33	14	26	-1
Tuvalu	3	5	-1	4	7	-0.3	3	5	0	5	7	4
U.S Virgin Islands												
Vanuatu	39	149	-66	0	72	71	22	50	27	41	37	46

자료 : UN-OHRLLS

부 록 5. OECD 국가들의 2008년도 ODA 금액

	2008 ODA USD million current	2007 ODA USD million current	2008 ODA USD million(1) At 2007 prices and exchange rates	Percent change 2007 to 2008(1)
Australia	3166	2669	3038	13.8
Austria	1685	1837	1558	-15.1
Belgium	2432	2032	2262	11.3
Canada	4764	4119	4614	12.0
Denmark	2863	2666	2628	-1.4
Finland	1139	981	1047	6.7
France	12386	11498	11494	0.0
Germany	15891	13687	14844	8.5
Greece	693	501	636	26.9
Ireland	1325	1192	1269	6.4
Italy	4680	4290	4274	-0.4
Japan	17401	13566	15445	13.8
Luxembourg	409	376	382	1.8
Netherlands	7282	6620	6792	11.0
New Zealand	346	320	355	11.0
Norway	3967	3728	3638	-2.4
Portugal	621	477	576	20.8
Spain	7354	5442	6751	24.1
Sweden	4730	4339	4508	3.9
Switzerland	2027	1696	1804	6.4
United Kingdom	11789	11626	12625	8.6
United States	26930	22691	26340	16.1
TOTAL DAC	133879	116351	126882	9.1
Mini Items :				
EC	13527	11743	12532	6.7
DAC-EU countries	75278	67562	71647	6.0
G7 countries	93840	81477	89636	10.0
Non-G7 countries	40039	34874	37246	6.8

자료 : OECD, 30 March 2009

	2008 ODA USD million current	2007 ODA USD million current	2008 ODA USD million(1) At 2007	Percent change 2007 to 2008(1)
			prices and exchange rates	
Australia	3166	2669	3038	13.8
Austria	1685	1837	1558	-15.1
Belgium	2432	2032	2262	11.3
Canada	4764	4119	4614	12.0
Denmark	2863	2666	2628	-1.4
Finland	1139	981	1047	6.7
France	12386	11498	11494	0.0
Germany	15891	13687	14844	8.5
Greece	693	501	636	26.9
Ireland	1325	1192	1269	6.4
Italy	4680	4290	4274	-0.4
Japan	17401	13566	15445	13.8
Luxembourg	409	376	382	1.8
Netherlands	7282	6620	6792	11.0
New Zealand	346	320	355	11.0
Norway	3967	3728	3638	-2.4
Portugal	621	477	576	20.8
Spain	7354	5442	6751	24.1
Sweden	4730	4339	4508	3.9
Switzerland	2027	1696	1804	6.4
United Kingdom	11789	11626	12625	8.6
United States	26930	22691	26340	16.1
TOTAL DAC	133879	116351	126882	9.1
Semi Items :				
EC	13527	11743	12532	6.7
DAC-EU countries	75278	67562	71647	6.0
G7 countries	93840	81477	89636	10.0
Non-G7 countries	40039	34874	37246	6.8

부 록 6. PROGRESS TOWARD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SIDS)

		GOAL1 ERADICATE EXTREME POVERTY & HUNGER	GOAL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GOAL3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GOAL4 PROMOTE GENDER EQUALITY& EMPOWER WOMEN	GOAL5 PROMOTE GENDER EQUALITY& EMPOWER WOMEN	GOAL6 REDUCE CHILD MORTALITY	GOAL7 ENSURE ENV. SUSTAINA-BILITY
		Target Halve the Proportion of people suffering from hunger Undernourished	Target Ensure that all children can complete primary education	Target Ensure that all children can complete primary education	Target Eliminate gender disparity in all levels of education	Target Eliminate gender disparity in all levels of education	Target Reduce under-five and infant mortality rates b two thirds	Target halve the proportion of people without access to impr. water sources
		people (as%of total population)	Net primary Enrolment ratio(%)	Net primary Enrolment ratio(%)	Female gross Primary enrolment ratio as % of Male ratio	Female gross Primary enrolment Ratio as % of Male ratio	Under-five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births)	Popl. using impr. water sources (%)
1.	Antigua & Barb.	-	-	-	-	-	On track	On track
2.	Bahamas	-	-	-	-	-	On track	On track
3.	Bahrain	-	On track	On track	Achieved	Achieved	On track	-
4.	Barbados	-	-	-	-	-	On track	On track
5.	Belize	-	-	-	-	-	Far behind	-
6.	Cape Verde	-	-	-	On track	Achieved	On track	-
7.	Comoros	-	-	-	-	On track	On track	Achieved
8.	Cuba	Slipping back	On track	-	On track	Achieved	On track	On track
9.	Cyprus	-	Slipping back	Achieved	Achieved	Achieved	On track	On track
10.	Dominica	-	-	-	-	-	On track	On track
11.	Dominica Rep.	Far behind	-	-	Achieved	Achieved	On track	Far behind
12.	Micronesia, Fed	-	-	-	-	-	On track	-
13.	Fiji	-	-	-	-	-	On track	-
14.	Grenada	-	-	-	-	-	On track	On track
15.	Guinea-Bissau	-	-	-	-	-	Far behind	-
16.	Guyana	On track	Slipping back	On track	On track	Achieved	Far behind	On track
17.	Haiti	Lagging	On track	-	-	-	Far behind	Far behind
18.	Jamaica	On track	-	-	On track	-	Far behind	-

19.	Kiribati	-	-	On track	-	-	Lagging	-
20.	Maldives	-	-	-	On track	Achieved	On track	On track
21.	Malta	-	Achieved	Achieved	On track	On track	On track	On track
22.	Marshall Islands	-	-	-	-	-	On track	-
23.	Mauritius	On track	On track	On track	Achieved	Achieved	On track	On track
24.	Nauru	-	-	-	-	-	-	-
25.	Palau	-	-	-	-	-	Far behind	-
26.	Papua New Guinea	Far behind	-	-	Far behind	Far behind	Far behind	Far behind
27.	Samoa	-	On track	-	On track	Achieved	On track	On track
28.	Sao Tome& Prin.	-	-	-	-	-	Far behind	-
29.	St. Kitts & Nevis	-	-	-	-	-	On track	On track
30.	St. Lucia	-	-	-	-	-	On track	On track
31.	St. Vincent& Gr.	-	-	-	-	-	Far behind	On track
32.	Seychelles	-	-	On track	-	-	On track	-
33.	Singapore	-	On track	-	On track	-	On track	On track
34.	Solomon Islands	-	-	-	-	-	On track	-
35.	Suriname	On track	-	-	-	-	On track	On track
36.	Tonga	-	-	-	-	-	On track	On track
37.	Trinidad&Tob.	Far behind	Far behind	On track	On track	Achieved	On track	-
38.	Tuvalu	-	-	-	-	-	Far behind	On track
39.	Vanuatu	-	-	-	-	-	On track	-

자료 : OECD, 30 March 2009

부 록 7. AOSIS 관련 유엔 기구

AOSIS	Association of Small Island States
CBD	Secretariat fo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CD	Secretariat for the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FAO	FAO-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in Climate Change Secretariat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SIDSNet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Network
UN-OHRLLS	UN-OHRLLS-(LDCs, LLDCs, and SIDS)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CTAD	UNCTAD Special Programme on LCDs, LLDCs and SIDS
UNDP	UNDP Capacity 2015: Small Island Development States(SIDS)
UNEP	UNEP Caribbean Environment Programme
UNEP	UNEP Islands
UNESCO	UNESCO implementing Mauritius Strategy
UNESCO	UNESCO Small Islands Voice
UNESCO	UNESCO On the Frontlines of Climate Change
UN Office for Partnershi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artnerships
UNIDO	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orld Bank	World Bank (Small States)
WTO	World Trade Organization(Work Programme in Small Economies)

자료 : 유엔 및 관련 기구 홈페이지

부 록 8. OECD DAC 회원국의 ODA

country	2008(preliminary)		Assumptions (ODA/GNI ratios)	2010			
	Net ODA (2008 USDm)	ODA/ GNI		Net ODA (2008 USDm)	ODA/ GNI	Real change in ODA compared with 2008	
						(2008 USDm)	precent
Austria	1681	0.42%	0.51% in 2010	1945	0.51%	264	16%
Belgium	2381	0.47%	0.7% in 2010	3361	0.70%	980	41%
Denmark	2800	0.82%	Minimum 0.8%	2623	0.80%	-177	-6%
Finland	1139	0.43%	0.51% in 2010	1300	0.51%	161	14%
France	10957	0.39%	0.51 in 2010 and 0.7% in 2015	13909	0.51%	2952	27%
Germany	13910	0.38%	0.51% in 2010	17687	0.51%	3777	27%
Greece	693	0.20%	0.35% in 2010	1145	0.35%	452	65%
Ireland	1325	0.58%	0.6 in 2010 and 0.7% in 2012	1307	0.60%	-17	-1%
Italy	4444	0.20%	0.51% in 2010	10866	0.51%	6423	145%
Luxembourg	409	0.92%	0.93 in 2010 and 1% in following years	395	0.93%	-14	-3%
Netherlands	6993	0.80%	Minimum 0.8%	6647	0.80%	-346	-5%
Portugal	614	0.27%	0.51% in 2010	1119	0.51%	505	82%
Spain	6686	0.43%	0.56% in 2010 and 0.7% in 2012	8271	0.56%	1585	24%
Sweden	4730	0.98%	1%	4625	1.00%	-105	-2%
United Kingdom	11409	0.43%	0.56% in 2010-11 and 0.7% in 2013	14243	0.56%	22834	25%
DAC EU members, total	70168	0.42%		89441	0.56%	19273	27%
Australia	3166	0.34%	See footnote 5	3266	0.37%	100	3%
Canada	4725	0.32%	See footnote 6	4875	0.34%	150	3%
Japan	9362	0.18%	See footnote 7	13310	0.28%	3948	42%
New Zealand	346	0.30%	See footnote 8	145	0.35%	69	20%
Norway	3967	0.88%	1% over 2006-09	4295	1.00%	327	8%
Switzerland	2016	0.41%	See footnote 9	1862	0.40%	-154	-8%
United States	26008	0.10%	See footnote 10	27647	0.20%	1639	6%
DAC members, total	119759	0.30%		145110	0.39%	25351	21%

자료 : OECD, 30 March 2009

부 록 9. 주요 수산국의 ODA 목적 및 중점 지원국

국가	개발 원조 목적	중점 지원국
노르웨이	해당국의 빈곤퇴치 전략과 기타 국가전략을 지원함으로써 빈곤감소 및 MDGs 달성	수단, 팔레스타인,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 최빈국 중심
호주	개발도상국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호주의 국익 증진	인도네시아, 이라크, PNG, 솔로몬 등 주변국 중심
중국	자원 확보를 통한 중국의 국익 증진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자원 부국 중심
일본	해당국의 빈곤퇴치전략과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등 기타 국가전략을 지원함	중서부태평양 국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자원부국 중심
대만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및 국익 추구	인도네시아, PNG, 솔로몬, 아이티 등 도서국가 중심

주 : 노르웨이와 호주는 OECD/DAC(2009)에 원조목적 명시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분야 양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2010. p. 128

부 록 10. 주요 DAC 회원국 및 한국, 중국, 대만의 대외원조유형화

유형 \ 규모	0.7% 이상 (UN 목표)	0.3~0.7%	0.3% 미만	
인도주의형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독일, 스위스, 아일랜드	-	
식민지 관리형	-	호주, 프랑스,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	
경제실익형	-	오스트리아, 스페인	한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중국,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
안보전략형	-	-	미국	

주 : 원조규모는 국가별 GNI 대비 원조 비중 (2007년 기준)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수산분야 양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2010. p. 129

부 록 11. OECD/DAC 주요 가이드라인

연도	주요 가이드라인 및 내용
1996	◦ 21세기 개발협력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
2001	◦ 빈곤완화를 위한 지침 - UN의 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채택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지침 ◦ 개도국의 세계무역체제 내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 ◦ 폭력적 분쟁과 갈등의 예방
2002	◦ 개발협력과 리우 환경의제 간 통합을 위한 지침
2003	◦ 빈곤과 보건 간 악순환 고리의 단절 ◦ 공여국 간 효과적 협력 증진 ◦ 테러 예방을 위한 개발협력 과제
2004	◦ 인권과 국가안보(범죄예방, 공중안전)를 위한 통치체계 개혁방안
2005	◦ 안보시스템 개혁 및 통치체계 ◦ 빈곤감소를 위한 환경세 개혁 ◦ 원조관리: DAC 회원국의 실행
2006	◦ 효율적인 원조관리를 위한 공여국의 실행 종합 2 - 공공재정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종합적 접근방식 및 역량강화 개발 ◦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촉진 - ODA의 역할 ◦ 역량강화 개발을 위한 과제: 우수 개발사례 창출을 위한 노력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분야 양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2010. p. 137

부 록 12. 미국의 ODA 현황

UNITED ST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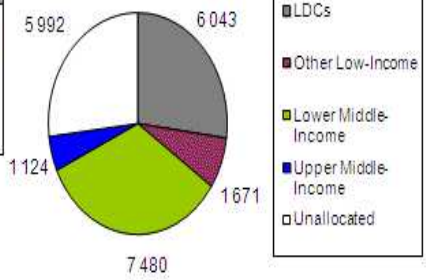
Gross Bilateral ODA, 2007-08 average, unless otherwise shown

Net ODA	2007	2008	Change 2007/08
Current (USD m)	21 787	26 842	23.2%
Constant (2007 USD m)	21 787	26 254	20.5%
ODA/GNI	0.16%	0.19%	
Bilateral share	87%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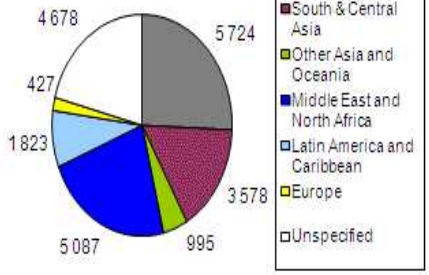
Top Ten Recipients of Gross ODA (USD million)	
1 Iraq	3 246
2 Afghanistan	1 816
3 Sudan	779
4 Egypt	684
5 Ethiopia	592
6 Colombia	520
7 Pakistan	398
8 Kenya	383
9 Palestinian Adm. Areas	351
10 Uganda	327
Memo: Share of gross bilateral ODA	
Top 5 recipients	32%
Top 10 recipients	41%
Top 20 recipients	52%

By Income Group (USD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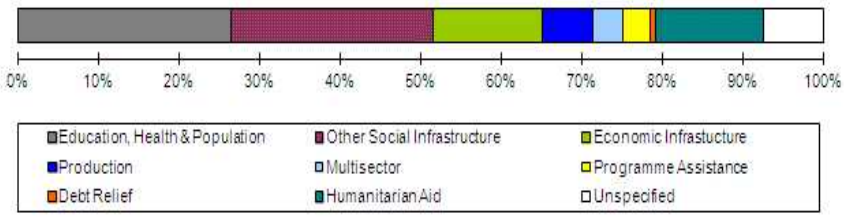
Clockwise from top



By Region (USD m)



By Sector



Source: OECD - DAC ; www.oecd.org/dac/stats

부 록 13. 일본의 ODA 현황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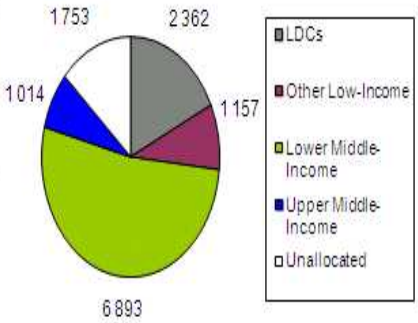
Gross Bilateral ODA, 2007-08 average, unless otherwise shown

Net ODA	2007	2008	Change 2007/08
Current (USD m)	7 679	9 579	24.7%
Constant (2007 USD m)	7 679	8 502	10.7%
In Yen (billion)	905	991	9.6%
ODA/GNI	0.17%	0.19%	
Bilateral share	75%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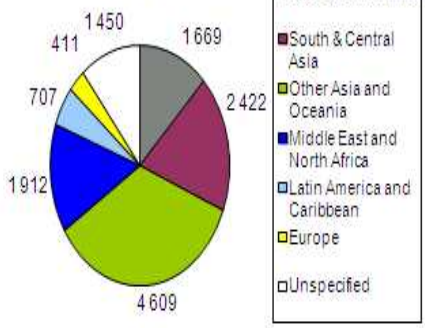
Top Ten Recipients of Gross ODA (USD million)	
1 Iraq	1 402
2 China	1 196
3 Indonesia	1 191
4 India	949
5 Viet Nam	780
6 Philippines	599
7 Bangladesh	540
8 Tanzania	396
9 Turkey	354
10 Sri Lanka	288
Memo: Share of gross bilateral ODA	
Top 5 recipients	42%
Top 10 recipients	58%
Top 20 recipients	69%

By Income Group (USD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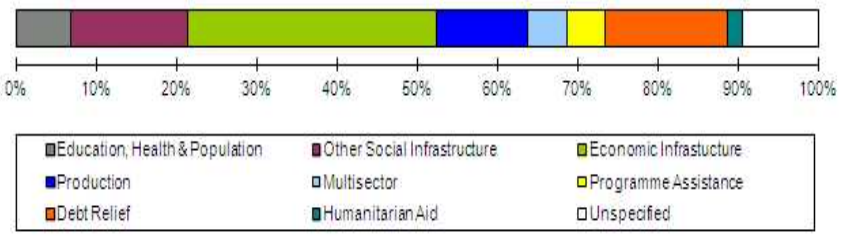
Clockwise from top



By Region (USD m)



By Sector



Source: OECD - DAC ; www.oecd.org/dac/stats

부 록 14. EU의 ODA 현황

EU INSTIT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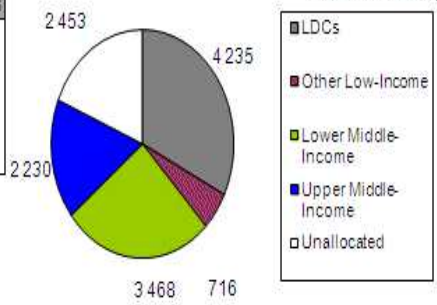
Gross Bilateral ODA, 2007-08 average, unless otherwise shown

Net ODA	2007	2008	Change 2007/08
Current (USD m)	11 634	14 757	26.8%
Constant (2007 USD m)	11 634	13 670	17.5%
In Euro (million)	8 499	10 231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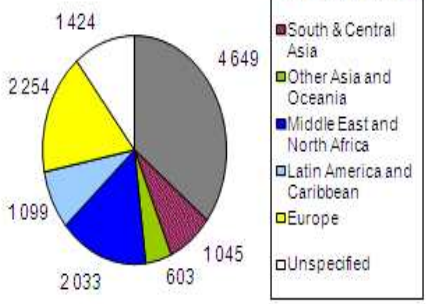
Top Ten Recipients of Gross ODA (USD million)	
1 Turkey	961
2 Palestinian Adm. Areas	602
3 Ethiopia	419
4 Morocco	402
5 Serbia	332
6 Afghanistan	328
7 Sudan	266
8 Egypt	229
9 Croatia	219
10 Uganda	210
Memo: Share of gross bilateral ODA	
Top 5 recipients	21%
Top 10 recipients	30%
Top 20 recipients	44%

By Income Group (USD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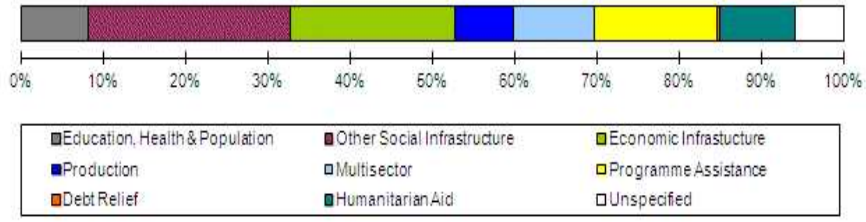
Clockwise from top



By Region (USD m)



By Sector



Source: OECD - DAC ; www.oecd.org/dac/stats

부 록 15. ODA to Oceania

6.1.1. Top 10 ODA receipts by recipient
USD million, net disbursements in 2008

1	Papua New Guinea	304	20%
2	Solomon Islands	224	15%
3	Wallis & Futuna	131	9%
4	Micronesia, Fed. States	94	6%
5	Vanuatu	92	6%
6	Marshall Islands	53	3%
7	Fiji	45	3%
8	Palau	43	3%
9	Samoa	39	3%
10	Nauru	31	2%
	Other recipients	478	31%
	Total	1 53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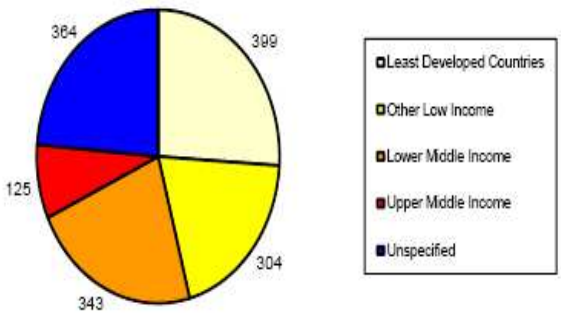
6.1.2. Top 10 ODA donors
USD million, net disbursements in 2008

1	Australia	724	47%
2	United States	188	12%
3	New Zealand	156	10%
4	France	148	10%
5	EU Institutions	94	6%
6	UNTA	85	6%
7	Japan	73	5%
8	Global Fund	16	1.0%
9	UNICEF	7	0.4%
10	UNDP	6	0.4%
	Other donors	38	2%
	Total	1 53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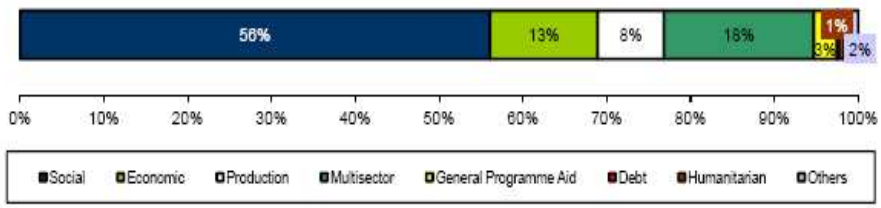
6.1.3. Trends in ODA

	2007	2008	% change
ODA net disbursements (2007 USD million)	1 309	1 473	12.6%
ODA commitments (2007 USD million)	1 587	1 744	9.9%
Population (thousands)	8 534	8 655	1.4%
Net ODA per capita (USD)	153.4	177.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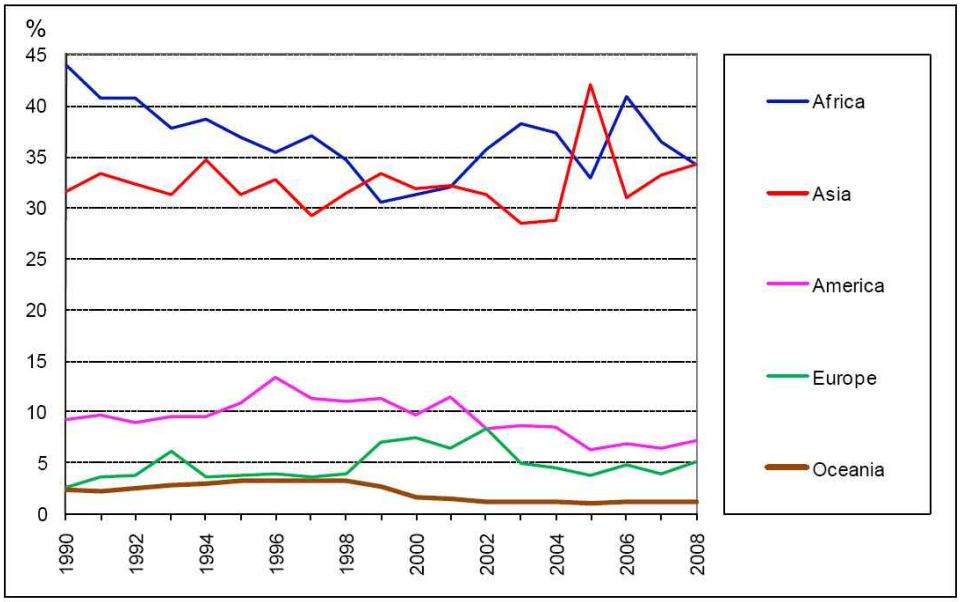
6.1.4. ODA by income group
USD million, 2008, net disbursements



6.1.5. Sectors in 2008
commit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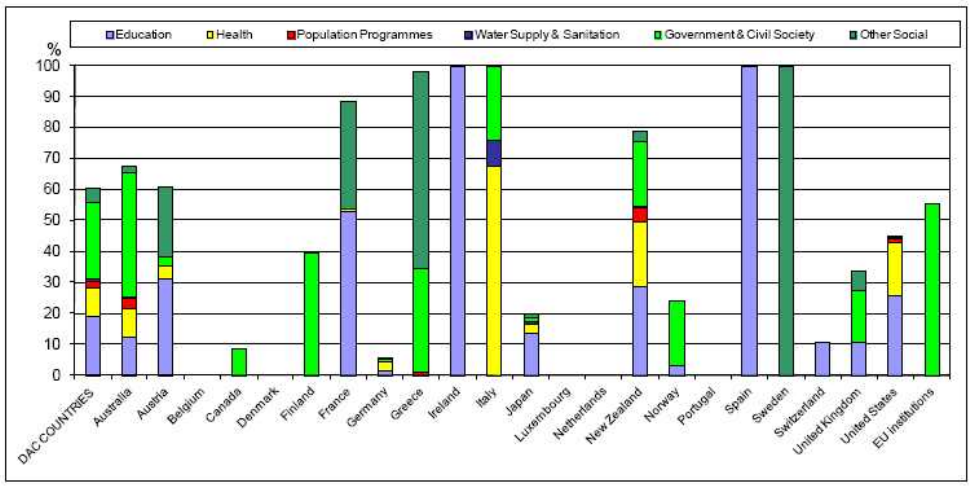
6.1.8. Regional shares of total net ODA
As a percentage of total O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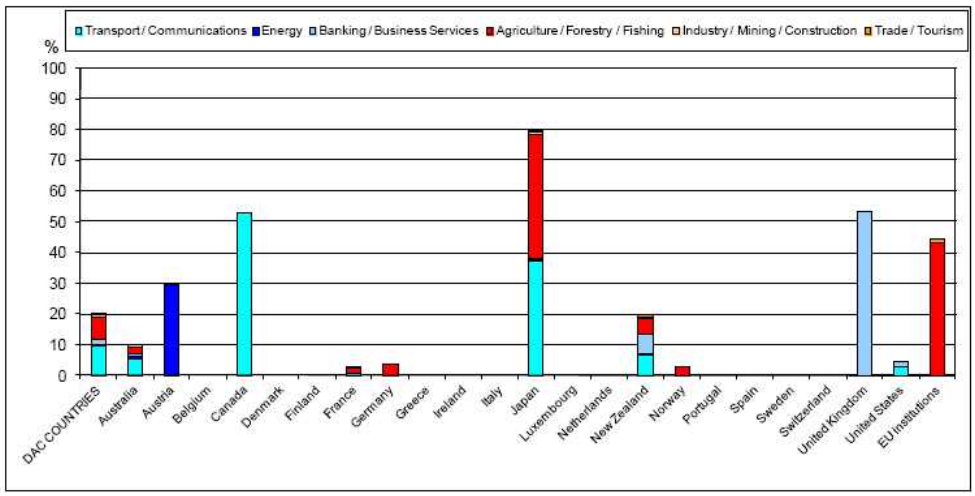
6.2.7. Top 10 ODA recipients in Oceania
USD million, receipts from all donors, net ODA receipts

		2006	2007	2008	3-year average	% of all recipients
1	Papua New Guinea	279	324	304	**303**	22%
2	Solomon Islands	205	246	224	**225**	17%
3	Wallis & Futuna	102	117	131	**117**	9%
4	Micronesia, Fed. States	109	115	94	**106**	8%
5	Vanuatu	49	57	92	**66**	5%
6	Marshall Islands	55	52	53	**53**	4%
7	Fiji	56	51	45	**51**	4%
8	Samoa	47	37	39	**41**	3%
9	Palau	37	22	43	**34**	3%
10	Kiribati	27	27	27	**27**	2%
	Other recipients	234	260	482	**325**	24%
	Total ODA recipients	**1 199**	**1 309**	**1 535**	**1 348**	**100%**

6.3.4. Analysis of social sector ODA to Oceania by donor
As a percentage of total sector-allocable commitments for each donor in 2008



6.3.6. Analysis of economic and production sector ODA to Oceania by donor
As a percentage of total sector-allocable commitments for donor in 2008



자료 :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dataoecd/43/29/42139429.pdf) 참조

부 록 16. DAC의 지원분야별 분류 목록

대분류	중/소 분류 영문명	중/소 분류 한글명
양자간 배분 가능 원조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분		
교육	Education, level unspecified(중분류)	교육일반(비특별분야)
	Educ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Education facilities and training	교육시설 및 특별연수
	Teacher training	교사훈련
	Educational research	취학전 교육
	Basic education(중분류)	기초교육
	Primary education	초등교육
	Basic life skills for youth and adults	기초생활교육
	Early childhood education	취학전 교육
	Secondary education(중분류)	증고등교육
	Secondary education	중고등교육
	Vocational technical and managerial training	고급기술 및 관리자 교육
	Post-secondary education(중분류)	대학, 전문교육
	Higher education	전문대, 대학(원) 교육
	Advanced technical and managerial training	고급기술 및 관리자 교육
보건	Health, general(중분류)	보건 일반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Medical education/training	의료교육 및 훈련
	Medical research	의료연구
	Medical service	의료서비스
	Basic health(중분류)	기초보건
	Basic health care	기초보건진료
	Basic health infrastructure	기초의료설비
	Basic nutrition	기초영양
	Infectious disease control	전염병 관리 및 예방 (말라리아, 결핵, 성병 제외)
	Health education	보건교육
	Malaria control	말라리아 관리 및 예방
	Tuberculosis control	결핵 관리 및 예방
	Health personnel development	보건인력개발

대분류	중/소 분류 영문명	중/소 분류 한글명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Popul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인구정책 및 행정관리
	Reproduction health care	생식보건
	Family planning	가족계획
	STD control including HIV/AIDS	성병대책(HIV/AIDS 포함)
	Personnel development for population and reproduction health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을 위한 인력개발
수자원 및 위생	Water resources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수자원정책 및 행정관리
	Water resources protection	수자원보호
	Water supply and sanitation-large system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 (플랜트시설 등)
	Basic drinking water supply and basic sanitation	기초식수공급 및 기초위생
	River development	하천개발
	Waste management/disposal	폐기물 관리 및 처리
	Education and training in water supply and sanitation	식수공급 및 위생 부문교육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general(중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Economic and development policy/planning	경제개발계획
	Public sector financial management	공공부문 재정관리
	Legal and judicial development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
	Government administration	공공행정
	Strengthening civil society	시민사회 강화
	Elections	선거
	Human rights	인권감시 및 교육
	Free flow of information	자유로운 정보유통
	Women's equality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성평등 조직 및 제도
분쟁예방 및 해결/평화 및 치안	Security system management and reform	치안제도 관리 및 개선
	Civilian peace-building,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민간주도의 분쟁예방
	Post-conflict peace-building(UN)	UN평화유지군 활동
	Reintegration and SALW control	동원해제 및 무장해제
	Land mine clearance	지뢰제거
	Child soldiers(Prevention and demobilization)	소년병(모집예방, 동원해제, 무장해제)

대분류	중/소 분류 영문명	중/소 분류 한글명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Social/welfare service	사회/복지 서비스
	Employment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고용정책 및 행정관리
	Housing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주택정책 및 행정관리
	Low-cost housing	저비용 주택개발
	Multisector aid for basic social services	기초사회서비스에 대한 다부문 원조
	Culture and recreation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통계능력 강화
	Narcotics control	마약관리
	Social mitigation of HIV/AIDS	AIDS 사회적 영향 완화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		
교통	Transport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운송정책 및 행정관리
	Road transport	도로운송
	Rail transport	철도운송
	Water transport	수로운송
	Air transport	항공운송
	Storage	운송관련 창고
	Education and training in transport and storage	운송 및 창고부문 교육
통신	Communic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통신정책 및 행정관리
	Telecommunications	통신/전화
	Radio/television/print media	라디오/텔레비전/인쇄매체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개발 및 공급	Energy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에너지 정책 및 행정관리
	Power generation/non-renewable sources	전략생산/재생불능 자원사용
	Power generation/renewable sources	전력생산/재생가능 자원사용
	Electrical transmission/distribution	전력송전/배전
	Gas distribution	가스공급
	Oil-fired power plants	유류화력발전소

대분류	중/소 분류 영문명	중/소 분류 한글명
에너지 개발 및 공급	Gas-fired power plants	가스화력발전소
	Coal-fired power plants	석탄화력발전소
	Nuclear-fired power plants	원자력발전소
	Hydro-fired power plants	수력발전소
	Geothermal energy	지열발전소
	Solar energy	태양에너지
	Wind power	풍력발전
	Ocean power	조력발전
	Biomass	생물자원에너지
	Energy education/training	에너지교육/훈련
	Energy research	에너지 연구 산업인프라
금융 및 재무서비스	Financial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금융정책 및 행정관리
	Monetary institution	중앙금융기관
	Formal sector financial intermediaries	공공금융기관
	Informal/semi-formal financial intermediaries	비정규/유사 금융기관
	Education/training in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금융 및 재무부문 교육
비즈니스 및 기타서비스	Business support services and institutions	비즈니스 지원서비스 제도
	Privatization	민영화
생산부문		
농업	Agricultural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Agricultural development	농업개발
	Agricultural land resources	농지개발
	Agricultural water resources	농업용수자원
	Agricultural inputs	농업관련 기자재
	Food crop production	식량생산
	Industrial crops/export crops	경제작물/수출작물
	Livestock	축산
	Agrarian reform	농지제도 개혁(경지정리 등)
	Agricultural alternative development	농업관련 마약대체 소득원 개발
	Agricultural extension	비정규 농업훈련
	Agricultural education /training	농업관련 교육/훈련
	Agricultural research	농업연구

대분류	중/소 분류 영문명	중/소 분류 한글명
	Agricultural services	농업관련 서비스
	Plant and post-harvest protection and pest control	병충해 구제
	Agricultural financial services	농업금융 서비스
	Agricultural co-operatives	농업협동조합
	Livestock/veterinary services	축산진료
임업	Forestry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임업정책 및 행정관리
	Forestry development	임업개발
	Fuelwood/charcoal	연료용 목재/숯
	Forestry education/training	임업교육/훈련
	Forestry research	임업연구
	Forestry services	임산물 유통지원
어업	Fishing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어업정책 및 행정관리
	Fishery development	어업개발
	Fishery education/training	어업교육/훈련
	Fishery research	어업연구
	Fishery services	수산물 유통지원
산업	Industrial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산업정책 및 행정관리
	Industrial development	산업개발
	SME development	중소기업 개발
	Cottage industries and handicraft	가내공업 및 수공업
	Agro-industries	농수산물 가공업
	Forest industries	임산물 가공
	Textiles, leather and substitutes	섬유, 피혁 및 대체소재
	Chemicals	화공
	Fertilizer plants	비료공장
	Cement/lime/plaster	시멘트/인조대리석/소석회
	Energy manufacturing	에너지 가공
	Pharmaceutical production	의약품 생산
	Basic metal industries	철강산업
	Non-ferrous metal industries	비철금속산업
	Engineering	엔지니어링(기계공업)
	Transport equipment industry	수송기계산업
	Techn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기술연구개발

대분류	중/소 분류 영문명	중/소 분류 한글명
광물자원 및 광업	Mineral/mining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광물/광업정책 및 행정관리
	Mineral prospection and exploration	광물탐사
	Coal	석탄
	Oil and gas	석유 및 가스
	Ferrous metals	철금속
	nonferrous metals	비철금속
	Precious metals/materials	귀금속/보석류
	Industrial minerals	공업용 석재
	Fertilizer minerals	비료용 광물
	Offshore minerals	해양광물
건설	Construc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건설정책 및 행정관리
통상정책 및 규정	Trade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통상정책 및 행정관리
	Trade facilitation	무역진흥
	Regional trade agreements(RTAs)	지역무역협정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다자간 무역협상
	Trade-related adjustment	통상관련 조정
	Trade education/training	무역교육 및 훈련
관광	Tourism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관광정책 및 행정관리
다부문		
다부문	General environmental protection(중분류)	환경보호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환경정책 및 행정관리
	Biosphere protection	생물권역 보호
	Bio-diversity	생물다양성
	Site preservation	자연문화유산 보호
	Flood prevention/control	홍수방지/대책
	Environmental education/training	환경교육/훈련
	Environmental research	환경연구
	Other multisector(중분류)	기타 다부문
	Multisector aid	다부문 원조
	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도시개발 및 관리
	Rural development and management	농촌개발
	Non-agricultural alternative development	비농업분야 마약대체 개발
	Multisector education/training	기타교육
	Research/scientific institution	연구/과학기관

대분류	중/소 분류 영문명	중/소 분류 한글명
양자간 배분 불가능 원조		
물자원조 및 일반 프로그램 원조	General budget support(중분류)	일반예산지원
	General budget support	일반예산지원
	Food aid/Food security assistance(중분류)	식량원조/식량안보 지원
	Food aid/Food security programmes	식량원조/식량안보 프로그램 (긴급식량원조 제외)
	Other commodity assistance(중분류)	기타물자지원
	Import support(capital goods)	수입지원(자본재)
	Import support(commodities)	수입지원(소비재)
부채관련 지원	Action relating to debt	부채관련지원
	Debt forgiveness	채무탕감
	Relief of multilateral debt	다자간 채무구제
	Rescheduling and refinancing	채무재조정/리파이낸스
	Debt for development swap	개발관련 부채 스와프
	Other debt swap	기타 부채 스와프 (개발관련 스와프 제외)
	Debt pay-back	부채환매
인도적 지원	Emergency response(중분류)	긴급구호
	Multilateral relief assistance and services	구호 물자지원 및 서비스
	Emergency food aid	긴급식량원조
	Relief co-ordination/protection and support services	긴급구호 조정/보호 및 안전확보
	Reconstruction relief(중분류)	재건구호
	Reconstruction relief	재건구호
	Disaster prevention and preparedness(중분류)	재난 방지 및 준비
	Disaster prevention and preparedness	재난 방지 및 준비
원조국 행정비용	Administrative costs	행정비용
NGO 지원	Support to national NGOs	공여국 내 NGO지원
	Support to international NGOs	국제 NGO 지원
	Support to local and regional NGOs	수원국 및 수원지역 NGO 지원
공여국 내 난민지원	Refugees in donor countries	공여국 내 난민지원
비배분/ 비특정	Sectors not specified	비특정분야
	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개발인식 증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우리나라 ODA 통계자료집」, 2009, pp. 120~125

부 록 17. ODA 적격기구, 국제 NGO, PPP, Networks 목록[356)]

1. ODA 적격 국제기구

○ 아래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만이 다자간 ODA로 인정됨

	UN Agencies, Funds and Commissions	
UN 기구	UNCCD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DLCO-EA	Dessert Locust Control Organization for Eastern Africa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IAEA-TC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Technical Cooperation Fund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NSTRAW	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CDF	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DEF	United Nations Democracy Fund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s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s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 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 Programme
	UNHCR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FEM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TAR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
	UNOCHA	United Nations Office of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RISD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356) 2009 DAC 발표 기준.

UN 기구	UNSSC	United Nations System Staff College
	UNSCN	United Nations System Standing Committee on Nutrition
	UNSIA	United Nations Special Initiative on Africa
	UNU	United Nations University(Endowment Fund 포함)
	UNV	United Nations Volunteers
	UNVFD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on Disability
	UNVFTC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UNVFVT	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for Victims of Torture
	WFP	World Food Programme
	PBF Windows 2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Fund
	Other UN(이 기관에 대한 다자간 ODA는 괄호 안의 %만큼만 인정)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51%)
	IAEA-assesse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33%)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15%)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18%)
	OHCH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extra-budgetary contribution only)(64%)
	UN	United Nations(12%)
	UNDPKO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7%) (UNISO, UNMOGIP, UNFICYP, UNDOF는 제외)
	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extra-budgetary contribution only)(89%)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44%)
	UPU	Universal Postal Union(16%)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76%)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3%)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4%)
	PBF Window 1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fund (Window One: Flexible Contributions Only)(80%)
EC	EC	European Commission-Budget: Development
	EDF	European Development Fund
	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이차보전만 해당)
	FEMIP	Facility for Euro-Mediterranean Investment and Partnership Trust Fund
	GEEREF	Glob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und
IMF	IMF-PRGF-HIPC Trust	International Monetary Fund-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Trust(HIPC, PRGF, PRGF-HIPC sub-accounts 포함)

	IMF-PRGF Trust	International Monetary Fund-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Trust
	IMF-ENDA	International Monetary Fund-Subsidization of IMF Emergency Assistance for Natural Disasters
세계은행그룹	AMCs	Advanced market Commitments
	IBRD	International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HIPC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Debt Initiative Trust Fund
	IDA-MDRI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WTO	WTO-ACWL	World Trade Organization-Advisory Centre on WTO Law
	WTO-DDAGTF	World Trade Organization-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WTO-ITC	World Trade Organization-International Trade Centre
지역개발은행	Afr-DB	African Development Bank
	Afr-DF	African Development Fund
	ASF	African Solidarity fund
	CAF	Andean Development Corporation
	AsDB	Asian Development Bank
	AsDF	Asian Development Fund
	BSTDB	Black Sea Trade and Development Bank (지원금액의 61%만 ODA로 보고 가능)
	CDB	Caribbean Development Bank
	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Ordinary Capital, 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and Multilateral Investment Fund
	IDB Sp.F.	Inter-American Development Fund for Special Operations
기타다자간원조기구	SCAAP	(Colombo Plan) Special Commonwealth African Assistance Programme
	WARDA	Africa Rice Centre
	CAMES	African and Malagasy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BF	African Capacity Building Foundation
	AU	African Union(peacekeeping facilities 제외)
	ASEAN(CF)	ASEAN Cultural Fund
	APO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APEC ASF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pport Fund(contribution tied to counter-terrorism activities 제외)
	APFIC	Asia-Pacific Fishery Commission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Economic Cooperation

	CARICOM	Caribbean Community Secretariat
	CAREC	Caribbean Epidemiology Centre
	CEI Climate Fund	Central European Initiative-Special Fund for Climat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CDDR,B	Centre for Health and Population Research
	CIFOR	Centre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CP	Colombo Plan
	CFC	Common Fund for Commodities
	CAPAM	Commonwealth Agency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CF	Commonwealth Foundation
	CFTC	Commonwealth Fund for Technical Cooperation
	CI	Commonwealth Industries
	CLAS	Commonwealth Legal Advisory Service
	CMDF	Commonwealth Media Development Fund
	COL	Commonwealth of Learning
	CPIM	Commonwealth Partnership for Technical Management
	CSC	Commonwealth Scientific Council
	CSSO	Commonwealth Small States Office
	CTIAF	Commonwealth Trade and Investment Access Facility
	CYP	Commonwealth Youth Programme
	CPLP	Community of Portuguese Speaking Countries
	CGIAR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EROPA	Eastern-Regional Organ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CEMAC	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of Central Africa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NDA	Environmental Development Action in the Third World
	EPPO	European and Mediterranean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ETC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Early Transition Countries Initiative
	-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Western Balkans Trust Fund
	FFTC	Food and Fertilizer Technology Centre
	FFA	Forum Fisheries Agency
	FIT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Training
	DCAF	Geneva Centre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GAVI	Global Alliance for Vaccine and Immunization
	-	Global Crop Diversity Trust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지원금의 96%만 ODA로 보고가능)
	Global Fund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IF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IAII	Inter-American Indian Institute
	IICA	Inter-American Institute for Cooperation on Agriculture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AI	International African Institute
	IBE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International Educational Reporting System(IERS)
	CIHEAM	International Centre for Advanced Mediterranean Agronomic Studies
	ICARDA	International Centre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Dry Areas
	ICRA	International Centre for Development Oriented Research in Agriculture
	CLAT	International Centre for Tropical Agriculture
	ICIPE	International Centre of Insect Physiology and Ecology
	ICAC	International Cotton Advisory Committee
	ICRISAT	International Crop Research for Semi-Arid Tropics
	IDLO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Organization
	IFFLm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Immunization (공여국이 실제로 자금을 지출할 때 ODA로 인식)
	IIC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tton
	IDE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ITA	International Institute of Tropical Agriculture
	ILRI	Inter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CIMMYT	International Maize and Wheat Improvement Centre
	INBAR	International Network for Bamboo and Rattan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OIF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the Francophonie
	CIP	International Potato Centre
	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ITTO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WMI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FASTPED	INTERPOL Fund for Aid and Technical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JSCA	Justice Studies Centre of the Americas
	OLADE	Latin-American Energy Organization
	MRC	Mekong River Commission
	MDRP	Multi-country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Program
	Montreal Protocol	Multilateral Fun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treal Protocol
	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OECD-Dev. Centre	OECD Development Centre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Contribution to special funds for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Only)
	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ECS	Organization of Eastern Caribbean States
	BSEC	Organization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지원금액의 78%만 ODA로 보고가능)
	PIFS	Pacific Islands Forum Secretariat
	SPREP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
	PAHO	Pan-American Health Organization
	PAIGH	Pan-American Institute of Geography and History
	PARCA	Pan-American Railway Congress Association
	PIDG	Private Infrastructure Development Group
	CREFIAF	Regional Organization for the Strengthening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of Francophone Sub-Saharan Countries
	RN	Relief Net
	OSS	Sahara and Sahel Observatory
	SWAC	Sahel and West Africa Club
	SPC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EAFDC	South East Asian Fisheries Development Centre
	SEAMEO	South East Asian Ministers of Education
	SOPAC	South Pacific Applied Geoscience Commission
	SPBEA	South Pacific Board for Educational Assessment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TCC	Southern African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UCLGA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of Africa
	USP	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UNPO	Unrepresented Nations and People's Organization
	WAMU	West African Monetary Union
	ICRAF	World AgroForestry Centre
	WCO-Fellowhip Prog.	World Customs Organization Fellowship Programme
	WMU	World Maritime University
	AVRDC	World Vegetable Centre
	World Fish Centre	World Fish Centre

2. ODA 적격 '국제 NGO' 목록

○ 국제 NGO 지원의 경우 아래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만을 양자간 ODA로 인정

AMREF	African Medical and Research Foundation
ACORD	Agency for Cooperation and Research in Development
ATTIC	Agency for International Trade Information and Cooperation
-	AgriCord
AAU	Association of African Universities
AGID	Association of Geoscientis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UTS	Consumer Unity and Trust Society International
CODESRIA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 Africa
-	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
MSF	Doctors without Borders
ELCI	Environmental Liaison Centre International
ECDPM	European Centre for Development Policy Management
AWEPA	European Parliamentarians for Africa
Eurostep	Eurostep
FAWE	Forum for African Women Educationalists
FARA	Forum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Africa
-	Geneva Call
GCE	Global Campaign for Education
HAI	Health Action International
HURIDOCS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
ISPEC	Institute Superieur Panafricaine d'Economie Coop'erative
IPS	Inter Press Service, International Association
-	International Alert
ICRA	International Catholic Rural Association
ICTSD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CTJ	International Centre for Transitional Justice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CIDD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Control of Iodine Deficiency Disorders
IFRCRC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ettlements and Neighbourhood Centre
-	International HIV/AIDS Alliance
IIE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IS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AFI	International Networks for Alternative Financial Institutions
Interpeace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lliance
ISC	International Seismological Centre
ISHR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ITF	International Trust Fund for Demining and Mine Victims Assistance
UNION	International Union Against Tuberculnais and Lung Disease
IUEF	International University Exchange Fund-IUEF Stip. in Africa and Latin America
IWTC	International Women's Tribune Centre
-	IPAS-Protecting Women's Health, Advancing Women's Reproductive Rights
CLASCO	Latin American Council for Social Sciences
LPI	Life and Peace Institute
PAID	Pan African Institute for Development
PANOS	PANOS Institute
PSI	Population Services International
RATN	Regional AIDS Training Network
REEEP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SID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WWB	Women's World Banking
OMCT	World Organization Against Torture
WUS	World University Service

3. ODA 적격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목록

	Cities Alliance
GAID	Global Alliance for ICT and Development
GAIN	Global Alliance for Improved Nutrition
GeSCI	Global e-Schools and Communities Initiative
GWP	Global Water Partnership
IAVI	International AIDS Vaccine Initiative
IPM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Microbicides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SAS	Small Arms Survey
UNITAID	UNITAID

○ 공공-민간 파트너십 지원의 경우 아래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만을 양자간 ODA로 인정

4. ODA 적격 '네트워크(Networks)' 목록

○ 네트워크 지원의 경우 아래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만을 양자간 ODA로 인정

GDN	Global Development Network
GKP	Global Knowledge Partnership

자료(부록 17 전체) : 한국수출입은행,「우리나라 ODA 통계자료집」, 2009, pp. 126~133

부 록 18. 중국 상무성 대외기업기구 투자 현황

| 부록 표 18-1 | 중국 기업의 마샬군도 투자 현황(2010, 중국 상무부)

중국 내 투자주체	현지 투자주체	성시	사업 분야	비준일시
广东省农牧业国际合作公司	马广实业发展有限公司	广东省	무역,외식업및숙박업	2010-08-04
中非发展基金有限公司	中兴金源有限公司	中央企业	광물자원의투자개발업무	2010-04-12
上海远洋渔业有限公司	泛太渔业(马绍尔群岛)有限公司	上海市	해양어획,수산물가공판매및관련제품의수출입무역	2009-07-14
上海远洋渔业有限公司	泛太食品(马绍尔群岛)有限公司	上海市	수산물 가공, 판매 및 수출입 무역	2008-08-13

| 부록 표 18-2 | 중국 기업의 마이크로네시아 투자 현황(2010, 중국 상무부)

중국 내 투자주체	현지 투자주체	성시	사업 분야	비준일시
上海水产集团总公司	文森特(密克罗尼西亚)渔业有限公司	上海市	다랑어 위주의 해양어로, 자체생산제품 및 기업에서 운영하는 기계설비, 부품, 원자재 수출입업무. 사업연한 15년	2008-05-20

| 부록 표 18-3 | 중국 기업의 바누아투 투자 현황(2010, 중국 상무부)

중국 내 투자주체	현지 투자주체	성시	사업 분야	비준일시
中水集团远洋股份有限公司	中瓦渔业有限公司	中央企业	다랑어 위주 어로, 가공 판매. 육상어업기지 운영, 선박보급, 어획필요물자 무역 등	2009-11-25

| 부록 표 18-4 | 중국 기업의 사모아 투자 현황(2010, 중국 상무부)

중국 내 투자주체	현지 투자주체	성시	사업 분야	비준일시
上海张江(集团)有限公司	上海张江国际有限公司	上海市	국제무역, 첨단산업프로젝트 육성 및 관련 업무	2004-10-20
桐昆集团股份有限公司	恒隆国际贸易有限公司	浙江省	화학공업원료, 방적원료 및 제품의 수출입무역	2008-02-05
同利创业投资有限公司	华建集团有限公司	江苏省	개인 디지털학력진단시스템 관련 서비스 및 마케팅	2009-05-12
振华物流集团有限公司	振华国际航运有限公司	中央企业	ZHENHUA INTERNATIONAL SHIPPING CO. LTD. 명의로 고객 및 선주와 선박임대 및 용선계약 체결	2009-09-17
振华物流集团有限公司	振华运通航运有限公司	中央企业	고객및선주와선박임대및용선계약체결	2009-09-17
东佳精密光电(江苏)有限公司	巨伟光学国际股份有限公司	江苏省	해외지분투자	2009-10-15
昆山金利表面材料应用科技股份有限公司	SMART ADVANCE CO. LTD.	江苏省	대외투자(사모아기업 인수를 통해 명판, 플라스틱 및 박막스위치 판매와 고객 개발 및 사후관리에 종사하는 미국 KeeInterface Technology, Inc.의 지분 100% 간접소유)	2009-10-15
深圳市普众通信技术有限公司	普众国际有限公司	深圳市	무선통신제품, GPS제품 및 관련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2009-11-06
大连永嘉集团有限公司	耀明发展有限公司	大连市	국제무역, 상업투자	2009-11-25
深圳市华夏动漫科技有限公司	爱克瑞斯公司	深圳市	애니메이션 및 파생상품 판매	2009-12-07
三明市东泰进出口有限公司	三明市东泰进出口有限公司	福建省	수출입무역	2010-03-01
庄河市百汇电缆有限公司	新阳有限公司	大连市	국제무역, 상업투자	2010-03-09
大连北首电力科技有限公司	华天企业有限公司	大连市	절전등, 고저압개폐기, 공업전기기구, 자동화제어시스템 개발, 생산 및 판매	2010-04-12

大连志卓贸易有限公司	泰丰有限公司	大连市	국제무역	2010-05-04
大连荣伸置业开发有限公司	鸿业发展有限公司	大连市	상업관광개발	2010-10-26
福建远志金晖投资有限公司	萨摩亚海洋投资有限公司	福建省	호텔업, 관광업 투자	2010-11-23

| 부록 표 18-5 | 중국 기업의 파푸아뉴기니 투자 현황(2010, 중국 상무부)

중국 내 투자주체	현지 투자주체	성시	사업 분야	비준일시
中建材投资有限公司	北新巴布亚新几内亚有限公司	中央企业	건축자재무역	2001-12-31
北京市政建设集团有限责任公司	北京市政建设集团有限责任公司驻巴布亚新几内亚办事处	北京市	시장정보 수집, 대외 연락, 관련 서비스 제공	2005-08-25
中国海外工程有限责任公司	中国海外工程有限责任公司驻巴布亚新几内亚代表处	中央企业	프로젝트관리	2007-06-25
中国海外工程有限责任公司	中国海外工程巴布亚新几内亚公司	中央企业	주택 및 토목 건설공사, 공관공용시설, 내장장식, 도로공사 등	2007-06-25
宁波雅利木业有限公司	巴新木材加工有限公司	宁波市	잡목합판, 잡목단판 등 목재반제품 가공판매	2007-08-02
威海国际经济技术合作股份有限公司	威海国际经济技术合作股份有限公司巴布亚新几内亚分公司	山东省	공사수주, 수출입무역, 화물운송대행 등	2007-11-02
广东建工对外建设有限公司	广东建工对外建设有限公司巴新分公司	广东省	국제공사수주 및 수출입무역정보 수집, 시장연락업무	2008-07-03

中国十九冶集团有限公司	十九冶巴布亚新几内亚有限公司	中央企业	토목공사건축, 선로 및 파이프설치, 전자설비 설치 및 조정. 설비 및 자재 수출입 등	2008-08-18
中冶京唐建设有限公司	京唐（PNG）瑞木有限公司	中央企业	주택건축, 철골구조, 전자설비설치, 파이프, 공관공용시설, 교량건설 등	2008-08-18
浙江富得利木业有限公司	富得利(巴布亚新几内亚)实业有限公司	浙江省	원목가공 및 심화가공, 적합한 시기에 현지 산림자원 개발참여	2009-08-18
烟台和瑞纸制品包装有限公司	莫尔兹比(中国)包装有限公司	山东省	종이박스, 종이제품 제작, 상표 인쇄 제작	2009-09-27
中铁建设集团有限公司	中铁建设集团巴新公司	中央企业	주택건축공사 총괄수주, 공관공용시설공사 총괄수주, 전자설비설치공사 총괄수주, 지반 및 기초공사 전문수주, 토목공사 전문수주, 철골구조공사 전문수주, 건물스마트화공사 전문수주, 콘크리트공사 전문수주	2010-03-08
河南省地质矿产勘查开发局地球物理勘查队	塔诺投资有限公司	河南省	광물자원개발, 지구물리탐사, 지구화학탐사, 고체광물탐사 등 지질 광물 탐사개발업	2010-07-20
宁波永利木业有限公司	KK联合责任有限公司	宁波市	원목채벌 및 가공	2010-10-27

| 부록 표 18-6 | 중국 기업의 피지 투자 현황(2010, 중국 상무부)

중국 내 투자주체	현지 투자주체	성시	사업 분야	비준일시
抚顺广播电视事业发展中心	抚顺电视（斐济）有限公司	辽宁省	케이블TV전송	2005-01-18
上海远洋渔业有限公司	上海远洋渔业有限公司斐济渔业办事处	上海市	자재공급, 제품운송, 선박수리, 어장정보 수집생산	2005-05-31
苏州青年旅行社股份有限公司	SSS国际大酒店(斐济)有限公司	江苏省	개발, 건설, 회원제 특급 리조트 호텔 판매 및 관리, 지역관광개발, 중국과 피지 간 국제관광개발	2006-04-30

中国海外工程有限责任公司	中国海外工程有限责任公司驻斐济办事处	中央企业	프로젝트 관리	2007-06-25
中国海外工程有限责任公司	中国海外工程斐济公司	中央企业	주택 및 토목 건설, 도시공공시설, 내부설비 및 장식, 고속도로 프로젝트	2007-06-25
茌平信发华宇氧化铝有限公司	信发奥若姆勘探有限公司	山东省	광물 탐사, 채굴 및 관리, 목재 벌채 및 가공	2008-08-11
中国水电建设集团国际工程有限公司	中国水电斐济代表处	中央企业	프로젝트 관리, 사업 개발, 고객관리	2008-12-25
中铁一局集团有限公司	中铁一局集团(斐济) 有限公司	中央企业	현지작업, 인프라 프로젝트, 장비 임대, 수출입 무역	2009-12-02
中铁五局(集团) 有限公司	中铁五局斐济办事处	中央企业	중철오국(中铁五局) 피지철도 운영창구, 프로젝트계약, 국제무역, 장비임대	2009-12-23
上海远洋渔业有限公司	金海渔业有限公司	上海市	어획, 수산물 가공, 무역, 어선임대	2010-05-06
中国葛洲坝集团股份有限公司	中国葛洲坝集团股份有限公司斐济代表处	中央企业	마케팅	2010-06-09

| 부록 표 18-7 | 중국 기업의 벨리즈 투자 현황(2010, 중국 상무부)

중국 내 투자주체	현지 투자주체	성시	사업 분야	비준일시
中国水电建设集团国际工程有限公司	中国水电伯利兹代表处	中央企业	대외연락, 정보수집, 사업조율 및 관리	2008-03-06

| 부록 표 18-8 | 중국 기업의 쿠바 투자 현황(2010, 중국 상무부)

중국 내 투자주체	현지 투자주체	성시	사업 분야	비준일시
福建华侨实业集团公司	EVARADERO 国际联合公司	福建省	플라스틱슬리퍼, 기타 신발, 플라스틱제품의 생산, 가공 및 판매	1999-10-15
福建华侨实业集团公司	中古合作旅游鞋生产国际联合公司	福建省	레저화, PU밑창구두, 패션샌들 생산판매	2004-08-17
中国普天信息产业集团公司	巨鳄通信股份有限公司	中央企业	전신설비 및 시스템 생산, 설계 및 기술지원, 공사 및 기타 관련 서비스 제공 중남미 무역활동 거점	2006-02-15
郑州宇通客车股份有限公司	郑州宇通客车股份有限公司古巴办事处	河南省	본사를 대표하여 쿠바 관련부처, 단체 및 기타 하급기관과의 업무처리	2006-08-01
江西江铃进出口有限责任公司	江铃古巴办事处	江西省	시장조사 및 개발, 정보수집, 사업확장, 프로젝트 조율 및 관리	2009-05-26
北京诚邦信国际科技发展有限公司	北京诚邦信国际科技发展有限公司驻古巴代表处	北京市	사후관리, 고객접촉, 고객의견 및 정보수렴 후 국내본사에 정보 및 피드백제공 등 비영리업무	2009-06-11
浙江康乐集团进出口有限公司	浙江康乐集团进出口有限公司古巴贸易办事处	浙江省	정보수집, 고객접촉, 제품판촉, 사후관리	2009-07-10
中国航空技术国际控股有限公司	中国航空技术国际控股有限公司驻古巴代表处	中央企业	쿠바 현지시장개발, 항공사업발전 및 국제경쟁력을 갖춘 다국적 기업건설	2009-07-17
重汽集团专用汽车公司	重汽集团专用汽车公司驻古巴代表处	青岛市	시장개척, 정보컨설팅, 기술서비스, 국제경제기술협력 등 업무연락	2009-08-27
上海吉利美嘉峰国际贸易股份有限公司	吉利国际（古巴）有限公司	上海市	자동차, 자동차부품, 관련도구 및 기타전자설비 도소매, 자동차수리, 화물운송 및 창고저장, 광고및홍보, 인력양성	2009-09-02
新天国际经济技术合作（集团）有限公司	哈瓦那舜华股份有限公司	中央企业	헤밍웨이 항구에 5성급 호텔 건설 및 운영	2009-10-12
北京华隆进出口公司	古巴商务代表处	中央企业	프로젝트모니터링, 시장조사, 사후관리	2009-10-16
北京北斗星光科	北京北斗星光科	北京市	정보수집, 고객접촉 및	2009-10-23

技发展有限公司	技发展有限公司驻古巴办事处		사후관리	
山东华辰国际集团有限公司	山东华辰国际集团（古巴）有限公司	山东省	일용품, 전력제품, 태양에너지 제품 및 석유설비 등 제품의 개발, 판매, 수출입	2009-10-28
北京巨龙东方国际信息技术有限责任公司	北京巨龙东方国际信息技术有限责任公司古巴代表处	中央企业	본사 쿠바 대표부 일상업무 처리, 쿠바의 관련 법률에 따라 본사 명의의 계좌 개설, 회사 요구에 따라 쿠바 내 본사 자산 처리, 쿠바에서의 합법적인 본사 권익 보호	2009-12-15
深圳市蓝筹实业发展有限公司	深圳市蓝筹实业发展有限公司(古巴)办事处	深圳市	본사를 대표하여 기술 컨설팅 등 비영리 업무의 연락 활동	2009-12-24
上海吉利美嘉峰国际贸易股份有限公司	上海吉利美嘉峰驻古巴代表处	上海市	정보수집, 프로젝트모니터링, 고객접촉 등 비영리업무	2010-06-07
杨凌隆瑞科技发展有限公司	杨凌隆瑞科技发展有限公司驻古巴办事处	陕西省	회사사업 분야의 고객접촉, 시장조사, 정보수집 및 업무활동	2010-06-23
北京星光盛业科技有限公司	古巴星光盛业电子有限公司	北京市	전자제품 및 태양에너지조명제품의 개발, 설계 및 생산	2010-07-28
淄博国澳进出口有限公司	淄博国澳进出口有限公司古巴办事处	山东省	쿠바에서의업무연락및시장보급	2010-10-13
中国石油天然气管道局	中国石油天然气管道局古巴办事处	中央企业	현지 및 주변지역사업 정보수집, 국외조사 및 입찰조직, 공사, 기술 및 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에 필요한 설비, 재료구입, 수출입 등	2010-12-07

| 부록 표 18-9 | 중국 기업의 도미니카공화국 투자 현황(2010, 중국 상무부)

중국 내 투자주체	현지 투자주체	성시	사업 분야	비준일시
金城集团进出口有限公司	金城多米尼加办事处	江苏省	중국 금성무역을 대표 도미니카 공무화국과 교섭, 신업무연계, 시장과 고객 개발, 판매네트워크 및 고객연락망, 시장정보수집, 애프터서비스, 시장조사연구	2007-04-27

| 부록 표 18-10 | 중국 기업의 그레나다 투자 현황(2010, 중국 상무부)

중국 내 투자주체	현지 투자주체	성시	사업 분야	비준일시
安徽省外经建设(集团)有限公司	华安加勒比)有限公司	安徽省	호텔 경영 및 관리, 공사 수주, 부동산 개발, 수출입 무역	2008-01-15

| 부록 표 18-11 | 중국 기업의 가이아나 투자 현황(2010, 중국 상무부)

중국 내 투자주체	현지 투자주체	성시	사업 분야	비준일시
重庆市博赛矿业（集团）股份有限公司	博赛集团圭亚那电力有限公司	重庆市	전력공급	2009-12-15
重庆市博赛矿业（集团）股份有限公司	博赛矿业集团(圭亚那)有限公司	重庆市	보크사이트 등 광산물채굴, 가공 및 판매	2009-12-15
黑龙江柏杉林木业有限公司	柏杉林国际林业开发有限公司	黑龙江省	산림개발 및 목재가공	2010-10-28

| 부록 표 18-12 | 중국 기업의 자메이카 투자 현황(2010, 중국 상무부)

중국 내 투자주체	현지 투자주체	성시	사업 분야	비준일시
中兴通讯股份有限公司	中兴通讯股份有限公司(牙买加)办事处	深圳市	본사에 자메이카 투자정보 컨설팅	2005-09-20
上海缅大国际贸易有限公司	格林沃环保有限公司	上海市	재생자원 PET 회수, 가공 및 무역	2007-07-20
中达建设集团股份有限公司	中达建设牙买加有限责任公司	宁波市	공업 및 민간용 건축시공, 건축자재 도소매, 위탁매매, 건축기계설비 임대 등	2008-11-06
中国港湾工程有限责任公司	中国港湾牙买加办事处	中央企业	시장개척	2009-10-20

| 부록 표 18-13 | 중국 기업의 트리니다드토바고 투자 현황(2010, 중국 상무부)

중국 내 투자주체	현지 투자주체	성시	사업 분야	비준일시
北京六建集团公司	北京六建集团特立尼达和多巴哥有限公司	北京市	공사수주, 수출입무역	2009-01-21
中国海外工程有限责任公司	中国海外工程有限责任公司特多公司	中央企业	주택건축, 부동산개발, 도로 및 공관공사, 수출입무역, 서비스 등	2009-12-02
中国铁建股份有限公司	中国铁建（加勒比）有限公司	中央企业	수주공사사업 및 관련 공사물자무역	2010-06-09

| 부록 표 18-14 | 중국 기업의 카보베르데 투자 현황(2010, 중국 상무부)

중국 내 투자주체	현지 투자주체	성시	사업 분야	비준일시
济南四建（集团）有限责任公司	济南四建（集团）有限责任公司佛得角分公司	山东省	국제공사수주, 수출입무역, 국제인력협력	2006-02-10
福建信诺立投资发展有限公司	佛得角信诺立电子通讯数字电视服务有限公司	福建省	디지털TV 방송 및 기술 개발. 국가 법률 및 법규에 맞는 각종 상품 및 기술 수출입	2009-03-19
福建信诺立投资发展有限公司	佛得角信诺立电子通讯数字电视服务有限公司	福建省	디지털TV 방송 및 기술 개발. 국가 법률 및 법규에 맞는 각종 상품 및 기술 수출입	2009-03-30

| 부록 표 18-15 | 중국 기업의 모리셔스 투자 현황(2010, 중국 상무부)

중국 내 투자주체	현지 투자주체	성시	사업 분야	비준일시
山西省粮油贸易中心	罗福德实业有限公司	山西省	제지, 재생종이 및 종이통, 화장지 생산판매	2004-02-13
山西省天利实业有限公司	天利纺纱（毛里求斯）有限公司	山西省	면사생산판매	2004-09-02

华为技术有限公司	华为技术(毛里求斯)有限公司	深圳市	정보통신제품, 부품 및 보조장치 수출입업무	2005-04-14
苏州兴亚投资有限公司	兴亚（毛里求斯）贸易有限公司	江苏省	각종 철물판매, 국내기업을 위한 아프리카 시장개척	2005-04-29
上海橡子园创业投资有限公司	橡子园创业投资(毛里求斯)有限公司	上海市	첨단기술 분야의 벤처투자펀드, 첨단기술사업투자 및 기타관련업무	2006-06-27
山西森鹅服装有限公司	森鹅（毛里求斯）服装有限公司	山西省	의류 및 원단생산, 유통, 위탁가공, 견본가공 등	2006-07-07
山西省天利实业有限公司	山西省天利实业有限公司毛里求斯代表处	山西省	본사의 모리셔스 파견인력 관리 및 고객피드백, 새로운 인력시장 개발 등	2006-07-18
邹平三星油脂工业有限公司	三星贸易有限责任公司	山东省	국제무역	2006-10-19
上海新鑫投资有限公司	新鑫国际有限公司	上海市	IC설계 및 소프트웨어 산업위주의 첨단기술기업 및 기타기업에 대한 창업투자, 투자관리	2006-12-22
广东志高空调股份有限公司	贤明企业有限公司	广东省	에어컨 및 부품, 기타 가전제품 판매, 서비스무역	2007-03-19
广东志高空调股份有限公司	中天企业有限公司	广东省	상업무역 및 기술무역	2007-04-28
中国海外工程有限责任公司	中国海外工程有限责任公司驻毛里求斯项目部	中央企业	사업관리	2007-06-25
山西省天利实业有限公司	天利第三纺纱(毛里求斯)有限公司	山西省	고급콤팩트사, 실켓사, 염색실켓사, 뜨개실, 고급open-end방적사 생산	2007-09-21
上海浦东科技投资有限公司	浦东科技（国际）有限公司	上海市	첨단산업 창업투자업무	2007-09-24

山西中量工程项目管理有限公司	中量(毛里求斯)有限公司	山西省	건축 및 실내장식자재 수출입무역	2007-11-02
上海浦东科技投资有限公司	博弘生物医药投资有限公司	上海市	첨단산업 창업투자업무	2008-01-24
上海浦东科技投资有限公司	博弘生物医药投资有限公司	上海市	첨단산업 창업투자업무	2008-01-24
上海浦东科技投资有限公司	智新投资有限公司	上海市	첨단산업 창업투자업무	2008-01-24
山西仁源堂药业有限公司	东源国际药业有限公司	山西省	중약 및 양약생산판매	2008-03-19
中国中钢股份有限公司	中钢津巴布韦铬业控股有限公司	中央企业	짐바브웨 Zimasco사의 지분 73% 수매	2008-03-31
山西天利恒贞实业有限公司	恒瑞实业有限公司	山西省	호텔용품 및 여행상품생산판매, 경공품, 방직물, 식량 및 식용유, 철물, 광물 등 상품무역	2008-05-19
苏州瑞基房地产开发有限公司	瑞基房地产(毛里求斯)有限公司	江苏省	부동산 및 호텔 건설	2008-07-02
山西省天利实业有限公司	毛里求斯天利经济贸易合作区有限公司	山西省	토지개발 및 인프라 건설, 무역, 투자비즈니스서비스	2008-12-15
山西晋非投资有限公司	毛里求斯晋非经济贸易合作区有限公司	山西省	모리셔스 경제특구 기획, 투자계획 수립, 사업 건설, 기업 유치, 특구 운영 관리 및 서비스	2009-08-11
江苏天驰建设工程有限公司	海陵房屋建筑公司	江苏省	주택건설투자, 무역	2009-10-16
中国建筑股份有限公司	中国建筑股份有限公司毛里求斯分公司	中央企业	건축공사 수주	2009-10-19

武汉新能置业有限公司	千里马投资有限公司	湖北省	포도재배, 포도주 생산판매, 관광농업 등	2009-11-17
江苏金飞达服装股份有限公司	金飞达(毛里求斯)有限公司	江苏省	투자 및 무역	2009-11-19
大同市金冠实业有限责任公司	大同金冠实业有限公司(毛里求斯)分公司	山西省	의류판매 등	2009-12-02
大同市三友钟表眼镜有限责任公司	山西晋都商贸有限责任公司	山西省	안경 및 시계판매, 수출입업무	2009-12-04
上海陇瑞源国际贸易有限公司	德联毛里求斯有限公司	上海市	광산품 매매, 금속재료 수출입무역, 무역대행 및 기타사업투자	2009-12-07
中国北方车辆有限公司	超级力量控股有限责任公司	中央企业	상용차산업투자, 국제무역 및 컨설팅서비스 등	2010-02-02
中国水电建设集团国际工程有限公司	中国水电毛里求斯代表处	中央企业	본사를 대표하여 계약 및 협의체결, 사업관리감독 및 조율, 현지정부 및 관련기관접촉 등	2010-03-16
威海建设集团股份有限公司	威海建设集团（毛里求斯）有限公司	山东省	국외공사수주, 부동산개발, 수출입무역 등	2010-05-27
帝奥微电子有限公司	帝奥（毛里求斯）有限公司	江苏省	고성능 아날로그신호IC칩 개발 및 판매	2010-06-10
托克贸易(上海）有限公司	托克投资贸易有限公司	上海市	금속, 금속파생품 및 관련 상품의 국제무역, 관련 서비스 제공	2010-07-06
颐杰鸿泰发展集团有限公司	鸿泰新能源有限公司	青岛市	국제무역, 중계무역, 기술컨설팅 및 투자	2010-11-25

| 부록 표 18-16 | 중국 기업의 상투메프린시페 투자 현황(2010, 중국 상무부)

중국 내 투자주체	현지 투자주체	성시	사업 분야	비준일시
中国海外工程有限责任公司	中国海外工程有限责任公司驻圣多美和普林西比项目部	中央企业	사업관리	2007-06-25

| 부록 표 18-17 | 중국 기업의 세이셸 투자 현황(2010, 중국 상무부)

중국 내 투자주체	현지 투자주체	성시	사업 분야	비준일시
杭州工艺纺织品有限公司	杭州工艺纺织品有限公司驻塞舌尔共和国办事处	浙江省	정보수집, 제품판촉, 고객접촉, 사후관리	2006-01-26
宁波泰仑贸易有限公司	科朗国际贸易有限公司	宁波市	수출입무역	2006-08-31
潍坊恰通工电子有限公司	迈讯有限公司	山东省	수출입무역	2008-09-27
浙江利豪控股集团有限公司	利豪国际集团有限公司	浙江省	사무용가구, 소파 등 수출입무역	2009-05-05
青建集团股份公司	青建集团股份公司塞舌尔分公司	青岛市	공사총괄수주, 건축자재 수출입업무 등	2009-10-20
北京市大碗茶文化发展有限公司	大紫饮食文化管理有限公司	北京市	외식업	2009-12-17
大连新发展集团有限公司	瑞盈发展有限公司	大连市	국제무역	2010-03-31
大连旺京投资有限公司	致胜国际有限公司	大连市	외해 및 심해어획, 어류제품 가공	2010-11-29

부 록 19. 설문지(A Survey on Marine Cooperation with Small Island States)

Dear Sir/Madam,

This survey is provided to collect data for establish and promote a bilateral cooperation in marine sector between Korea and small islands States (SIS).
Korea Maritime Institute, a think-tank of national marine policies specializing in marine affairs, marine environment, fisheries and shipping & port, sponsored by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undertaking a research project to create a cooperation program in marine sector with SIS. The project was initiated to find ways to promote overseas cooperative program of Korea with your country for mutual benefits. More specifically, this survey focuses on identifying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and potential areas of cooperation in marine sector with your countr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be incorporated into policy alternatives, some of them will be provided to the policy-making institutions concerned in Korea.
You are kindly invited to respond to this survey or to deliver it to the right person or department. We will appreciate any of your responsive actions and opinions. The result of this survey will be used only for the research purpose and the information you provided to us will be kept in confidential. Please refer to www.kmi.re.kr for more information on our institute.
We would like to in advance express sincere gratitude for your kind cooperation.

15 June 2010
Hak-Bong Chang
Director, Marine Territory Division
Korea Maritime Institute

Contact person for inquiry:
Ms. Christine Soo-Jeong Choi, Senior Researcher
Email: sjchoi@kmi.re.kr, deepbluesea1004@hotmail.com
Tel : +82-2-2105-2853 Fax : +82-2-2105-4989

[Part 1. Recognition of Necessity for Marine Cooperation]

Please indicate “o” or “v” according to your opinion on the following questions.

Question 1.

Do marine policies take an important part in the national policy of your Country?

① Yes ( )

② No ( )

Question 2.

Which of the following are important in the marine policy of your country? (Mark your priorities with the number from 1 (the highest) to 7 (the lowest))

① Fisheries ( )

② Marine Environment ( )

③ Sea Level Rise ( )

④ Transportation & Port Infra-structure ( )

⑤ Marine Tourism ( )

⑥ Marine Mineral Resources ( )

⑦ Marine Energy (oil & gas) ( )

⑧ Others ( )

Question 3.

Is there a mid- or long- term plan for the marine sector in your country?

① Yes, there is. ( )

② Yes, but is in preparation for improvement. ( )

③ No, but is in the planning stages. ( )

④ No, there is not. ( )

Question 4.

Does your country have any intention to cooperate with foreign countries for the development of marine policy?

① Yes, it has. ( )

② Under consideration. ( )

③ No, it does not have. ( )

Question 5.

In which sector does your country have intentions to cooperate with foreign countries onmarine policies? (Mark your priorities with the number from 1 (the highest) to 7 (the lowest))

① Fisheries ( )

② Marine Environment ( )

③ Sea Level Rise ( )

④ Transportation & Port Infra-structure ( )

⑤ Marine Tourism ( )

⑥ Marine Mineral Resources ( )

⑦ Marine Energy (oil & gas) ( )

⑧ Others ( )

Question 6.

What kind of support does your country need to cooperate with foreign countries? (You may choose more than two answers.)

① Financial Support ( )

② Technical Support ( )

③ Expertise Dispatch ( )

④ Joint Research ( )

⑤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 of Marine Policy Participants ( )

⑥ Others ( )

[Part 2. Overseas Cooperation in Marine Policy]

Question 7.

What is the greatest potential to develop in your country's marine industries? (Mark with the number from 1 (the highest) to 5 (the lowest). For other answers, write them in the space provided.)

① Fisheries (including aquaculture) ( )

② Transportation Service ( )

③ Marine Tourism ( )

④ Marine Energy Industry ( )

⑤ Marine Mineral Resource( )

⑥ Others ( )

Question 8.

Which aspect does your country consider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cooperate with foreign countries? (Mark your priorities with the number from 1 (the highest) to 5 (the lowest). For other answers, write them in the space provided.)

① Expertise ( )

② Good Relationship with Cooperating Country ( )

③ Availability of Financial Support ( )

④ Possibility of Long-term Cooperation ( )

⑤ Additional Capability in Contingency ( )

⑥ Others ( )

Question 9.

For which sector is your country cooperating with foreign countries? (You may choose more than two answers.)

① Fisheries ( )

② Marine Environment ( )

③ Sea Level Rise ( )

④ Transportation & Port Infra-structure ( )

⑤ Marine Tourism ( )

⑥ Marine Mineral Resources ( )

⑦ Marine Energy (oil & gas) ( )

⑧ Others ( )

Question 10.

What difficulties does your country have when it comes to cooperating with foreign countries? (You may choose more than two answers.)

① Selection of a Country/Countries available for Marine Cooperation ( )

② Financial Constraints ( )

③ Communication Problem ( )

④ Lack of Experts in Marine Cooperation ( )

⑤ Lack of Capacity in Local Government (in respect totechnical and administrative capacity) ( )

⑥ Lack of Understanding among Local Citizens for Marine Cooperation ( )

⑦ Others ( )

[Part 3. Details of each sector of marine cooperation]

Question 11.

This is about “Development of Fisheries.” This part should be completed by

someone who is well knowledgeable in his/her respective country's potentials of fishery resources. If you suggest a sub-sector of fisheries as the greatest potential, please mark tick (v) or circle (?) on the following (you may choose more than two answers.)

① Fisheries ( )
② Aquaculture (Farming Fishery) ( )
③ Deep-sea Fishery ( )
④ Fishing Infrastructure ( )
⑤ Marketing & Processing Facilities ( )
⑥ Others ( )

Question 12.

This is about "Marine Environment." This part should be completed by someone who is well knowledgeable in his/her respective country's potentials of marine environment. If you suggest a sub-sector of marine environment as the greatest potential, please mark tick (v) or circle (o) on the following (you may choose more than two answers.)

①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 )
② Marine Bio-diversity Research( )
③ Marine Science Research related to Climate Change ( )
④ Coastal Management ( )
⑤ Others ( )

Question 13.

This is about "Transportation & Port infrastructure". This part should be completed by someone who is well knowledgeable in his/her respective country's potentials

of transportation & port infrastructure. If you suggest a sub-sector of "transportation & port infrastructure" as the greatest potential, please mark tick (v) or circle (o) on the following (you may choose more than two answers.)

① Construction of Container Terminal Facilities ( )

② Development of Port Hinterland ( )

③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 Port Information System ( )

④ Development of Port Transportation Networks ( )

⑤ Others ( )

Question 14.

This is about "Marine Tourism". This part should be completed by someone who is well knowledgeable in his/her respective country's potentials of marine tourism. If you suggest a sub-sector of marine tourism as the greatest potential, please mark tick (v) or circle (o) on the following (you may choose more than two answers.)

① Construction of Marine Museum ( )

② Development of Marine Tourist Complex ( )

③ Construction of Marine Natural History Museum ( )

④ Development of Eco-tourism ( )

⑤ Marine Tourism Consulting ( )

⑥ Others ( )

Question 15.

This is about "Marine Energy". This part should be completed by someone who is well knowledgeable in his/her respective country's potentials of development of marine energy. If you suggest a sub-sector of marine energy as the greatest po-

tential, please mark tick (v) or circle (o) on the following (you may choose more than two answers.)

① Marine Wind Energy ( )

② Marine Tidal Energy ( )

③ Marine Oil Industry ( )

④ Marine Bio-energy Industry ( )

⑤ Consulting of Marine Energy Industry ( )

⑥ Exploitation of Marine Mineral Resources) ( )

[Part 4. Marine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ROK)]

Question 16.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difficult domestic problem(s) that your country faces in order to cooperate with ROK in the marine sectors?

① Lack of Administrative Support ( )

② Lack of Financial Sources ( )

③ Lack of Experts ( )

④ Long Distance from ROK ( )

⑤ Negative Images over ROK ( )

⑥ Others ( )

Question 17.

What is your country's goal in pursuit of marine cooperation with ROK?

① Enhancement of National Marine Policy System ( )

② Improvement of GDP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 )

③ Job Creation ( )

④ Sustainable Marine Industries ( )

⑤ Capacity Building of related Marine Technologies ( )

⑥ Enhancement of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ROK ( )

⑦ Others ( )

Question 18.

In which sector would your country hope to cooperate with ROK?

① Fisheries ( )

② Marine Environment ( )

③ Transportation & Port Infra-structures ( )

④ Marine tourism ( )

⑤ Marine energy ( )

⑥ Marine Science ( )

⑦ Others ( )

Question 19.

For which sector is your country dispatch willing to dispatch personnel in order to participate in training & education program for marine cooperation with ROK?

①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ishery resources (including fish farming technology) ( )

②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marine environment ( )

③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 Port management system ( )

④ Marine Tourism Policy ( )

⑤ Marine Energy Policy ( )

⑥ Marine Science(including development of marine mineral resources) ( )

⑦ Others ( )

Question 20.

What would your country favor as the method of financing for marine cooperation with ROK?

①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eign aid) ( )

② Loan Arrangement ( )

③ Private Investment ( )

④ Joint Investment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 )

⑤ Others ( )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operation.

소도서국가(SIDS)와의 해양협력 방안 연구

2010年 12月 29日 印刷
2010年 12月 31日 發行

編輯兼發行人 金 學 韶
發行處 韓國海洋水産開發院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2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組版 · 印刷 / 서울기획문화사 2272-1533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 - 0337